

III. 사회 생활의 변동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2. 신분제도의 변화
3. 형법 · 민법체계의 변화
4. 지방자치제의 추이
5. 의 · 식 · 주생활의 변화

III. 사회 생활의 변동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1) 대한제국시기의 호구수

조선정부는 건양 원년(1896) 9월 1일자 칙령 제61호로 〈戶口調查規則〉을 제정·공포하였다.¹⁾ 이 〈호구조사규칙〉은 종전까지의 전근대적인 법령체계를 근대화한 것이나 호구의 전담부서를 한성부에서 내부로 이관한 것, 그리고 매년 말에 하던 호구수 보고를 5월 이내로 하도록 변경한 것 외에는 종전까지의 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난 9월 8일자 내부령 제8호로 〈戶口調查細則〉이 공포·시행되었는데 전문 17개 조문과 3개의 별표(호적식양·통표식양·호패식양)로 된 이 세칙은 ① 호적지의 양식과 배포 과정, 기재방법(1·2조), ② 분거·별거 가족과 기식가구의 취급(3·4·5조), ③ 이거자의 개적(6조), ④ 호적을 유실·소실한 경우의 성적(7조), ⑤ 기재사항 변경시의 개적절차 및 기간(8·9·10조), ⑥ 호적의 보관과 보고(11조), ⑦ 통표의 작성·보관·보고의 절차(12~15조), ⑧ 호패의 작성과 계부(16·17조)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호구조사 및 그의 편집·보관·보고에 관하여 이렇게 상세히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인 광무 원년(1897)에서 3년까지의 기간에 호구수가 보고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건양에서 광무로 넘어가는 혼란기에 처하여 새 양식에 의한 호적지 등이 배포되지 않아 호적이 작성되지

1) 《관보》, 건양 원년 9월 4일.

않았거나, 호적은 작성되어 편집까지 되었는데 황제에게 보고되지 않았는지, 보고는 되었는데 관찬기록들이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이상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추측되는 바이다.

대한제국기의 호구수로서 현재 전해지는 것은 광무 4년(1900)에서 8년까지의 5년간과 광무 11년과 응희 3년(1909)의 2년간 등 모두 7년간뿐이며, 전자 의 5년간은 《황성신문》·《대국신문》등 신문기사로, 광무 11년의 것은 《韓國戶口表》라는 이름의 호구통계표에, 응희 3년의 것은 응희 4년 7월 6일자 관보에 실려 있는 것이다.²⁾

그런데 《황성신문》과 《대국신문》에 실려 있는 광무년간의 호구수에 관하여는, 첫째 무슨 이유로 민간신문에 호구수가 게재되어 있고, 《日省錄》·《王朝實錄》·《舊韓國官報》등의 관찬문서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는가, 둘째, 건양 원년의 〈호구조사규칙〉에 의하면 전국 인민의 호적은 매년 1월내에 수취·수정하여 내부에서는 5월 이내에 편집을 마쳐 국왕에게 보고도록 되어 있는데 《황성신문》·《대국신문》이 모두 연말에 집계된 것처럼 다루어 2월 하순이나 다음해 정월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가는 것이다. 또 응희 4년 7월 6일자 관보에 실려 있는 응희 3년말 호구수는 “《財務彙報》에 의함”이란 설명이 붙어 있다. 왜 《재무汇报》라는 책자에 실린 통계가 다시 관보에 실리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대한제국기의 호구수 통계에 이상과 같은 의문점이 있기는 하나 이 기간의 통계로는 이것밖에 없으니 작표해서 소개하면 다음 〈표 1〉과 같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첫째, 갑오개혁 이전의 호구통계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나 특히 광무년간의 호구통계를 통하여 행정력의 약화, 주민통제의 이완이 그 극에 달하여 호구조사 자체가 한낱 형식적인 종이작업에 불과해졌음을 알 수가 있다. 광무 8년의 한성인구수 109,234명은 기재착오였거나 아니면 인쇄미스로 보아야

2) 응희 원년(1907)의 인구수에 관하여는 제2차 《통감부통계연보》에 또 한가지 통계가 실려 있는데 출처와 조사경위 등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고 인구수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예를 들면 경성 외국인 포함 인구수 156,947명) 여기서는 무시해 버린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무 4년에서 동 7년까지 한성 5부 및 전국 호구수의 계속적인 미증감은 별씨 통계로서의 신빙성을 전혀 결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 광무 11년의 《한국호구표》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호수가 230만 명 대에 달하고 인구수도 1천만 명 대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이때에도 적지 않은 누호·漏口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갑오개혁 이전이나 광무년간에 비할 때 훨씬 강력한 행정력의 통제를 알 수가 있고 호구조사 자체도 철저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세째, 광무 11년은 일본인 고문들에 의해서, 그리고 융희 3년에는 통감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반도의 영구통치를 전제로 면밀하고 철저한 호구조사를 했을 것으로 누락율이 비교적 적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표 1〉 대한제국시대 한성 5부 및 전국의 호구수

年 度	漢城 5部		全 國		資 料
	戶	口	戶	口	
광무 4년(1900)	42,454	196,898	1,397,630	5,608,151	《皇城新聞》, 광무 5년 1월 10일
5년(1901)	42,463	193,606	1,409,344	5,713,244	《皇城新聞》, 광무 6년 1월 24일
6년(1902)	42,936	197,214	1,405,116	5,782,860	《皇城新聞》, 광무 7년 1월 8·9일 《대국신문》, 광무 6년 12월 29일
7년(1903)	42,821	194,659	1,418,530	5,891,595	《皇城新聞》, 광무 8년 1월 13일
8년(1904)	42,730	109,234	1,374,969	5,629,487	《皇城新聞》, 광무 8년 12월 21일
광무11년(1907)	46,374	199,325	2,333,087	9,781,671	《韓國戶口表》(5월 20일 조사)
융희 3년(1909)					
(본국인)	56,129	233,094	2,633,028	12,363,404	《官報》, 융희 4년 7월 6일
(일본인)	9,921	32,528	42,535	143,045	
(기타외국인)	701	2,349	2,826	11,791	
(총합계)	66,751	267,971	2,678,389	12,518,240	

광무 11년의 『한국호구표』에 기록된 숫자와 응희 4년 7월 6일자 관보에 실린 숫자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우선 한성부 호

구수에 있어서 약 2만 호, 인구수에 있어서 68,646명의 차이가 나고 전국의 호구수에 있어서도 34만 5천 호, 인구수에 있어 273만 6천 명 이상의 차이가 나오고 있다. 광무 11년(1907)에서 융희 3년(1909)에 이르는 2년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느 한쪽에 조사부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융희 3년 12월 말 현재의 조사가 더 충실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³⁾

(2) 《한국호구표》와 지방도시 인구

조선시대 각 지방 부·목·군·면의 호구수를 종합 기록한 자료로는 정조 13년(1789) 을유년식 호구수를 정리한 《호구총수》가 유일한 것이며,⁴⁾ 대한제국시대의 각 지방 호구수를 정리한 자료로는 《한국호구표》라는 것이 전해지고 있다. 이 책자는 앞 표지 중앙에 《한국호구표》라고 책명을 표시하고 오른쪽 상단에 ‘명치 40년 5월 조사’, 왼쪽 하단에 발행처 표시로 정부 재정고문 본부라고 기재하였을 뿐, 발행한 날짜도 조사 보고한 목적도 일체 기재가 없다. 그러나 앞 표지 뒷면에 “본 호구표는 객년 10월이후 마루야마 시계도시(丸山重俊) 경무고문이 조사 보고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맨 첫머리에 소개되어 있는 각 ‘도별호구표’에 보면 경무고문 각 도별지부가 소개되어 있으며, 둘째 표인 ‘호구조사비교표’에는 경무고문부가 예비조사를 하였다는 난도 있고 모두 370면으로 된 책의 말미에는 ‘용산 탁지부 인쇄국 인쇄’라고 기재되어 있다.

광무 8년 8월 22일에 체결된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그때까지 일본경시청 제1부장으로 있던 마루야마가 한국 정부 경무고문으로 부임해 온 것은 광무 9년 1월 20일이었으며⁵⁾ 그로부터 각 도에도 경무고문지부가 설치되고 일본인들이 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부

3) 이렇게 융희 3년의 숫자가 더 충실했을 것임을 알면서도 도시별 인구수 설명에서는 이 융희 3년 통계는 무시해 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융희 3년의 통계는 한성부와 13도 통계밖에 소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도시인구 비교는 당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호구총수에 관하여는 손정목,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一志社, 1977), 207쪽.

5) 《황성신문》, 광무 9년 1월 21일.

임해 와서 한국의 경찰권을 사실상 장악해 버린다. 〈한일신협약〉, 속칭 〈정미칠조약〉이 체결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광무 11년 7월 24일이었고, 그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할 것”이라는 규정에 의해 경무고문이었던 마루야마를 한국정부의 경시총감으로, 각 도 경무고문지부 보좌관을 각 도 경무서 경시로 임명한 것은 각각 그해 8월 15일의 일이었다.⁶⁾

융희 4년 3월에 한국내부 경무국에서 발간한 《顧問警察小誌》는 고문경찰 2년 반 동안의 행적을 정리해 두었는데⁷⁾ 《한국호구표》가 바탕이 된 호구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호구는 종래 통계로 나타난 것이 없는 바 아니지만 맹랑杜撰하여 조급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지방기구인 관찰사 이하 부윤·군수들이 각기 부내의 호수를 읊닉한 채 이를 내부에 보고하고 그 잉여의 호구에서 징수된 호수세를 瞞着하여 이를 각자의 호주머니 속에 감춘 것이다. 이제庶政개선의 때를 맞아 경찰의 운용상 및 재정정리상에 관하여 호구가 정확치 않으면 거의가 근거없는 사업이 될 것이므로 광무 10년 11월, 경무고문은 각도 경무고문지부에, 내부대신은 각도 관찰사에 훈령하여 일정한 기일내에 호구조사에 종사시켰다.

원래 호구조사는 각도 지부 보좌관들이 각 경무서 순검과 협력하여 이의 완성을 기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나 보좌관 및 순검의 수가 과소함으로서 이를 방조하기 위하여 면장을 시켜 우선 호구조사서를 만들게 하고 보좌관이 순검을 데리고 실지에 나아가 이를 사핵하는 절차를 밟았다(중간생략).

생각건대 호구조사는 국내조사의 근본으로서 실로 정치의 기초를 확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호구가 애매승집하다면 서정의 개선은 곧 가공의 경영으로 돌아가고 만다.

한국인의 관습으로서 여자는 타의 남자와 접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집집마다 반드시 ‘안방’이라는 음설이 있고 이 방은 실로 불가침으로서 타인의 출입을 불허한다. 만일 강제를 쓰면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호구조사는 아국과 같이 일언지하에 전 가족의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통계상 불확실을 면할 수가 없었다.

6) 《관보》, 융희 원년 8월 8일, 〈丸山 경시총감 임명〉 및 19일, 〈각도 경무서 경시〉.

7) 《고문경찰소지》(복간판), 203~204쪽. 이 기록은 丸山고문 보좌관이었던 岩井敬太郎이 편찬한 것이다.

이상에서 〈한국호구수〉가 작성된 과정은 완전히 부각된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경무고문 본부가 주관한 한국 호구조사는 광무 10년(1905) 9월경부터 준비에 들어가 동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에 실시되었다. 호구조사의 기준일자는 광무 11년 5월 20일이었다.
- ② 호구조사의 실시에 앞서 각 부군의 면장이 호구조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각도 경찰고문 지부 보좌관과 경무서 순검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조사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였다.
- ③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조사결과가 경무고문 본부에 보고 접계되었으며 그 접계를 재정고문부(메가타 타네타로, 目賀田種太郎 고문)에서 인계받아 책자로 간행하였다. 이 책자가 발간된 것은 연호가 응희 원년(1907)으로 바뀐 그 해 가을이었던 것 같다.⁸⁾
- ④ 《고문경찰소지》에서 솔직히 밝힌 바와 같이 이 호구표의 내용이 지니는 정확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조사가 실시된 때에는 이미 통감부가 설치된 후이었고 한국정부의 일본인 고문들은 통감의 지휘하에 있었다.⁹⁾ 그러므로 이 조사는 통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들 영구지배의 기초자료로 할 목적이었을 것이므로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했을 것이다.

정조 13년(1789)의 《호구총수》와 동일하게 《한국호구표》도 전국의 호구를 각 부·군, 각 면별로 나누어 호수·인구·남·여를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두고 지방도시 인구를 조사하는 경우 두가지 점에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도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즉 당시의 각 면 중 어느 것을 도시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한성부·전주부와 같은 대도시는 그 부내일원을 도시라고 볼 수 있지만 조그마한 지방도시는 그러하지가 않다. 다행히 당시의 군청소재지는 대개가 성내·읍내·군내 등으로 불리었고 이 호구표도 그러한 호칭으로 분류하고 있어 행정중심지는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별씨 이때에도 지역간의 격차가 심하게 일어나서 읍내이기는 하나 도시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농촌상태의 고을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읍내가 아니면서 교통상의 요지이거나 이름난 시장소재지 등으로서

8) 광무 11년은 8월 2일자로 연호를 응희로 바꾼다.

9) 통감부 관제 제6조에 “통감은 일본인 관리로서 한국정부에 용빙된 자들을 감독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적 성격을 띤 대취락들도 있었으나 당시의 4천 개가 넘는 면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 도시로 하느냐가 문제된 것이다.

둘째는 도시의 구역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당시의 행정 구역명에서 성내 또는 읍내라고 표시된 구역범위는 대체로 당시의 성벽내를 가리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구수가 몇백에서 천여 명 정도밖에 안되는 경우가 많았는가 하면 반대로 청주나 상주·예천 같은 경우는 읍내가 동·서·남·북의 4개 읍내면으로 구분되어 그것을 모두 합하면 상당한 범위의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 평양을 위시하여 공주·남원·광주와 같은 경우는 도시부를 형성하는 복수의 면명들이 다양하여 적지 않은 난점이 있는 것이었다.

이상의 문제들은 필자가 『호구총수』에 의해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인구를 다루면서 한번 겪었던 일이었으므로 이번의 작업은 훨씬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다행이었던 점은 대한제국시대의 이 문제해결에는 직접적인 자료가 있었다.

첫번째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료는 융희 3년 3월 31일자 칙령 제43호 〈가옥세를 시행하는 시가지에 관한 건〉과 동 4년 4월 13일자 칙령 제27호 〈가옥세법시행지 개정〉의 두 개 법령이었다.¹⁰⁾ 일본 대장성 주계국장으로 있다가 대한제국정부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해 온 메가타에 의하여 재정정책 일체가 수립·시행되어 온 대한제국 탁지부는 융희 3년 2월에 〈가옥세법〉·〈주세법〉·〈연초세법〉 등을 제정·발표하였는데, 2월 8일자 법률 제2호의 〈가옥세법〉 제1조는 “시가지에 있는 가옥을 소유한 자에는 가옥세를 과함. 본법을 시행하는 지역에는 호세를 과하지 아니함. 제1항의 시가지는 칙령으로써 이를 지정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그때까지 도시·농촌의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호세가 과징되었는데 앞으로 시가지지역에는 호세 대신에 가옥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융희 3년 3월의 칙령 제43호는 가옥세를 시행하는 시가지를 지정하는 행정명령이었고, 다음해 4월의 칙령 제27호는 위의 시가지 지정의 개정명령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칙령들에서 열거된 ‘시가지’에는 당시의 군청소재지 면, 즉 읍내들 중에서 도시적인 지역은 거의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읍내가 아닐지

10) 『관보』, 융희 3년 4월 1일·22일 및 융희 4년 4월 14일.

라도 예컨데 수원군 청호면내 오산동, 은진군 김포면 강경, 동 화지산면 논산, 회덕군 외남면내 대전, 청주군 일하면 조치원, 사천군 삼천포, 밀양군 하동리면 삼랑진, 동래부 구포·초량·부산, 연일군 북부면내 포항, 인동군 약목면내 정거장소재지, 봉산군 사리원면내 사리원, 북청군 하포청사내 신창리, 동 남양사내 신포리, 무령군 청진항 등 새로운 도시지역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자료이었다.

둘째 번의 도시지역 구획 확정에 관한 문제는 1914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한 부·군·면의 구획에 따르기로 하였다. 즉 조선총독부는 1913년 12월 29일에 도·부·군 관할구역을 개편하여 그때까지의 13도 12부 317군을 13도 12부 220군으로, 군의 수를 97개 감축하고¹¹⁾ 이어 다음해 3월에 각 도별로 도령을 발하여 그때까지 4,322개 면이었던 것을 1,804개 면을 감축하여 2,518개 면으로 이를 확정하고 그 해 4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¹²⁾ 1913년에서 14년에 걸친 이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그 동안 조선총독부가 시행하여온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에 기초를 두고 면적·인구수 및 재정면에서 식민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 결과였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게 바뀌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그리므로 필자는 대한제국시대 도시지역의 구역범위를 가능한 한 1914년 4월 1일의 부·면구역에 맞추어 확정하였다.¹³⁾ 다만 한성부만은 《한국호구표》의 호구수가 한성부로 일관되어 있고 5서 및 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914년 4월 1일의 경성부 행정구역에 맞출 수 없이 대한제국시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답습하였다.¹⁴⁾

이상과 같은 작업을 통하여 우선 1907년 현재의 한국인 3천 명 이상의 시가지지역을 골라 보았다. 《한국호구표》가 한국인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

11) 《조선총독부관보》, 대정 2년 12월 29일, 호외.

12) 군 하부행정구역(면) 개편에 관한 각도 도령의 발포일자는 다음과 같다.

경남·평남 : 3월 1일, 전남 : 3월 2일, 함남 : 3월 5일, 충북 : 3월 9일, 전북 : 3월 10일, 강원 : 3월 11일, 경기·평북 : 3월 13일, 경북·충남 : 3월 16일, 함북 : 3월 18일, 황해 : 3월 23일.

13) 이 때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극히 일부지역은 한 개 면을 몇 개 동으로 나누어 합병한 때문에 완전한 합치는 기할 수가 없었다.

14) 구한말의 한성부행정구역 및 그 면적에 관해서는 손정목, 앞의 책, 204~206쪽.

다. 그런데 벌써 1907년에는 모두 98,000명에 달하는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으며 그들의 대다수가 시가지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중국인·구미각국인도 적지 않게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수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제2차 《통감부통계연보》는 제31표에서 1907년말 현재 각 지방별로 일본인 호구수를 소개하고 있고, 제35표에는 저명시가지에 관하여 한국인·일본인·청국인 및 그 밖의 외국인의 호구수를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리하여 《한국호구표》에 의한 한국인 인구수에 이들 외국인의 인구수를 더하여 인구수 1만 명 이상의 17개 도시지역, 인구수 5,000~10,000명의 40개 도시지역을 골라내어 〈표 2〉·〈표 3〉을 작성하였다.

〈표 2〉 1907년 현재 인구 1만 명 이상 17개 도시의 국적별 인구 구성

도 시	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구미인
漢城府(龍山 포함)	218,225	199,325	16,643	2,132	125
釜山(釜山面·沙中面·沙下面)	39,743	23,478	16,040	197	28
平壤(城内·內川面·外川面)	31,576	26,181	4,843	503	49
仁川(府内面·多所面)	27,896	14,993	11,467	1,373	63
開城(東部·西部·南部·北部)	27,701	26,261	1,309	118	13
濟州(中面)	16,686	16,572	113	-	1
元山(元山港)	14,845	10,341	4,225	247	32
咸興(邑内)	13,707	12,840	857	6	4
海州(州内面)	13,327	13,074	240	13	-
鏡城(梧村社)	12,839	12,104	※735	-	-
全州(府内)	12,617	12,198	386	21	12
統營(鎮南郡 東面·加佐面)	12,485	12,037	442	6	-
大邱(東上面·西上面)	12,150	9,638	2,468	38	8
馬山(昌原府 外西面)	11,881	8,582	3,219	78	2
晉州(城内面·城外面)	11,139	10,633	502	-	4
三浪津(密陽郡 下東面)	11,060	11,060	-	-	-
忠州(邑内·南邊·北邊)	10,561	10,561	-	-	-
17개 都市 計	498,438	429,878	63,489	4,730	341

* 鏡城(梧村社)에는 羅南洞 거주 일본인 158명을 포함하고 있다.

15) 각 지역별 일본인수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는 몇몇 예가 있었다. 아마 이것은 조사시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 같았으며 필자는 많은 쪽의 수를 채택하였다.

〈표 3〉 1907년 현재 인구 5천~1만 명의 40개 도시지역

도 시 명	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구미인
(京畿道)					
水原(邑內·南部·北部面)	6,738	6,458	274	2	4
(江原道)					
原州(府內面)	5,061	5,061			
鐵原(西邊面)	5,076	5,076			
伊川(東邑面·下邑面)	5,185	5,175	10		
(忠北)					
淸州(北州內·東州內·南州內面)	6,925	6,925			
提川(縣右面·縣左面)	5,253	5,253			
(忠南)					
公州(府內面·南部面)	6,805	6,539	194	64	8
(全北)					
南原(邑內)	7,799	7,740	59		
(全南)					
光州(城內·公須坊·奇禮坊·下動坊)	5,432	5,039	389		6
(慶北)					
尙州(內東面·內南面·內北面)	9,551	9,455	96		
木浦(務安郡 府內面)	7,347	4,396	2,873	72	6
慶州(府內面)	8,553	8,494	59		
金泉(金山郡 内面·金泉面)	7,872	7,450	397	25	
安東(府內)	5,792	5,754	38		
醴泉(東·西·南·北 邑內面)	6,103	6,090	13		
星州(龍山面·南山面·本雅面)	5,396	5,382	14		
義城(南部面·北部面)	7,186	7,178	8		
(慶南)					
東萊(東萊郡 首面)	8,548	8,355	193		
龜浦(東萊郡 左耳面)	5,310	5,156	154		
沙上(東萊郡 沙上面)	5,241	5,241			
昌原(府內面)	5,964	5,805	159		
密陽(府內面)	8,205	7,827	374	4	
蔚山(上府內面)	6,369	6,210	158	1	
兵營(蔚山郡 內廂面)	5,521	5,516	5		
三千里(泗川郡 文善面·洙南面)	5,730	5,662	68		
固城(東邑面·西邑面)	7,724	7,643	81		
南海(邑內)	5,891	5,878	13		
巨濟(西部面)	5,071	5,057	14		
河東(德陽面)	5,422	5,392	30		
(黃海道)					
白川(東村面·西村面)	5,500	5,500			

鳳山(洞仙坊)	5,083	4,776	307			
黃州(齊安坊)	6,326	5,936	383	7		
(平南)						
鎮南浦(三和港 港内)	9,269	6,367	2,729	170	3	
价川(邑内 · 郡内面)	5,718	5,703	15			
(平北)						
義州(州内面)	5,658	5,443	188	27		
博川(郡内面)	5,403	5,378	25			
鐵山(古城面)	5,423	5,414	7	2		
(咸興)						
北青(邑内)	6,521	6,337	184	6	6	
(咸北)						
城津(鶴城面)	8,840	8,492	336			
明川(下雲社)	6,976	6,965	11			

(3) 도시인구율과 인구밀도

인구밀도가 얼마 이상이 되면 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시대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국가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대한제국시대의 경우 인구 5,000명 이상을 끊어 일단 도시 · 농촌지역의 분계선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인구 5,000~10,000명의 규모를 가진 40개의 고을(읍)들을 훑어볼 때 그 대다수가 조선왕조시대를 통하여 이 나라 굴지의 대읍들이었거나, 또는 1876년 개항이후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신흥 시가지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시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들(3,000~5,000명) 중에도 강화 · 안성 · 강릉 · 춘천 · 나주 · 김해 · 평산 · 재령 · 신천 · 안악 · 안주 · 영변 · 영흥 · 길주 등 조선왕조시대의 대읍들이 포함되고 있고 대전 · 강경 · 군산 · 포항 · 사리원 · 신의주 · 용암포 · 신창 · 회령 등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시가지지역들이 포함되고 있다. 인구 3,000~5,000명의 지역중에 이러한 지역들이 포함되고 있기는 하나 이미 20세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인구 5,000명 이하까지를 도시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907년 현재로 밝혀진 전국의 인구수는 한국인 9,781,671명이며 일본인이 98,001명이고 중국인이 6,161명, 구미인 387명으로 합계 9,886,220명이었다.¹⁶⁾ 인구 1만 이상 17개 도시의 인구합계는 498,438명이며 이것은 전국 인구수의 5.04%에 해당하고 여기에다 인구 5,000~10,000명의 40개 도시지역 인구합계 257,787명을 합한 756,225명의 전국인구 비율은 7.65%임을 알 수가 있다. 즉 1907년 당시의 도시인구율은 7.65%였던 것이다. 필자는 앞서 조사한 인구규모 5,000명 이상의 57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편찬한 《朝鮮地誌資料(1918)》¹⁷⁾에 의하여 당시 도시부의 면적을 계산하고(한성만은 1907년 당시의 면적) 이를 기초로 인구밀도를 조사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즉 57개 도시의 평균 인구밀도는 km^2 당 280명이며 인구 10,000명 이상 17개 도시의 평균은 428.8명으로 계산되었다.¹⁸⁾ 그 중에서 함흥(5,759명)·전주(5,896명)·청주(8,445명) 등의 인구밀도는 당시에 이미 km^2 당 5,000명을 훨씬 넘었으며 평양·인천이 각각 km^2 당 4,000명을 넘었고 목포가 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표 4〉 1907년 현재 57개 도시 인구수 및 인구밀도표

도시명	인 구	면적(km^2)	인구밀도	도시명	인 구	면적(km^2)	인구밀도
漢城	218,225	250.61	871	金泉	7,872	4.49	1,753
釜山	39,743	33.56	1,184	安東	5,792	44.53	130
平壤	31,576	6.50	4,858	醴泉	6,103	41.15	148
仁川	27,896	6.35	4,390	星州	5,396	37.12	145
開城	27,701	13.99	1,980	義城	7,186	69.19	104
濟州	16,686	254.76	65	東萊	8,548	61.68	139
元山	14,845	6.74	2,203	龜浦	5,310	47.32	112

16) 한국인의 수는 한국호구표에 의한 숫자이고 일본인수는 《朝鮮に於ける内地人》(조선총독부조사자료)에 의한 숫자이며 중국인 및 구미인은 《제2차 통감부통계년보》 제35표 저명 시가지인구에 의해 도시거주인구를 합산한 것이다.

17) 임시토지조사국 편, 《朝鮮地誌資料》(조선총독부, 1919). 이 지지자료의 면적은 方里와 町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1정의 면적에 0.0099174 를 곱하여 km^2 의 면적으로 환산하였다

18) 17개 도시의 인구합계는 498,438명이고, 면적은 1,162.36 km^2 이었다(498,438÷1,162.36=428.81).

咸興	13,707	2.38	5,759	沙上	5,241	38.22	137
海州	13,327	10.89	1,224	昌原	5,964	29.55	202
鏡城	12,839	373.05	34	密陽	8,205	28.96	283
全州	12,617	2.14	5,896	蔚山	6,369	40.75	156
統營	12,485	5.93	2,105	兵營	5,521	30.63	180
大邱	12,150	7.23	1,680	三千浦	5,730	35.94	159
馬山	11,881	9.78	1,215	固城	7,724	32.11	240
晉州	11,139	8.56	1,301	南海	5,891	22.18	266
三浪津	11,060	78.54	121	巨濟	5,071	22.67	224
忠州	10,561	91.35	116	河東	5,422	29.58	183
水原	6,738	3.15	2,142	白川	5,500	51.37	107
原州	5,061	38.42	132	鳳山	5,083	62.69	81
鐵原	5,076	45.93	111	黃州	6,326	41.27	153
伊川	5,185	119.08	44	鎮南浦	9,269	10.86	854
青州	6,925	0.82	8,445	价川	5,718	59.70	96
提川	5,253	56.82	92	義州	5,658	3.82	1,481
公州	6,805	2.16	3,150	博川	5,403	46.47	116
南原	7,799	14.00	557	鐵山	5,423	35.31	154
光州	5,432	2.14	2,538	北青	6,521	79.74	82
木浦	7,347	2.41	3,949	城津	8,840	9.19	962
尙州	9,551	89.93	106	明川	6,976	108.93	64
慶州	8,553	37.00	231	計	756,225	2699.44	280

참고로 1980년 11월 1일자로 실시된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이때의 40개 도시 중에서 인구밀도가 5천 명을 넘는 도시는 서울·부산을 비롯하여 모두 7개 도시에 불과하였으니¹⁹⁾, 인구밀도 4천 명 이상이라는 것 이 얼마나 높은 밀도의 시가지였던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하튼 km^2 당 인구밀도 1,500명을 넘고있는 지역이 14개 도시나 되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으니 놀라울 정도의 조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고밀도 도시가 있는 반면에 제주(65명)·경성(34명)·이천(44명)·제천(92명)·봉산(81명)·개천(96명)·북청(82명)·명천(64명) 등은 아주 낮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저밀도 도시들은 그 행정구역내에

19) 1980년 인구·주택·센서스 결과 인구밀도 5,000명 이상의 도시는 서울·부산·인천·대전·목포·대구·마산의 7개 시 뿐이었다

많은 임야 또는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며 만약에 이러한 도시의 행정구역에서 광대한 임야면적을 빼버릴 방도가 있다면 개발 가능한 평지면적당 인구밀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임은 당연한 일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오늘날의 시·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²⁰⁾

광무 11년(1907)의 전국의 인구밀도를 《조선지지자료》에 나타난 전국의 면적 220,741.64km²로 계산해 보면 $9,886,220\text{명} \div 220,741.64\text{km}^2 = 44.786\text{명} \approx 45\text{명}$, km²당 45명으로서 도시부의 평균은 이보다 7배나 높은 밀도임을 알 수가 있다.

(4) 도시의 발전과 도시인구

필자는 위에서 1907년에 한국정부 경무고문부가 그 휘하의 경찰조직과 군·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사 집계한 《한국호구표》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한제국시대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와 그 도시인구율 및 인구밀도를 알아보았다. 그런데 경무고문부라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행정력을 구사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실토하고 있듯이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실정하에서 통계의 정확성을 기대할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고종시대·대한제국시대 호구조사 종군·면에 이르기까지 조사·집계한 자료로는 유일한 것이고 통감부 및 고문부가 장차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갑오개혁후 1910년까지의 도시인구 분석·경향 등을 판단할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조선왕조시대에는 원칙적으로 3년에 한번씩 즉 간지의 子·卯·午·酉에 해당하는 해에 8도의 호구수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한성부에 이송하면 한성부가 이를 정리 집계하여 그 결과를 한성판윤이 매 식년 12월 1일에 국왕에게 보고한 후 1부는 한성부가 보관하고 또 1부는 강화도로 보내어 보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국왕에게 보고한 호구수 집계는 3년 식년마다의 왕조실록 말미에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왕조실록에 기록된 호구수는 전국 8도와

20) 참고로 1980년 인구·주택 셈서스 당시에도 240개 읍 중에서 인구밀도가 100명이 안된 읍이 10개나 있었으며 모두 강원도내의 군청소재지·광산촌 또는 어촌이었다.

한성부의 인구수뿐이며 그 밖의 지방 부·군·현·면의 인구수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조선왕조 후기의 호구수 기록 중에서 유독 정조 13년(1789) 을유년식의 부분은 《호구총수》라는 이름의 책으로 묶이어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다. 이 《호구총수》에는 각 도 및 한성 5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부·군·면에 걸쳐 그 호구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당시 지방도시의 인구 규모를 알 수가 있다.

필자는 1975·76년에 이 《호구총수》를 가지고 위의 《한국호구표》를 분석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정리하여 1789년 당시의 인구 5,000명 이상 부·면 49개, 도시인구 총수 571,663명, 전국인구수에 대한 도시인구율 7.8%, 도시인구 밀도 km^2 당 185.74명을 계산하여 발표한 바 있다. 참고로 당시의 전국 인구밀도 평균은 km^2 당 33.5명이었다.²¹⁾

조선왕조시대 후기에서 대한제국시대에 이르는 기간에 어떤 도시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에 관한 연구를 하려면 부득이 위의 두 자료 즉 《호구총수》와 《한국호구표》의 두 개 기록을 대조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 다른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개의 자료간에는 118년 즉 약 1세기 남짓한 세월이 흐르고 있다. 조선왕조시대 후기의 경우 1876년 개항이후 〈한일수호조규〉 체결때까지 경향간에 이렇다할 변화의 요인이 없었다. 이 땅안의 지역질서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개국을 한 후부터였고, 특히 부산·원산·인천·목포·진남포·군산·성진·마산 등이 개항장이 되어 일본전관거류지·외국공동조계등이 개설되고 아울러 한성·용산·평양 등이 開市場이 되어 외국인의 통상·거주가 허용된 뒤의 일이다. 우선 이들 지역이 개항장·개시장이 된 연도를 열거하면 각각 아래와 같다.

부산 : 1877년 1월 30일(음력 1886. 12. 17)

원산 : 1880년 5월 1일

인천 : 1883년 9월 30일

한성 : 1882년 10월 3일(중국인), 1883년 11월 26일(영국인, 독일인 기타)

21) 손정목, 앞의 책, 209~226쪽.

용산 : 1884년 10월 6일

목포·진남포 : 1897년 10월 16일

군산·성진·마산 : 1899년 5월 1일

의주 : 1904년 2월 25일

용암포 : 1904년 3월 23일

청진 : 1908년 4월 1일

위에서 열거한 각 도시에 일본인·중국인·구미인이 와서 정주한 것도 매년도마다 동일한 수가 아니었고 각 지역마다 같은 비율이 아닌 것은 물론이었다. 청일전쟁 전과 그 후가 달랐다. 여하튼 개항후 가장 많은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인이 많이 들어와 정착한 것은 부산·인천·한성의 3대 도시였고 그 다음이 용산이었다.²²⁾

아래에 위 4개 지역 일본인 증가수를 <표 5>~<표 8>로 소개해 둔다.

<표 5>

부산 일본인 호구표(1876~1910)

연 도	호 수	인 구	연 도	호 수	인 구	연 도	호 수	인 구
1876	-	82	1889	628	3,033	1900	1,082	6,067
1879	-	700	1890	728	4,344	1901	1,250	7,029
1880	402	2,066	1891	914	5,254	1902	1,352	9,691
1881	426	1,925	1892	938	5,110	1903	1,582	11,711
1882	306	1,519	1893	993	4,750	1904	1,891	11,996
1883	432	1,780	1894	906	4,028	1905	2,363	13,364
1884	430	1,750	1895	952	4,953	1906	2,981	15,989
1885	463	1,896	1896	986	5,423	1907	3,423	18,481
1886	488	1,957	1897	1,026	6,065	1908	4,213	21,292
1887	-	2,006	1898	1,055	6,242	1909	4,284	21,697
1888	-	2,131	1899	1,100	6,326	1910	4,508	21,928

* 井上清磨, 《釜山を擔ぐ者》(釜山: 大朝鮮社, 1931), 17~22쪽에 의하여 作表.

22) 용산은 한성부 당시부터 한성부의 일부였으나 일본인 거류민단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계도 각각이었다.

〈표 6〉

인천 일본인 호구표(1883~1810)

연 도	호 수	인 구 수	연 도	호 수	인 구 수
1883	75	348	1897	792	3,949
1884	26	116	1898	973	4,301
1885	109	562	1899	985	4,218
1886	116	706	1900	990	4,215
1887	112	855	1901	1,064	4,628
1888	155	1,359	1902	1,221	5,136
1889	167	1,362	1903	1,340	6,433
1890	255	1,616	1904	1,772	9,403
1891	338	2,331	1905	2,853	12,711
1892	388	2,540	1906	3,067	12,937
1893	425	2,504	1907	2,922	11,467
1894	511	3,201	1908	3,830	11,283
1895	709	4,148	1909	3,025	10,907
1896	771	3,904	1910	3,446	13,315

* 《仁川府史》(仁川府, 1933), 6쪽.

〈표 7〉

한성 일본인 호구표(용산합병전)

연 도	호 수	인 구 수	연 도	호 수	인 구 수
1885	19	89	1898	480	1,734
1886	34	163	1899	522	1,985
1887	64	245	1900	549	2,115
1888	86	348	1901	639	2,490
1889	130	527	1902	797	3,034
1890	137	523	1903	902	3,673
1891	157	698	1904	1,350	5,323
1892	169	715	1905	1,986	7,677
1893	234	779	1906	3,216	11,724
1894	260	848	1907	4,300	14,829
1895	500	1,839	1908	6,347	21,789
1896	479	1,749	1909	7,745	28,788
1897	471	1,588	1910	8,794	34,468

* 1. 《京城發達史》(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421~423쪽.

2. 1885~1909년은 12월 말, 1910년은 9월 말 현재임.

<표 8>

용산 일본인수

연 도	인 구 수	연 도	인 구 수
1897	35	1904	350
1898	46	1905	1,700
1899	52	1906	2,579
1900	65	1907	3,142
1901	80	1908	6,300
1902	150	1909	10,035
1903	192	1910	10,638

*《京城府史》2卷(京城府, 1934~41), 1,055쪽.

개국·개항후 대한제국말까지 이 땅의 지역질서에 변화를 가져다 준 두 번째의 요인은 항만·철도·전신·전화 등 근대적 교통·통신수단의 도입이었다. 유치하기는 했으나 부산·인천·원산·진남포·군산 등지의 해안이 수축되어 항만이 되었고 다수의 외국선박이 드나들어 무역이 성행하였으며 경인선·경부선·경의선 등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인천·노량진간의 철도가 개통된 것은 1899년 9월 18일이었고, 경부선 서울~초량간이 개통되어 운수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05년 1월 1일부터의 일이며, 경의선 용산~신의주간이 운전 개시된 것은 1906년 4월 3일이었다.

지역질서를 바꾼 세 번째의 요인은 도시내의 신 시설이었다. 경복궁내에 전등이 가설되어 점등된 것은 1885년 말 경이었고, 서울시내에 전차가 운행 개시 된 것은 1899년 5월 17일 (음력 4월 초파일)이었으며, 종로 네거리에 전등이 밝혀진 것은 1900년 4월 10일이었다. 1900년 당시에는 이미 자전거도 들어와 있었고 인력거도 달리고 있었다. 부산·서울의 일본인 집단지역에는 상수도도 가설되어 있었고 도로도 확장되고 파출소도 개설되고 있었다. 개국·개항후 특히 청일전쟁이 끝나고 갑오개혁이 시작하는 1895년부터의 15개년간 이 땅의 도시 지역에서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조 13년(1789)의 《호구총수》와 광무11년(1907)의 《한국 호구표》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위 두개의 자료가

기록되는 약 1세기 남짓이 흐른 기간내에 전국의 인구수는 약 248만 명 정도가 늘었고, 인구 5천 명 이상의 도시수는 8개가 더 늘었으며, 도시인구수는 571,663명에서 756,225명으로, 절대수로는 184,500명 정도, 비율로는 32% 정도가 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가. 1789~1907년의 도시인구간에 어떤 변화, 어떤 차이가 일어났는가를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개항후 35년간의 도시화과정은 그 동안에 개항장·조계제도와 다수 외국인의 이주정착, 철도·전기·전차 등 새로운 도시적 시설의 도입, 국민 의식의 각성 등 도시화를 급격히 촉진시킬 요인들이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단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커다란 도시에의 인구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병인 및 신미양요, 천주교도 탄압·갑신정변·동학난·청일전쟁·단발령·노일전쟁·을사보호조약, 통감부와 이사청의 설치 등 어지러운 세태가 계속된 데다가 여러 차례의 클레라의 만연,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의 횡행과 방자한 언동, 애기소동²³⁾으로 대표되는 对외국인 협오증, 일본인 壮士 및 군인들의 횡행, 현병 및 경찰들의 위압, 일본인의 부동산 매점 등의 요인들이 겹쳐 많은 사람들 특히 사대부계층들의 낙향·도피·은둔 등의 현상이 일어난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수도 한성부의 인구규모는 조선왕조 중기에서 말기에 이르는 약 200년간에 걸쳐 언제나 18만 명에서 20만 명을 전후하는 선에서 强保合을 계속 했었다.²⁴⁾ 고종시대에 들어와서도 고종 즉위년(1863)에서 동 9년까지는 20만 명을 밀돌지 않았으며 그후는 19만 명 대의 인구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광무11년(1907)의 한성의 인구규모는 <표 2>에서 고찰한 대로 218,225명이었고 그 중에서 한국인은 199,325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일본인·중국인·구미인이었다. 개항후 전기·전차·상수도·공원 등 근대적 도시시설이 도입되었을 뿐 아니라 천주교·개신교도 깊은 뿌리를 내렸고 주민의식의

23) 손정목,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一志社, 1982), 245~246쪽.

24) 손정목, 앞의 책(1977), 204쪽.

근대화도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앞장서 가장 도시화가 진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수도 한성에 있어서 한국인의 수는 조금도 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소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도시 기괴현상 특히 각 지방 동족부락에 별도의 생활기반을 가졌던 사대부계층의 낙향이 두드러진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²⁵⁾

셋째, 정조 13년(1789)에 인구규모 5,000명 이상의 49개 도시 중 부·목·군·현의 청사 소재지 즉 이른바 읍이 아닌 곳은 동래부내의 부산과 온천장이던 온양뿐이었다.²⁶⁾ 그런데 광무 11년에는 고을(읍)이 아니던 곳이 부산·삼랑진·김천·구포·사상·병영·삼천포의 7개로 늘어났고, 또 개항전에는 고을의 소재지가 아니었는데 개항후에 감리서가 설치되었거나 分郡이 되어 새롭게 고을(읍)이 된 곳으로 인천·원산·마산·목포·진남포·성진의 6개가 있다. 또 정조 13년에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에 들었던 강화·廣州·양주·연안·당진·부여·온양·아산·태안·나주·영유·성천·정주·안주·창성·초산·상원·덕천·가산·선천·길주·단천·홍원 등 23개 고을이 광무 11년에는 밀려났고, 그 대신에 인천·원산·통영·마산·삼랑진·수원·원주·칠원·이천·제천·남원·목포·김천·예천·성주·구포·사상·창원·울산·병영·삼천포·고성·남해·하동·배천·봉산·진남포·개천·박천·북청·성진의 31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즉 49개 고을 중 약 반수가 밀려났고 57개의 반수 이상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니 개항기를 통하여 그만큼 지역구조상에 변화가 일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넷째, 광무 11년의 57개 도시 중 수원은 정조 13년 이후에 새로 생긴 조선시대 후기의 신도시이고,²⁷⁾ 인천·목포·마산·진남포·원산·성진은 개항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긴 도시들이며, 강원도의 이천과 평남의 개천은 광산물 생산의 중심지이고, 전남의 제주와 경남의 통영·울산·병영·삼천포·거제·남해 등은 고종 26년(1889)의 〈조일통어장정〉 이후 일본인들에 의한 어업기지로 殷盛해진 곳들이다. 삼랑진은 부산개항 직후부터 일본인 미곡매수

25) 이 점에 관하여는 손정목, 위의 책, 161~165쪽 참조.

26) 손정목, 위의 책, 222쪽.

27) 손정목, 위의 책, 402~451쪽.

의 본거지가 되었고 1902년부터 다음해 말까지에 걸친 경부선 철도공사,²⁸⁾ 1904년부터 시작한 삼랑진~마산간 철도공사 특히 삼랑진 철교공사로 많은 인력을 흡인한 곳이다.²⁹⁾

다섯째, <표 9>에 의하여 정조 13년과 광무 11년의 도별 도시분포를 보면 그 동안에 일어난 지역구조의 변화를 명백히 알 수가 있다. 우선 정조 13년에는 평남·평북에 많은 도시가 있었는데 광무 11년에는 그 수가 격감하고 있다. 그것은 정조 13년(1789) 당시 평남·평북 읍들의 행정구역 면적이 지나치게 넓었다는 데도 원인이 있지만 이 지역이 1894~95년에 걸친 청일전쟁 때의 주 전쟁터였다는 점, 그리고 북변방어를 위해 상비되었던 병사들이 한 말에 와서 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 인구감소의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 대신에 압도적으로 그 수가 늘어난 곳이 경남·북 특히 경남지역이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세력이 남으로부터 정착·확산된 때문이며 부산·동래·구포·사상의 부산권, 그리고 병영·울산·동래·부산·사상·구포·삼랑진·창원·마산·고성·통영·거제·진주·삼천포·남해·하동으로 이어지는 동남해안 벨트지역의 도시화를 현저하게 알 수가 있다.

<표 9>

도별 도시분포 비교

도별	정조 13년(1789)	광무 11년(1907)
京畿	漢城·開城·江華·楊州	漢城·仁川·開城·水原
江原		原州·鐵原·伊川
忠北	忠州·淸州	忠州·淸州·堤川
忠南	公州·唐津·扶餘·溫陽·牙山	公州
全北	全州·泰仁	全州·南原
全南	光州·羅州·濟州	光州·木浦·濟州

28) 경부선의 삼랑진구간(구포~밀양)은 1902년 8월에 기공, 다음해 12월에 준공되었다.

《조선철도사》 1(조선총독부 철도국, 1929), 183쪽.

29) 삼랑진 마산간 철도는 1904년 9월에 착공, 1905년 12월에 완공하였는데 삼랑진에 가설된 낙동강교량공사에 가장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다. 위의 책, 332~337쪽.

慶北	大邱 · 尚州 · 安東 · 慶州 · 義城	大邱 · 尚州 · 慶州 · 金泉 · 安東 · 醄泉 · 星州 · 義城
慶南	釜山 · 東萊 · 密陽 · 晉州 · 巨濟	釜山 · 統營 · 馬山 · 晉州 · 三浪津 · 東萊 · 龜浦 · 沙上 · 昌原 · 密陽 · 蔚山 · 兵營 · 三千浦 · 固城 · 南海 · 巨濟 · 河東
黃海	海州 · 黃州 · 延安	海州 · 黃州 · 白川 · 凤山
平南	平壤 · 成川 · 德川 · 永柔 · 安州 · 祥原	平壤 · 鎮南浦 · 价川
平北	義州 · 定州 · 昌成 · 楚山 · 鐵山 · 嘉山 · 宣川	義州 · 博川 · 鐵山
咸南	咸興 · 洪原 · 端川	元山 · 咸興 · 北青
咸北	鏡城 · 吉州 · 明川	鏡城 · 城津 · 明川

여섯째,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개성 · 수원 · 원주 · 철원 · 충주 · 청주 · 공주 · 전주 · 남원 · 광주 · 제주 · 대구 · 상주 · 경주 · 안동 · 성주 · 창원 · 진주 · 해주 · 횡주 · 평양 · 의주 · 함흥 · 경성 등 조선시대로부터의 전통있는 도시들이 24개나 들어 있다는 점은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다. 조선시대 고을의 명칭에 州자를 사용한 大邑 즉 부 또는 목은 전국을 통해 모두 23개뿐이었는데 그 중에서 14개가 이중에 포함되어 있고, 개성 · 수원은 유수부가 배치되었던 이른바 準수도였었고 경주 · 전주 · 평양 · 의주 · 함흥의 5개 고을은 종2품 부윤이 배치된 곳이었으며 안동과 창원은 大都護府 소재지였으니³⁰⁾ 전통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孫禎睦〉

2) 국외 이민

(1) 만주 · 노령지역

가. 이주 동기

조선말 조선인이 오늘날 중국 동북 三省인 만주 · 노령으로 이주하게 된

30) 손정목, 앞의 책(1977), 46~58쪽.

동기는 조선내의 상황 변화와 만주·노령지역의 유인 요소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조선내의 상황변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후기 농촌의 영농기술 개선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되고 노동력이 절감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농가는 경작지를 확대시킬 수 있었으나, 반면 많은 농가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작지마저 잃게 되어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유민이 되었다. 또한 17~18세기에 자주 발생했던 자연재해에 따른 흉년과 전염병은 촌락사회를 붕괴시켰으며, 세도정치로 인한 정치문란과 관리들의 가혹한 민중 수탈은 다수의 농민을 빙곤화시켰다. 그 결과 크고 작은 봉기들이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하여 정치와 사회가 불안해지자 압록강對岸의 봉금지대에는 별세계가 있어 영웅호걸이 백성을 모은다는 위서와 소문이 나돌기까지 하였다.¹⁾ 이에 많은 조선인은 생계를 위하여,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서, 심지어 혀소문에 현혹되어 국경지대인 만주·노령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조선인이 만주·노령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가 경제적 빙곤과 사회불안이라면, 만주·노령 지역이 조선인을 유인한 요소는 역사적·자연적·지리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만주지역 특히 간도지방은 역사적으로나 영토적으로 고구려·발해·고려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조선인이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마치 고국과 같이 인식되었던 곳이었다. 만주의 비옥한 농토에서의 수확고는 함경도의 수확고에 비하여 3배나 되었다. 또한 만주의 자연조건은 무일푼인 사람이라도 농사 이외에 산삼을 캘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울창한 산림 속에 서식하는 각종 금수를 수렵할 수 있었으며, 별목이 가능하였으므로 가난한 조선인이 이주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만주·노령은 쉽게 渡江할 수 있는 인접지역이었다. 두만강에는 수량이 감소할 때 걸어서 건

1) 金俊輝·金昌順, 《韓國共產主義運動史》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34~35쪽.

田川孝三, 〈近代北鮮農村社會と流民問題〉(《近代朝鮮史研究》1, 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 1944), 607쪽.

朝鮮總督府, 〈國境地方視察復命書, 其三〉(《白山學報》11, 〈資料〉, 1971), 201~202쪽.

盧啓鉉, 《韓國外交史研究》(海文社, 1968), 285쪽.

넓 수 있는 곳이 10여 개소나 되었고, 겨울철 결빙을 이용하면 중국인이 노령이나 노야령산맥을 넘는 것 보다 훨씬 쉬웠다.²⁾ 역사적·자연적·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변방을 강화하려는 清朝와 1860년에 〈露清北京條約〉으로 연해주를 획득한 러시아정부가 조선인의 이주를 적극 장려했던 것도 조선인이 만주와 노령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일찍이 1870년 말 通化縣의 중국인은 벼를 경작할 수 있는 평북농민을 환영하였고, 1890년부터 1910년간에는 민주의 다른 지역에서도 처녀지 개간과 벼농사를 위하여 조선인의 이주를 적극 환영하였다.³⁾ 러시아정부 역시 개척사업을 위하여 조선인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적극 이들의 이주를 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화하면 토지를 급여하였다.⁴⁾

끝으로 일본 제국주의 영향 때문에 이주한 조선인들도 있다.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 승리 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자, 의병 잔류자와 그 가족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기지를 설정하겠다는 목적으로 만주·노령지역으로 다수 이주하였다. 한편 일본은 1907년 간도를 조선 영토라 선언한 후 10만여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감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統監部 派出所를 설치하고 조선인을 청의 관민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08년에는 일본이 동양최식회사를 설립하고 조선인을 수탈하자 농토를 잃게 된 농민 또한 생계를 찾아 이주하였다. 일본이 1909년 9월 4일 상품 판로와 철·석탄의 원료공급지에 대한 이권을 위하여 두만강을 한·청 양국의 국경으로 결정한 간도협약에 의하여 간도주재 조선인이 영주권·토지소유권 그리고 재산소유

2) 朴永錫, 〈滿洲問題에 對한 申采浩의 見解—1900年初 日本의 滿洲侵略에 관련하여〉(《軍史》창간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0), 160쪽.

朝鮮總督府, 〈國境地方視察復命書〉(《白山學報》9, 1970), 195쪽.

東支鐵道經濟調查局 編, 《北滿洲と東支鐵道》上(大阪: 大阪毎日新聞社, 1922), 26쪽.
玄圭煥, 《韓國流移民史》上(語文閣, 1967), 680쪽.

3) 李勳求, 《滿洲와 朝鮮》(평양: 평양승설전문학교 경영학 연구실, 1933), 95쪽.
玄圭煥, 앞의 책, 11·16쪽.

朝鮮人組合 編, 《滿洲における移住鮮人の状況》(安東縣, 1916), 8쪽.

4) 朴永錫, 〈日帝下 滿洲·露領地域에서의 抗日民族獨立運動—北路軍政署 獨立軍兵士 李雨錫의 活動을 中心으로〉下(《東方學志》35, 1983), 285쪽.
玄圭煥, 앞의 책, 830쪽.

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자 조선인의 이주가 더욱 활발해졌다.⁵⁾

위에서 언급한 복합적 이유로 조선인의 만주·노령지역으로의 이주가 활발했는데, 1907년부터 1910년 사이 매년 약 1만 명이 간도지방으로 이주하더니 1911년에는 약 2만 명, 1912년에 약 4만 명이나 이주하였다. 노령지역에도 1897년에 26,159명이었던 조선인의 수가 1911년에는 59,577명으로 증가하였다. 1910년 만주지역에 거주한 조선인의 출신도별 순위는 함북·평북·평남·함남·횡해·경남·경북·강원의 순이었다. 노령지역에도 함경북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함경도 주민이 이주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두만강을 쉽게 건너 간도와 노령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⁶⁾

나. 이주 상황

조선인의 만주지역으로의 이주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만강 대안지방인 북간도 방면에 조선인이 밀집해 살았다. 西北經略使 魚允中은 1883년에 함경북도 시찰중 圖們江 封禁令을 해제하고 함경감사로 하여금 이 지역에 대한 地券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의 결과, 도강 이주자가 격증하여 延吉縣과 和龍縣에 연이어 布合爾通河와 海蘭江 유역에 조선인의 촌들이 형성되었다.⁷⁾ 이에 1890년 청의 撫撫局은 조선인의 이주를 海蘭江이남으로 제한하고, 이들이 중국인의 소작인이나 고용인으로 채용될 경우에만 이주를 허용하는 한편, 변발 호복하고 귀화하기를 적극 강요하였다.⁸⁾ 1898년에 이르면 조선인이 남부 우수리河 남부로부터 북간도 북

5) 松村高夫, 〈日本帝國主義下における満洲への朝鮮人移動について〉(《三田學會雜誌》63-6, 1970), 72쪽.

李勳求, 앞의 책, 140·142·157쪽.

朝鮮總督府, 〈國境地方視察復命書〉, 206쪽.

6) 安鍾海, 《露領內의 韓人獨立運動에 관한 一考察》(嶺南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5), 13쪽.

李求弘, 《韓國移民史》(중앙일보사, 1979), 21쪽.

朝鮮人組合 編, 앞의 책, 7쪽.

7) 松村高夫, 앞의 글, 239~240쪽.

8) 이러한 청족의 적극적인 귀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만 호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茂山부터 穩城에 이르는 두만강 대안지역에서는 변발·호복한 자는 1%에 불과하였다.

柳光烈, 《間島小史》(京城 : 太華書館, 1933), 34쪽.

쪽 내륙의 穀陵지방으로 이주하여 거의 3리나 되는 촌을 이루었다. 1900년 의화단 사건이 발발하였을 때 러시아군이 북간도지역으로 진군하자 이에 놀란 대부분의 중국인이 길림으로 도피하였고 이에 조선인이 북간도지역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조선정부는 간도지방의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02년에 李範允을 간도관찰사로 파견하였으며, 1903년에는 그를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다. 이범윤은 도처에서 조선인이 청군의 박해를 받고 있음을 보고 러시아 세력을 배경으로 장정을 모집하고 포대를 편성하여 이들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자 러시아를 원조하였던 이범윤을 위시한 많은 조선인은 동북 노령지역으로 이주하였다.⁹⁾

다음으로 牧丹江 以西지방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寧古塔과 東京城이 위치한 지역으로 조선인이 일찍부터 이주했던 역사적인 지역이었다. 봉금령이 완화되면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조선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더욱이 벼농사가 성공하자 이주자가 일시 급증하여 1892년에 이르면 하얼빈(哈爾濱)까지 조선인이 이주하였다. 1901년부터 1903년 사이에 러시아가 東清鐵道를 부설하던 당시 노동자로 왔던 함경도와 평안도민들이 그대로 주저앉아 노동·잡업·식당·여관업·상업 등에 종사하였다. 橫道河子지방에도 1894년 경부터 조선인이 이주하기 시작하여 1930년경에는 그 부근 10리가 전부 조선인의 마을이 되었다.¹⁰⁾

압록강 연안의 서간도 지방으로는 17세기부터 조선인의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通化縣의 上甸子와 下甸子 부근의 중국인은 1876년부터 벼농사를 경작하는 평북민을 환영하였다. 1897년 조선정부는 徐相懋를 西邊界管理使로 임명하여 압록강 일대뿐만 아니라 더 깊숙한 오지에 이주한 조선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1903년 5월에 압록강 대안으로 파견된 西間島有志視察團의 조사에 의하면 長白에서 신의주 맞은편의 丹東에 이르는 지역에 남자 23,937명, 여자 21,656명인 약 6,357호의 조선인이 거주하였다. 특히 단동

9) 柳光烈, 위의 책, 34쪽.

李求弘, 앞의 책, 17쪽.

10) 朴春光, 〈在滿百萬 朝鮮人の 現況〉(《彗星》1권 7호, 1931)(太學社, 《韓國近世史論著集－舊韓末編》2, 影印版, 1982), 228쪽.

서쪽의 각 현은 토지가 비옥하여 도처에 논을 경작하는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곳에는 철도부설공사에 고용된 노동자와 곡물과 연초 재배에 종사하고 있던 조선인이 적지 않았다.¹¹⁾

1906년경에는 주로 압록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만주 지역인 營口·遼陽지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였다. 이민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자 海龍·鐵嶺·新京지방 등 만주 전지역으로 이주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러일전쟁 중 군용으로 부설된 安奉線이 1911년에 개통된 후 더욱 많은 조선인이 편도 여행비와 일년간 지낼 수 있는 생활비만을 가지고 철도변을 따라 이주하였다.¹²⁾ 일찍이 1883년에 金華龍 등 수명이 通化小灣溝로부터 濬陽지역으로도 이주하였다. 그후 벼농사가 이 지역에서 가능하게 되자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1916년경에는 그 수가 이미 544호로 3,227명 이상이나 되었다. 한편 1906년 평북 벽동사람 金時禎 외 수명이 처음으로 심양현에 이주하여 개간 사업에 착수한 후, 평안도와 경상도의 농민이 점차 황무지를 매입하거나, 중국인의 소작인이 되어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8년 동부 만주에 이주하였던 조선인은 벼농사에 적당하다는 新民公太堡 부근으로 많이 이주하였고, 撫順에는 1910년경에 평북 의주 출신 宋秉柱와 金萬里가 농경을 목적으로 처음 이주하였다 한다.¹³⁾

노령지역으로는 1860년대 초기부터 조선인이 가족이주 형태로 두만강 어귀의 북쪽 연해주에 위치한 뾰시에트(Posietta)·치씬허(Tizinkhie)·옌띠허(Yantikhe)로 집단 이주하였다. 1860년대 후기와 1870년대에 이르면 興凱湖를 따라 이주하여 沙蔓里와 우스리河 남부 일대인 니꼴스크(Nikol'sk)를 중심으로 한 라즈드린에(Razhdrihoe)·베니야진(Benyazhin)·시꼬또바(Sikotova), 그리고 북방 紓芬(Syufan)강 연안의 꼰스딴띠놉스끼(Konstantinovski)·까자께비쳅카(Kazakevichevka)·뿌չ哕롭카(Pucilovka)·코르사꼽카(Korsakova)·사마르가(Samarga)河와 흑룡강의

11) 朝鮮人組合 編, 앞의 책, 8쪽.

朴永錫, 〈日帝下 韓國人 滿洲移住에 關한 研究—日帝下 韓國人移住政策을 中心으로〉(《省谷論叢》10, 1979), 90쪽.

12) 朝鮮人組合 編, 앞의 책, 8쪽.

13) 朴春光, 앞의 글, 227쪽.

朝鮮人組合 編, 앞의 책, 20~21쪽.

합류지점인 블라고슬로벤노에(Blagoslovennoe)와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에 조선인 마을이 생겼다.¹⁴⁾

더욱이 1884년에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어 이주가 자유롭게 되자 조선인의 이주는 급증하여 南石洞을 위시하여 많은 곳에 조선인 마을이 다투어 형성되었다. 특히 1898~1899년에는 그로데코프(Grodekovo) 프리아무르 군사령관이 조선인의 이주를 적극 장려하였기 때문에 하바로프스크(Khabarovsk)부근과 키(Kii)강 유역에 위치한 루끼아노프카(Luk'yanovka) · 오시포드까(Osipodka) · 알렉산드로브카(Aleksandrovka) 등에 조선인 마을이 생기게 되었고 또 금광지역에도 다수의 조선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수분河 · 레후(Lekhu)하 · 다라비에(Daravie)하 유역에도 시넬리니코프(Sinel'nikov) · 코르사꼽까 · 빌흐네또마노프(Vilkhnetaomanov) 외에 수십 개의 마을이 건설되었다.¹⁵⁾

1909년의 통계는 블라디보스톡 · 뽐시에트 · 니꼴스크 · 니꼴라옙스크(Nikolaevsk) 일대에 각각 약 2만 명, 기타 지역에 5천여 명으로 모두 8만 5천여 명의 조선인이 이주하였음을 말해준다.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이후 10년간 46,064명이나 추가로 노령으로 이주하였고, 1915년에는 연해주에만 조선인의 촌락이 40여 곳이나 되었다. 이상과 같이 노령 연해주의 대부분은 조선인에 의하여 개척되었다. 조선인이 황무지와 沼澤을 개척하여 옥토로 만들고 나면, 러시아인이 이주하였고, 조선인은 강제로 또 다시 황무지를 개척하기

14)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編, 『滿洲及西伯利亞地方に於ける朝鮮人事情』(京城 1923), 8쪽.
Walter Kolarz, 李碩昆 역, 〈The People of the Soviet Far East : 在索련 韓人們의 生態〉(《思想界》3, 1958), 25쪽.

松村高夫, 앞의 글, 62쪽.

高承濟, 〈沿海州移民의 社會史的 分析〉(《白山學報》11, 1971), 155쪽.

田原茂, 《滿洲와 朝鮮人》(奉天 : 滿洲朝鮮人親愛義會本部, 1923), 139쪽.

金俊燁 · 金昌順, 앞의 책, 27~30쪽.

田川孝三, 앞의 글, 570 · 571쪽 및 581쪽.

玄圭煥, 앞의 책, 188쪽.

李智澤, 〈시베리아의 3 · 1운동〉(《月刊中央》3월호, 1971), 187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極東露嶺における黃色人種問題》(大阪 : 每日新聞社, 1929), 103쪽.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대한민국공보처, 1949), 68쪽.

15) 임계순, 〈만주 · 노령 동포사회(1860~1910)〉(《한민족독립운동사》2, 국사편찬위원회, 1987), 597쪽.

위하여 오지로 이주되었다. 이리하여 뾰시에트 일대부터 우수리의 이만(Iman), 흑룡강의 연해주 및 나아가서 바이칼일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인촌이 건설되었다.¹⁶⁾

다. 경제와 사회생활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대부분 농업, 수렵 및 채삼과 광산업에 종사하였다.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선인은 대부분 중국인에게 소작인으로 고용되어 농사를 지었다.¹⁷⁾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지주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계약하에 지주로부터 가옥·농구·종자·비료 등 일상 생활필수품을 급여받는데, 그들이 이주한 첫 해에는 농장의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며 수확 후에 그 동안 급여받은 대가를 지주에게 반환해야만 하였다.¹⁸⁾ 지역에 따라 소작료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지주로부터 황무지를 벌려 개간할 경우 첫 해의 소작료는 수확의 10%, 두 번째 해는 수확의 20%, 3년째는 수확의 30%를 지불했지만, 4년째부터는 지주가 요구하는 地租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주는 초봄에 지주가 소작인과 소작료를 정하면 그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정한 지조를 지불하여야 하는 定租였다. 생산량에 대한 분배는 지주와 소작인이 각각 50%씩 취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 지주와 소작인이 4:6 또는 3:7의 비율로 분배하였다.¹⁹⁾ 토지에 대한 공적인 세금은 지주가 부담하지만 청의 관현·군인·지주 그리고 마적까지 잡다한 명목으로 조선 농민을 수탈하였다. 조선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안으로 한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자주 이동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만주에서는 1909년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며 중국인 지주와 관현으로부터 끊임없이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 조선인

16) 임계순, 위의 글, 597~599쪽.

17) 柳承寅, 〈朝鮮後期 西間島移住民에 대한 考察－江北日記의 解題에 붙여〉(《亞細亞研究》21-1, 1978), 304쪽.

18) 朝鮮人組合 編, 앞의 책, 106쪽.

19) 朝鮮人組合 編, 위의 책, 20쪽.

허용구, 〈점산호들의 토지약탈〉(김양 편집, 《조선백년사화》1, 요령인민출판사, 1981), 32~33쪽.

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대부분은 중국인의 소작인이 되었다.²⁰⁾

그러나 부지런한 조선인은 농가마다 반드시 돼지·닭·개를 사육하였고, 농한기에는 미투리 삼기, 행상, 연료의 채취판매, 목탄 제조판매, 노동이나 축력을 이용한 운반업, 마포 짜기, 양잠, 전분제조, 양봉 등 각종 부업에 종사했다. 지방에 따라 감초와 인삼을 채취하거나, 목재를 벌채하기도 하고, 혹은 수렵이나 광산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정미업·미곡상·잡화상·여관·음식점·무역상·운반업·약종상·전당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의사·봉급생활자·고용인도 있었다.²¹⁾

노령지역으로 이주한 대다수의 조선인 또한 농업에 종사하였다. 러시아정부의 적극적인 귀화정책에 의하여 1871년에 블라고슬로벤노에에 이주한 조선인은 1호당 100제샤찌나씩 분배받았고, 1891년 이후 귀화한 경우에는 1호당 15제샤찌나씩 분배받았다.²²⁾ 대농으로 성공한 예도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배받은 토지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소작인이 되었다. 노령지역에서의 소작인의 경우는 지주가 소작인에게 농구와 식료품 일체를 지급한 경우에는 수확을 반분하였고, 단순히 토지만 대여한 경우에는 수확에 대하여 지주 40%, 소작인 60%로 분배하였다. 이 외에 소작인은 지주와 모든 公課金을 같은 비율로 부담하였다. 이와 같은 소작조건은 소작인에게 사실상 그 부담이 과중한 편이었으며 더욱이 매년 居留稅까지 지불하여야 했으므로 비귀화 조선인의 생활은 곤궁하였다.²³⁾

러시아농민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실시하여 온 농법은 흑룡강유역과 연해주에 적합하지 못하여 계속 실패하였으므로, 조선인에게 임차하여 소작료를 취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였다. 조선농민은 파종과 작물에 많은 잔손질과 수고를 들이기 때문에 러시아농민의 2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 李勳求, 앞의 책, 137쪽.

21) 고영일, <현보산 광산의 폭동>(김양 편집, 앞의 책), 75~78쪽.
田原茂, 앞의 책, 30쪽.

22) 1제샤찌나는 2.7에이커로 약 3,300평이다.

23) 高承濟, 앞의 글, 158~159쪽.

玄圭煥, 앞의 책, 829·836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129쪽.

李智澤, 앞의 글, 192쪽.

1910년 항카호수(Ozero Chanka)를 제외한 연해주 일대의 토지는 조선인에 의하여 경작되었다 할 정도였다. 이들은 주로 메밀·참밀·귀리·콩은 물론 채소와 원예 농작물까지 재배하였다. 1910년에 니꼴스크와 우스티프키에(Ustipkie)에서 그리고 1917년에 그로데고보에(Grodegovoe)에서 벼농사가 성공하자 灌漑가 용이한 지역으로 조선인이 이주하였다.²⁴⁾

일부 조선인은 1891년부터 흑룡강지역의 砂金礦에서 노동하기 시작하였으나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관현은 조선노동자를 러시아 노동자 수의 1/2만을 고용하도록 그 수를 조절하였고, 1908년 이후 금광과 어장에서 1910년 7월부터는 관영사업에 조선인 고용을 일체 금지하였다. 그러나 연해주해안 각지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조선인도 다수 있었다.²⁵⁾

이주한 조선인의 대부분은 일찍부터 동족의식이 강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동향인이 함께 모여 상부상조하며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유력한 지도자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이를 집단의 크기와 명칭은 일정치 않았다.²⁶⁾ 압록강 대안지역에서는 把頭라 불리는 지도자가 있어 주민의 상호 부조와 결속을 책임지고 있었으나 타부락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고립된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마적의 약탈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선의 郡·縣에 상당하는 지역을 會上으로 구획하고 파두를 회두라 불렀으며 이들 중 都會頭 또는 大會頭라 부르는 會上長을 선출하였다. 도회두는 회상내의 호구 수와 장정수 및 병기를 파악하여 장부를 작성 보관하는 일에서부터 범죄자의 처벌, 공공요금의 수령 그리고 군사활동을 위한 주민동원까지 담당하였다.²⁷⁾

1884년경 연변의 조선인은 그 일대를 크게 四大保로 구획하고 보를 다시 조선의 面이나 鄉에 해당하는 社로 나누었다. 사는 鐘城대안의 경우 1사가

24) 金俊煥·金昌順, 앞의 책, 51쪽.

玄圭煥, 위의 책, 820·830·832·835·854쪽.

高承濟, 위의 글, 159쪽.

田原茂, 앞의 책, 159쪽.

25) 玄圭煥, 위의 책, 865~868쪽 및 873쪽.

田原茂, 위의 책, 140~141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120쪽.

26) 吳世昌, <在滿朝鮮人民會研究>(《백산학보》25, 1979), 126쪽.

27) 柳承宙, 앞의 글, 301~303쪽.

570여 호부터 280여 호로 그 크기가 일정치 않았다. 이 사는 다시 甲으로 1갑은 다시 牌로 분할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연변의 조선인은 모두 2만여 명으로 4,308호였으며 415패, 124갑, 39사, 4보로 구획되었다.²⁸⁾

동간도의 瑾春에서는 지역자치기구를 社 또는 鄉이라 하여 그 長을 社長 또는 鄉長·鄉約·鄉正이라 하였으며, 그 보조원으로 社內의 장로를 甲長으로 임명하였고, 10여 호를 관할하는 자를 牌頭라 하였다. 또 지방에 따라 사나 향 대신 100호, 50호로 구획하기도 했으며 조선인만 거주하는 지방에서는 기구의장을 조선에서와 같이 執綱·尊位·里長·洞長 등으로 정하기도 하였다.²⁹⁾

조선정부는 종래의 상부상조하던 조선인의 자치기구를 활용하여 이주인들을 관리하였다. 1907년 간도에 통감부 임시파출소를 설치한 일본은 간도를 北都所·會寧間島·鐘城間島·茂山間島로 하고 島社長을 1명씩 두었고, 이를 다시 41사, 290촌으로 구획하여 사에는 社長을 촌에는 村長을 두었으며 그 중 촌장은 각 촌민이 추천하였다. 그러던 중 1909년의 간도협약으로 지금까지 실시되어 오던 사를 폐지하고 면장을 선출하여 춘추 두 계절에 수고비를 지불하였다. 면장은 면회의를 개최하여 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이웃과 불목하거나 나이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능욕하였을 때 곤장 30대를 가하거나 境外로 추방할 권한을 가졌다. 이후 1910년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고 만주에까지 세력을 확대하게 되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부락들이 점차 파괴되고 일본 행정체제로 구획되어 통치되었다.³⁰⁾

노령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 역시 그들 방식의 집단 마을을 형성하였다. 그들이 처음 이주하였을 때 연해주는 거의 무인지대로서 불과 수십 명이 본국의 관습대로 부락마다 연장자를 風長(風尊)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사소한 사건을 관장하고 러시아 관헌의 지령을 전달하는 말단행정 임무를 겸하였다. 러시아 관헌은 조선부락의 풍장제를 중국의 전통적인 마을 통치제도인 老爺制度로 인식하고, 이들 풍장을 都老爺·村老爺로 구분하고 도노야에게는 여

28) 허용구, 앞의 글, 28쪽.

申奭鎬·金聲均 외, 《韓國現代史 3: 民族의 抵抗》(新丘文化社, 1974), 230~231쪽.

29) 허용구, 위의 글, 32쪽.

朝鮮總督府, 〈國境地方視察復命書〉, 200쪽.

30) 임계순, 앞의 글, 624~625쪽.

러 촌의 노야를 총괄하는 지도자로서 조선인 전반에 대한 징벌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예를 들어 1907년에 블라디보스톡 新韓村의 노야는 위원 21명으로 韓人協議會를 조직하고, 이들은 때때로 啓東學校에 모여 각종사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었다. 노야는 평상시에는 러시아 관청과의 교섭을 담당하였고, 기타 그 지역내에서 일어난 분쟁을 중재하기도 하고 서류를 代書하기도 했다. 노야, 후에 도노야의 직명은 그대로 자치단체의 명칭이 되었다. 조선인이 거주하는 촌에는 이러한 자치기구 이외에 상부상조하는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신한촌의 경우 계동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약 20명이 韓人青年會를 조직하여 일요일마다 학교에 모여 지식을 교환하기도 하고, 빈곤한 자, 병든 자,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부조하였다. 이와 같이 학연, 지연, 혹은 혈연적 유대를 집단화한 단체는 다른 조선인의 촌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었다.³¹⁾

노령에 이주한 조선인은 같은 동양문화권인 만주지역에서와는 달리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하였으므로 1세보다 2세가, 노인보다 청소년이, 여자보다 남자가 러시아인과 잡거하여 러시아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려 국경지역 보다는 오지에서 생활하는 자가 더 러시아화하였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았다.³²⁾

조선인은 “밥은 짚어도 자식은 공부시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체교육에 힘써왔다. 아주 조선인사회에 있어서도 자체교육은 가장 중대한 문제 중 하나였다. 이들은 십여 호만 모여도 서당을 설치하고 훈장을 모셔다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미풍을 유지하였다. 서당은 비교적 소규모로 교실 하나에 한서와 경전에 밝은 한학자를 훈장으로 모셔 와 《千字文》·《明心寶鑑》·《論語》·《孟子》·《大學》등의 한문과 습자 및 한학을 가르쳤을 뿐, 時勢를 가르치거나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서당의 학생수는 평균 7~10명의 소수였고, 연령은 보통 8~17세까지였다. 훈장의 보수는 금전 대신 농산물로 계산하였는데 지역에 따라 옥수수·쌀·콩·수수 등 기타 다양

31) 위와 같음.

32) 玄圭煥, 앞의 책, 879쪽.

海野峯太郎, 〈ウスリ地方朝鮮人移民史:頭満江を越えだ人々〉(《三千里》40, 1984), 101쪽.

의 곡물로 지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당형식의 교육기관이 1905년 이전까지의 유일한 조선인의 교육기관이었다. 그후에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이 계속되었다.³³⁾

1905년 이후부터는 만주와 노령지역은 조선인의 조국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고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다. 독립 운동 지도자들은 만주·노령이 지리적으로 조국과 인접하여 있고, 이미 많은 조선인이 이주하여 정착해 있었으므로 조국광복을 위한 자금과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혀 연고가 없었던 지역에서보다는 도움이 되었지만 초기 이주자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곤궁 때문에 의식주 해결에 여념이 없었으므로 이들에게서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주의의 발로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었다. 또한 현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상황이 항상 국권회복운동에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러시아정부는 1914년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과격한 사회주의이념의 확산으로 인하여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견제하였다. 만주지역에서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조선인이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없었다. 게다가 독립운동 지도자들간의 의견 상충으로 조선인은 통일된 정치적 지도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뜻있는 애국독립지사들은 조선인 2세들을 애국시민으로 교육시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위하여 중요한 사업임을 깨닫게 되었다. 즉 국권수호운동의 실천적 방향을 교육에 두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만주·노령 각지에서 독립운동시위가 일어났고, 그 후에도 많은 조선인이 조국광복을 위하여 풀임없이 투쟁하였던 것이다. 더욱이 만주·노령 각지의 조선인이 공지를 잊지 않고 언어와 풍습을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우국지사들이 민족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를 위해 신명을 바친 결과라 하겠다.

〈任桂淳〉

33) 임계순, 앞의 글, 629쪽.

田原茂, 앞의 책, 54쪽.

李勳求, 앞의 책, 237쪽.

玄圭煥, 앞의 책, 430~431쪽.

(2) 미주지역¹⁾

가. 이민 경위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 항구에서 121명의 한인이 하와이를 향해서 출발했다. 미주지역으로의 공식적인 노동이민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세계로의 이주민의 진출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18세기 말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제도에 백인들이 진출하면서 경제적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사탕수수 재배의 발달이었다. 그런데 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거의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들여 온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많은 노동자가 수입되었으나 점차 포르투갈이라든가 일본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하와이왕국은 경제적 실권을 쥔 백인들의 주동으로 1898년에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 무렵 백인 농장주들은 급증하고 있던 일본인 노동자들을 견제하면서 농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하와이 농장주들과 한국정부를 연결시켜 준 사람은 주한미국공사인 알렌(Horace N. Allen)이었다. 그는 1902년 초 휴가차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 잠시 들렀다. 이때 그는 사탕수수 농장주협회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한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이는 문제에 대하여 장시간 의견을 나누었다. 그 해 4월 초 서울에 귀임한 알렌은 高宗을 설득하여 이민 사업을 성사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알렌이 나중에 본국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고종은 1882년에 발효된 〈입국금지법〉에 따라 중국인이 갈 수 없는 미국에 한국인들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요인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당시 국내 상황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외로의 합

1) 미주지역의 초기 이민에 대한 학계의 연구동향과 성과에 대해서는 고정희, 〈미주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한국사론》26, 국사편찬위원회, 1996), 536~540쪽 참조.

법적인 이주를 고려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져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증진을 통하여 주변 열강의 침탈로부터 국권을 지키고자 했던 고종의 희망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1902년 11월 16일에 외국 이민을 전담할 기관으로서 宮內府 산하에 閔泳煥을 총재로 한 綏民院을 설치했다. 그리고 이 기관으로부터 하와이로의 노동자 모집과 파송의 일을 위임받은 테뷸러(David W. Deshler)는 동서개발회사(East-West Development Company)를 별도로 설립했다. 본사를 인천에 둔 이 회사는 부산과 원산 등 주로 항구 도시에 지점 형식의 사무소를 설치한 후 한인 책임자를 통하여 이민 희망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낸 광고문에서는 하루 10시간 노동에 매월 미화 15불(한화로는 57원)의 급료와 더불어 거처 및 의료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좋은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선뜻 이민 지원자가 나서지 않았던 것 같다. 하와이는 국내와의 내왕이 비교적 자유로운 만주와 노령지역과는 달리 한번 떠나면 쉽게 돌아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야말로 문물과 풍속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스(George H. Jones)와 같은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신자들이 중간에서 이민을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

하와이로의 노동이민은 1903년에 16척의 선편으로 1,133명, 1904년에 33척에 3,434명, 1905년에는 16척에 2,659명이 떠났다. 모두 합하여 7,226명으로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05년 4월에 한국정부는 돌연 이민금지령을 내렸다. 그 주된 이유는 하와이에서 한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일본의 압력 때문이었다.

1904년 7월경 한 일본인 이민회사가 자국의 외무대신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당시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이 지역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되는 7만 명 정도로서 이들이 매년 1억 원이 넘는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하와이 이민은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성공적인 사업이었던 셈이었다. 그런데 한인 이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일본인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견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견의를 받은 일본정부는 러일전쟁에서 승기

를 잡게 되자 한국정부에 내밀한 압력을 행사했고, 이것이 결국 이민금지령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²⁾

한편, 하와이 이민과는 별도로 1905년 4월 초 1,033명의 한인이 제물포 항구에서 멕시코로의 이민을 떠났다. 이들의 이민을 알선한 사람은 영국인 메이어스(John G. Meyers)였다. 그는 멕시코 농장주들과 동양인 이민을 계약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모집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후 한국에 와서 大陸殖產會社를 경영하고 있던 일본인 오바 칸이치(大庭貫一)와 손을 잡고 일을 추진했다. 메이어스가 중국과 일본에서의 이민 모집에 실패했던 이유는 멕시코에서의 농장생활이 매우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민 모집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멕시코로 떠났던 이민자들의 비참한 생활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진상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이미 외교권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정부로서는 마땅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웠다. 결국 멕시코로의 ‘불법이민’ 송출사건은 일본의 압력에 의한 이민금지령을 대외적으로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만 이용되었을 뿐이었다.³⁾

나. 이민의 구성과 특징

미지의 세계인 하와이와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노동이민의 특성상 20·30대의 성인남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하와이로 간 7,226명 가운데 남자가 6,048명, 부녀자는 637명, 그리고 어린이가 547명이었다. 멕시코로 간 1,033명

2) 崔永浩, 〈韓國人 初期 하와이 移民－始作과 終末의 動機－〉(《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일조각, 1979), 699~712쪽.

尹炳彞, 〈國外 韓國人の 歷史와 文化, 社會에 關한 基礎的 研究(I)－美洲 韓人社會의 成立과 民族運動－〉(《한국학연구》2 별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0), 3~10쪽.

보다 상세한 내용은 Wayne Patterson,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참조.

3)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리들리 캘리포니아, 1959), 9~11쪽.
尹炳彞, 위의 글, 14~19쪽.

가운데는 남자가 702명, 여자가 135명, 어린이가 196명이었다. 그런데 이주자들이 나중에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뿌리를 내릴 경우 남녀간의 성비불균형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진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910년부터 1924년까지 1,000명 내외의 신부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독신자들이 많았다. 해방 직전에 이르기까지 하와이와 미주본토의 전체 한인이 1만 명 내외에 머물렀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민자들의 출신배경과 직업이 매우 다양했다는 점이다. 하와이로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도시 노동자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직 군인과 하급관료 출신이었다. 이외에도 수공업자, 정치적 망명객, 학생, 경관, 광부, 목공, 머슴, 승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농민은 전체 이주자 가운데 1/7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볼 때도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멕시코 이민의 경우에도 서울·평양 등의 대도시와 인천·부산·마산·원산 등의 항구도시 출신이 전체의 9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이래 지속되어 온 농민층의 문화현상에 따라 농민들의 도시로의 진출과 임금노동자화 되어 갔던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의 이민 모집이 주로 도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이 도시 출신으로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또 비교적 높은 문자 해독율(전체의 40% 정도로 추정됨)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곳에 먼저 이주해 자리를 잡고 있던 중국인이나 일본인들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특정 지역의 농촌출신으로서 거의 대부분 농민들이었기 때문이다.⁵⁾

4) 김원용, 앞의 책, 27~29쪽.

‘사진결혼’으로 미국에 들어온 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상에 대해서는, Eun Sik Yang, “Korean Women of America: From Subordination to Partnership, 1903~1930”, *Amerasia* 11-2, 1984, pp. 1~28 참조.

5) Bernice B. H. Kim(김봉희), “The Koreans in Hawaii”(M. A. Thesis, University of Hawaii, 1937), pp. 85~86.

세 번째로 지적할 것은, 하와이로의 이민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교육적·종교적 동기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한편으로는 1904년 2월에 발발한 러일전쟁으로 말미암아 국권이 상실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바탕을 둔 문명부강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하와이로의 이민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와이 이민자들 가운데 정치적 망명객과 신학문을 배우려는 학생 그리고 기독교 전도사들이 다수 끼어 있었고, 이들은 곧 미주에 형성된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부상했다.⁶⁾

다. 한인社会의 형성과 발전

1903~1905년 사이에 하와이제도에 도착한 7,000여 명의 한인들은 오하우(Ohau)·하와이(Hawaii)·마우이(Maui)·카우아이(Kauai)의 네 섬에 산재한 30여 곳의 사탕수수 농장에 많게는 수백 명에서 적게는 수십 명 단위로 고용되어 집단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하루 10시간의 중노동에 품삯은 남자가 65센트, 여자와 아이들은 50센트 정도를 받았다. 성인 남자의 경우 한달 평균 25일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16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1인당 식비가 6~7달러 정도이고 숙소는 농장에서 무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저축할 여유는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착실히 돈을 모으게 되면, 힘든 농장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진출하거나 미국 본토로 이주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하와이에서 한인들의 도시진출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그 속도가 빠르며 또 그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특징은 한인 이민의 대부분이 도시출신으로서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실과 연결시켜 해석되고 있다.⁷⁾

미주의 통일적 교민단체인 大韓人國民會가 1910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그 동안에 귀국한 사람이 983명(남자 964명, 여자 19명)이고 미국 본토

Wayne Patterson, "Upward Social Mobility of the Koreans in Hawaii" (*Korean Studies* 3, 1976), pp. 82~87.

6) 김원용, 앞의 책, 29~32쪽 및 40~41쪽.

7) Wayne Patterson, 앞의 글, 82~87쪽.

Sun Bin Yim, "The Social Structure of Korean Communities in California, 1903~1920", *Labor Immigration under Capitalism: Asian Workers and Communi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p. 515~547.

로 이주한 사람은 2,011명(남자 1,999명, 여자 12명)이며 사망자가 45명이었다. 하와이에 그대로 거주하는 사람은 4,187명이었으며 새로 107명의 아이들이 출생했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독신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앞서 지적한 ‘사진결혼’인데, 그 결과 한인사회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활기를 떨 수 있었다.

1925년 하와이 호놀루루 주재 일본총영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인들 가운데 농장노동자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1905년 4,946명이었던 농장 노동자는 1910년에 1,73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1924년에는 997명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인들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나갔다. 농장노동자 중 일부는 자영농 또는 차지농으로서 독립하거나 농장관리인이 되었으며, 도시로 진출한 사람들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거나 고용인이 되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세탁업·제봉업·가구업·제화업·이발업·여관업 등이었으며, 고용인은 상업·수공업·광업·운수통신업·공공서비스업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 또한 소수이지만 종교인·교육가·관리·의사 등의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생겨났다.⁸⁾

한편, 1905년 멕시코의 동남부 유까딴(Yucatan) 州의 메리다(Merida)에 도착한 1,000여 명의 한인들은 22~24개 곳의 농장에 많게는 30명 이상, 적게는 4~5명씩 분산·수용되었다. 더위가 혹심해 온도가 화씨 90~100도 이상으로 오르내리는 곳에서 하는 주된 노동은 伐木 운반작업과 大麻 어저귀 밭에서 가시를 제거하고 뿌리를 자르는 일이었다. 식량은 최소한도의 배급에 그쳤으며 밤에는 토굴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자야만 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에 걸리면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그들의 참혹한 형상은 노예가 아니면 개와 말에 비견될 정도였다.⁹⁾

만 4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야 그들은 비로소 자유민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동안 농장에 갇혀 지냈기 때문에 뚜렷한 생활방도를 찾기가 어려웠다.

8) Bernice B. H. Kim, 앞의 글, 158~161쪽.

吳世昌, 〈韓人의 美洲移民과 抗日運動〉(《民族文化論叢》6, 영남대, 1984), 132~134쪽.

9) 尹炳璣, 앞의 글, 19~25쪽. 보다 상세한 내용은 李英淑 編, 《한국~멕시코 移民 80년사 : 유까딴의 첫 코리언》(인문당, 1988) 참조.

이러한 소식에 접한 대한인국민회는 특파원을 파견하여 교민들의 실정을 조사하고 구제사업을 벌이는 한편 그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미국정부와 교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농장과 도시를 전전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던 교민들 가운데 일부(288명)가 1921년에 쿠바로 이주했다.¹⁰⁾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그리고 멕시코에서 쿠바로 점차 그 생활무대를 넓혀나갔던 미주한인의 이민 제1세대는 환경과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오직 노동만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한인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또 자치단체를 만들어 한인사회를 형성·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초기 이민사회에서는 “한인이 사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것은 신앙공동체이기 이전에 소수 민족으로서의 소외감과 고국에의 향수를 달래면서 서로 위안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만남의 장소였던 것이다. 이민 10년만에 하와이 각 지방에는 39곳의 교회가 설립되고 전체 한인의 절반이 넘는 2,800명의 기독교인이 모여들었다. 초기에 이민이 적고 또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던 미국 본토에서도 한인교회가 7곳에 교인이 452명이었다.¹¹⁾

교회는 곧 학교이기도 했다. 주일학교와 ‘국어학교’가 주로 교회안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민 제1세대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우면서 국내 소식을 듣고 현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이곳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및 역사를 배움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나름대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은 공립학교에도 다녔다.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한인 아동들의 취학율은 무척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한인들은 교육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후손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¹²⁾

10) 김원용, 앞의 책, 12~27쪽.

11) 柳東植, 〈在美韓人の 定着過程에서의 宗敎의 役割—하와이의 韓人社會와 基督敎를 中心으로〉(《연세논총》28, 연세대 대학원, 1988), 2~6쪽.

12) 吳世昌, 앞의 글, 146~147쪽.

자치단체 역시 이주 초기부터 생겨났다. 하와이의 각 농장에서 집단생활에 들어갔던 한인들은 ‘洞會’를 조직하여 서로간의 친목을 다지면서 상호부조와 권익신장을 도모했다. 그리고 1903년 8월에 벌써 민족운동의 성격을 띤 新民會가 호놀루루에서 결성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의 국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강령으로서 동족단결, 민지계발, 국정쇄신을 제시했다. 미국 본토에서는 가장 먼저 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桑港친목회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共立協會로 확대 발전하면서 미주 각처 20여 개의 한인단체들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주권이 상실되기 직전인 1910년 5월 10일에 미주한인사회의 통일적 지도기관이자 ‘무형정부’임을 자처했던 대한인국민회가 공식 출범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실제로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대 중반에 미주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만주·중국 본토에까지 그 지부 조직을 확대해 나가면서 국외한인사회를 통합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원대한 계획과 포부를 가졌다. 이러한 노력들이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민족자결주의에 기초한 ‘세계개조’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3·1운동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³⁾

우리 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노동이민에 기초한 미주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은, 비록 그 규모는 적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서구세계와의 만남이자 진취적인 개척정신의 발현 과정이었다. 아울러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과 상실이라는 암울한 시대에 국외에 또 하나의 민족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공화제 정치이념에 바탕을 둔 신국가건설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高斑煇〉

13) 吳世昌, 위의 글, 134~141쪽.

尹炳璽, 앞의 글, 29~71쪽.

14) 방선주, <미주지역에서 한국독립운동의 특성>(《한국독립운동의 이해와 평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181~187쪽.

민병용,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사 연구>(같은 책), 482~484쪽.

2. 신분제도의 변화

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1) 관료집단의 변화와 양반신분

법제상으로 양인에 속하는 양반신분은 15·16세기에 이미 지배신분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구축하여 班常制를 확립하고, 이를 良賤制와 함께 신분제의 기본 원리로 정립하였다. 양반신분은 조선 후기에 진행된 ‘신분제의 동요’ 현상에 의해 일정한 타격을 받았으나 지배신분으로서의 위상 자체는 다른 신분에 의해 대체됨이 없이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양반신분의 위상은 반상제 및 노비제를 포함한 사회신분제의 법제적 폐지를 선언한 갑오개혁을 계기로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일차적으로 관료집단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포착될 수 있다.

고종 31년(1894) 7월 30일(음력 6월 28일) 갑오개혁의 입법기관인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한 의안에서 “문벌과 반상의 등급을 破裂하고, 귀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選用할 것”을 명시하였다.¹⁾ 이는 반상제 폐지의 선언인 동시에, 고종 19년에 내린 교지에서 “용인의 길을 넓혀 서북·송도·서일·의역·서리·군오를 막론하고 일체 현직에 등용하고자” 한 뜻을 이어, 반상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여 관료로 충원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²⁾

기실 갑오개혁에 참여한 소장 관료 가운데 서얼(金嘉鎮·安聃壽·權在衡·李允用·尹致昊), 중인(鄭秉夏·高永喜·吳世昌), 토반(金鶴羽·張博) 등 한미한 신분배경을 가진 ‘亞流兩班’들이 많았던 것은 한국 사회사에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³⁾

1) 慎鋪廬, 〈1894년의 社會身分制의 廢止〉(《奎章閣》9, 서울대 도서관, 1985).

2) 柳永益, 〈甲午更張과 社會制度 改革〉(朱甫暾 外,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264쪽.

3) 柳永益, 위의 글, 238쪽.

특히 김가진·권재형·안경수 등은 서얼 출신으로서 각각 공부·군부·탁지부의 협판직을 맡아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갑오개혁 기간에 李周會와 같은 평민 출신 무관이 내각의 협판으로 벼락출세하였고, 이후에도 李容翊·李夏榮 등 무명의 평민들이 계속 관계로 진출하여 1905년경에는 정부의 대신급 관료로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⁴⁾ 이러한 양상은 19세기이래 소수의 별열가문이 관직을 독점하면서 중앙 정치구조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해 오던 것에 비하면⁵⁾ 관료집단의 면모를 일신할 정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

그러나 소수 비양반 관료의 개별적 상향이동의 사례로도 취급될 수 있는 이러한 양상보다도 관료집단의 성격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관료임용제도의 변화이다.⁷⁾ 종래 대표적인 관료임용제도였던 과거제는 甲午式年文武科殿試를 끝으로 폐지되고, 그것을 변통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選舉條例〉·〈銓考局條例〉 및 〈文官授任式〉이 마련되었다. 이는 재능을 위주로 하되, 대신에게 奏任官·判任官의選取權을 주고, 판임관에 대해서는 전고국에서 관장하는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골격이 짜여져 있었다. 대신에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실주의가 일정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었으나, 〈선거조례〉에는 장차 학교 교육을 통해 관료를 양성한다는 방침이 시사되어 있고, 〈전고국조례〉에 규정한 보통시험의 과목 또한 국문·한문·寫字·算術·內國政略·外國事情으로 되어 있어서 종전 과거 응시에 적합했던 것과는 판이한 근대적인 지식체계를 관료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전의 교육이 글자나 익히고 문장이나 읽히는 무용의 교육이므로 이를 德·體·智를 계발하는 실용의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본 개화파는 과거제와 향교를 폐지하고 그 대신 근대 학교를 세워 신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을 관료로

4) 柳永益, 위의 글, 264쪽.

5) 조성윤,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근대 시민 형성의 역사적 기원—》(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 156쪽.

6) 특히 갑오개혁 당시 일본 공사관 일등서기관 杉村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李周會 등과 같은 문지도 없는 미천배가 대신의 현직에 오른 사실은 이목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柳永益, 앞의 글, 291쪽 참조).

7) 이하 관료임용제도에 대한 서술은 金泳謨, 《朝鮮支配層研究—官僚兩班의 社會學的 考察—》(一潮閣, 1977) 제3편 제1장 官僚의 社會的 性格 참조.

선발하려 한 것이다.⁸⁾ 갑오개혁에서 입법된 새로운 관료임용제도는 이후 수차에 걸쳐 입법된 관련 법제의 바탕이 되었다.

1898년에 공포된 〈奏判任官任命規則〉에서는 의정부와 각부의 판임관을 管下學徒 및 외국 유학생 졸업인 중에서 시험을 거쳐 주무장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교육을 받은 자를 관료로 임용하게 하였으며, 1906년에 제정되고 1908년 7월에 개정된 〈文官任用令〉에서는 주임문관의 임용자격을 현직 관료 이외에는 “외국대학에서 법률 또는 정치경제의 학과를 수료하여 그 졸업증서를 가지고 전형위원의 전형을 가진 자, 內外國의 정법전문학교의 졸업증서를 가지고 만 2년 이상 판임문관 또는 판임궁내관의 직에 있고 현재 5급봉 이상의 봉급을 받는 자”로 규정하였고, 또한 판임문관의 임용자격을 현직 관료 이외에는 “문관보통시험합격증서 또는 銓考所합격증서를 가진 자 및 궁내판임관시험을 거친 합격자, 외국대학에서 법률 또는 정치경제의 학과를 수료하여 그 졸업증서를 가지고 전형위원의 전형을 가진 자, 관립고등학교 또는 학부대신이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내외국의 관공사립학교의 졸업증서를 가진 자”로 규정하여 근대적인 학교 교육 이수를 관료임용의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1906년에 제정된 〈法官銓考規程〉에서 판사·검사의 임용자격 중 관련 직종 유경력자 이외에는 법관양성소 또는 법률학교 졸업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 시기 관료 충원에 주요한 역할을 한 각종 근대 학교의 설립 연혁과 교육내용에 대해 표로써 정리해두면 다음 〈표 1〉과 같다.⁹⁾

〈표 12〉 근대 학교 교육과 관료 충원

학 교 명	公布年度	수업연한	교 과 목	설립목적	졸업자 수(명)
漢城師範學校	1895	本 科 2년 速成科 6개월		敎官養成	139

8) 李相燦, 〈1894~95년 地方制度 개혁의 방향—鄉會의 법제화 시도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67, 1991), 89쪽.

9) 金泳謨, 앞의 책, 290쪽의 표를 간략화한 것임.

	1906	本 科 3년 速成科 1년	교육 · 국어 · 일어 · 역사 · 지리 · 수학 · 물리 · 화학 · 음악 · 농업 · 상업 · 공업	敎員養成	
外國語學校				敎官養成	
日 語	1891	3년	외국어 · 국어 · 한문 · 수학 ·		349
漢 語	1897	3년	역사 · 지리 · 체조 · 수신 · 물		59
英 語	1894	5년	리 · 화학 · 생물		79
法 語	1895	5년			26
俄 語	1896	5년			
德 語	1898	5년			5
	1906(개정)	6년			
法官養成所	1895	6개월	법학통론 · 민법 · 형법 · 현행법령 · 민사 · 형사소송법 · 소송연습	司法官採用	85
	1905	3년	" + 행정법 · 국제법	司法官採用 成法學士	
武官學校	1896	1년		參尉	
	1898			參尉	
	1907	3년		參尉	
農商工學校	1904	4년			
醫 學 校	1899	3년	동물 · 식물 · 화학 · 물리 · 해부 ·	敎員養成	
	1902	"	생리 · 약물 · 내과 · 외과 · 안과 · 병의 · 婦嬰 · 종두 · 위생 · 진단 · 체조		19
中 學 校	1899				
尋常科		4년	윤리 · 역사 · 경제 · 화학 · 물리 · 외국어		
高等科		3년	" + 정치 · 상업 · 농업 · 공업 · 의학	判任官 專門學入學	
小 學 校	1895	2~3년	수신 · 습자 · 독서 · 산술 · 지리 · 역사 · 외국어		72
普 通 學 校	1906		국어 · 한문 · 일어 · 미술 · 지리 · 이과 · 도화 · 체조		30
高 等 學 校	1906	4년	수신 · 국어 · 한문 · 역사 · 지리 · 수학 · 박물 · 물리 · 화학 · 법제 · 경제 · 도화 · 음악 · 체조		
部 · 衙見習生	1899~1910	1~3년		官吏充員	

이처럼 신교육과 근대적 지식체계를 관료의 조건으로 설정한 갑오개혁 이후의 관료임용제도는 전통적 지식체계와 문벌에 바탕을 둔 과거제·음서제 중심의 종전 제도와는 판이하였다. 이에 따라 갑오개혁 이후에는 근대적 학문을 수용하거나 신교육을 받은 이들이 대개 관료로 나아갔고 이러한 과정에서 관료집단의 성격도 종전과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다만 이들은 아직 관료로서의 이력이 일천하여 대부분 관임관의 지위에 머물렀고 소수가 주임관까지 진출하는 정도였으므로,¹⁰⁾ 관료제의 상부까지 장악하여 성격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진행된 관료집단의 변화는 짧은 시기 동안이었지만 적어도 상층 양반의 재생산기반과 위신에는 일정한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직 보유를 통한 권력적 지위의 향유는 별열로 통칭되는 상층 양반의 한 특징이었으며 이들의 신분적 자기재생산은 대개 재래의 관료임용제도에 주요 기반을 두고 있었다. 새로운 관료임용제도는 이들을 배제하거나 이들에 대한 정실주의가 작용할 가능성을 봉쇄한 것은 아니었지만, 관료의 조건으로 규정한 지식체계나 교육 요건이 판이해짐에 따라 이들도 관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 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다른 한편, 새로운 관료임용제도가 형식적으로는 보편주의를 취하여 신분배경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점, 각종 근대 학교의 입학자격에 신분적 규제가 전무하여 학교 교육이 관료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수록 일반 대중이 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 점¹¹⁾ 등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관료집단의 신분적 동일성 즉 양반=관료의 등식을 파괴함으로써 관직을 배경으로 하는 양반신분의 위신과 재생산기반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료집단의 변화는 班常制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 점에서 다음 1899년 《독립신문》의 기사는 매우 시사적이다.

대한 양반으로 말하면 그전 문무 동서반이 있어 말하기를 양반이라 하고 벼슬을 아니한 사람은 상인이라고도 하며 평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연구세심

10) 金泳謨, 위의 책, 296쪽.

11) 金泳謨, 위의 책, 304쪽 참조.

하여 성승이 되어 자칭 왈 양반이라 하여 자기의 조상이 대신이든지 능참봉 하나만 지녔으면 자손은 백면서 생이라도 양반서 생님이라 하고 이역이나 시상하던 사람은 벼슬하여 각부 대신에 이르더라도 상사람이라 하니 이것은 실로 지탄하도록다(《독립신문》, 1899년 1월 22일, <반양론>).

즉 양반 가문의 자손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여도 여전히 양반 행세를 하지만 이서(吏役)나 상민(市商) 출신은 대신과 같은 고위 관료가 되더라도 ‘상사람’ 취급을 받고 있던 당시 세태를 비판한 것인데, 이는 법제상의 변화가 관습의 변화까지 즉각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측면과 함께, 단기간에 이루어진 관료집단의 변화만으로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반상 차별의 관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신분직업의 변화

갑오개혁 이후 양반신분의 동향은 신분직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고찰될 수 있다. 갑오개혁 당시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한 의안에는 “무릇 관인이 비록 고등관을 지낸 자라도 休官한 후에 편의에 따라 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을 의결하여 양반의 상업 경영의 자유화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직업의 신분적 차별 폐지를 법제화한 바 있다.¹²⁾

이 시기 상업에 진출한 양반신분의 모습은 갑오개혁 후 대략 10년이 경과한 1903년 및 1906년의 漢城府戶籍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³⁾ 호적에 나타나는 상업활동 종사자 643명 가운데 四祖에 양반 직역을 기재한 경우는 모두 73명(11.4%)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조의 직역으로 ‘학생’만 기재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48명(66%)으로 나타나며, 관직을 기재한 경우도 다수 있으나, 대개 주택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점으로 미루어 모두 몰락 양반이 중소 상인으로 변신한 경우로 추정된다. 특이하게 호주의 직업란에 ‘職’을 嘉義로 ‘業’을 商民으로 기재하여 상업에 종사하지만 양반신분임을 밝히고 사조도 모두 관직(부 증호조참판·가선, 조 증호조참의·통정, 증조 가선, 외조 통덕랑)을 기재한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택 규모가 草家 6칸반에 지나지 않

12) 憲鏞廬, 앞의 글, 73쪽.

13) 조성윤, 앞의 책, 137~139쪽 참조.

아 역시 중소 상인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호주의 직업이 상업이면서 본인 또는 사조에 양반 직역을 기재한 것은 조선 후기의 호적에서는 찾기 힘든 새로운 현상이다.

한편 하층 양반이 생업을 위해 중소 상인의 길을 택한 경우와는 달리, 고급 관료 출신으로서 근대적 기업이나 은행의 설립에 자본가로 참여하거나 기업가로 변신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¹⁴⁾

1897년에 설립된 馬車會社에는 대자본주(1,000元 이상)로 安嗣壽(군부대신) · 李完用(학부대신) · 李允用(농상공부대신) · 李根培(前대신) · 白完赫(壯衛營隊官, 경삼품) · 金斗昇(前부윤) · 金基永(부사) · 趙鎮泰(議官) · 具禮公(무관) 등 전현직 관료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1899년에 설립된 최초의 민간은행인 大韓天一銀行의 발기인 31명 중에는 沈相薰(전군부대신) · 閔內蘋(군부대신, 은행장) · 閔泳綺(육군 副將) · 李根濬(법부협판, 부은행장) · 李容翊(전환국장) · 趙東潤(군무국장) · 崔錫肇(개성부윤) 등 전현직 관료들이 포함되어 있고, 주요 자본가는 조진태(前의관) · 백완혁(前隊官) · 김두승(前부윤) · 김기영(前부사) 등 전직 관료들이었다.¹⁵⁾

또한, 1897년에 金宗漢(관찰사) 등에 의해 설립되었던 漢城銀行은 1903년에 재창설되면서 李載完(종친, 내부대신) · 韓相龍(비서승)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1909년에는 이윤용(前대신)이 은행장이 되었다. 1907년에 설립된 漢城農工銀行의 경우 宋秉畯(전대신)이 대주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조진태 · 백완혁 등도 주주로서 참여하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조진태 · 백완혁 · 김두승 · 김기영 등은 전직 관료 출신이면서 당대의 대표적인 상업자본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으며, 京城商工會議所의 간부를 역임하기도 하였다.¹⁶⁾

한편, 1911년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서 당시 50만 환 이상의 자산을 가진 한국인 대자산가는 3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대개 서울에 거주하는 왕실 및 고위 관료 출신들이었다. 이들 중 이재완과 송병준은 전기한 은행들의 설

14) 金泳謨, 앞의 책, 제3편 제3장 企業支配層의 社會的 起源 참조.

15) 은행에 관해서는 高承濟, 《韓國金融史研究》(一潮閣, 1970) 참조.

16) 金泳謨, 앞의 책, 376쪽.

립에 참여하였고, 민영휘는 1912년에 韓一銀行長에 취임하였으며, 朴泳孝도 1910년 이후 朝鮮產業株式會社 등 4개 기업의 설립대표가 되었다.¹⁷⁾

이처럼 몰락 양반이 중소 상인으로 변신하여 상업을 직업으로 가지게 되는 현상과 함께, 개항 이후 각종 회사 설립과정에서 상층 양반 가문의 신분 배경을 가진 고급 관료 출신들도 자본가로 참여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종래 末業으로 여겨 천시하던 상공업 분야에 제한적이나마 양반신분이 진출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士大夫’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전통적인 양반의 신분직업 관념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3) 광무호적과 양반신분의 존재

위와 같이 양반신분과 관련하여 관료집단 및 신분직업상의 변화가 일정하게 진행되어 갔으나, 이러한 변화에 의해 양반신분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양반신분의 존재는 갑오개혁 이후 작성된 호적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¹⁸⁾ 1896년 9월 정부는 전국적 규모의 새로운 호구조사를 위해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 마련하고 이어 内部令 제8호 〈호구조사 세칙〉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였다. 신호적은 그 기재 양식에서 직역 대신 직업을 적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분제 폐지의 한 결과인 동시에 호적 작성에서 군역 부과의 목적이 경제활동 내용의 파악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에 따라 군역 면밀로 인한 호적상의 왜곡은 감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 기재를 통해 호주의 신분, 특히 그 양반신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아직 근대적인 직업 개념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은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그리고 ‘업’은 구체적인 생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職士業農). 대부분의 양반은 ‘업’보다 ‘직’을 중시하여 실제로는 무직유업이라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곧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幼學이나 前職 등만 직업란에 기

17) 金泳謨, 위의 책, 383~385쪽 참조.

18) 광무호적을 분석한 연구로는 金泳謨, 《韓國社會階層研究》(一潮閣, 1982) 및 조 성윤, 앞의 책 참조.

재하였던 것이다.¹⁹⁾

광무 7년(1903)과 광무 10년에 작성된 漢城府戶籍을 분석해보면, 양반신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주는 다음 〈표 2〉와 같이 전체의 34.9%로 나타난다.²⁰⁾

〈표 2〉

광무년간 한성부 호적과 신분구조

신분 호수 및 비율	양 반	중 인	상 민	근대직업	무기재	합 계
戶 數	903	1	1,390	98	194	1,586
비 율(%)	34.9	0.0	53.8	3.8	7.5	100.0

이 구성비는 서울 북부에서 조사된 양반호수를 토대로 전국의 양반을 전체 인민의 3분의 1로 추정한 1905년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와 거의 합치한다.²¹⁾ 광무호적에서 양반신분으로 분류된 것에는 과거의 관직·품계 또는 유학 등의 직역을 기재한 경우와 갑오개혁 이후의 신관직명을 기재한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중인이나 평민 출신으로 관료로 진출한 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관제에 따른 관직을 기재한 경우는 전체 양반의 22.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관직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양반신분에 해당하는 직역명인 幼學 등의 기재만으로 분류된 경우는 전체 양반의 36.8%에 달하고 있어서 여전히 상당한 구성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그런데 서울과 달리, 동일한 시기의 지방 호적에 나타나는 양반신분의 존재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3〉은 현재 남아있는 1903~1905년의 호적 중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몇 개 지역을 추출하여 그 신분구조를 보인 것이다.²³⁾

19) 조성윤, 위의 책, 112쪽 참조.

20) 조성윤, 위의 책, 129쪽의 표를 재구성한 것임. 조사 지역은 안국방·정선방·훈도방·반송방·연희방·연온방.

21) 《대한매일신보》, 1905년 8월 11일.

22)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조성윤, 앞의 책, 131~134쪽 참조.

23) 金泳謨, 앞의 책(1982), 191쪽의 표를 재구성한 것임.

<표 3>

광무년간 농촌지역 호적과 신분(직업)구조

(단위 %)

신 분 지 역 \	官僚	幼學	農民	商人	工人	平民	其他	不記	合計
京畿 龍仁郡 枝內面	0.6	59.3	26.7	-	-	11.6	-	1.7	99.9
	6.5	36.3	54.9	0.8	-	0.3	-	1.1	99.9
忠南 燕岐郡 東一面	-	2.2	97.1	-	-	-	-	0.6	99.9
全北 鎮安郡 南面	-	-	98.2	0.3	-	-	1.5	-	100.0
斗尾面	-	-	100.0	-	-	-	-	-	100.0
平南 德川郡 金城面	-	-	99.5	-	-	-	-	0.4	99.9
慶南 彦陽郡 上北面	0.4	-	35.7	11.6	0.8	-	15.6	35.7	99.8

* 1. 幼學은 士人·出身·童蒙 등도 포함된 것임.

2. 德川郡 호적에는 幼學이 農業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3. 鎮安郡은 1903년, 龍仁郡은 1905년, 그 외 지역은 1904년의 호적임.

위 표에 의하면 경기도 용인군의 2개 면 지역에서만 여전히 양반신분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서는 3%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 것은 평안도 덕천군의 사례인데 이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호적의 직업란에 농업과 幼學을 동시에 기재하고 있다. 이 특이 사례를 두고, 이 시기 농촌 지역에서 전통적 신분개념이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²⁴⁾ 일반적으로는 농촌 지역에서의 해체가 더욱 지연되었을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19세기의 호적에 나타나는 거대한 양반인구수가 실은 모칭 등에 기인한 허수였음을 입증하는 반증례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 삼은 광무호적에 나타나는 양반신분의 구성적 비중은 조선후기의 그 것에 비할 바는 아니겠으나, 20세기 벽두에 이르러서도 아직 양반이 전면 해체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술국치 직전인 융희 4년(1910) 5월의 民籍統計表에서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内部 경찰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호주의 직업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 구성비만 나타내면 다음 <표 4>와 같다.²⁵⁾

24) 金泳謨, 위의 책(1982), 191쪽.

25) 金泳謨, 위의 책(1977), 50쪽의 표에서 전국 통계만 취한 것임.

〈표 4〉

1910년 전국 戶主의 직업별 구성비

(단위 : %)

호주직업	관공리	양반	유생	상업	농업	어업	공업	광업	노동자	기타	무직
구 성 비	0.5	1.9	0.7	6.2	84.1	1.2	0.8	0.05	2.4	1.2	1.1

위 표에 의하면 당시 양반은 전체 호수의 1.9%(54,217호), 유생은 0.7%(19,075호), 관공리는 0.5%(15,758호)로 나타나고 있다. 양반과 유생이 당국에 의해 ‘직업’ 범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곧 이들이 그 사회적 지위만으로 여타의 직업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 즉 전통적 양반신분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⁶⁾ 따라서 구성이 복잡하였을 관공리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6%(73,292호)에 달하는 양반·유생이 전통적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3월 경찰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양반·유생은 종래 양반신분과 동일하게 “거만존대하고 사회의 상위에서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서민을 학대하여 노예와 같이 심한 일을 시키고 재화를 탈취할 뿐 아니라, 私邸에 사람을 구금하여 재판·형벌·징세 등과 같은 행위를 僱行”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⁷⁾

(4) 양반신분의 존속과 해체의 조건

앞서 인용한 바 갑오개혁 당시 군국기무처의 의안은 명백히 ①문벌 및 양반·상인 신분제도의 폐지, ②귀천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법제화한 것이었다.²⁸⁾ 이러한 개혁입법은 곧 사상 최초로 반상제의 폐지

26) 실제 이들의 직업은 대개 「地主」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독부 간행 《농업통계표》에 의하면, 1913년의 경우 지주는 전체 농가의 3.1%, 8만 1천여 호 정도였다(백우인, 〈식민지 시대 계급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8, 140쪽). 구성과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 수치는 위 양반·유생을 합친 것과 근사하다.

27) 金泳謨, 앞의 책(1982), 140쪽 참조.

28) 慎鏞廬, 앞의 글, 73쪽.

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반상의 등급’이 관습상에서 잔존하더라도 이제는 그 적법성을 잃고 다만 遺制에 지나지 않게 됨을 뜻하였다.

그러나 개화과정부는 이 획기적 입법의 취지에 따른 반상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9일(음력 8월 10일) 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 등에 내린 關文에서 위의 입법내용을 “인재를 널리 뽑는 방법이며 전적으로 班闈만을 쓰지 않고 비록 常賤일지라도 진실로 그 재주가 있으면 參用하여 그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설하여, 법령의 취지를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능력위주 인재 등용’의 측면에만 국한함으로써 반상제 폐지를 담은 개혁입법의 혁명성을 크게 완화하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신분제 폐지 이후 더욱 첨예화된 양반에 대한 신분투쟁을 완화하고 양반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에서 군국기무처의 법령을 수구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한 것이었다.²⁹⁾ 이 관문은 법령이 아니라 법령에 대한 해석상의 행정지시에 불과한 훈령이었지만,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였던 그 자체가 반상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수 없었던 당시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³⁰⁾

실제로 반상제를 포함한 신분제 폐지는 갑오개혁 당시 위 군국기무처의 법령 제정 때에만 혁명적으로 과감하였고, 그 이후는 매우 온건한 점진적 방법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었다.³¹⁾ ① 동학농민전쟁이 농민군의 패배로 끝남으로써 밑으로부터 신분제 폐지를 감행할 세력이 꺾이게 된 점, ② 농민군 진압에 공

29) 慎鏞廬, 위의 글, 76쪽.

30) 이러한 제측면에 주목하여 갑오개혁 당시 반상제 폐지가 실제로는 선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종래 통설에서… 그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반부를 독립시켜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갑오경장 때 반상의 계급차별 내지 양반제도의 혁파가 선언되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 이 개혁안의 중점은 그 구절의 후반부에 제시된 ‘不拘貴賤 選用人材事’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갑오경장 때 여러 가지 사회제도 개혁안이 발표되었지만 그 중에 양반제도 자체를 ‘혁파’하겠다고 꼬집어 주장한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종래 양반 귀족이 누리고 있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특권을 폐지 혹은 박탈하겠다는 ‘혁명적’ 내용을 담은 후속 개혁안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柳永益, 앞의 글, 261쪽).

31) 慎鏞廬, 앞의 글, 79쪽.

훈을 세운 양반층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이들이 신분제 유지를 요구하고 봉건적 반동을 시도하는 압력을 가했던 점, ③ 대부분 양반신분 출신인 개화파 관료들이 개혁법령의 과감한 혁명적 집행을 회피함으로써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점 등이 신분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특히 개혁법령이 순조롭게 시행되면 가장 타격을 입게 될 양반층은 개화파 정권과의 정면 대결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겼으며 결과적으로 개화파가 추진하던 개혁정책을 저지·파탄시켰던 것이다.³²⁾ 이러한 사실은 조세행정에서 양반층이 누리던 특권을 없애고 사족 중심의 지방사회를 재편하려던 개화파 정부의 시도가 양반층의 저항을 받으면서 좌절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³³⁾

한편, 시각을 달리하면, 과연 반상제가 법령에 의해 실질적으로 폐지 가능한 성격의 것이었던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제적 폐지의 가능성은 반상제 자체 또는 그 핵심 요소가 법적 제도로 성립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조선의 반상제는 성립 이후 관습·관행에 뿐만 아니라 관습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게 되었다.³⁴⁾ 따라서 단기간의 법제적 조치에 의해 관습을 포함한 반상제의 근본적 폐지를 이루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점에서 ‘사회인류학적 이유’에 의한 갑오개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³⁵⁾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갑오개혁에 의해 반상제가 즉각 철폐되지 못하고 그후에도 반상관계가 여전히 사회생활에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³⁶⁾ 1905년 《대한매일신보》에 의하면, 당시 정부에서 양반의 수효를 조사하였는바 서울 城內 北部의 경우 양반의 수가 800여 호에 달한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것으로 미루어 전국 인민 중에 양반이 족히 삼분의 일은 될 것이라 하고, 같은 나라 같은 겨레로서 ‘曰班曰常의 二種人族’이 있음에 따른 폐단을 비판하면서 양반에 대한 ‘처치방법’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安民하는

32) 李相燦, 앞의 글, 88쪽.

33) 李相燦, 위의 글, 91쪽 등 참조.

34) 宋俊浩, <身分制를 통해서 본 朝鮮後期社會의 性格의 一面>(《歷史學報》133, 1992), 37쪽. “우리 사회의 신분제도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사회 관습으로서 오랜 세월에 걸쳐 발달된 것이요 따라서 그것은 政治나 法의 영역 밖의 일이 었다는 사실이다.”

35) 柳永益, 앞의 글, 287~288쪽.

36) 金泳謨, 앞의 책(1982), 138쪽.

良策’이라고 논하였다.³⁷⁾ 이는 곧 갑오개혁 이후 대략 1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도 반상제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앞서 인용하였듯이 1899년의 『독립신문』은 반상을 초월한 인재의 등용 조차도 관습 속에 깊이 뿌리내린 반상의 관념을 청산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 1910년 당시 양반·유생의 행태에 관한 경찰국의 평가도 반상제의 사회적 기능이 그때까지 멈추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갑오개혁 이후의 사정을 1900년에 제정 러시아 경제성에서 발간한 《한국지》는 다음과 같이 관찰하여 서술하였다.

1894년에 시작된 개혁의 시기에 발표된 정부의 법령들은 수백 년 동안 굳어온 한국민의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귀족층과 다른 낫은 계층들을 평등하게 하고 노비를 해방시키고 문관의 무관에 대한 우월권을 폐지하고 백정·역정·광대들의 권리의 속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많은 부분은 오늘날까지 死文이나 마찬가지이고 한반도의 생활은 법률에 어긋나게 예전의 관습적인 제도를 많이 그대로 지키고 있다(柳永益, 〈甲午更張과 社會制度 改革〉, 朱甫瞰 外,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289쪽에서 채인용).

이처럼 신분제 폐지에 관한 개혁법령은 이후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여 거의 사문화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여전히 관습상의 신분 유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심지어 양반신분의 본래적 존립기반을 완전히 상실하였던 식민지하에서 조차 사회생활의 영역, 특히 혼인·언어·예절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반상을 따지고 양반으로서의 신분의식을 유지하였던 소위 양반가문이 있을 수 있었고,³⁸⁾ 신분제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서는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³⁹⁾ 이러한 제반 상황은 곧 양반신분이 혁명적 계기에 의해 단기간에 해체·소멸된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즉, 반상제는 갑오개혁에 의해 그 폐지가 선언되었지만 이후에도 관습상의 유제 상태로 존속하였던 것, 그리고 이 유제가

37) 《대한매일신보》, 1905년 8월 11일.

38) 宋俊浩, 앞의 글, 33~34쪽 참조.

39) 정진상, 〈해방직후 사회신분제 유제의 해체〉(《社會科學研究》13-1, 慶尙大 社會科學研究所, 1995), 349쪽.

이후 전개된 근대 사회변동에 따른 여러 계기에 의해 점진적으로 해체·소멸되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양반신분은 주로 ‘관직보유’와 ‘家系의 위신’의 요인에 의해 다른 신분과 구별되어 형성된 신분이었다. 또한 양반신분은 ‘신분직업’과 ‘身分財’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독특한 생활양식(신분문화)과 신분의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반신분의 완전한 해체·소멸은 이러한 제반 구성요소의 해체·소멸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에서 살핀 바 1894~1910년 동안 진행된 일련의 변화는 주로 관직보유의 측면과 부차적으로 신분직업의 측면에서 양반신분에 일정한 타격을 가하거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도에 머물렀고, 아직 양반신분의 완전한 해체에 필요한 조건을 형성하는 단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양반신분 존립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였던 지주제는 1950년의 농지개혁에 의해 비로소 청산될 수 있었다. 또한 관습상의 유제 존속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여타의 요소들은 해방 이후 진행된 근대민족국가의 수립과 도시화·산업화 및 외래 문화의 수용과 확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청산되거나 현저히 약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구질서가 해체되고 가족 및 친족이 지녔던 사회적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유교사회의 바탕을 이룬 유교적 이념과 생활양식이 자유·평등을 원리로 하는 새로운 이념 및 문화에 의해 크게 약화되거나 대체되었으며, 신분 및 토지소유에 바탕을 둔 폐쇄적인 계층·계급구조는 근대적 직업의 확산과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개방적인 계층·계급구조로 그들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분제 유제가 소멸된 현대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도 ‘양반 가문’에 대한 향수어린 신분의식의 잔영은 최후까지 끈질기게 남아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신분제를 겨냥한 사회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던 1894~1910년의 단기간내에 새로운 계층체계가 능히 신분제를 대체하여 양반신분을 해체·소멸시킬 수 있는 제반 조건을 형성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池承鍾〉

2) 중간신분층의 부상

(1) 갑오개혁과 중간신분층의 지위 변화

갑오개혁에 의한 개혁 조치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개혁의 하나가 바로 신분제에 대한 개혁이었다. 그것은 신분제야말로 관료제 및 지주전호제와 더불어 바로 중세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갑오개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갑오개혁 당시의 입법기관 역할을 했던 군국기무처의 ‘議定案’ 중에서 가장 먼저 의결된 것이 바로 신분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¹⁾ 잘 알려진 대로 1894년 6월 25일(음력, 이하 모두 같음) 신설된 군국기무처에서는 신설된 직후인 6월 28일 첫 번째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의정안을 의결하여 법령으로 사회신분제를 폐지하였다.

- ③ 門閥과 班常의 등급을 削破하여,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아 쓸 것.
- ④ 文·武 尊卑의 차별을 없애고, 단지 품계에 따라서만 相見儀가 있게 할 것.
- ⑤ 罪人 자기 이외에는 緣坐律을 일체 시행치 않을 것.
- ⑥ 嫡·妾이 모두 아들이 없는 연후에야 비로소 양자 들이는 것을 허용하여, 舊典(《경국대전》)을 밝게 펼 것.
- ⑧ 寡女의 再嫁는 貴·賤을 毋論하고 그 자유에 맡길 것.
- ⑨ 公·私 奴婢의 제도는 일체 혁파하고, 인구의 판매를 금할 것.
- ⑩ 비록 평민일지라도 참으로 利國便民할 起見을 가진 자는 군국기무처에 上書하여 회의에 부치게 할 것.

물론 이상의 법령 의결로 사회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위 조항들 중에는 다분히 선언적인 것에 불과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1) 군국기무처에서 가장 먼저 의결한 의정안은 대외관계와 관련된 다음 두 조항이다.

- ① 지금부터 국내외 公私文牒에는 開國紀年을 쓸 것.
- ② 청국과 약조를 개정하고, 列國에 특명전권대사를 다시 파송할 것.

따라서 내정의 개혁과 관련된 의정안은 세 번째 의정안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위 번호(①·②)는 군국기무처에서 의결된 안건의 순서를 가리킨다(이하 같음). 의정안 자료(및 그 순번)에 대해서는 유영익, 『갑오경장연구』(일조각, 1990)의 부록, 〈자료 3〉을 참조하였다.

후속조치로 인해 원래의 개혁안은 상당히 후퇴하였기 때문이다.²⁾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의 기본 골격은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부정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중간신분층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신분적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이미 이루어진 법적 조치를 확인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됨으로써 신분적 위상의 변화를 뚜렷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갑오개혁의 신분제 개혁에 대해 그것은 신분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관리임용에 있어서의 신분적 제한의 철폐 또는 완화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³⁾ 특히 후속조치에 의한 개혁안의 후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견해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양반의 특권에 대한 철폐 즉, 양반제의 폐지라는 의미를 가짐은 분명하다. 이것은 관료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과거제가 폐지됨으로써 확인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갑오개혁의 신분제 개혁은 중간신분층에 가장 유리한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 동안 경제적·학문적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관습적 제약으로 관료로의 진출 특히 고위직 또는 清要職에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간신분층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의 하나로 갑오개혁 주도층의 신분적 성격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유영익에 의하면, 갑오개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협판급 이상의 소장관료 중에는 다음과 같은 ‘亞流兩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⁵⁾

2) 신용하, <1894년의 사회신분제의 폐지>(《규장각》9, 1985).

유영익, <갑오경장과 사회제도 개혁>(주보돈 등 공저,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1992).

조성윤, <갑오개혁기 개화파정권의 신분제 폐지 정책>(《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총》, 지식산업사, 1997).

3) 유영익, 위의 글 등 참조.

4) 상민들은 중간신분층에 비해 경제력 및 교육 등의 면에서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 일반적 사정이었다.

5) 유영익, 앞의 책 및 앞의 글 참조.

武官 : 趙義淵 · 權灤鎮 · 禹範善 · 李周會
 庶孽 : 金嘉鎮 · 安潤壽 · 權在衡 · 李允用 · 尹致昊
 中人 : 鄭秉夏 · 高永喜 · 吳世昌
 土班 : 金鶴羽 · 張博

그런데 이른바 아류양반이란 무관을 제외하면, 바로 중간신분층에 속하는 자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양반의 배타적인 특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⁶⁾ 그러나 이처럼 갑오개혁의 신분제 개혁을 추진 주체의 신분적 성격에서만 찾는 견해는 미시적인 것이다.⁷⁾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 조치는 오랜 기간에 걸친 농민운동의 흐름과 실학파 및 개화파의 개혁논자들에 의한 신분제 폐지 운동의 흐름이 1894년의 시점에서 합류하여 이룩한 성과이기 때문이다.⁸⁾

(2) 중인

中人은 17세기에 독자적 신분 범주로 성립한 뒤,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가해진 신분적 제약에 분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실주의적 반응을 보여 왔다. 그 결과, 비록 중인신분내에서도 편차는 적지 않았지만, 醫 · 譯 중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중인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위세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은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⁹⁾

중인신분은 특히 개화기에 들어와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이 그들을 필요로 하였고, 그들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갔기 때문이다. 우선 중인들은 개화사상의 형성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吳慶錫 · 劉大致 · 李東仁 등이 대표적인 인물임은 잘 알려져 있다. 또 한 중인들은 근대적 관료기구가 신설된 1880년대에 이르러 이 새로운 관료기

6)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이들의 신분제 개혁 의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7) 물론 유영익 교수도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8) 신용하, 앞의 글 참조.

9) 조선시대 중인신분의 사회적 위상과 그 변화에 대해서는 김필동, 〈조선시대 ‘중인’ 신분의 형성과 발달〉(《한국의 사회와 문화》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을 참조할 것.

구에 중견 실무관료인 主事·副主事·委員·司事 등으로 다수 진출하게 되었으며,¹⁰⁾ 일부는 大臣級으로까지 승진하였다.¹¹⁾ 그러나 중인 출신들이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은 갑오개혁 이후의 일이었다.

그러면 먼저 중인신분은 갑오개혁 이후 어떠한 신분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앞에 제시된 의정안 중에서 중인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의안 ③항과 ④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③항은 班常制에 대한 포괄적인 부

정과 함께 특히 관료 임용의 귀천을 가리지 않음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종래 동반 정직의 관료이면서도 다른 양반관료들에 비해 차별을 받던 기술관들에 대한 차별을 부정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④항은 직접적으로는 문무관 사이의 차별을 부정한 것이지만, 넓게 보면 기술관이나 그 출신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인의 신분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좀더 구체적인 조치는 갑오개혁 당시 이루어진 관료제 개혁을 통해 나타났다. 즉, 갑오경장 정부는 6월 28일 군국기무처 章程案으로 ‘議政府 官制’를 제정하여 중앙 행정기구의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7월 2일에는 의정안(⑥항)을 의결하여 관리의 품계를 종래의 18단계에서 모두 11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¹²⁾ 이어 7월 14일에는 관리를 勅任官·奏任官·判任官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는 等級職制를 확립하였다.¹³⁾ 한편 7월 3일에는 군국기무처 의정안(④항)으로 과거제를 폐지

10) 주사 또는 부주사는 조선시대 중견 실무관료의 범칭인 郎廳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거의 이른바 청요직에 준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인 출신이 이런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김필동, <갑오경장 이전 조선의 근대적 관계개혁의 추이와 새로운 관료기구의 성격> 《한국의 사회제도와 농촌사회의 변동》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33, 문학과지성사, 1992).

———, <한국 근대관료의 초기 형성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 : 1880~1894> 《한국의 사회제도와 사회변동》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50, 문학과지성사, 1996) 참조.

11) 대표적인 인물이 통리아문의 참의와 협판, 한성판윤 등을 역임한 卞元圭이다.

12) 종래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두었던 正·從의 구별을 1품과 2품만 그대로 두고, 3품 이하는 正·從의 구별을 폐지하였다.

13) 정1품·종1품·정2품·종2품을 칙임관, 3품부터 6품까지를 주임관, 7품부터 9품까지를 관임관으로 구분하였다(《日省錄》, 고종 31년 7월 14일 및 《官報》, 개국 503년 7월 14일 참조).

하고 따로 〈選舉條例〉를 정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군국기무처 장정안으로 〈銓考局條例〉와 〈선거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충원제도를 일신하였다.¹⁴⁾ 이 중에서 특히 과거제의 폐지와 새로운 선거제의 도입은 중인(기술관)의 신분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새 제도에 따른 관리선발시험은 종래의 과거시험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 내용을 비교하자면 종래의 문과시험보다는 잡과시험에 훨씬 근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¹⁵⁾ 이로써 중인은 어떤 점에서는 양반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게 되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7월 17일에는 군국기무처 의정안(83항)을 통해 “무릇 醫·譯職 및 償加人 등으로 각부 아문의 奏·判任官이 된 자는 모두 新授階級에 따라 시행하고, 原資(원래의 관직)에는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관직체계에서 임용된 醫·譯 기술관의 신분적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해 주었던 것이다.

이로써 기술관 또는 중인 출신의 관직 진출은 더욱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 과거 잡과 출신자의 관직 진출은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중인가문 출신의 진출은 직접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관료집단내에서 중인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가려내기는 어렵다. 우리는 다만 두드러진 몇몇 사례들을 통해 중인 출신이 이제 과거의 제한된 기술직을 넘어서 핵심적인 고위 관직에도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¹⁶⁾

한편 1906~7년경의 대한제국 관료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자료인 《大韓帝國官員履歷書》에서 중인 출신을 가려보면, 갑오개혁 이전에 잡과에 합격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67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밖에 중인 가문 출신이라고 간주되는 관료들이 약 100여 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⁷⁾

14) 신용하, 〈1894년 갑오개혁의 사회사〉(《한국의 사회제도와 사회변동》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50, 문학과지성사, 1996) 참조.

15) 선거조례와 전고국조례에 의하면, 새 제도는 각 아문의 대신과 각 지방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을 ‘보통시험’ 및 ‘특별시험’의 두 종류의 고시를 통해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통시험의 과목은 國文·漢文·寫字·算術·內國政略·外國事情 등으로 되어 있었다. 신용하, 위의 글(1996) 참조.

16) 대신 또는 협판급의 관직에 오른 대표적인 인물로는 鄭秉夏·高永喜·吳世昌·玄昔運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대표적인 중인가문 중에는 근대의 전환기에 자신들의 본관을 유력 양반가문에 접맥시키는 작업을 했음이 확인되고 있다.¹⁸⁾

한편 중인 출신은 단지 관료로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생 출신 중에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중에는 유학을 다녀온 후 관료가 된 인물들도 있지만,¹⁹⁾ 崔南善·崔麟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화 및 정치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도 있었다. 또한 유학생 출신은 아니지만, 정치적 부침에 따라 일본에 체류하였고, 1900년대의 애국계몽기에 문명개화론을 기치로 내걸고 근대화 운동에 일익을 담당했지만 중국에는 친일적 활동으로 흐르게 된 吳世昌 같은 인물도 같은 범주에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체적인 정치의식·민족의식을 체득하지 못한 채, 일제가 침략을 위해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근대문명을 구가하고자 했던, 근대사 속에서의 굴절된 중인층의 모습을 읽게 된다.²⁰⁾

(3) 서얼

庶孽은 조선 후기를 통하여 중간신분층 중에서 가장 활발한 신분상승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²¹⁾ 서얼에게 있어 가장 큰 장애로 되어

-
- 17) Edward W. Wagner, "The development and modern fate of Chapkwa-Chungin lineage,"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한편 와그너 교수는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 나타난 관료들의 출신 배경에 대해 조사를 해 왔는데, 그의 추정에 의하면, 잡파에 합격하여 관료로 진출했던 67명 이외에도 적어도 이 정도의 숫자는 중인가문 출신으로 간주된다 고 한다. 이 수치는 전체 이력서의 약 5~6%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중인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 18) Wagner, 위의 글 참조. 과거의 천령 현씨가 연주 현씨로, 해주 김씨가 청풍 김씨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19) 이강오·송준호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제국관원이력서》에서 유학 경력을 가진 사람은 93명인데, 필자의 확인에 의하면 이 중에서 적어도 9명은 중인 출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金東圭·玄根·安衡中·洪奭鉉·金益南·金鴻南·方泳柱·全永憲·玄暎運 등이다.
이강오·송준호, 〈1907년 당시의 대한제국 관원 중 유학 경력 소지자의 조사〉(《전북사학》4, 전북대 사학회, 1980) 참조.
 - 20) 김경택, 〈한말 중인층의 개화활동과 친일개화론—오세창의 활동을 중심으로—〉(《역사비평》21, 1993년 여름호).
 - 21) 이상백, 〈서얼금고시말〉(《동방학지》 창간호, 1954).

있던 것은 과거(문과)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청요직에의 진출 제한에 대한 것인데, 비록 현실적인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19세기를 통하여 제도적으로는 차별에 대한 완화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서열의 陞班운동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²²⁾ 특히 1882년 ‘壬午軍變’이 수습된 뒤 국왕이 내린 전교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門地를 송상하는 것은 진실로 天理의 공정함이 아니다. 국가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어찌 귀천을 가릴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날을 기하여 마땅히 용인의 길을 넓혀, 무릇 西北·松都·庶孽·醫譚·胥吏·軍伍(常民)를 막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일체 顯職에 등용코자 하니 오직 재능에 따라 (인물을) 천거하도록 하라”고 함으로써 관직에의 등용문이 크게 열리게 되었는데, 서열 또한 혜택을 받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²³⁾ 이후 서열 출신들 중에는 李祖淵·李範晉·金嘉鎮·閔致憲·閔商鎬·閔泳綺·李允用·尹雄烈·安珦壽·金永準 등 청현직을 거쳐 대관에 이른 자가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²⁴⁾

그러나 서열층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것은 역시 갑오개혁 이후의 일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갑오개혁 정부에는 다수의 서열 출신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갑오개혁에서의 신분제 개혁은 서열이 그 동안 획득한 법적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해 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군국기무처의 의정안 중에서 서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은 다음 세 가지이다.

- ⑥ 嫫妻와 妾에 모두 아들이 없는 연후에야 비로소 양자 들이는 것을 허용하여, 舊典(《경국대전》)을 밝게 펼 것.
- ⑧ 寡女의 再嫁는 귀천을 毋論하고 그 자유에 맡길 것.
- ㉙ …그저께 회의에서 “嫡·妾이 모두 아들이 없는 연후에야 비로소 양자 들이는 것을 허용하여, 舊典(《경국대전》)을 밝게 편다”고 한 조항 아래에 “송이 내리기 전에 있던 일은 追論할 수 없다”는 한 마디를 첨가해 넣을 것.

이종일, <18·19 세기의 서열허통운동에 대하여>(《한국사연구》58, 1987).

22) 이종일, 위의 글 참조.

23) 대표적인 인물이 김가진이다. 김가진은 규장각 검서관으로 관직에 들어온 뒤 장홍주부·교섭아문주사·내무부주사·주진종사관 등을 거쳐 일본판사대신·내무부참의 등으로 승진했다. 이 기간 동안 김가진은 1886년에 문과에 합격하는 한편, 수찬·장령·승지 등의 전통적인 청요직도 역임하였다.

24) 이종일, <양반서열의 통청운동>(《한국사》34, 국사편찬위원회, 1995), 55쪽 참조.

이 중에서 의정안 ⑥항은 서자의 가계 계승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를 보장해준 것이며, ⑧항은 재가의 자유와 그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대부분 서얼로 될 수밖에 없었던(양반일 경우) 재가녀 자손의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장해 주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로써 서얼의 지위는 가정내에서도 향상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다만 ⑩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을 무마하려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한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얼은 재산상속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원래 조선시대 전 기간을 통하여 서얼의 재산상속분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²⁵⁾ 조선시대 말기로 가면서 그 비율을 꾸준히 상승시켜 왔고, 19세기 말엽에는 적서간의 차이가 2 : 1 정도로 좁혀지게 되었던 것이다.²⁶⁾

물론 서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가정내에서 또는 사회적인 차별은 상당히 오랜 뒤까지도 강인한 사회적 관습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오개혁 이후의 변화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4) 경아전과 항리

京衙前과 鄉吏는 함께 吏胥 또는 �胥吏라고 불리우는데,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관아의 행정기능인으로 종사했다.²⁷⁾

경아전 또한 갑오개혁과 더불어 가장 큰 신분적 변화를 맞은 집단 중의 하나이다. 종래 경아전은 조선초기에 신분적으로 격하된 뒤 양반관료제의 외곽에 보조적 기능인으로 위치했지만,²⁸⁾ 새로운 관료체계에서 정규 관료 그

25) 《經國大典》에는 奴婢와 田宅의 상속 비율을 良妾子女는 婢子女의 1/7, 賤妾子女는 1/1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26) 이종일, 앞의 글(1995), 55쪽.

27) 경아전은 다시 錄事·書吏 등의 東班京衙前과 皂隸·羅將·諸員 등의 西班京衙前으로 나뉘는데, 중간신분층으로서의 경아전은 동반경아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경아전에 대해서는 신해순, 『조선전기의 경아전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6)를 참조할 것.

28) 경아전은 품계가 주어지지 않는 이서로서, 9품제로 편제된 양반관료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것도 중견급의 일원으로 통합되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1894년 7월 8일에 의결된 군국기무처 의정안(47항)에 의하면, “각부 아문의 主事 총액 중 1/3은 현역 이서 중에서 廉勤하고 文算있는 자를 골라, 전고국 시험을 거친 후 (벼슬을) 올려 임명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아전 중 상당 수를 중견 실무관료로 발탁하게 되었으며, 이어 7월 13일에는 “각부 아문의 勅任官을 과정한 후 먼저 도찰원에서 잠시 회동하여, 각사 이서 중 문산과 才 謂가 있는 자를 시험하여 실시일을 기다려 재능에 따라 관직을 줄 것”(69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아전은 적어도 그 일부는 새로운 관료체계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그것도 중견 실무관료의 1/3을 차지하는 규모로 당당히 끼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경아전은, 적어도 그 중 일부는 새로운 관료제 구조 속에서 실무관료의 일각으로 편입되어 들어갔고, 따라서 사실상 지위 상승의 계기를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각부 아문의 주사가 전통관료제의 참상관급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경아전총의 대단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향리들은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²⁹⁾ 갑오개혁의 핵심 기획자의 위치에 있던 愈吉濬은 지방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吏胥層의 배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⁰⁾ 이것은 실제로 갑오개혁기에 조세징수과정에서 이서총을 儒鄉層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또한 제2기 갑오경장 내각의 실력자였던 朴泳孝도 1895년 3월 10일 공포된 〈內務衙門訓示〉를 통하여, 이서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³²⁾

29) 조선시대의 향리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참조할 것.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리〉(《한국사연구》5, 1970).

이수건, 〈조선조 향리의 일연구〉(《문리대학보》3, 영남대, 1974).

김필동, 〈조선후기 지방이서 집단의 조직구조〉(《한국학보》28·29, 일지사, 1982년 가을·겨울).

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일조각, 1990).

30) 愈吉濬, 〈與福澤諭吉書〉(《愈吉濬全書》V, 일조각, 1971), 278쪽.

이상찬, 〈1906~1910년의 지방행정제도 변화와 지방자치 논의〉(《한국학보》42, 1986)에서 재인용.

31) 이상찬, 위의 글, 52쪽 참조.

32) 내무아문 훈시에서 이서의 통제를 겨냥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인용문은 유영익, 앞의 책, 부록 참조.

그러나 1896년 갑오정권이 무너지자 이서충은 다시 지방행정 실무자로 복귀하고 鄉員層은 배제되었다. 나아가 비록 그 정원은 감액하였지만, 이서에게 월봉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입지를 세워주게 되었다.³³⁾ 이로써 이서충은 일시적인 배제의 위기를 넘어 다시금 지방행정의 실무자 위치로 복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향리들의 운명이 이렇듯 일시적인 위기를 거쳐 과거의 지위를 복구하는 데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갑오개혁 이후 지방행정제도의 기본 틀은 바뀌었기 때문에 갑오개혁 이후 향리층의 위상 변화를 이런 각도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향리층은 시대적 변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갔다. 즉, 갑오개혁 이후 향리층은 변화된 지방제도 속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시대적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 나갔는데, 그 중 하나가 근대적인 교육에 적극 동참해 간 것이고,³⁴⁾ 또 다른 하나가 새롭게 대두하는 상업적 농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회변동기에 지주·대지주로 성장해간 것이다. 그 중 가장 극적인 사례의 하나를 우리는 전라도 동복현의 지배적 향리가문인 同福 吳氏家에서 찾을 수 있다.³⁵⁾ 예컨대 동복의 향리 출신인 吳啓鍊과 吳在永은 갑오개혁 이후 군수를 역임했고, 오재영은 나아가 일제하에서 중추원의관을 역임하는 등 식민지체제하에서도 적극 적응해 나갔던 것이다.³⁶⁾ 또한 이들을 포함한 동복 오씨 일문은 그 지방의 대표적인 대지주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향리층의 동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序文 …士氣는 해이하며, 吏胥는 苞苴에 眇眊而 인민은 저축하는 念이 無하니…
제37조 관과 민이 상집호미 下情을 詳察하야 吏胥輩로 ھ여곰 居中 奸弄함이
없게 할 事.

제76조 執卜호는 色吏의 加卜호고 移卜호는 弊를 일체 엄금할 事.

제79조 京邸吏와 營主人의 役價弊를 掃正할 事.

33) 윤정애, <한말(1894~1905) 지방제도 개혁의 연구>(《역사학보》 105, 1984).

34) 보수적인 양반에 비해 향리들은 근대적인 교육에 좀더 빨리 적응해 갔다.

35) 홍성찬, 《한국근대 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지식산업사, 1992).

36) 홍성찬, 위의 책.

———, <한말·일제초 향리층의 변화와 문명개화론－보성군수 오재영의 경우
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 90, 1995).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향리층 일반으로 확대하여 향리와 그 후예들은 근대 이후, 특히 식민지시기에 엄청난 사회적 진출을 이룩했고, 그 결과 식민지시기의 군수의 절대 다수를 향리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³⁷⁾ 그렇지만 이 주장은 충분히 실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³⁸⁾ 한편 또 다른 방증 자료로서 1909년 전북지방의 통계에 대한 보고를 보면, 사족 중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20%인데 비해 吏校의 경우는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⁹⁾ 따라서 근대 이후 향리와 그 후손의 진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견해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⁴⁰⁾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또는 구래의 다른 신분 범주에 비겨볼 때, 근대 이후의 사회변동에 향리 층이 상당히 민감하게, 그리고 실리적 차원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 만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중간신분층의 지위 변화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할 것도 없다.

〈金弼東〉

37) 稲葉岩吉, 〈朝鮮社會史ノ斷面〉下(《東亞經濟研究》9-3, 1925).

이훈상, 앞의 책, 1쪽.

38) 홍순권에 의하면, 일제하의 군수는 1920년대에는 전체의 79.2%가 서기를 거쳐 군수로 임용되었으며, 1930년대에는 70%가 서기를 거쳐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서기가 바로 향리 또는 그 후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제시기의 서기란 이미 신분의 표시가 아니며, 근대 관료체계상의 한 직급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지금 선내 300명의 군수 중 260여 명의 군수는 모두 아전의 자제(출신)에서 나왔다고 한다”는 稲葉岩吉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순권, 〈일제시기의 지방통치와 조선인 관리에 관한 일고찰〉(《국사관논총》64, 국사편찬위원회, 1995).

39)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6일, 잡보에 의하면, 사족 전체수 대비 토지소유자는 4,826명 : 22,746명, 이교 전체 대비 토지소유자 수는 136명 : 2,842명으로 되어 있다.

40)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좀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실증작업 이후로 미뤄져야 할 것이다.

3) 상민·천민층의 성장

개항이후 근대국가로의 발전과정에서 신분적 차별의 철폐는 필수과제 중의 하나였다. 때문에 1884년 갑신정변 단계에서부터 신분제 폐지에 관한 논의는 계속 되어왔다. 하지만 한말 신분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의 계기는 역시 1894년의 갑오개혁¹⁾이었다. 당시 개화파정권은 신분제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고, 그것은 특히 양반 특권의 폐지와 노비해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때문에 양반과 일반 상민사이를 구분하던 특권이 사라지고, 동시에 상민보다 하위에 놓여 있던 천민집단이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어도 형식적이고 대체적인 수준에서는 전 인민의 평등화가 실현된 것이다. 상민들에게는 전과 별로 달라진 점이 없지만 적어도 종래 양반에게만 허용되던 사실상의 각종 특권, 예를 들면 과거제·관직 등용 등이 사라지면서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비의 해방과 그 밖의 白丁 등 천민집단의 해방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분제 폐지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사회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할 수는 없었다. 신분제를 통해 작용했던 경제적 불평등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오히려 자본주의적 경향이 개항이후 점차 활발히 전개되면서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어 가고 있었다. 노비였던 자들은 전호 또는 임노동자로 바뀌어 갔으며, 때로는 영세소상인, 또는 수공업자가 되었다. 한편 백정·기생·승려 등의 천민집단들은 제약을 완벽하게 넘어서기는 어려웠다.

(1) 1894년의 신분제 폐지 정책과 평민

개항이후 일제에 의해 식민지 지배체제로 편입되는 1910년까지는 비록 짧은 시기지만 신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 왔다. 조선후기부터 금

1) 조성윤, 〈甲午改革期 開化派政權의 身分制 폐지정책〉(《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韓國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 知識產業社, 1997).

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신분제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신분간의 뒤섞임 현상, 즉 양반신분의 양적 팽창 속에서 물락양반이 속출하고 이들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가 하면, 경제력을 확보한 평민²⁾들이 신분을 돈으로 사고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향과 신향의 대립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국가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때로는 이용하고 있었다. 1801년의 노비해방은 그 단적인 보기였다. 공노비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常民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상민화해서 살고 있는 공노비들, 더 이상 身役을 거두기도 어렵게 된 이미 국가의 손을 떠난, 그러나 적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노비인 이들을 차라리 풀어줌으로써 국가의 조세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³⁾

이러한 신분제 붕괴 현상은 개항 전후한 시기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개항은 평민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유리한 사회·정치환경이 점차 조성되는 계기였다. 외세가 급속히 밀려들어오고 전국적으로 민란이 쉴새없이 터지는 상황에서 보수 지배층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다. 당연히 정치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민중들은 계속 민란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서 점차 자신들의 사회의식을 키워가고 있었다.

전통적인 신분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입법기관인 軍國機務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것은 길게 보면 조선후기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거대한 신분제 폐지 운동의 흐름의 결과였으며, 직접적으로는 갑오농민전쟁으로 분출된 민중의 강렬한 요구에 밀려 이루어진 것이었다.⁴⁾ 1894년에 신분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기는 했지만 이는 이미 무너져 가던 신분제도를 법적으로 확인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신분제도의 법적 폐지 선언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전통적 신분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2) 이 글에서 平民은 특정 범주의 신분 집단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양반·중인 범주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집단을 한데 묶어 부르기 위해 임시로 사용한 개념이다. 따라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말 호적에는 평민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특별한 집단을 가리키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아직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밝혀진 바는 없다.

3) 全炯澤, 《朝鮮後期 奴婢身分研究》(一潮閣, 1989), 241쪽.

4) 慎鏞廈, 〈1894년의 社會身分制의 폐지〉(《韓國近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사회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가의 징세와 戸役 및 군역을 통해 각 개인의 노동력을 직접 수탈하는 지배방식이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노비해방이 이루어지고 있던 속에서 신분제도의 폐지는 이러한 현실을 법적으로 뒤늦게 인정하는 것이었다.

개화파 정권의 신분제 폐지 정책은 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일본측이 제시한 개혁안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갖고 있던 평소의 개혁 구상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정책 내용속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농민군의 요구를, 또 어떤 부분이 자신들의 개혁 구상을 실천에 옮긴 것인지를 구분하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농민군의 폐정 개혁 요구 가운데 신분과 관련된 것은 반상 차별의 문제와 노비제, 천민해방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개화파 정권의 신분 개혁 정책에는 이러한 농민군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노비제를 폐지하고 천민을 해방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개화파 정권이 의도했던 개혁의 무게 중심은 그 보다는 오히려 반상의 차별을 없애고, 양반신분의 각종 특권을 폐지하는 쪽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초기에 발표되었던 의안 내용 가운데 노비제 폐지와 천민해방에 관해서는 원칙을 강조한 2개의 의안만 발표되었을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나머지 의안들은 양반신분 유지의 결정적인 통로였던 과거제를 폐지하고 문벌 중심의 관료 등용과 문무 차별을 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크게 대조를 이룬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사회 관습 개혁 내용은 대부분 유교 윤리를 신봉하는 양반을 중심으로 짜여졌던 서얼 차별·조혼·연좌제·과부 재가 금지 등 가족제도와 관련된 관습은 물론 복식·두발·가마 사용 등의 신분간 차별속에서 양반 지배층의 특권이자 외적 상징으로 작용하던 것들을 폐지 내지 개혁함으로써 양반신분과 일반 평민신분사이의 현실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데 힘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개혁 내용은 주로 양반 지배층 내부의 관습을 제거하려는 것이었고, 노비 천민층의 해방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상의 차별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였던 천민집단에 대한 차별 관

행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⁵⁾ 물론 나중에 박영효정권 때 양반과 官의 일반민에 대한 차별 관습에 관한 여러 가지 시정지시가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⁶⁾ 양반중심의 사회 관습 개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것이었다.

갑오개혁을 주도한 개화파 인물들은 개항이후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으며, 지주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세제도의 개혁과 통상무역을 통한 상공업 진흥, 그리고 근대적 관료제도의 도입 등의 개혁 방안을 구상·실현하고 있었다. 신분제 폐지 정책은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된 갑오개혁의 일환이었다.⁷⁾ 개화파는 지배층 중심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한편 지주전호제와 신분제를 폐지하라는 압력이 밑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 올라오고 있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민중의 요구를 수용,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지방 행정을 장악해가던 상황에서 그들이 요구한 폐정개혁안을 받아들여 적절한 수습책을 제시하는 것이 당장 중요했다.⁸⁾

그렇지만 이들 개화파 정권 참여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지주계급이자 동시에 양반신분 보유자들이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보유한 특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특히 지주제는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었으며, 개항이후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지주제는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 발전하고 있었으므로 보호하고 키워야 할 대상이었다. 그리고 근대 상공업을 발전시켜 나

5) 천민, 특히 백정에 대한 심한 차별 태우는 한말은 물론 일제 침략기에도 계속되었 다. 상세한 내용은 김중섭, 《형평운동 연구》(민영사, 1994)를 참고 할 수 있다.

6) 제1조 民을 臨하는 道는 心을 用함을 公平히 하야 貴賤과 親疎로서 毫末이라 도 差別이 有케 아니할 事.

제6조 大小民이 官庭에 跪하고 立하는 節과 民이라 稱하고 小人이라 稱하는 例를 一切 自便케 하고 勒行치 말을 事.

제7조 官長이 脊隸에게와 主인이 雇傭에게 專히 待치 말을 事.
제1·6·7조의 공통점은 더 이상 신분제가 관철되던 시대의 구습을 따르지 말 고 상하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어 나가라는 지시라고 생각된다.

《高宗實錄》, 고종 32년 1월 29일.

《官報》, 1895년 3월 10일.

7) 金容燮, <甲申·甲午改革期 開化派의 農業論>(《增補版 韓國近代農業史研究》下, 一潮閣, 1984), 89~94쪽.

8) 金容燮, <光武年間의 量田·地契事業>(위의 책), 259쪽.

갈 때도 지주계급이 스스로 농업을 근대화하면서 동시에 상공업의 발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때문에 갑오개혁을 추진한 개화파들이 볼 때 경제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조세제도와 국가의 재정구조였지, 지주제가 아니었다.⁹⁾

개화파는 대부분 지주집안 출신이었고, 지주제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여기에 근대적인 상공업의 육성을 통한 부국강병이야말로 근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개혁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이념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했으며, 이들에게는 종래의 유교 이념과 양반신분을 내세우는 것, 즉 신분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커다란 의미가 없었다. 사실 신분제 유지를 통해서 지배 세력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는 지주제와 신분제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진 때문이었다. 양반신분 보유자의 일부만이 지주로, 나머지 대부분은 자영농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양반신분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외적 강제를 강화해 중세국가의 전통적 지배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 아니었다. 따라서 신분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치루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제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적 귀결이 아닐 수 없었다. 물론 그들 대부분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노비해방에 그리 적극적일 수는 없었지만, 신분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근대국가 체제를 수립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이를 폐지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갑오개혁의 첫 단추를 채우는 초기부터 신분제를 개혁하는 각종 의안을 발표한 것은 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수습책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구상하던 근대화 방안의 실천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노비제 폐지 조치와 천민해방에 관한 선언은 2개 의안에 기본원칙만 담았을 뿐 상세한 규정은 결여되어 있었다. 이어 양반 지배층 내부에서 터져나온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노비제의 잔존을 인정하고 개혁안이 신분제

9) 金容燮, 위의 글(1984a).

———, 〈近代化過程에서의 農業改革의 두 方向〉(《한국 자본주의 성격논쟁》, 大旺社, 1988).

를 전면 개혁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상당한 정도로 개혁 내용을 후퇴시키기도 했다. 그 뒤에도 백정·승려·기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치를 취했을 뿐, 이들을 완전한 자유민으로 해방시키는 분명한 조치는 취한 적이 없다. 이것은 개화파가 농민군의 요구에 따라 일종의 수습책으로 천민해방을 실시한 것일 뿐, 천민해방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천민해방을 규정한 의안은 흔히 七般賤人을 모두 해방한 것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간단하여 천민 가운데 일부인 驛人¹⁰⁾·倡優·皮工 등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백정을 비롯하여 승려·기생 등 다른 천민집단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농민군이 폐정개혁 요구에서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특히 백정의 해방을 강조하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백정해방에 대한 언급은 결코 무시할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백정에 대한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후속 조치로 나타났다.¹¹⁾ 그리고 “屠戶를 천민에서 면하게 하고 호적을 만들도록 허락하였다”¹²⁾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나중에 면천 조치가 내려진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 그들에게 허락된 호적은 일반 호적이 아닌 그들만의 특수 호적이었다. 光武戶籍에서 노비였던 자들과 역인·창우·파공 등은 모두 일반 호적에 차별없이 함께 섞여 들어간 데 비해, 백정과 승려는 따로 특수 호적을 작성하고 있었던 사실이 한꺼번에 차별 조치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음을

10) 驛人은 身良役賤 집단이었을 뿐, 칠반천인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인에 대해 면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들을 사실상 천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물론 신양역천 집단 중에서도 특히 역인은 세습役으로 천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었으므로 천인 집단으로 인식되기에 충분 했을 것이다.

劉承源, 《朝鮮初期 身分制研究》(乙酉文化社, 1987).

趙炳魯, 〈朝鮮後期 驛民의 編成과 入役形態〉(송병기 외, 《韓國史의 理解 : 朝鮮時代 1》, 신서원, 1991).

11) 黃玹은 1895년 12월에 “白丁들에게 면천을 허락해주자 그들은 漆笠을 쓰고 다녔다. 옛 풍속에 영남과 호남의 백정들은 감히 칠립을 쓰지 못하고 平涼子만 썼으나 内部에서 여러 차례 칙령을 내려 그들도 평민과 같이 칠립을 쓰게 하였다”라고 기록했다(黃玹, 《梅泉野錄》, 광무 4년 경자).

12) 黃玹, 《梅泉野錄》, 광무 4년 경자.

말해준다¹³⁾.

개화파 정권이 추진한 신분제 폐지 정책은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중세의 기본틀을 개혁하는 것이었지만, 총론에서만 그러할 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불철저한 점을 갖고 있었고, 세력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칠 때는 그나마 자신들의 개혁안을 부분적으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갑오개혁이 전적으로 일본군의 무력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안 내용이 일본에 의해 강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주고 있었다. 유생들의 입장에서는 외세의 위협과 자신들의 기반을 없애려 드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한꺼번에 겹친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볼 때도 이들의 개혁안은 일본을 등에 업고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적 위기의식이 이 개혁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2) 신분제 폐지 이후의 평민신분

1894년 갑오개혁이후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속에서 신분구조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사라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말에 신분제의 어떤 측면이 먼저 붕괴되고 사라져 갔으며, 신분제의 어떤 측면이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변화에 완강한 저항을 보이는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 물론 갑오개혁이후 신분제는 종전에 비해 판이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신분제도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사회 변화에 곧바로 투영되지 않을지라도 전통적 신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말에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신분제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노비의 경우, 특히 한 집에서 주인과 함께 생활을 하던 사환 노비의 경우에 그들이 법적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

13) 현재 남아 있는 광무 호적 가운데 상당한 수가 바로 이들의 특수 호적이다. 일본 京都大學 文學部 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는 《韓國戶籍成冊》 중 〈楊州郡所在各寺刹主掌僧及外他寄住僧徒錄 各年兆成冊〉(광무 8년), 〈忠淸南道泰安郡 各寺僧徒成冊〉(광무 9년), 〈江原道 春川郡 癸卯度屠漢戶口成冊〉(광무 7년) 등이 보기이다.

서 곧바로 주인(上典)과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는 없었다. 결정적인 것은 노비들의 대부분은 신분적으로 노비문서가 아무런 쓸모 없는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양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신분해방은 법으로 제도화되었지만, 그들이 자유민으로 살아갈 경제적 기반, 특히 토지는 여전히 지주계급의 손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지주-전호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었고, 자신의 독자적인 소유의 주택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한 주인집 행랑에 거주하거나, 주인집을 빌려 사는 생활이 계속 되었다. 한편 주인집에 거주하던 사환노비들은 신분제도 폐지 이후 주인집을 떠나 독자적인 살길을 찾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많은 경우는 주인집에 그대로 놀러 앉아 노비시절과 별로 다름없이 주인집 각종 집안 일을 하고 주인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경작했을 것이다.

신분의식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다. 법은 사회적 관습이 유지될 수 있게 빙쳐주는 베품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분과 관련된 법이 폐기되고 나서도 신분 차별 관습은 여전히 의미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신분에 대한 억압적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 신분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념은 강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양반과 상민의 경계, 노비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들고 있었으면서도 천민집단에 대한 차별의식은 여전히 강했다. 경남 진주군을 비롯한 인근 16개 郡의 백정들이 1902년 2월에 차별관습을 없애달라고 관찰사에게 탄원하였지만, 관찰사는 오히려 소가죽으로 관의 띠를 하도록 지시하여 굴욕적인 신분표시를 강요했다. 또한 황해도 해주에서는 정부관리가 신분을 해방 시켜주는 대가로 백정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내무부는 각 지방 관청에 훈령을 내려보내 양반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천민들의 처벌을 지시하기도 했다.¹⁴⁾

14) 《皇城新聞》, 1900년 2월 28일 ; 1901년 2월 8일 ; 1901년 5월 16일.

《독립신문》, 1896년 11월 3일 ; 1897년 3월 13일 ; 1899년 7월 8일.

김중섭, 《형평운동의 연구-일제 침략기 백정의 사회사》(민영사, 1994), 54쪽.

그런 상황속에서도 백정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갔다. 경남 진주, 경북 예천, 황해도 해주에서는 백정들은 부당한 관리의 처우에 대항하여 상급기관에 제소하는 경우도 생겨났고, 패랭이 대신에 일반인들처럼 갓과 망건을 쓰는 등 옷차림의 신분 차이를 없애줄 것을 왕과 관청에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1900년에 진주에서 일반인과 똑같은 의복을 입어도 좋다는 관청의 허락을 받은 백정들이 일반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편 새로 늘어나기 시작한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백정들도 있었는데, 선교사가 백정들을 일반인 신도들과 합석시키려 하자, 대부분의 신도들이 거부하였고, 불만을 품은 일부 신도들은 예배당을 떠나기까지 하였다.¹⁵⁾

이처럼 완강했던 여러 형태의 차별 관습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점차 사라져 갔다. 물론 백정 집단거주 마을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일반인들의 거주지역으로 옮겨와 살기 시작한 백정들이 늘어났으며, 일반인들과의 접촉도 비교적 쉬워졌는데, 이러한 모습은 백정들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면서 동시에 일반인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음을 뜻한다.¹⁶⁾

한편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음도 분명하다. 우선 양반집단에 비해 절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차단당해 오던 것이 점차 열리고 있었다. 각종 학교 입학 문호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모든 교육과 실제 행정활동이 국문을 적어도 국한문을 바탕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읽기 쉬운 신문들도 쏟아져 나왔다(《독립신문》·《제국신문》·《황성신문》 등).

갑오개혁이후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되어 있었으나, 종래의 신분관념은 존속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한제국기 신문을 살펴보면 신분을 둘러싼 글이 자주 실렸다. 이러한 신분 관련 기사들은 대체로 신분차별을 비판하고, 상민·천민층들로 하여금 신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皇城新聞》의 경우 관직임용에서의 신분적 차별을 주된 비판의 초점으로 삼고 있었다. 즉 “寒門微族의 자제는 학문이 두터워도 등용의 기회

15) 임순만·형평운동 70주년 기념사업회 엮음, 〈기독교 전파가 백정 공동체에 미친 영향〉(《형평운동의 재인식》, 솔출판사, 1993).

16) 김중섭, 위의 글, 55쪽.

가 적고 華族은 懶怠하고 학문이 부족해도 서용되는 현실”¹⁷⁾을 비판하면서 “문벌과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才藝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만 내수를 다져 외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¹⁸⁾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황성신문》의 견해는 그 담당자들이 주로 문벌이 낳은 양반이거나 중인출신이라는 점과 관계가 있었지만, 동시에 법적 신분제가 폐지되고, 양반 세족들의 특권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나왔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현실이 바뀌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더라도 당시 신문기사들은 대립 갈등 과정을 겪으면서 평민들이 스스로 신분의식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두 기사를 보자.

- A. 일전에 검은돌 사는 전가가 그 동리 사는 김모를 거려 경무청에 정장하였는데, 그 사의인 즉, 김가와 전가가 다 막버리군이라. 연강의 풍속이 쪽지게 지고 벼리 먹은 것은 양반이오 등테지고 벼리 먹은 것은 상놈으로 분별이 뚜렷한 배라. 전가등테가 어디를 가는데 김가 쪽지게가 요사이 잘 있으나 한즉, 전등테에 말이 네나 내나 두질생에 목을 넣고 생애하기는 일반이어늘 하대 하는 일이 웬일이냐 하매 김쪽지게가 대노하야 양반더려 무례히 욕한다고 전등테를 구타하매 전등테에 아비가 나와 만류하려는데 김쪽지게에 삼형제가 내다라 전등테 부자를 무수히 난타한 일이라 하니 우리 나라 여러 가지 디테는 일오 알 수 없더라(《매일신문》 7, 광무 2년 4월 16일, 잡보).
- B. 충청감사 송세현씨가 갈너 올 때에 공주 아천 서한익에게 가하 몇 천량을 지고 왔는대 서가가 송씨를 대하야 가하전을 재촉하매 송씨 대답이 그 때에 이리 이리 구쳐하여 주었거늘 무삼 가하를 다시 말하는냐 한즉 서가의 말이 갑오 이전에는 송우암택을 두려워 당당히 받을 것을 말을 못하였거니와 지금이 야 경계 받게 무엇이 무서우리오하고 돈을 재촉하였더니, 도내 유생들이 관찰부에 정소하고 서가가 송우암을 욕되게 하였다고 치죄하여 달라하매 관찰부에서 서한익을 착수하였다가 몇일 후에 서가는 방송하고 그 아우를 되수하였더니 서한익을 내노았다고 경주 유생 이복영씨 등이 법부대신에게 연명 등소를 하다더라(《매일신문》 17, 광무 2년 4월 28일, 잡보).

A 기사에는 한강가 포구에서 ‘막벌이꾼’으로 살아가는 거리 임노동자들이 등장하는데, 흥미 있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도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양반은 지게를 지지만, 평민들은 반드시 등짐을 지는 것이 관

17) 《皇城新聞》, 1902년 4월 9일.

18) 《皇城新聞》, 1898년 10월 6일.

행이었고, 이런 관행이 지켜져 왔다는 것이다. 양반이 지게를 지는 임노동자가 되었다면, 경제적 형편으로 따지면 일반 평민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막벌이꾼으로 살아가는 몰락 양반들이 한 둘이 아니라 집단으로 존재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차별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경제 수준이 비슷해져도 반상의식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했고, 같은 직업군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양반노동자는 상민노동자에게 下待(반말)를 하고, 상민은 양반노동자에게 존대말을 써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갑오개혁이후 상민 노동자들은 더 이상 상하의 차별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주장했고, 이 때문에 구타를 당하자, 관에 고발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B 기사에서는 공주 아전이 수천 냥의 돈을 벌리고도 갚지 않던 충청감사를 역임한 고위관료에게 돈을 재촉하면서, 더 이상 양반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전 스스로가 갑오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달라졌음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충청도내 유생들과 경주 유생 이복영은 이러한 아전의 태도를 양반이자 지체높은 고위관리인 전감찰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의 질서와 권위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관에 고발하고 있다.

A와 B 두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대립적 상황은 당시 신분 차별 철폐를 둘러싼 기득권 양반 세력과 상민·천민에 중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평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을 나타낸다.

(3) 호적에 나타난 평민의 변화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법적 제도적으로 폐지된 갑오개혁이후 신분질서의 유지와 조세 징수를 위한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삼는 호적제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896년 정부는 전국적인 규모의 새로운 호구조사를 위하여 촉령 제61호로 〈戶口調查規則〉(1896. 9. 1)을 마련하고, 이어서 内部令 제8호 〈戶口調查細則〉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였다.¹⁹⁾ 그리고는 1896년부터 새로운

19) 趙錫坤, 〈光武年間의 戶政運營에 관한 小考〉(《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호적이 작성되기 시작했으며, 1903년과 1906년에도 집중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때 작성된 호적을 그 이전에 작성된 호적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신호적 또는 光武戶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른다.

구호적을 작성할 때 기초적인 작업으로 각 호마다 호구 단자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다시 확인한 문서로 준호구를 지급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때 호구조사에는 어떤 종류의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지침은 있었지만,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양식을 배포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신호적은 구호적과 달리 일정하게 규격화된 호구표 양식이 정해져 있고, 이 양식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었다. 신호적 양식을 보면 구호적에 기재하던 내용과는 크게 달라진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

① 그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노비제의 폐지였다. 그 이전 1801년에 이미 공노비는 폐지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정식으로 사노비까지 노비의 전면적 해방이 법적으로 정리·공포된 것이다. 따라서 구호적에서는 기재 양식상 가장 뚜렷이 구별되던 노비와 다른 신분과의 차별적 기재방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며, 모든 호구를 다 같은 양식을 이용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구호적에서는 노비호의 경우 호주와 처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하고는 각각의 부모와 上典을 기록하여 소유권을 확정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신분제가 폐지된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갑오개혁 당시 노비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철폐되었으므로, 구호적에서 대단히 중요시되던 노비와 일반 양인의 구분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호구의 중요 내용 가운데 하나였던 노비 소유에 관한 항목 역시 사라졌다. 이제 노비를 더 이상 파악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② 호주의 이름·나이·본관·四祖 등의 기재는 구호적과 다를 바 없지만, 직역을 직업으로 바꾸어 기재하도록 되었고, 그것도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간단하게 기재하도록 되었다. 구호적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호주와 가족의 직역이었다. 그러나 직역 대신 신호적에서는 직업을 적도록 되어 있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 때는 이미 구호적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시하던 군역과 각종 요역의 배정을 위한 인원 파악이라는 목표가 사라졌다

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역을 기재하던 것을 직업을 기재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물론 신호적에 나타나는 직업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직업(Occupation)과 거의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職과 業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말하자면 직은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리고 업은 구체적인 생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분리시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기자를 들어 양반신분이면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자는 ‘職士業農’이라고 동시에 기재하는 경우가 그랬다. 그러나 이렇게 기재한 경우는 적은 편이고 과거 관직을 역임했거나 양반들은 대부분 관직을 기재하거나 幼學 등으로 자신의 직업을 기재하였는데, 이들이 대부분 지주였거나 아니면 자영농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업보다는 직을 더 중요시했던 것 같다. 반면 일반 상민들과 갑오개혁으로 노비제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호적에 노비로 기재하지 않게 된 노비였던 자들은 자신의 생업, 말하자면 그들의 현실적인 경제 활동의 내용을 적고 있다.

이처럼 직역을 통해서 관직을 적거나 아니면 현재 지고 있는 군역의 내용을 기재하던 방식으로부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관직을 적거나 아니면 농민·상민 등으로 구체적인 경제활동상의 내용을 적도록 바뀐 것은 호적 작성의 목적 가운데 중요했던 군역 부과라는 목적이 크게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경제활동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구호적에서는 양반과 양인의 경우 호주와 호주 四祖(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와할아버지)의 직역과 처의 4조의 직역을 모두 적도록 되어 있었고 노비는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모의 성명과 상전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양반의 경우 호적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양반신분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으며, 노비는 그 소유 또는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뀌어 호주의 4조를 적기는 적되 적는 요령이 훨씬 간소화되었다. 말하자면 호주의 4조가 어떤 직역을 갖고 있었는지는 신분제를 폐지한 마당에 더 이상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이는 연좌제의 폐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구호적

에서는 처의 4조에 관해 호주와 같은 비중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나, 신호적에서는 처의 4조를 적는 것이 폐지되었다. 다만 처의 이름·성씨·본관·나이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줄어들었고, 그것도 同居親屬난에 일반 다른 가구원들과 함께 간단히 적도록 바뀌었다.

물론 신호적에는 염연히 전통적인 신분, 즉 그 당시의 신분 및 계층을 이해할 수 있는 호주와 처는 물론 호주 4조의 직역도 밝혀져 있다. 그러나 이 호적은 호구를 조사하는 목표가 상당히 달라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호적이다. 그리고 호주의 신분을 유지하고 과거 응시 등의 경우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던 4조의 직역 기재도 이제는 더 이상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4조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는 난에 직역을 생략하고 이름만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조사 대상 중에서 70% 이상이 4조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신분제를 국가적으로 공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갑오개혁 당시 과거제가 폐지된 사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④ 구호적에서는 호주이외의 자녀, 동생 등의 친속·비친속·노비·雇工 등의 구성원의 호주와의 관계·이름·나이·직역 등을 모두 호적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신호적에서는 동거친속난에는 처를 비롯하여 奉母·자녀, 그밖의 동생·조카 등 함께 거주하는 친속의 관계·이름·나이를 간단히 적도록 되어 있을 뿐 직역은 적지 않았으며, 친속이 아닌 구성원은 寄口 항목을 설정하여 남녀 숫자만 적도록 하였다²⁰⁾. 기구 항목과 함께 雇傭 항목을 설정하여 고공을 비롯한 각종 고용인 역시 남녀 숫자만을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호주를 비롯한 동거친속과 기구, 고용 인원 모두를 합친 ‘現存人口’ 합계를 내는 항목을 특별히 따로 두고 있다. 이로서 신호적은 구호적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집에 살고 있는 구성원의 내용과 숫자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검토했듯이 신호적을 통해서는 호구조사에서 매우 중요시되던 직역

20) 寄口 항목에 관해서는 戶口調查細則 第4條를 보면 “人民中에 無家無依하여 原籍을 別成치 못하고 族戚知舊 間의 戶內에 寄居하거나 戚一身만 寄食하여도 寄口에 參入하여 人口漏落을 없게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 4조 대신 오늘날의 센서스개념에 좀더 가까운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 졌다. 말하자면 역부담 인구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작업과 신분을 밝혀주는 내용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인구수와 가족 관계, 그리고 경제활동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한 조사 내용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신호적에서는 거주지 본위로 호적을 작성하고 부모, 형제, 자손이라도 分居하면 원칙적으로 호적을 따로 작성하고 同居일 경우에는 親居, 기구, 고용도 호적에 기재하고 있는 것이 이 점을 말해 준다.

〈표 1〉은 한말 광무호적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직업 분류 기준의 일부이다. 종래 양반·중인·상민·노비 등으로 분류해보던 직역 분류와는 달리, 한말에는 주로 직업을 기준으로 했음은 이미 위에서 지적했는데, 이 때 양반 집단은 대부분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관직명, 또는 자신의 품계, 또는 前職의 명칭 등을 내세워으로써 직역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종래 주로 군역을 기재하던 평민들은 자신의 생업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표 1〉

한말 직업 분류 기준표

신 분	직 역
常民	농 민 農, 農業, 農夫, 農民
	商 民 商民, 商業, 商, 油商, 酒商, 木商, 鹽商, 藥商, 食商, 煙商, 白木廳商民, 布廳商民
	市 民 市民, 市廳市民, 米廳, 床廳人, 壽進床廳市民, 白木廳, 布廳, 懸房
	平 民 平民, 平人, 良民, 生民, 良人, 良女
	木 手 木手, 木工, 木工人
	수공업자 工民, 工業, 匠工, 笠工, 泥匠, 鞋店, 樂工
	관청근무 技師, 技手, 生徒, 見習生, 員役, 入役, 立役, 雇員, 庫直, 直, 守宮, 守僕, 僕正, 牌長, 牌員
	군 병 軍人, 軍士, 參軍, 馬隊, 守直軍, 扈衛軍, 扈輦隊, 憲兵, 兵丁, 兵卒, 陸軍步兵, 軍樂隊, 軍官, 守門將, 守護軍
	여자호주 召史
	기 타 藥生, 典當鋪, 藥局, 醫, 醫藥
근대 직업	警察(警務官, 摄巡, 巡檢), 學校(中學校長, 教官, 教員, 教師, 學徒, 學生, 學業, 學文), 新聞社 社員, 銀行 副總務

호적에서 상민은 자신의 생업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갑오개혁이전에 노비신분이었던 자들도 모두 포함된다. 농민·목수·수공업자·상민·시민·평민·관청 근무자(이른바 하급공무원)·하급 군병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민과 시민은 모두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들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상업활동 종사자로는 商民·商業·商과 같이 막연하게 상인임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油商·酒商·木商·鹽商·藥商·食商·煙商처럼 자신의 취급 물종을 중심으로 어떤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白木廬商民과 布廬商民처럼 시전 이름 뒤에 상민이라고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하나로 둑어 상민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의 경우보다는 적지만 市民이라고 만 직업을 밝히는 경우와 市廬市民·壽進床廬市民과 같이 시전 이름을 앞에 붙이면서 시민이라고 밝히는 경우, 그리고 米廬·床廬人·白木廬·布廬·懸房과 같이 시전 이름을 직업 난에 적어 자신이 이 점포를 운영하거나, 점포에서 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시전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을 주로 가리키는 범주로 시민을 설정하였다. 일부 시전상인들도 商民이라고 기재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상민은 시전상인을 제외한 각종 상인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공업자들과 이를 상민·시민은 상공업 종사자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러나 평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관청 근무자와 하급 군병은 조선후기 호적에서 보는 각종 군역 보유자들이나 조예·나장·日守 등의 천역 종사자, 공노비들의 입역 등과는 전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급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나의 직업으로 관청에 근무하고, 하급 군병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물론 이 가운데 하급 군병은 모두 1907년 군대 해산 당시 직업을 잊게 된다.

근대 직업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들은 주로 경찰과 학교의 직원 및 학생, 그리고 신문사·은행 등의 직원들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신분으로 볼 때 양반출신·중인출신·상민출신이 모두 가능한 종류의 직업이고, 전통적인 신분으로 환원시켜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따로 떼어놓았다. 이들 근

대적 직업은 양반출신들이 진출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趙誠倫〉

4) 가족관계¹⁾의 변화

(1) 갑오개혁이전의 가족관계 변화

가. 갑신정변기의 가족관계

근대적인 개혁운동의 효시인 甲申政變의 지도자의 한사람인 金玉均이 1885년에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 《甲申日錄》에서 언급한 이른바 政綱14條에서는 가족에 대한 구체적 개혁안은 없다. 그러나 제2항에서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을 제정하고 재능에 의해 인재를 등용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가족이 속한 문벌의 신분제적 기반을 해소시켜 개인을 능력 위주로 평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항목 때문에 갑신정변의 근대민주주의지향의 성격이 보다 선명히 부각되었다고 평가된다.²⁾ 즉 문벌의 폐지와 능력위주의 인재 등용은 인민평등권의 보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갑신정변 3년 후인 1888년 1월 13일 갑신정변의 지도자중 일인인 朴泳孝가 망명지인 일본에서 집필한 上訴文에서는 보다 괄목할만한 구체적인 가족관계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항목에서의 ‘가족관계’는 사회학적 가족 상호간의 관계에 국한시킨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의 ‘가족에 관계’된 제 조건의 변모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가족관계를 규정하는 호적제도에 관한 중요 연구업적은 다음을 들 수 있다.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허홍식, 〈고려 및 이조의 호적〉(『한국중세사회사자료집』, 아세아문화사, 1976).

김영하·허홍식, 〈한국중세의 호적에 미친 당송호적제도의 영향〉(『한국사연구』 19, 1978).

최승희, 〈호구단자·준호구에 대하여〉(『규장각』 7, 1983).

武田幸男, 〈학습원대학장 조선호적대장의 기초적 연구〉(1983).

역사학회, 『한국친족제도 연구』(一潮閣, 1992).

李丙洙, 〈우리나라 근대화와 刑法大全의 頒示－家族法을 中心으로하여－〉(『法史學研究』 2, 1975).

2) 李光麟, 『開化黨研究』(一潮閣, 1973).

첫째, 사색으로 하여금 구래의 혐오스러운 풍습인 相婚姻을 폐지할 것.
 둘째, 어린 나이에 혼인하는 것을 금하고 古俗에 따라 혼인연령을 제한할 것.
 셋째, 지아비가 자신의 아내에게 강포히 하는 것을 금할 것.
 넷째, 슬을 내려 남자가 취첩하는 것을 금하고, 과부가 개가하는 일을 임의대로 할 것을 허락할 것.
 다섯째, 자손을 양육함에 있어 강포히 하는 것을 금할 것.
 여섯째, 남녀 부부는 권리가 균등하다.

(《日本外交文書》21, 문서번호 106, 292~311쪽).

특히 남자는 아내가 있는데도 첨을 얻어 아내에게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여자는 개가할 수 없거나 이혼할 수 없으며, 여자의 간음은 금하면서 남자의 품행이 어지러운 것은 금하지 않는 것은 어떤 연고인가. 혹은 남자는 아내를 잃으면 재취할 수 있는데 여자는 남편을 잃거나 아직 합궁하지도 않았는데 재가할 수 없음 등을 지적하면서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여성의 이혼·재혼권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즉 박영효의 개화상소는 전반적인 국정개혁요구이므로 김옥균의 『갑신일록』과 상보하여 이해되어져야 하겠지만 가족관계의 측면에서만 볼 때, 첫째 봉건적 신분계급제도의 철폐, 둘째 남녀·부부의 평등권, 셋째 자녀의 인권 실현을 기도하였다고 파악되며, 이것은 유교적 가족윤리의 기본틀이 되는 三綱의 배격을 의미하는 가족법사상 봉건부정사상이 관철되었다고 평가된다.³⁾

다음 이 시기의 가족관계 변화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써 榞吉濬⁴⁾을 들 수 있다. 그가 1889년 가을에 집필한 『西遊見聞』은 전체 20편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가족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편 〈국민의 교육〉에서 외국의 교육제도를 소개하고 도덕교육, 재예교육, 그리고 공업교육을 교육의 三大綱이라며 강조하였는데, 이는 正德·利用·厚生의 전통적인 개념과 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⁵⁾ 특히 자녀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나 여성교육기구와 교육제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李內洙, 〈우리나라 近代化와 刑法大全의 頒示〉(《法史學研究》2), 253쪽.

4) 柳永益, 〈甲午更張 이전의 榞吉濬〉(《甲午更張研究》, 一潮閣, 1990).

5) 《西遊見聞》, 제3편.

제4편 <국민의 권리>에서 인간의 身命·재산·영업·집회·종교·언론·명예에 대한 자유와 그에 대해 정의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⁶⁾

제12편 <어린이를 양육하는 법>에서는 어린이 교육 특히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즉 “어린이는 나라의 근본이고, 여자는 어린이의 근본이며, 지금의 어머니는 옛날의 童女이다. 그러므로 동녀가 실상은 나라의 근본을 만든 근본이니, 그가 만약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근본이 되기는 고사하고 그 근본을 병들게 하거나 해칠 뿐이다. …여자를 교육하는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다”⁷⁾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계몽주의 내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여실히 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그밖에 제15편 <결혼하는 절차> · <여자를 대접하는 예절>에서는 서구식의 사교와 에티켓 및 일부일처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서 “몇년전에 미국대통령을 새로 선거할 때 국내의 여자들이 생각하기를, ‘어찌 남자만 대통령 자리에 있고 여자는 될 수 없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여자들이 대회를 열어 법관 鹿久尤의 부인을 지명하여…”⁹⁾하면서 미국 여성의 참정권운동과 전문직에의 여성 진출을 소개하기도 하였다.¹⁰⁾

물론 갑신정변은 실패한 개혁운동이었지만 이상의 개화사상가들의 구미 및 일본 여성에 관한 소개는 여성의 새로운 역할 및 가정과 사회에서의 새로운 인간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의 전개는 동학이라는 토대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6) 《西遊見聞》, 제4편.

7) 《西遊見聞》, 제12편.

8) 女性學教材編纂委員會 編, <近代化와 女性>(《女性學》, 韓瑞出版, 1985), 91~120쪽.

장미경 편저, 《오늘의 페미니즘－세계 여성운동》(문원, 1996), 18~20쪽.

9) 《西遊見聞》, 제15편.

10) 우에노 치즈코 著, 이승희 역, <부르조아 여성해방사상의 함정>(《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21~25쪽.

나. 동학의 가족관계

가) 신분제

동학은 당시 사회가 “임금(君)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고, 지어미가 지어미답지 못한...”¹¹⁾ 현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창도된 종교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崔濟愚는 먼저 君에 대하여 “入道한 그날부터 王子되어 無爲而化될 것이니 地上神仙 네 아니냐”¹²⁾라고 하여 신분제를 부정하고 나아가서 “우리 도는 地闢을 보는 것이 아니니라. 지별이 무엇이게 군자를 비유하느냐. 지별은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 더욱이 말세사람들이 자기네의 物慾之心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못된 벼룩이 아니냐”¹³⁾라고 관리들의 폐의 근원이 신분제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2대 교주 崔時亨 역시 인간의 평등사상에 기초를 두고 貴賤嫡庶의 구분을 배격하였다.¹⁴⁾ 물론 최제우가 언급한 군과 군자는 반드시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왕을 비롯한 상위 신분은 정치적·사상적 지배자로, 태어나면서 신분이 결정된 특수 신분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봉건사회에서의 그 특수 신분층을 부정하고, 누구나 노력에 의하여 군자가 될 수 있다고 공연한 것으로 파악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신분제의 혁파는 최제우가 양반가의 서자 이었고, 최시형의 경우 문자교육을 받지 못할 정도로 한미하여 머슴살이를 해야만 하였던 것과도 유관된다고 보여진다.

나) 부부

동학의 평등사상은 우선적으로 가정내의 여성에게 적용되었다. 최제우는 득도한 후 자신의 도를 권하면서 부인 박씨에게 교훈가를 지어 보내었다. 도의 기초는 가정에 있으며, 가정의 행복은 부부화순에 달려 있으므로 남자가

11) 李敦化, 《天道教創建史》 1권 1장 (天道教中央宗理院, 1933). 1쪽.

12) 《龍潭遺詞》, 教訓歌.

13) 李敦化, 앞의 책, 36쪽.

14) 李敦化, 위의 책, 7쪽.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며 몸소 실천하였다. 이에 관하여 《龍潭遺詞》〈道修詞〉에서 “家道和順하는 법은 婦人에게 관계하니, 부인은 경계를 다 벼리고 저도 역시 괴이하니 절통코 애달하다. 有是夫 有是妻라 하는 도리없다만은 현숙한 모든 벗은 차차로 경계해서 안심수도하여 주소”라 하였다. 즉 도의 성취여부는 부인에게 관계되며 수도하는 집에서의 가도화순은 남편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강제·강압이 아닌 和順의 강조는 권위주위적 가장을 지양하는 가족·부부관계 구축을 주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화순으로 이끄는 주체는 남성=夫에 두고 있어 완전한 평등과는 거리가 다소 있다고 보여진다.

이 점은 최시형의 경우도 같아 아내를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말며 인내와 사랑으로써 인간적인 대우와 인격적인 존중으로 대하라고 가르쳤다.

夫婦가 和順함은 우리 道의 初步니 도의 通不通이 도무지 内外의 和不和에 있나리라, 내외가 和하지 못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집에 불난 것을 끄지 않고 타인의 불을 끄는 자와 같으니라 그럼으로 夫人을 和하지 못하면 비록 날로 三牲의 用으로써 天主를 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感應할 바 없으리라 夫人이 或夫命을 쫓지 아니하거든 정성을 다하여 拜하라 溫言順話로써 一拜一拜하면 비록 盜跖의 惡이라도 感化가 되리니라(李敦化, 《天道教創建史》2편 6장).

일찍이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종을 해방하여 한 사람은 양녀로 삼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았다는 최제우의 고사를 미루어 그의 근대적인 여성관이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제우의 근대적 여성관은 그가 사형당한 후에 최시형에 의해 계속 발전하였다.

다) 부녀·어린이

최시형은 교리를 폐나가는 동안 특히 부녀·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가르치고, 남자들이 부녀·어린이에게 강폭이 하는 것은 自尊하는 태도에서 오는 것이라 하였다.

나는 비록 婦人·小兒의 말이라고 또한 배울 것은 배우며 쫓을 것은 쫓나니 이는 모든 선은 다 天語로 알고 믿음이니라. 이제 諸君의 行爲를 본즉 自尊하는 者 | 많으니 可歎할 일이로다. 내 | 또한 세상사람이어니 어찌 이런 마음이

없겠느냐마는 내 | 이를 하지 아니함은 한울을 養하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李敦化, 《天道教創建史》, 2편 2장).

즉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부녀자를 한울에 비유하였다.

라) 며느리

근대적 여성관은 최시형의 오랜 지하 잠행생활 동안 더욱이 성숙되어 갔다. 특히 1885년 상주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講道하였다.

내 일찍 청주 서택순가를 지나다가 그 子婦織布의 청을 듣고 서군에게 물으 되 군의 자부가 직포하느냐 친주직포하느냐 하매 서군이 나의 말을 不卞하였나니 어찌 서군뿐이리오(李敦化, 《天道教創建史》, 2편 6장).

이는 人乃天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실천철학인 事人如天에 관한 비유라하겠다. 즉 며느리를 종래의 며느리로 대우하지 말고, 그녀가 ‘侍天主’하고 있으므로 한울님으로써 대우하라고 하는 것이니, 최제우의 인간평등사상이 실천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인여천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 <내수도문>에 나타난 인간관

이상에서 살펴본 새로운 인간관이 잘 나타난 것이 <內修道文>이다. <내수도문>은 최시형이 1889년에 부녀를 위해 지은 경전으로서 修道의 本이 부인에게 있음을 통달하고 <내수도문>을 지었다고 전한다. <내수도문>에는 양반 사회의 질서속에서 가장 약자적 위치에 서게 되는 부녀(며느리) · 아동 · 노비들을 사랑하여 한울님을 섬기듯 하라고 하였다.

집안 모든 사람을 한울같이 恭敬하라 며느리를 사랑하라. 奴隸를 자식같이 사랑할라. 牛馬六畜을 허대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한울님이 怒하시나니라(李敦化, 《天道教創建史》, 2편 6장).

侍天主하고 있는 모든 인간 즉 아내 · 며느리 · 어린이 · 노비 · 우마육축까지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고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동학지도자들의 여성관이 실제로 이러하였음에도 최제우의 경우 그 표현에 있어서는 ‘女必從夫’ ‘夫和婦順’

등의 유교적 윤리관에서 비롯한 용어들이 눈에 띤다. 이것은 그가 처하였던 시대적 한계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최제우는 어려서부터 도학으로 이름높은 부친의 교육을 받아 유교적 소양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바) 집강소시기의 가족관계

『동학사』 권 2에 수록된 동학농민군의 집강소시기의 폐정개혁을 위한 행정요강 12개조중 신분과 가족관계의 내용은 4개 조항이다.

1. 노비문서는 태워 버릴 것.
1. 七般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平壤笠은 벗겨 버릴 것.
1. 청춘과부는 재가를 허할 것.
1. 관리의 채용은 지별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吳知泳, 《東學史》).

대체로 동학지도자들의 인간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동학과 동학농민운동과는 구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되는 두 세력의 인간관계의 개혁안이 대동소이하였던 것은 그것이 한 개인의 사상 나아가서는 한 종교단체의 사상만이 아닌 대부분의 기층사회민의 요구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보수적인 양반은 “동학에는 빈부와 귀천의 차가 없다”, “嫡庶奴主의 구별이 없다”, “內外尊卑의 구별이 없다”는 등 봉건적인 신분관에 입각하여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미 1801년 内需司를 위시한 각 宮房과 각 司에서 奴婢案을 불태움으로써 형식상 官奴婢가 폐지되었고, 1886년 私奴婢身分의 세습을 금하고 그 使役이 당대에 한정하게 됨으로써 노비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는 완전 폐기 일보직전 단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¹⁵⁾ 실제로 강릉 거주의 강릉 김씨 일가의 노비의 수가 1801년 양반의 3배이었는데, 1885년 양반 가족의 1/5로 축소된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¹⁶⁾

15) 한우근, 〈동학 농민봉기〉(《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1984).

16) 정경숙, 〈江陵金氏 戶口單子分析研究(2)－19세기 호구단자를 중심으로〉(《人文學報》 17집, 江陵大 人文科學研究所, 1994), 227~231쪽.

四方博, 〈李朝時代에 關한 身分階級別的 觀察〉(《朝鮮經濟의 研究》, 岩波書店, 1938), 388~389쪽.

즉 개화인사들의 저술은 외국에서 접했을 뿐이나, 외국여행에서 돌아와 접했되었으므로 한국의 실정과 관계없이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1800년대 민란시기를 배경으로 형성된 동학사상에서 이미 그 개혁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일반 서민들의 요구 내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인간평등관이 아래로부터 성숙되자 봉건적 신분인 양반도 서양의 근대법이라는 외피로 포장하여 입법화—법제화시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현실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동학지도자들의 여성관이 실제로 이러하였음에도 최제우의 경우 그 표현에 있어서는 ‘女必從夫’·‘夫和婦順’ 등의 유교적 윤리관에서 비롯한 용어들이 눈에 띠인다. 이것은 그가 처하였던 시대적 한계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다. 호구단자 기재상에 나타난 가족 구조의 변화

18세기말 19세기초의 호구단자상에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강릉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기까지 호구단자는 부계 4祖(父—祖—曾祖—外祖)와 치계 4조의 성명·신분·본을 갖추는 즉 내외4조의 신분을 통해 該 戶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기본구성이 되는 철저히 부부중심 체제이었다¹⁷⁾. 직계아들이 동거할 경우 아들만을 기재하는 2세대 가족이다. 이 시기는 家長¹⁸⁾의 홀어머니나 시댁의 가족이 동거할 경우 부계 4조와 치계 4조의 8조의 기본 기재양식을 갖춘 후 처족 다음에 솔거가족 예를 들어 가장의 어머니와 숙부·숙모 그리고 가장의 형제와 처 등을 기재하였다. 물론 실거주자 중심이지만 동거하는 가장의 손자와 딸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구단자만으로 가족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세기초에 호구단자 기재양식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즉 1810년 자료에 의하면 부계 4조만을 기재할 뿐 치계 4조는 생략되고, 부계 4조 기재

17) 白承鐘, 〈高麗後期의 八祖戶口〉(《韓國學報》34, 1984), 195쪽.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267~274쪽.

18) 호구단자상 該戶의 대표는 戶(戶某, 호 아무개)라 지칭되었고, 형법적 책임을 담당할 때는 家長이라 지칭되었다.

후 奉母 혹은 奉祖母의 경우 처앞에 기재후 처의 연령과 적¹⁹⁾만을 기재한다. 즉 기재상 처보다 시모 혹은 시댁 가족이 먼저 기재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1816년 자료에 의하면 손자가 등재되기도 한다. 18세기에 비하여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족 내에서의 처의 지위가 하락하고, 父-子-孫으로 계승되는 남계혈통 중심의 가부장권의 강화가 호구단자상에 반영되고 있다. 1885년의 자료에 의하면 서열상 가장의 아들보다 가장의 아우가 앞서기 때문인 듯 가장의 아우의 가족들이 먼저 기재되고 그 뒤에 가장의 아들과 손자가 기재되기도 하였다.²⁰⁾

그것은 실거주자를 모두 기재하여 호구조사의 실을 구현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²¹⁾ 18세기에는 3~4인으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비로소 여러 형제들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대가족의 형태가 자주 눈에 띄게 된다. 그것은 사회 경제적 배경의 변화와 관계 있다. 즉 노비의 감소와 농법의 개선으로 가능해진 대토 지소유의 경영형부농의 존재 등으로 가족 노동력이 대량 집중적으로 필요하였다. 때문에 생긴 가족 형태인 듯하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가족 형태의 가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부장제의 강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갑오개혁기의 가족관계의 변화

가. 군국기무처시기의 가족관계

갑오개혁 때에 이루어진 사회개혁 가운데 신분·가족 관련의 개혁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고 귀천을 불문하고 인재를 뽑아 쓴다.
1. 문무준비의 차별을 폐지하고 오로지 품계에 따라 相儀를 규정한다.
1. 죄인은 본인 이외의 일체 연좌율을 폐지한다.

19) 호구단자상에서 본관을 남자의 경우 本, 여자의 경우는 籍이라 칭하였다.

20) 江陵 臨鏡堂所藏 戶口單子 22통 중 하나.

21) 정경숙, 〈江陵金氏 戶口單子 分析 研究(1)－18世紀 戶口單子를 중심으로〉(《人文學報》16, 江陵大 人文科學研究所, 1993).

1. 적실과 첨에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양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1. 남녀의 조혼을 엄금하며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라야 비로소 결혼을 허락 한다.
 1.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자유의사에 맡긴다.
 1.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의 매매를 금한다.
 1. 비록 상민이라도 국가 민족에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군국기무처에 건의하여 의론하도록 한다.
 1. 역줄 · 倡優 · 皮工 등의 천민 대우를 폐지한다.
 1. 무릇 관인은 비록 고등관을 지낸 자라 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자유로이 상업 을 영위할 수 있다.
 1. 모든 在官親 相避의 규례를 개정하여 다만 子 婿 親兄弟 叔姪간에만 허용한다.
 1. 大小官과 土庶인의 等馬의 절차를 폐지한다.
 1. 이제부터 관리의 외출에는 乘轎 乘馬 步行 다 같이 편리한대로 자유로이 하 되 平轎子 軺軒은 다같이 老 · 病人 이외는 영구히 폐지한다.
 1. 대신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쾌를 달도록 한다.
- (元裕漢, 〈甲午改革〉,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1984, 310~311쪽).

사회개혁 20개 항목 중 이상의 14개 신분 및 가족관계 개혁이 그 골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학의 폐정개혁안 12개조의 내용과 상당히 상통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군국기무처가 의결 공포한 사회제도개혁은 당시 조선 사회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던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²⁾

갑오개혁을 2기로 나누고 제2기의 사회개혁을 열거하는 가운데 신분 가족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도 한다.

1. 남녀가 음독하여 명을 해하고 신체를 해상함과 부녀가 음독하여墮胎함을 금할 것.
 1. 과녀를 위협하여 개가함을 금할 것.
 1. 음죄를 범한 여인을 관비에 沒役하지 말 것.
 1. 家夫가 妻에게 强暴함을 금할 것.
 1. 奴戶를 戶主에 付치 말고 分戶하여 應役할 것.
- (金泳謨, 〈甲午改革의 法制的 樣相과 日帝의 干涉〉, 《일본제국주의와 한말의 사회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95~96쪽).

22) 元裕漢, 〈甲午改革〉(《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1984), 310~311쪽.

역사학계에서는 대체로 이 시기의 가족사적 고찰은 간과하는 것이 전반적 인 경향이다. 그러나 양자·적서·노비문제는 가족구성원의 변동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처첩질서의 변동을 의미하며, 상파의 범위의 축소는 친족범위 와도 유관된 문제로 가족연구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양자·적서·노비문제는 가족내의 축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축첩과 관련하여 女友會²³⁾가 조직되어 1899년 축첩반대상소를 올리는 등 여성들의 단체를 통한 사회활동 및 조직운동의 효시가 되었음은 매우 주목된다. 한편 양자제의 변개와 적서의 차별의 폐지는 서자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²⁴⁾ 서자가 입후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가족내에서의 첩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다.²⁵⁾

다음 1894년 1월 즉 갑오개혁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의 호구단자의 일례를 살펴보자. 85세의 가장과 3명의 며느리와 2인의 아들과 2인의 손자 2인의 손자며느리로 구성된 10인 가족이고, 6인의 노비로 구성되었다.²⁶⁾ 기재순위는 ① 가장 85세, ② 가장의 부·조·증조·외조의 부계 4조, ③ 婦 沈氏 55세, ④ 손 25세, ⑤ 孫婦 심씨 23세, ⑥ 자 45세, ⑦ 부 심씨 49세, ⑧ 손 15세, ⑨ 자 43세, ⑩ 부 鄭씨 39세, ⑪ 손 14세이고, ⑫ 6인의 노비들이다. 가족관계는 가장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가족 구성은 홀로 사는 시아버지와 홀로 사는 큰며느리와 손자부부, 그리고 아들을 각기 1인씩을 가진 두 명의 아들 가족으로 구성된 확대 가족이다.

23) 丁堯燮, 《韓國女性運動史》(一潮閣, 1971), 35쪽.

韓國女性史編纂委員會 編, 《韓國女性史》2 (梨大出版部, 1972), 67쪽.

24) 일례를 들어보면 牛峰 李氏의 경우 李完用의 아우인 李允用은 庶出로서 1910년대의 족보에는庶자가 기재되었으나 그 이후庶자가 누락된다. 그러나 기재 양식으로 적자·적여·서자·서녀의 기재순의 차이로 신분의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1930년대의 족보에서 남자를 우선 기재하고 여자를 후에 기재하고 연령순으로 재배치되므로 적서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대부분의 가문의 족보도 1930년대 이후에는 비슷한 모습으로 변모된다.

25) 정경숙, 〈大韓帝國期 進明婦人會의 組織과 思想〉(《大韓帝國研究》5, 梨花女大韓國文化研究院, 1986), 87~89쪽.

———, 《大韓帝國期 女性運動의 性格研究》(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189 ~137쪽.

26) 臨鏡堂所藏 戶口單子.

딸의 경우는 여전히 호구단자에 등재되지 않는 원칙으로 일관되나 호구조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파악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난 점이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양반 호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노비의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들 노비 가족은 갑오개혁에 의하여 노비신분으로부터 해방되고 분호하여 독자의 호를 구성하게 된 점이 갑오개혁의 큰 성과인 것이다.

나. 건양·광무년간의 가족관계

갑오개혁이 이루어진지 2년후인 建陽 元年인 1896년에 칙령으로서 〈戶口調查規則²⁷⁾과 内부령으로서 〈戶口調查細則²⁸⁾이 公布되었다. 물론 건양개혁은 광무개혁의 전단계이지만 갑오개혁의 후속조치의 측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호구성적 관계는 특히 그러하였다고 본다.

호구조사는 구제에서는, 첫째 그것이 국가에서 稕賦을 課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호구수 조사, 둘째 봉건적인 신분을 확인, 셋째 인민을 토지에 繫縛하여 流移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신제에서는 전국적 호구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하여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보호하는 이익을 균점케 함²⁹⁾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아직 전통적인 수탈에 이용되었겠으나 근대적 복지 국가 수립을 위한 국세조사인 것으로 생각된다.³⁰⁾

변화상을 분석하면, 첫째 구제도에서 三年一成籍이었으나, 신제도는 매년 1월에 호적과 통표를 한성부 5署와 각 府·牧·郡에서 수취할 것으로 수정하고³¹⁾ 또 分籍과 改籍은 수시 卽行하여,³²⁾ 호수와 인구를 항시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호적사무의 관장에 있어서는 아직 구제도와 같이 漢城府에서는 5서, 지방에서는 각 부·목·군이 호적을 성급한 후에 일부를 謄書

27) 勅令 第61號 〈戶口調查規則〉(《高宗實錄》建陽 元年 9월 1일).

28) 内部令 第8號 戶口調查細則, 《官報》(建陽 元年 9월 8일).

29) 戶口調查規則 第1條.

30)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研究》(서울大 出版部, 1975), 124~125쪽.

31) 戶口調查規則 第3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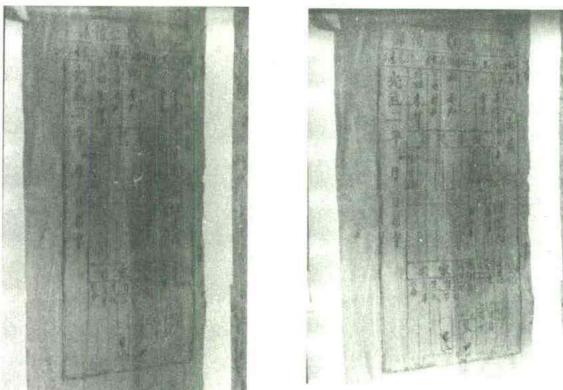
32) 戶口調查細則 第10條.

하여 내부에 呈納하며, 내부에서는 다시 편집하여 상주케 하고 있다.³³⁾ 그리고 호적의 신고와 등본의 발급에 있어서도 대체로 구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둘째, 호적의 양식에 있어서 구제도에서는 그 기재순서와 내용만을 밝히고 있으나, 신제도에서는 양식을 호적표로서 印版하여 내용을 填書하도록 되어 있다. 그 기재사항을 보면 호적제의 목적의 변화 및 노비제의 폐지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재내용을 보면 作統制에 의한 통호의 기입은 구제도와 같다. 또 호주란에 있어서 성명·年·本·四祖等의 기재도 구제도와 같으나, 신분제를 기반으로 하던 구제도에서는 신분을 의미하는 職을 성명 앞에 제일 먼저 기재하였는데, 신제도에서는 本 다음에 業과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호주 및 그 4조의 직에 의해서 봉건적인 신분이 명시되고 있는 것은 아직 구제도의 관습을 완전히 벗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부계 4조 중 외조의 본을 쓰는 난이 없어 하단에 임의로 기재하고 있다.³⁴⁾ 이것은 이 사회가 전통적인 신분제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개인의 신분을 규정하는 일요소인 外家の 신분을 일차적으로 소거시킴으로써 친족공동체의 규모를 축소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1908년 호적표



33) 戶口調查規則 第 3條 및 戶口調查細則 第11條.

34) 1898년에 제작된 신호적제에 의한 호적.

셋째, 《經國大典》에서부터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의 구제도에서 채택된 부계·처계 4조의 등재가 19세기의 관행을 수용하여 처계 4조를 기재사항에서 제외시킨 점이다. 즉 19세기의 호적기재 관행이 법제적으로 수용된 것을 의미한다.³⁵⁾

넷째, 호적에 입적되는 친족관계의 범위는 구제도와 같이 거주단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父母兄弟孫이라도 分居하면 원칙으로 分籍하고,³⁶⁾ 동거하면 親屬과 寄口, 雇傭과 함께 入籍시키고 있다. 신분제의 해체와 더불어 고용된 雇男·雇女의 존재가 흥미롭게 대두된다.

다섯째, 戸主라는 용어가 호적법상의 용어로 채택된 점이다. 물론 조선시대에 호주라는 단어가 없지는 않았다. 그 보다는 戸首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였고 호구단자에는 호주라는 말이 사용된 예가 전무하였다. 이 시기의 호주는 명치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호구단자상의 戸와는 다른 법제적 용어이다. 이로써 구한말의 호적제는 가부장적인 호주중심체제로의 전이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사회적인 양천의 신분제는 점차 혁파되어갔으나, 가족내의 신분제는 점차 강화되어갔다고 보여진다. 신분제의 폐지라는 근대적인 진전과 아울러 가족제도는 더욱 가부장중심적으로 퇴행한 것이다. 근대화라는 미명으로 추진된 이와 같은 이원성은 조선후기 경제의 발전³⁷⁾과 식민지 종속 경제체제의 도래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³⁸⁾

(3) 갑오개혁 이후의 가족관계 변화

가. 《형법대전》을 통해본 가족관계

갑오개혁의 신분·가족 관계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형법의 개정은 11년 후인 1905년에 제정 반포되었다. 《刑法大典》의 제정은 일본의 조종이나 압력에

35) 《經國大典》, 戶口式條, 準戶口式條.

《大典會通》, 戶口式條, 準戶口式條.

36) 戶口調查細則 第3條.

37) 문소정, <한국가부장제 확립의 가구경제적 배경과 여성의 위치>(《유교적 전통 사회의 구조와 특징》(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13~216쪽).

우에노 치즈코 著·이승희 역, <가부장제의 물질적 기초>(《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63~75쪽.

38) 클로드 메이야수·김봉률 역, 《자본주의와 가족공동체》(까치글방, 1988).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후에 제정되는 〈조선민사령〉에서의 관습존중의 의제를 마련하는 법제적 계기가 되었던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한다.³⁹⁾ 그러나 관습존중이라는 측면보다는 통치에 유리한 봉건성의 온존이라는 측면이 보다 크게 작용된 정책의 반영인 것으로 보여진다.

가) 신분제의 온존

《형법대전》은 신분의 고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신분제를 전제하고 있다. 관리는 三等, 친속간은 상복제도상의 친소를 기준 六等 구분하고, 雇工과 주인 가족과의 관계도 친속—비유의 관계로 보고 논죄하는 등의 제 조항을 설정하고 있다.⁴⁰⁾ 이것은 《大明律》의 규범 조항을 답습한 것으로, 신분제의 타파가 아닌 봉건적 신분계급제의 유지·온존하기 위한 법제로 평가된다.

나) 친족의 남녀차별 및 금혼 차별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父系 10촌, 夫系 7촌, 그리고 母系 6촌, 妻系 3촌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¹⁾ 남계와 여계간의 친족의 차이가 크다. 이 조항은 《經國大典》의 〈五服〉 및 《文公家禮》에 명시된 상복제도상의 친족범위규정, 즉 ‘有服親及無服親’을 親屬으로 규정한 규례의 답습이다.

그리고 친족범위를 전제로 통혼금지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남성에 대해서는 전처의 자매와의 통혼까지 허용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는 전남편의 四從兄弟(10촌)까지의 통혼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⁴²⁾ 즉 여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근친혼 금지규정을 강제한 것이다. 물론 이 규정 역시 《대명률》의 조항을 답습한 것이다. 나아가서 처첩에 대해서 夫의 墓中 개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에게 대해서 처의 상중 개가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이 규정도 또한 《대명률》 조항의 답습이다.

다) 혼인 및 이혼

《형법대전》은 ‘정혼’을 법률상의 행위로 간주하여 위약에 대해서는 형까지

39) 李丙洙, 〈우리나라近代化와 刑法大全의 頒示—家族法을 中心으로 하여〉(《法史學研究》2, 1975), 256~261쪽.

40) 《韓末近代法令資料集》IV, 제63·64·65조, 137~138쪽.

41) 《韓末近代法令資料集》IV, 제62조, 136~137쪽.

42) 《韓末近代法令資料集》IV, 제572~4조, 210쪽.

설정하고, 원한다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혼인을 성사시킬 수 있다. 첹을 쳐로 맞이하는 것과 부의 법률상의 중혼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축첩은 인정하고 아울러 ‘七出’·‘不出’제에 입각한 처에 대한 일방적인 이혼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철저히 남성중심적 혼인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법대전상의 가족관계 규범은 대명률 답습 남계 혈통중심주의와 도덕적 이상주의를 주류로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의 여론도 적지 않아 두 차례의 개정과정중에 ‘3편 300개조’로 된 형법초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및 부모의 형제매제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과 형제매제의 배우자를 친족으로 간주하는 등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남녀평등 원리에 완전히 입각한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끝내 채택되지 못하였다.

나. 통감부시기의 가족관계

통감부가 설치되고 국정이 완전히 일인의 손에 넘어간 후인 1909년에 〈民籍法〉⁴³⁾과 〈民籍法執行心得〉⁴⁴⁾이 제정됨으로써 그 목적과 제도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되었다.⁴⁵⁾ 호적은 호구조사의 수단이 아닌 추상적인 명치민법류의 家와 家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증문서로 되었다. 그리고 호적제도는 작통제 및 호폐제와 완전히 결별 분화되어 家 및 家에서의 개인의 신분관계의 등기제도로서 그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명칭도 호구조사가 아닌 〈민적법〉으로 바뀌었다. 이 시대의 가의 개념은 전근대적인 것이 아닌 명치민법체제하의 가로서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창출된 정치적으로는 천황제 중심체제 지향,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성립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⁶⁾ 成籍에 있어서 호구조사규칙에서는 매년 1월에 호적을 수정 작성하였으나, ‘민적부’는 신분관계의 공증문서로서 영구보존문서가 되었으며⁴⁷⁾, 변경 사항

43)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Ⅷ, 法律 第8號 〈民籍法〉, 융희 3년 3월, 120~122쪽.

44)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Ⅷ, 内部訓令 第39號 〈民籍法執行心得〉, 융희 3년 3월, 157~163쪽.

45) 崔弘基, 앞의 책, 131~133쪽.

46) 우에노 치즈코, 앞의 글, 23쪽.

47)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Ⅷ, 〈民籍法執行心得〉第11條.

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에 의하여 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⁴⁸⁾ 원칙적으로 호주의 신고에 의하지만⁴⁹⁾, 그 신고사항은 ①출생, ②사망, ③호주변경, ④혼인, ⑤이혼, ⑥입양, ⑦파양, ⑧분가, ⑨일가창립, ⑩입가, ⑪폐가, ⑫廢絕家再興, ⑬附籍, ⑭移居, ⑮改名, ⑯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 및 실권의 취소, ⑰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취직·경질 및 그 임무의 종료 등 모든 신분 관계의 변동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⁰⁾ 이것이 곧 호주권으로 연결되어 호주제의 강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중요한 변화는 이제 주거지가 아닌 추상적인 家의 소재지를 의미하는 본적의 지명과 지번이 기재된다. 입적자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단위가 아니라 호주의 친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호주의 친족이 아닌 동거자도 말미에 가족별로 부적하고 사유를 기재하였다. 이것은 비가족 원 즉 노비·협호·雇女·雇男 등을 입적케 하던 구제도의 유제인 것이다.

호적기재의 양식상의 변화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자.

첫째, 호주의 4조와 직업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봉건적인 신분제의 법적 및 실질적인 폐지에 따른 조치였다. 대신 현실적으로 강력한 호주권으로 재창출된 전근대적 호주중심제로 대치되고, 전통적 신분과의 고리를 단절함으로서 식민지배를 강화하게 되었다.⁵¹⁾

둘째, 입적자의 기재순위는 ①호주, ②호주의 직계존속, ③호주의 배우자, ④호주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⑤호주의 방계친 및 그 배우자, ⑥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의 순이다.⁵²⁾ 그리고 모든 입적자는 가에서의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든 입적자는 호주 또는 호주와의 관계를 신위난에 명시하여 호주중심의 신분제가 온존된다. 이것은 해방 이후 현대가족법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⁵³⁾

셋째 부모의 난에 부모의 성명만을, 출생난에는 남녀별에 의한 출생순위

48) 〈民籍法〉 第1條의 2.

49) 〈民籍法〉 第1條의 2 및 第2·5條.

50) 〈民籍法〉 第1條의 2.

51) 정경숙, 〈호주제연구시론〉(《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평우회, 1984).

52) 〈執行心得〉 第3條.

53) 한국여성개발원,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1991), 22~32쪽.

또는 서자와 사생 등을 명기하고, 사유난에는 신분상의 모든 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는 전호주의 성명과 호주가 된 원인 및 年月日을 밝히게 되어 있다. 모든 입적자는 本欄에 시조의 출생지가 기재되며, 연령이 아닌 정확한 생년월일 및 姓과 함께 名(호주와 동성동본인 경우는 名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성명난의 설정은 과거에 여자의 경우, 성명 대신 성만 기재하던 사례를 배제함으로써 여자가 일반적으로 名을 사용하지 않고 姓만으로 통용하던 舊習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즉 여성도 호적에 입적되어 파악의 대상이 된 점은 괄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러한 호적제도의 원칙과 제 규정은 해방후에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1960년에 공포된 신 〈호적법〉⁵⁴⁾에서도 신민법의 제정에 따른 몇 가지 변경과 기술적인 보완이 가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常時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하는 행정처리는 ‘주민등록제’로 대치하고, 인구조사는 ‘통계조사사업’에 의존함으로써 호적은 전적으로 家를 단위로 하는 신분관계의 공증문서로서만 존치의 의의를 갖게 되었다.

〈丁暻淑〉

5) 여성의 사회진출

한국 여성의 초기 사회진출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는, 첫째 동학사상이나 개화사상과 같은 근대적 사상이 생성·발전되었고, 둘째는 서양의 개신교 여선교사들의 활발한 사회활동과 독립협회에서 여성의 평등한 사회활동을 강력히 주장하여 근대적 여권론을 사회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고, 셋째는 서울 북촌과 같은 전통적 사회의 지도층 여성들의 여권획득 자각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1898년 우리 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권선언서인 〈여권통문〉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우리 민족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일제의 한국 침략이 적극화되었던 1905년 이후였다.

54) 法律 第355號 〈戶籍法〉, 1960年 1月 1日.

1905년 이후 여성교육을 民力育成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여성교육운동이 확대되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여성 사회진출 분야는 여성단체와 교육분야, 의료계와 종교계, 그리고 요식업 및 기계생산적 공장과 회사 등의 새로운 업종이었다.

(1) <여권통문>에 나타난 여성 사회진출관

규문밖의 세상일과 담을 쌓고 생활했던 한국여성들에게 처음으로 사회진출 의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한 직접적 배경으로는 개신교 여자선교사를 비롯한 외국여성들의 한국내 활동과, 개화선각자들에 의한 독립신문과 독립협회 운동이라 하겠다.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창간 논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평등한 인간권리를 주장하였다.¹⁾

『독립신문』은 민력과 국력 양성 차원에서 여성교육과 여성사회참여를 주장하였다. 『독립신문』이 제시하는 남녀동권 성립시의 국가적 유익론은, 첫째 지혜있는 부인들도 국사를 의논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 정치를 진보케 할 수 있고, 둘째 부부간에 가사를 서로 의논하여 가도를 흥왕하게 할 수 있고, 셋째 열살 이하의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담당이므로 학문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자녀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 이와 같이 국익과 직결된 평등적 여성교육론은 사회적 호응이 높았고, 특히 지도층 여성계를 크게 각성 시켰다. 그 결과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양반부인 300~400명이 뜻을 일으켜 우리 나라 최초의 여권선언문인 <여권통문>³⁾을 발표하였다.

<여권통문>의 내용은, 첫째 여성은 병신이 아닌 온전한 인간이어야 함에 대한 주장이다. 온전한 인간이란 곧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문명 개화정치를 지향하는 새 시대를 당하여 온갖 구법과 구습이 개혁되고 있는데, 오직 여성들만은 옛 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니 귀먹고 눈 어두운 병신과 같다고 표현했다. 여성은 먼저 의식의 병신으로부터 해

1) 『독립신문』, 1896년 5월 12일 및 9월 5일, 논설.

2) 『독립신문』, 1896년 5월 26일, 논설 <여학교론>.

3) 『독립신문』, 1898년 9월 9일, <녀학교>.

《皇城新聞》, 1898년 9월 8일, 논설 <五百年有>.

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둘째는 남자와 똑같은 온전한 신체를 가진 평등한 인간인 여성이 어째서 평생동안 깊은 규중에 갇혀 남자의 절제를 받아야만 했는가 라고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것의 역사적 해답을 〈여권통문〉에서는 사나이가 벌어다 주는 것에만 의지하여 사는 경제 무능력적인 병신이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여성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만 평등한 인간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며,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의 절대적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셋째는 여성의식을 깨우치고 사회진출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居内而不言外하며 惟酒食是議)를 주장한 것이다. “居内而不言外하며 惟酒食是議”라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관으로부터 당당하게 벗어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여학교 설립을 스스로 해내겠다고 선언하였다.⁴⁾

여성의 직업을 가질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양반사회 여성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처럼 당당하게 선언하자, 당시 온 사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제국신문》은 “우리 나라 부인네들이 이런 말을 하며 이런 사업을 창설할 생각이 날 줄을 어찌 뜻하였으리오. 진실로 희한한 바로다”⁵⁾라고 찬탄을 머금은 평을 하였다. 《황성신문》도 “하도 놀랍고 신기하여 우리 논설을 제각하고 이를 기재한다”⁶⁾라고 하고 〈여권통문〉 전문을 게재하였으며, 《독립신문》은 “여성교육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 정부 기구에 불필요하게 쓰이는 20여만 원과 급하지 않은 군사 증액비 100여만 원을 모두 여성 교육비에 쓰라”⁷⁾고 주장하였다.

한국 초기여성운동에서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의 획득은 여성운동의 중심 과제이며 기반이었다. 여성교육의 기본 도구는 여학교이다. 이에 〈여권통문〉 공표에 참여하였던 부인들은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인 贊襄會를 조직하고 회원으로부터 수합한 회비를 가지고 우리 나라 최초의 민립여학교인 順

4) 朴容玉, 《韓國近代女性運動史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57~64쪽.

5) 《제국신문》, 1898년 9월 13일, 논설 〈冀望女校〉.

6) 《皇城新聞》, 1898년 9월 8일, 논설 〈五百年有〉.

7) 《독립신문》, 1898년 9월 13일, 논설 〈여민교육〉.

成女學校를 설립하였다. 순성여학교는 관립여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여학교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찬양회는 순성여학교 후원단체이면서 동시에 여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다수 부인에 대한 교육사업을 담당하였다.

그러면 우리 나라 초유의 여권운동을 발의하고 준비한 주동 인물은 누구인가. 찬양회의 임원진이 회장(李養成堂), 부회장(金養賢堂), 총무원(李昌吉堂·太養眞堂), 사무원(高貞吉堂)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여권통문〉 준비 핵심인물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중 김양현당이 순성여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었고, 고정길당과 몇 명의 외국부인들이 교원으로 임명되었다.

김양현당은 우리 나라 여성교육을 위하여 스스로 자각하고 사회진출을 한 선각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된 여학교보다 10여 년 뒤늦게 출발하였으나, 사회적 반영의 면에서 볼 때 자못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김양현당은 북촌 부인은 아니었다. 그는 원래 西京(平陽) 태생으로 자녀없이 과부가 된 후 서울로 와서 북촌 양반부인들과 교유하였고 자신의 자산도 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북촌부인이 아닌 그가 찬양회의 부회장과 여학교 교장직을 맡은 것으로 볼 때 그는 근대 학문의 소양을 갖춘 개화의식이 높은 여성이었음이 틀림없다. 순성여학교가 개교한 1899년은 독립협회 중심의 개화세력이 보수적 정치세력으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던 때였으므로 찬양회 활동도 위축되어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고종황제가 약속하였던 관립여학교 설립도 의정부 회의에서 기각되어 설립 가망이 무산되었다. 이처럼 이중삼중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김양현당은 사재를 털어 학교운영자 겸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1903년 3월 자신이 죽은 후 “저 어린 여학생의 교육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염려하는 선각적 교육자로서의 유언을 남기면서 숨을 거두었다.⁸⁾ 김양현당은 우리 나라 여성교육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재산을 올곧게 바친 한국 초기 여성교육의 선구자였다.

8) 찬양회와 순성여학교 및 관립여학교 설립운동에 관한 내용은 朴容玉, 앞의 책, 57~73쪽에 의거했음.

찬양회의 서기이자 순성여학교의 교원인 고정길당도 북촌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원래 함경도인으로 1860년대에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로 이주하여 귀화한 한국계 귀화러시아인이다. 그가 내한한 것은 친러세력이 컸던 1895년 쯤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러시아어와 중국어에 능통하고 세계정세와 근대 지식에 밝아 그를 가리켜 “無比開化學問한 女中豪傑”이라고 칭하였다. 그는 학교가 경영난에 허덕이던 때인 1899년 후반에는 이미 학교를 떠나 서울 무교동에 서양요리점 차려 돈을 벌고 있었고, 1900년에는 다시 충청도 일대에서 회립정교회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⁹⁾

(2) 교육단체운동과 교육분야로의 진출

가. 여성교육단체운동으로의 진출

1905년 이후 일제의 한국침략이 가속화되자 국운을 회복하여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저항적 민족운동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그 운동의 주류는 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이다. 후자는 민력배양의 국권확립 민족운동으로 교육운동과 식산운동을 주된 과제로 내세웠다. 교육운동은 민력의 절반이 되는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성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여성교육단체들이 설립 활동하여, 도시들과 촌촌마다에 여학교가 설립되었다. 아울러 여교사로의 사회진출은 절실한 사회적 요구가 되었다.

1886~1910년에 설립된 사립여학교 설립자 실태를 보면 174교 중 21개교만 여성 설립자이며¹⁰⁾, 1905~10년 여성교육단체들 중 규모가 큰 것은 남자에 의하여 조직 활동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증하는 것이다. 신문·잡지 등 인쇄물을 통해 밝힐 수 있는 이 시기의 여성단체수는 서울 지방 합쳐 30개 전후가 된다. 그 중 서울에서 조직 활동한 단체들은 규모나 내용면에서 비교적 충실했다. 서울의 경우 女子教育會·進明夫人會·양정여자교육회·大韓女子興學會와 한일부인회·자선부인회·동양애국부인회·자혜부인회 등이 있었는데, 한일부인회 이하는 친일여성단체로

9) 朴容玉, 위의 책, 70쪽.

10) 朴容玉, 위의 책, 210~218쪽.

활약한 것이다. 이들 단체의 조직과 활동은 상충 사회 지도층 부녀들을 대거 참여하게 하는 특성을 지녔다.

규모와 활동이 컸던 여성단체로 여자교육회¹¹⁾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체는 독립협회 등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였던 이른바 선각적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녀들의 계몽 개발의 뜻으로 조직 활동하였다. 설립자는 秦學胄·秦學新·鄭喬·李舜夏·高義駿·李瑛奎 등으로, 1906년 5월초에 “학문과 女工과 부덕 淳哲을 교육하여 현모양처의 자질을 양성·완비한다”는 목적으로 발기하였다. 그리고 동회가 후원할 여학교로 養閨義塾을 설립하여 동 6월 10일 개교하였다. 회원은 출발 당시 귀부인 30~40명이 입회하였고, 점차 증가하여 10월초에는 3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사회는 “학문없는 여자를 학식있는 교사나 점잖은 남자가 지도해야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양규의숙의 塾長·塾監은 저명한 남자로 임명하고 교사 두 명은 여자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십 수명의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남자들로써 男子贊務所를 구성하여 여자교육회를 지도할 상충기구로 두고, 상충사회 여성들의 단체 참여를 촉구하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회 장	留案	代辦회장	金雲谷
총 무	金松齊	부총무	李一貞堂
評 議 員	李夏榮부인·閔謙鎬부인·權重顯부인·李完用부인·沈相薰부인 閔丙弼부인·權重弼부인·閔泳綺부인·李載克부인·朴義秉부인 俞星濬부인·吳臺煥부인·秦學新부인·秦學胄부인·崔永年부인 金益泳부인·俞相範부인·高義駿부인·尹孝定부인·俞吉濬부인 崔炳憲부인·玄暎運부인·李鐘華부인·金祥雲부인 秦卓隱·李鶴仙·金錦漢		
司 法 員	金湖山·金松岩·金美山·趙南波·韓一心		
회 계 원	朴清雲·金逸隱		
서 기 원	金海秋·申公子	사무원	仍任
여 공 과 장	李允用부인	위생과장	李根湘부인
직조소이사	梁成雲·朴清雲	양감소이사	白元赫부인·金鼎禹부인
위생소이사	池錫永부인·金益南부인	염색소이사	崔錫祥부인·현국부인

11) 여자교육회에 관한 것은 朴容玉, 위의 책에 의거하였음.

曝白所이사 : 趙鎮泰부인 · 崔奎翊부인	재봉소이사 : 李根培부인 · 申公子
東署사무장 : 金克巖	서서사무장 : 洪肯燮부인
남서사무장 : 申峯子	북서사무장 : 留案
중서사무장 : 張妙蓮	

이상 임원진이 실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들은 대부분이 고관 및 유지부인들이었다. 이 중 실제 활동자는 김운곡 · 김송제 · 김호산 · 김송암 등의 취지서 발표 당시의 발기인들과 이준의 부인이자 개화 선각자인 이일정당 등이다. 여자교육회는 운영권을 놓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으나, 일반부녀대중과 고루한 사회를 개발시키기 위한 연설회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을 높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06년 7월부터 1907년 7월까지 행해진 총 25회의 연설회 및 토론회의 의제는 여성 및 유아교육, 衣冠制 개량, 내외법 폐지, 부인산업, 공업개발 등이었는데 주제 강연자는 주로 남자들이었으나 토론은 좌우파로 나누어 여자들이 담당하였다. 토론 담당 여자들은 김송제 · 김운곡 · 이일정당 · 조남파 · 한일심 · 陳洪子 · 신공자 · 朴繁子 · 金石子 · 申利子 · 申蕭堂 · 申英子 · 김일은 · 金弼媛 · 張錫嘆부인 · 愉斗子 등이었다. 그리고 전시효과적 의미까지를 포함한 평의원들은 실제 활약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토론회나 강연회 및 통상회에는 늘 참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참여 자체가 여성의 사회진출 의지를 북돋고 또 여성 활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적지 아니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1907년 4월에 신소당 · 최화사 등에 의하여 설립 활동된 進明夫人會¹²⁾를 통한 여성 사회진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906년 12월초부터 여자교육회가 경비 부족으로 양규의숙을 후원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신소당이 양규의숙을 유지 진홍시킬 단체로서 진명부인회를 발기 조직하고, 1907년 4월 23일 제 1회 총회를 열어 임원을 발표하였다. 총재는 留案으로 두고 부총재 崔花士, 회장 申蕭堂, 부회장 李石卿, 총무 朴英子, 회계원 李鍾石, 재무원 李起泓부인, 서기 金石子 · 金一堂, 평의장 朴泳仁, 및 평의원 權直相부인 등

12) 진명부인회에 관하여는 朴容玉, 위의 책을 참조.

16명과 찬성장 李美卿, 부찬성장 閔賢子로 임명하였는데 평의원은 대체로 사회적 저명인사와 고관들의 부인이었다.

진명부인회를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한 회장 신소당은 민족교육운동과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대표적인 사회단체운동가이자 민족교육운영자이다. 그는 판서를 지낸 故 金奎弘의 부인으로 이미 大安洞 자기 집에 소학교인 私立光東學校를 설립하고(1906년경) 자신은 교장으로,¹³⁾ 교감에는 李一貞을, 학감에는 박영자를 임명하였다¹⁴⁾. 이일정과 박영자는 당시 부인운동계에 진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던 여성들이다. 이 학교는 빈한한 아이들(40여 명)만 모집하여 학비를 전적으로 신소당이 자담하였다. 그가 觀鎮坊會에 또 하나의 새 학교를 설립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닥쳐 광동학교를 설립 3년만인 1908년 말에 안동 김씨 宗約所에 운영을 인계하였다.¹⁵⁾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을 때 그는 서울 대안동에 大安洞國債報償婦人會를 조직하여 여성계 국채보상운동의 총본부로서의 기능을 다했었다.

여성의 교육 및 사회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嚴妃로 하여금 여성교육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여성교육운동을 펴가게 하였다. 황실에서의 여성교육운동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해도 무방하다. 엄비는 황실여성들과 顯官부인들을 규합하여 大韓女子興學會와 慈惠婦人會를 설립했다. 전자는 1908년에 설립된 漢城官立高等女學校를 후원 홍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후자는 京城孤兒院을 찬성하기 위한 자선 단체였다.

관립여학교 설립에 즈음하여 엄비는 여성교육 徵旨¹⁶⁾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여성교육을 집안의 행복을 증진하여 국가의 비보가 되어야 한다는 협모양처론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여성이 독립된 인간으로서 사회로 진출하여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교양을 갖추고 개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가정을 경영할 훌륭한 내조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데 있었다. 대

13) 《제국신문》, 1907년 3월 16일, 〈光東學校〉.

14)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5일, 〈光校生광〉.

《萬歲報》, 1907년 5월 8일, 〈婦人設校〉.

15)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24일, 〈光東引繼의 希望〉.

16) 《舊韓國官報》, 1908년 5월 26일.

한여자홍학회¹⁷⁾ 발기는 학부 주선으로 宗親府에서 개최되었고, 황실 및 고관 귀족 부인들 50여 명과 現舊 정부대신들이 참여하였다. 임원은 총재 完興君 李載冕부인, 부총재 李完用부인, 회장 海豐府院君 尹澤榮부인, 부회장 李載克부인, 총무 輔國 趙寧夏부인과 侍從卿 閔丙奭부인, 사무원 학무국장 尹致旿부인과 편집국장 魚允迪부인, 고문 現舊 정부대신, 남자사무원 윤치오와 어윤적으로 임명되었다. 이들은 모두 황실과 현구 대신의 부인들이다.

이 단체의 실제 활동자는 윤치오 부부와 어윤적 부부¹⁸⁾였다. 자혜부인회도 총재 이완용부인, 평의장 李貞淑(조동윤대부인), 총무장 李鉅卿(이지용부인)이며, 실질적 활동은 이옥경이다. 이옥경은 매국 5적의 부인으로 친일활동에 앞장서고 또 다른 고관부인들과는 달리 일찍 개명하여 남편을 따라 일본에 갈 때도 활발한 독자적 활동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양장에 구두를 신고 재정이 어려운 여자교육회의 총재를 비롯하여 여성단체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그러나 그의 친일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반 사회에서는 호평을 받지 못했었다.

여성단체운동에 황족과 정부대신 및 그들의 부인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 단체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이고, 둘째는 황족 등 상층 사회의 부인들로 사회적 모범을 보여 여성의 '脫閨門'을 유도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의식을 보편화시키려는 것이다. 셋째는 여성사회진출의 보편화를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일제의 한국식민지 여성정책의 중심은 값싼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인력 확보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미 1906년에 이옥경으로 하여금 대한부인회¹⁹⁾를 조직하여 여자실업교육 장려라는 이름으로 정부 예산을 책정, 양잠강습소를 설립하고 양잠교육을 강화 확대해갔다. 당시 국제시장에서 견사값이 높아 잠업은 가장 이익이 높은 산업이었다. 그러나 이후가습하고 높아 양잠사업에 아주 부적합하였다. 한국의 경우 양잠산업에 적합한 기후를 가졌고 저임금으로 활용할 우수한 인력도 갖추어져 있었다. 이옥경으

17) 대한여자홍학회에 관한 내용은 朴容玉, 앞의 책, 110~113쪽 참조.

18) 尹致旿의 부인은 尹高羅이며, 魚允迪은 漢城官立女子高等學校의 초대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19) 朴容玉, 〈韓日婦人會의 組織背景과 活動〉(霞城李瑄根博士古稀記念論文集刊行委員會, 《韓國學論叢》, 1974), 63~73쪽 참조.

로 하여금 여성실업교육 장려라는 명목으로 양잠교육을 확대시킨 것은 식민지여성정책의 수행에 있었던 것이다. 다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용이하지 못한 사회여건하에서 친일적 목적 수행이라는 반민족적 여성운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는 면할 수 없으나 여성사회진출의 모형을 보여준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나. 교육계로의 진출

1905년 이후 여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배움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여성 개명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선각자적 신념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1906년 9월 29일 『황성신문』에 의하면 인천 영화학교 여자 생도 몇 사람이 평생 출가하지 않고 문명 학업에 종사하겠다고 誓言을 하고 훌륭한 여교사가 되기 위하여 일본 神田으로 유학을 간다는 기사가 있다. 사회 여건상 결혼한 여성은 자유롭게 사회활동이 어려우므로 학업을 마친 후 독신으로 사회진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여성교육론의 확대와 여학교의 증가는 자격을 갖춘 여교사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외국 유학 여성 또는 국내 선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개신교학교 출신 여성들은 자연히 학교 교사로서 환영을 받았다.

우리 나라의 첫 여학교는 1886년 서울에서 개신교에 의하여 문을 열었고 (이화학당), 그 뒤로 계속하여 정신(1887), 일신(1895 부산진), 영화(1896 인천), 정진(1896 평양), 배화(1897 서울), 여자맹아학교(1898 평양), 정의(1899 평양), 공옥(1900 서울), 기전(1902 전주), 멜불덴(1902 군산), 승의(1903 평양), 정명(1903 목포), 광신(1903 강계), 루씨(1903 원산), 삼일(1903 수원), 호수돈(1904 개성), 진성(1904 원산) 등의 개신교계의 여학교가 설립되어 교육받은 다수의 여학생들이 우매한 여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직 또는 전도부인 등으로 배출되었다.

우리 나라의 첫 여교사로서는 이화학당의 李慶淑과 蓮洞학당(정신여학교의 전신)의 辛마리아를 들 수 있다. 1888년 이화학당 학생이 18명으로 늘어나자 선교사만으로는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되어 1889년 4월부터 이경숙을 한글·한문 및 학생생활 지도교사로 채용하였다. 그는 1851년에 충청남도 홍주의 가난한 선비집 딸로 태어나 15세에 결혼했으나 얼마 안되

어 소년과부가 되어 여승이 되었다가 환속하였다. 39세 때 선교사에게 한국 말을 가르치는 남편의 친구 소개로 이화학당장 스크랜튼(Mary F. Scranton)여사를 만나게 되어 학당 교사 겸 학당장 비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교사가 된 지 반년만에 세례를 받았으며 교사 재직 6년 후에는 이화를 떠나 스크랜튼여사를 도와 전도사업에 전력하였다.²⁰⁾ 신마리아는 우리 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터의 둘째 언니로 申正祐와 일찍이 결혼하여 두 남매를 키우던 주부였다. 동생 에스터가 이화학당에서 새 학문을 배우는 것에 자극받아 1893년 장로교 경영의 정동학당(연동학당 전신)에 들어가 3년간 공부한 뒤인 1896년부터 새로 이사한 연동학당의 교사로 봉직하였다. 그는 학감·사감직 및 針工·수학·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직을 겸하였다.²¹⁾

우리 나라 초기 여성교육에 초석을 쌓은 이화학당과 연동학당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한글·한문·수학·수예와 성경 정도였으나, 학생들은 선교사를 통하여 서구의 새 문화를 접할 수 있어 학당 출신 학생들의 의식은 매우 개명하였다. 그리고 여자 선교사의 활동은 학생들의 모델이 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선각자적 의지를 가지고 사회로 진출해가게 했던 것이다. 이화학당의 경우 학제가 정제된 1904년 이전 이 학당을 거쳐나간 학생은 약 100명에 달 하였는데 이름이 남아있는 졸업생은 20명에 불과했다고 하였으며, 1908년 제1회 정식졸업생을 배출한 이후부터 교육계로의 진출이 더 활발해졌다. 1회 졸업생이 5명, 2회 10명, 3회 9명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은 이화학교의 支校를 설립하기도 하고 새로 설립된 각 여학교 교사로 봉직하였다.²²⁾ 여자교육회가 설립한 양규의숙의 두 명의 여교사 중 한 명도 이화학당 출신 셀레였으며, 해주 정내여학교 교사 홍은애²³⁾, 부산 초량사립여학교 교사 황혜수²⁴⁾는 모두 연동학당 출신이었다.

개신교 여학교 출신 중 박에스터²⁵⁾·河蘭史·黃(여)메례·崔活蘭 등은 이

20) 梨花女子高等學校, 《梨花九十年史》(1975), 55~56쪽.

21) 貞信女子高等學校, 《貞信七十五年史》(1962), 91~94쪽.

22) 梨花女子高等學校, 앞의 책, 73쪽.

23) 《皇城新聞》, 1908년 12월 23일, 〈正內將進〉.

24) 《大韓每日申報》, 1909년 5월 13일, 〈女師被選〉.

25) 박에스터는 여의사로 활약하였으므로 의료계로의 진출에서 다를 것임.

시기에 한국 여성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 여성들이다. 하란사는 1875년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남편은 인천 監理로 재산이 있는 河相驥²⁶⁾였다. 교육을 받겠다는 너무도 강한 의지 때문에 기혼자인데도 불구하고 1896년 이화학당에 입학할 수가 있었던 그는 4년간 수학 후 1900년 3월부터 1년간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왔다. 그 이듬해(1902)에는 자비로 다시 미국 유학을 떠나 오하이오(Ohio) 웨슬리안(Wesleyan) 대학에 입학, 영문학을 전공하고 1906년 졸업, 우리 나라 최초의 외국유학 문학사가 되었다. 귀국 후 그는 이화학교의 교사로 봉직하는 한편 스크랜튼과 함께 達城離宮에 기거하면서 상동교회 건설에 협력하였고 여기서 여자영어반을 개설하여 뒷날 여성교육에 기여한 손메레·신알버트·양우러러 등을 길러내었다. 이화에서는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고 기숙사 사감 및 총교사로서 일하였다. 또한 교내 써클인 以文會를 지도하고, 미국여선교사 엘번슨(Millie M. Albertson)과 함께 이화학교 곁에 부인성서학원을 창설하여 전도사업을 하였으며, 영어에 능숙하여 황실 통역도 하였다. 또한 그는 민족독립의식이 강하여 국내외 독립운동가들과도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활약하였으며, 1차대전 종료 후에는 의친왕을 대신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1919년 1월에 북경에 당도하였다가 불의의 식중독으로 사망하였다.²⁷⁾

황메레(Mrs Mary Whang)는 1872년 2월 21일, 마산에서 김씨가의 외딸로 태어났고, 황씨가에 출가하였으나 곧 남편과 사별하였다. 그 뒤(1886) 달성이 궁에 기거하는 스크랜튼의 양녀가 되어 이화학당에서 영어·수학·성경 등을 공부하였다. 그는 영어에 능통하고 신학문의식견도 높아 활동이 다양하였다. 1901년 정동제일교회내의 회원 63명의 보호회를 발족하고 지도함을 비롯하여 1903년에는 이화학당내의 리빙 소사이어티(Living Society)를 지도했고, 1905년부터는 스크랜튼을 도와 상동교회에서 성경공부반을 지도했으며, 1910년에는 웹윗여자청년회를 조직하여 기독교 여자청년운동을 하였다. 또한 그

26) 하상기의 본부인은 백씨인 것 같다. 그리고 하란사는 그의 소설이었다고 한다. 《大韓每日申報》1906년 9월 29일, <婦人擔教>에 의하면 興化학교 교사 白象圭가 義親王을 수행하여 일본에 가므로 그가 回還할 때까지는 하상기 부인 백씨가 교수 책임을 졌다고 했다.

27) 梨花女子高等學校, 앞의 책, 75~76쪽.

는 保教女館에서 선교사를 도와 의료활동과 전도를 하였다.²⁸⁾ 1903년 3월 교육 시찰차 일본에 갔다온 후 여성교육에 관심이 높아져 施病院에 방 하나를 얻어 여학생 20명을 모아 직접 가르쳤다. 그 학생 중 엄비의 사촌오빠 嚴俊源의 딸이 있었다. 그는 엄준원을 통하여 여성교육에 뜻이 높았던 엄비를 만나게 되었고, 엄비로부터 창성궁을 학교 건물로 하사받아, 1906년 5월에 엄준원을 교장으로, 황메레를 총교사로 하여 진명여학교 문을 열었다.²⁹⁾

또한 평양에서 前관찰사 등 유지들이 1906년 3월에 平壤愛國女學校를 설립하여³⁰⁾ 30여 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기부금에 의한 학교 운영이 어려워 지자 여성교육열이 높은 엄비가 황메레를 보내어 평양 진명여학교로 재출발하게 하면서³¹⁾, 400원을 하사하였다³²⁾. 진명여학교는 평양의 대성학교와 더불어 민족교육을 행하였던 서북지방의 대표적 여학교가 되었다. 엄비의 지원과 황메레의 적극적 활동으로 평양의 여성교육이 점차 확장되었다. 평양 명륜당 안에 설한 여자교육연구회에서 여성교육연설회를 개최했을 때, 황메레는 김현련부인 및 안창호·김희경과 청중을 감동시키는 연설을 하였다.³³⁾ 1909년 1월에는 수원 삼일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고명한 교사로 칭송을 받았다.³⁴⁾

1888년 9월 23일에 인천에서 태어난 최활란은 8세에 이화학당에 입학한 후 20년을 이화에서 배우고 가르쳤다. 그는 이화 중등과 학생일 때 일본 나가사키(長崎)의 가츠이(活水)여학교에 유학하고 1907년에 귀국한 후 교사 겸 총교사로 모교에 봉직하였으며, 1915년에는 이화의 대학과를 졸업하였다. 26세에 崔炳憲목사의 아들 崔在鶴과 결혼한 후에도 계속하여 Y.W.C.A., 태화여자관, 京城女子基督教節制會 등의 기독교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였다.³⁵⁾

28) 梨花女子高等學校, 위의 책, 76~77쪽.

29) 《제국신문》, 1907년 5월 13일, 〈女校盛況〉.

梨花女大 韓國女性史編纂委員會, 《韓國女性史》2(1972), 82쪽.

30) 《제국신문》, 1906년 11월 29일, 〈平壤女校〉.

31) 《제국신문》, 1907년 6월 12일, 〈女校擴張〉.

32) 《大韓每日申報》1907년 7월 10일, 〈內賜校費〉.

33) 《제국신문》, 1907년 7월 17일, 〈女校擴張〉.

34) 《大韓每日申報》, 1909년 1월 10일, 〈女師高明〉.

35) 梨花女子高等學校, 앞의 책, 77~78쪽.

1905년 이후 국력 배양으로서의 여성교육론이 비등하면서 사립여학교의 설립이 증가되자 학문이 있거나 뜻이 있는 여성들이 사재를 털어 여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그 중에는 운영난으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성의 청춘과부로 貞和여학교를 설립 운영 하였던 金貞蕙는 자신의 재력과 정성만으로 학교를 경영한 유능한 여성교육자였다. 김정혜는 개성 북부에 살던 故 縣監 梁成鎮의 손녀이며 故 府使 金鼎實의 손부였다. 청상과부가 되어 수절생활을 하고 있는 중 신문화 풍조를 관찰하고 여성교육에 뜻을 두게 되어, 1910년 여름부터 자기 집에 정화여학교를 설립 후 처음에는 청상과부 몇 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한 것이 곧 100여 명의 학생으로 증가하였다. 가산이 비교적 풍성하여 교육비 일체를 자담하자 점차 운영이 어려워져 유지인들의 지원을 받아 정식 학교로 성장하게 되었다.³⁶⁾

1908년 식민지 여성교육의 표본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 정부로 하여금 관립한성고등여학교를 설립하게 한 일제측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교사진을 구성하기 위하여 일본 등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최고의 지식여성을 교사로 임명하였다. 개화선각자 尹孝定의 딸 尹貞媛이 교사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13살에 일본으로 유학가서 최고등과를 졸업하고 구라파를 수년간 遊歷하고 귀국한 후 고등여학교 교수로 피임되었고,³⁷⁾ 윤황후의 논어 講官으로 내정 받은 신진여성이다.³⁸⁾ 또 일진회장 洪肯燮의 자부인 洪貞子도 고등여학교 교사로 임명되었는데,³⁹⁾ 그는 일진회장 윤시병의 딸로 일본에 10년간 유학하여 간호학과 음악 등을 배우고 1906년에 돌아온 재원이다.⁴⁰⁾ 윤치오의 부인 尹高羅도 고등여학교 영어교사로 임명되었는데⁴¹⁾, 그는 주미공사관의 참사관을 지냈고 1903년에 미국 콜로우드대학을 졸업한 金潤晶의 딸로서 1907년에 일

36) 《皇城新聞》, 1910년 7월 8일, 〈眞正女史〉·12일, 〈貞和演說〉·16일, 〈婦人界의 模範的事業(論)〉.

37) 《大韓每日申報》, 1910년 7월 16일, 〈貞校將進〉.

38) 《大韓每日申報》, 1909년 3월 23일, 〈高等女師〉.

39) 《皇城新聞》, 1909년 5월 15일, 〈尹貞媛講官內定〉.

40) 위와 같음.

41) 《皇城新聞》, 1908년 4월 24일, 〈夫人教師〉.

본여자학원에 입학하여 수업중 학교에 불이 나 중도에 귀국하여⁴²⁾ 養源學校 영어교사⁴³⁾, 동교 유지회 회장,⁴⁴⁾ 유지 부인들과의 養心女學校 설립⁴⁵⁾ 등 여성교육활동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東洋愛國婦人會 등 친일성 부인단체에서 활약하고,⁴⁶⁾ 또 일인 및 서양인들과의 사교계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이처럼 훌륭한 인재가 되려고 유학을 떠나는 여성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도 점차 증가하여 갔다.

여성교육의 확대는 여성교육계로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점차 넓혀 주었다. 그리고 사회진출을 통해 의의있는 삶을 영위하려는 여성의 의지도 커지게 되었다.

(3) 의료계와 종교계로의 진출

가. 의료계로의 진출

개화기 한국여성에게 있어 교육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근대 의료의 혜택이었다. 이를 간파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1886년에 최초의 의료여선교사인 엘러스(Ellers)를 한국에 파송하였고, 그 이듬해는 미국감리교 여선교회에서도 하워드(Meta Howard)를 파송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부인병원인 保救女館(Caring for and Saving Woman's Hospital)을 창설하였다. 근대의학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부인 환자들이 늘어나자 손이 모자란 선교사들은 한국 여성에게 의료교육을 시켜 진료에 임하도록 해야겠다고 느꼈다. 1891년 10월에 보구여관에 파송되어 온 의료 여선교사 셔우드(Rosetta Sherwood, 후에 Rosetta Sherwood Hall)양은 부임 후 의료강습반을 열어 한국인 4명과 일본인 1명에게 의학강습을 하였다. 여기서 공부한 박에스터(처녀명은 김에스터)가 1896년에 미국으로 유학하여 1900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 우리 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다. 그는 1877년 3월 16일 서울 정동에서 金弘澤의 셋째 딸 김점동으로 태어났고, 선교사 아펜젤러

42) 《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 2일, <계속유학>.

43) 《皇城新聞》, 1908년 10월 8일, <語師善敎>.

44)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1일, <維持盛會>.

45) 《皇城新聞》, 1908년 11월 3일, <養心女校發起>.

46) 《皇城新聞》, 1908년 11월 3일, <愛國婦人會總會>.

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그의 아버지가 스크랜튼여사가 여아를 맡아 교육한다는 소문을 듣고 딸을 이화학당의 초기 학생으로 넣었다. 그는 총명하고 영어를 잘 하여 보구여관에서 셔우드의사의 통역과 의료 보조로 일하다가 의료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 근대 의료교육의 처음이었다. 그녀는 15세에 세례를 받고 에스터라는 세례명을 받았으며, 이듬해(1893) 5월 24일에 셔우드의사의 약혼자로 평양에서 의료선교를 하는 홀(William J. Hall)박사를 도와 일하는 신실한 24세의 박유산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고 병원에서 계속 일하였다. 1894년 11월 27일 셔우드의 남편 홀박사가 장질부사로 죽자 셔우드는 한살된 아들을 데리고 뉴욕(New York)주 리버티(Liberty)의 친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때 박에스터는 그녀에게 함께 테려가 주기를 간청하여 미국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1894년 12월에 셔우드를 따라 남편과 미국으로 간 에스터는 1895년 2월에 리버티의 공립보통학교에 입학, 열심히 공부하고 동 9월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뉴욕시의 유아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하고, 1896년 10월 1일에 현재의 존스 홉킨즈(Johns Hopkins)대학의 전신이었던 볼티모어(Baltimore)의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900년에 졸업하였다.⁴⁷⁾ 남편은 돈을 벌어 그녀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그녀의 졸업 21일 전에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에스터는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에 안착할 수도 있었으나 곧 귀국하여 여성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의료사업을 폐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귀국 후 자신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 주었던 선교사 홀부인(셔우드)이 그의 귀국에 앞서 남편 사업을 잊기 위하여 다시 한국의 평양으로 와서 의료 선교사업과 맹아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의료활동을 하였으며 또 황해도 지역의 순회전도사로서의 활약도 하였다. 의사이면서도 분주한 전도생활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던 그녀는 1910년 4월 14일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의료 선교를 통한 한국내에서의 여성 의료인 배출은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필요하고 교육도 보다 용이하였다. 1902년에 에드먼즈(Margaret Edmunds)

47) 梨花女子高等學校, 앞의 책, 73~75쪽.

셔우드 홀, 『닥터 홀의 조선회상』(金東悅譯, 東亞日報社, 1984), 96~99 · 100 ~118 · 135 · 144~146 · 158쪽.

양이 우리 나라 최초의 간호 선교사로 내한하였는데, 그녀는 동년 12월에 간호원양성소를 설립, 간호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녀의 첫 학생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또 한 손가락이 없고 질투심 많은 남편한테 코를 물어 뜯겨 코 한쪽이 없는 여성이고, 두 번째 학생은 병원의 환자였었던 심한 절름발이 였다. 또 조혼의 관습때문에 괜찮은 젊은 여성을 간호원으로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고, 또 간호직을 천시하여 간호원 확보는 더욱 어려웠다고 했다.⁴⁸⁾ 이 같은 경황에서 간호원 대관식이 처음 행해진 것이 1906년 1월 25일이었고, 1908년에 두 명의 졸업생(김마태와 이그레이스)을 정식으로 배출하였다. 1906년에 세브란스병원에 간호원양성소가 설립되고, 박에스터의 여동생 김벳세⁴⁹⁾가 동 양성소의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박에스터가 당당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선교사의 활동이라는 여의사 모델이 있었고 또한 선교회라는 문을 통하여 외국유학이 가능하였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여성들이 비록 의사가 되어 사회진출을 하기 원한다 해도 그 뜻을 받아 가르칠 교육적 여건이 거의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제국신문》1899년 5월 19일자 <녀인성심>에 의하면 북촌 교동 사는 총명하고 혜철한 한 여성인 학문 배우지 못함을 한탄하다가 의학교 설립 소식을 듣고 의학을 공부하면 사회에 나아가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학교장 池錫永을 찾아가 입학하기를 청하였으나, 남녀가 동학할 수 있는 章程이 없어 입학시킬 수가 없다고 거절당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여자의 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했다. 1906년 5월에 李春世·李匡夏 등이 同濟醫學校를 설립하고 5명의 선생(그 중 1인은 姜弼周 부인 김씨)으로 남녀 兩 학과를 두고, 교과는 의학·국한문·산술·물리학·외국어학을 과하는 의학교육을 시작하였다⁵⁰⁾. 여학생이 몇 명이나 입학하여 사회에 배출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이 존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 의료활동에서 간호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廣濟院에서는 1906년 8월, 간호학교를 설치하여 “간호에 종사하면 문명

48) 蔡富仁, 50 Years of Light(美監理敎會婦人宣敎部, 1938), 6~7쪽.

49) 梨花女大 韓國女性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55쪽.

50) 《皇城新聞》, 1906년 5월 31일, <同校趣旨>.

에 진보하고 자기 衣食之道에 유익하다”⁵¹⁾면서 학생을 모집하였다.

근대 의료 보급에 따라 전국에 종두를 실시하게 되자, 여자 종두사들이 필요하였고, 출산을 도와줄 산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에 1907년 大韓醫院 관제가 정비될 때 산파 및 간호부양성소가 설립되어 정식으로 간호부를 교육하여 배출하였다.⁵²⁾ 새로운 의술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도 높아 1909년 6월 대한의원에서 여성종두사를 모집할 때는 서울 관내에서만 40~50명이 지원하였다.⁵³⁾ 여성의료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으로 사립 助產婆 양성소들도 설립되어 산파를 배출하였다. 1909년 7월 위생국 조사에 의하면 산파 33명, 간호부 33명이라고 했다.⁵⁴⁾ 수직으로는 많은 것이 아니라 의료계로의 여성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1910년대의 외국유학 여학생 중 의학교 입학자가 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나. 종교계로의 진출

종교 분야는 개신교계로의 여성진출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다음으로는 정부로부터 탄압 받던 동학이 1905년 이후 천도교로서 재정립하여 교단 확립을 하면서 천도교 포교를 위하여 수많은 부인 선교사를 두어 여성들이 활약을 보였다.

먼저 개신교계의 여성활동을 살펴보자. 교육 및 의료 분야에서 보인 개신교계 외국선교사들의 봉사적 활동과 전도는 여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종교에 대한 여성들의 호기심은 쉽게 신앙으로 바뀌었고, 선교사들은 부인성경학교 등을 세워 전도부인을 양성하였다⁵⁵⁾. 선교사들의 교육 및 의료활동은 바로 개신교를 한국 사회에 선교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들은 양성된 전도부인을 통하여 한국의 가정들을 방문하여 안주인을 기독교인화하였다. 전도부인들은 전도구역내에 교회와 여학교를 개설

51) 《皇城新聞》, 1906년 8월 2일, 〈廣濟院振興〉.

52) 《皇城新聞》, 1908년 6월 28일, 〈看護婦見習〉.

53) 《大韓每日申報》, 1908년 7월 30일, 〈看護婦募集〉.

54) 《皇城新聞》, 1909년 6월 1일, 〈看護資格〉; 6월 6일, 〈婦人醫學志願〉.

55) 蔡富仁, 앞의 책, 9~10쪽.

하고 여아와 부인들을 가르쳤다. 일제하에서 이들 전도부인들은 항일민족의 식을 고취하는 민족 독립의 전령사와 같은 역할도 하였다.

1910년 이전 개신교계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북지방의 全三德·김살로메·김도라 등과 인천의 쇄헬렌 등을 들 수 있다. 전삼덕은 서북지방에서 제일 먼저 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고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감리교계의 선교 역군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교육자이며 사회사업가이며 여성해방운동가이기도 하다. 전삼덕은 1843년 강서군 벽위섬에서 양반집 딸로 태어나, 17세에 공조참의 우부승지 등 벼슬을 한 강서의 金善柱와 결혼했다. 그러나 청을 두고 서울을 왕래하는 남편에게 만족할 수가 없었다. 1893년 그는 평양에 있는 남산현교회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몸종을 데리고 몸소 교회를 찾아가 새로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집에서 80리 길 되는 평양을 매주 예배를 보러 다녔고, 1895년에는 세례를 받아 정식 교인이 되었다. 1898년에는 두 며느리와 동리 부인 한 명을 전도하여 세례를 받게 했으며, 이 해 12월에는 강서읍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어둠에 묻혀 사는 여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여성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큰며느리 김닐린과 함께 평양의 여자성경학교를 다녀 졸업증을 받고 학교를 설립하여 며느리와 함께 여성교육을 하였다. 전삼덕은 고향 학동에 崇德學校를 설립하여 여성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5일간은 학교에서 일하고 토요일은 교회일과 지역 전도만을 하였다. 그는 1932년 8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오로지 여성교육과 전도사업에 생애를 바쳤다.⁵⁶⁾

인천지방에서 본격적인 선교사업이 시작된 것은 송도의 과부 전도부인 백헬렌에 의해서였다. 그는 남편이 죽자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왔는데, 지금의 상동교회에서 스크랜튼이 가르치는 성경반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스크랜튼에게 전도부인으로 발탁되어 그의 아래서 3년간 전도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면서 아직 여자선교사업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제물포로 파송되어 전도 사업에 힘써 개신교세를 부천을 거쳐 강화에까지 확대시켰다.⁵⁷⁾

56) 張炳旭, 《韓國監理教女性史》(성광문화사, 1979), 185~194쪽.

57) 張炳旭, 위의 책, 194~198쪽.

천도교의 지도급 여신도들의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한 활약도 적지 않았다. 천도교의 근본 정신은 만인 평등의 개벽사회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초기 동학 포교 시절부터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초기 포교 시절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의 이상적인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과 같은 것은 논의될 수가 없었다. 여자선교사를 비롯한 외국 여성들의 여러 형태의 사회 활약을 이미 접하였고 또한 여학교 출신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도 다양화해지고 있던 1905년 이후 동학은 근대적 종교로서의 교단 정립을 하면서 천도교 포교를 위한 부인 전교사(婦人奉教師)제를 두었다. 1906년 9월 천도교 부인 전교사 李九가 100여 명의 교인을 입교시키고 매 侍日마다 입교 부인들을 데리고 중앙총부 성화회에 참석했고,⁵⁸⁾ 또 이 해 12월에는 전북 금구군 송내리에 사는 교인 朴淵童의 처 이씨와 朴守桓의 어머니 김씨가 동리 부인 100여 명을 천도교에 입교시켰다.⁵⁹⁾ 부인들이 가정경영권과 자녀양육권을 전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의 가족제도에 있어서 한 가정의 주부를 교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곧 그 가족 전부를 교인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적극적 포교를 위해서는 각 가정을 방문하여 포교를 할 부인봉교사가 필요했을 것이다. 천도교에서는 1910년 4월 부인봉교사 40명을 선정하여 각 지방에 파송, 부인 포교에 힘쓰도록 결정하였다⁶⁰⁾. 이들 부인봉교사의 종교활동은 일제하에서 천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운동을 활발하게 추진시킨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새로운 직종업으로의 진출

개항 이후 일본인과 서구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자본주의적인 기계제 상품들이 대량으로 유입되었으며, 또한 국가적 개화문물정책과 외국 특히 일본의 기계제 산업체가 국내에 설립·경영됨으로 인하여 여성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들과 외국 물품 취급 상점들이 세워졌다. 산업체의 급격한 변화는 전

蔡富仁, 앞의 책, 34쪽.

58) 《萬歲報》, 1906년 9월 16일, 〈婦人誠心布教〉.

59) 《萬歲報》, 1906년 12월 28일, 〈婦人說教〉.

60) 《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14일, 〈婦女布教〉.

통적 산업 질서를 봉괴시킨 반면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과 산업에 종사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것은 여성 사회진출의 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먼저 상업으로의 여성 진출을 들 수 있다. 남성전용적 전통 상업에의 여성 진출은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종래 남자 전업이었던 보부상계에 여자가 처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1899년 8월 29일자 《독립신문》에 부상을 남편으로 한 서울 기생들이 “서방 직분을 쫓아 부상에 입참하여 남녀가 함께 등집장사를 하니 대한 상업이 더욱 흥왕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다음으로 여성에 의한 외국 교역 물품 상점의 경영이 나타났다. 1899년 1월 9일 《대한매일신보》에 서울 다방골에 사는 조문천의 침이 외국의 각 항 물건을 무역하여 장사한다고 하였으며, 양장여인 경옥당이 안동에서 서울 정동의 한창호의 집으로 이사하여 역시 외국의 각색 물건과 동서양의 각종 좋은 술을 판다고 하였다.⁶¹⁾ 여성의 상점운영은 여성을 서구문물에 간접으로 접촉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상업적 이익만이 아닌 여성 개화라는 측면에서 선각적 여성의 부인상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안현에서 부인상점을 경영하였던 李一貞이 그 좋은 예이다.⁶²⁾ 그는 당시 평리원 겸사이며 뒷날 헤이그밀사로 파견되었다가 순절한 李儒의 아내로 이미 진명부인회 등의 애국계몽적 여성단체에서 활약하였고, 일진회에서 일본에 파견한 유학생 21명이 학비난에 허덕일 때도 의연금(지폐 21환)을 내고 이들에 대한 지원운동을 벌였으며,⁶³⁾ 제국신문이 경영난에 허덕일 때는 신문애독권고운동을 펼ден 분이다.⁶⁴⁾ 가세가 빈한하여 여자가 장사를 하고 술을 파는 상행위는 일찍부터 있었으나 외국의 각종 물건을 구입하여 개화 물품 상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외국문물에 대한 견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시로서는 아주 새로운 직종의 사업으로 여겨 이들을 개명 여성으로 평판하고 있었다.

61) 《大韓每日申報》, 1899년 2월 15일, 〈韓女爲業〉.

62) 《제국신문》, 1907년 1월 16일, 〈婦人義捐〉.

63)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19일, 〈夫人寄函〉.

64) 《제국신문》, 1907년 9월 11일, 〈新聞廣覽(寄)〉.

외국 상인들의 빈번한 왕래와 외국과의 교역업자 등의 증가는 자연히 호화로운 음식점이나 유통업소를 차리게 하였다. 러시아 귀화 한국여성으로 1898년에 찬양회 조직에 참여하고 순성여학교 교사를 한때 지냈던 고정길당은 서울에 양요리점을 차려 장사를 하였다.⁶⁵⁾ 당시 외국인이나 신흥 부자들을 비롯한 일부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인 ‘有錢客’을 상대로 하는 양요리 青樓를 거금을 가지고 경영하는 자가 꽤 있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새로운 사업으로 차를 파는 다방도 생겨났다. 녹음이 우거진 南山 和壇臺 근처에는 일인이 경영하는 찻집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 한 찻집에서 한국여인이 차를 팔았다고 했다.⁶⁶⁾ 이것은 오늘날의 다방 레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성들이 이처럼 새로운 직종으로 나아가 생업을 하였던 것이다.

서구 자본제 기계상품들이 교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와, 회사나 공장을 국내에 설립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직물회사와 공장, 가스회사·연초회사·제사공장·인쇄소·조폐공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공장과 회사에는 여공이 필요했으며, 家貧한 여성들은 생계 보조를 위하여 여공으로 취업하였던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노려 일본직물회사들이 일찍부터 한국으로 진출하였다. 일본측은 여공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직조학교를 설립하고 일본인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을 행하였던 것이다.⁶⁷⁾ 직물 수요가 광범위한 데 비하여 큰 자본을 갖지 아니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직물회사이므로, 지배층 및 재야지식인들까지 직물업을 부국강병의 길로 여겨 한말에 몇몇의 직물회사가 설립되었다. 아울러 여공 진출로의 길도 그만큼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1900년 3월, 閔丙奭(사장)·李根灝(부사장)·李鳳鎬(총무원)가 설립한 서울 남서 예동의 織造綢布株式會社는 각양 주단과 포목을 직조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남녀 학생을 모집하여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친 후 졸업과 동시에 월급을 지급하는 정관을 만들어 공원을 모집했다.⁶⁸⁾ 서울 南竹洞織造所의 경우는 錦綾·木布의 직

65) 《皇城新聞》, 1899년 9월 18일, 〈女設料理〉.

66) 《萬歲報》, 1906년 7월 24일, 〈日娶韓女賣茶〉.

67) 《제국신문》, 1900년 3월 10일, 〈織造教育〉·27일, 〈織造學校〉.

68) 《皇城新聞》, 1900년 3월 19일, 〈織造會社〉.

조와 더불어 각종 표백과 염색을 專務資業하였는데 이에 종사할 학생 요원(14~20세)을 선발하여 3년간 교육시키고, 견습생에게는 점심을 제공하며 재학생이 직물을 때는 척수에 따라 공비를 지급했고 중도 퇴학자는 食料金을 변상하게 했다. 전문 직조인을 양성하여 우수제품을 생산하고 그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⁶⁹⁾

당시 직조업은 비교적 수지타산이 높은 직종이어서 각 직조회사마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공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서울 東嶺洞 漢城製裁會社의 남녀 직공모집 광고에 의하면 숙련공은 기계 2좌를 운전하여 하루에 150~60 척씩을 직조할 수 있고 초습자도 7~8일을 배우면 1좌에 5~60척을 직조할 수 있으므로 매일 7~8냥의 공전을 받을 수 있다 하였고, 여공 숙소는 따로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남녀 임금의 차이는 두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⁷⁰⁾

일인 경영의 동아연초회사·용산인쇄국과 典圖局·일한가스회사도 여공원·女技員 및 여사무원을 모집하였다. 1900년에 전환국을 인천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고, 동 7월 6일부터 한국 여공 15명을 선발하여 원료를 精選케 했다. 이것은 여성이 처음으로 公設作業所에 근무한 것으로 일제측은 이에 관하여 규문에 침거하던 여성 관습을 타파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⁷¹⁾ 가스회사는 14~8세의 고등학교 졸업 정도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무원으로서의 전문직종인 때문인 것이다. 이에 비해 인쇄국과 연초회사의 경우는 연령 15~25세를 모집하였으며 동아연초회사의 경우 한국인 여공이 무려 260여 명이었다. 이 정도면 능히 공인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숫자로, 실제로 1909년 한국여공이 日女에게 구타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일제히 퇴사하는 일이 있었으며,⁷²⁾ 1910년 3월에는 부인의 월급이 겨우 3환밖에 되지 아니하여 임금에 불만을 품고 많은 부인들이 퇴사를 했다.⁷³⁾

1910년대에 오면 생계보조적 수단과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의 희망 등으로 인하여 여성취업 의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1910년 4월에 서울 新門外 作蠶會

69) 《皇城新聞》, 1900년 7월 14일, 〈織造所의 擴張〉.

70) 《皇城新聞》, 1901년 5월 13일, 〈男女織工募集〉.

71) 《京城府史》(京城府, 1936), 1016쪽.

72) 《大韓每日申報》, 1909년 12월 12일, 〈烟社風波〉.

73) 《皇城新聞》, 1910년 3월 20일, 〈婦人退雇〉.

社에서 고용 여인 30명 모집에 무려 2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던 것⁷⁴⁾은 당시 사회의 경제적 여건과 여성 사회진출의 의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朴容玉〉

6) 민중운동의 전개

(1) 농민운동

대한제국시기의 민중운동은 농민운동, 초기 노동운동, 민중의 조직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

농민운동은 주로 국가의 租稅부과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지만 국유지를 중심으로 地代수취에 대한 저항이나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도 나타났고, 또한 지방농촌사회의 공동체 운영과 관련한 갈등으로도 나타났다.

조세저항운동(抗稅運動)은 19세기에 광범하게 발생한 전통적인 농민항쟁과 같은 양상을 보이면서 郡단위의 조세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하여 조세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지만 조세제도의 근대화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²⁾ 즉 조세부과의 불합리성·불평등성, 중간관리의 횡령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제국시기에도 이러한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의 조세수취에 대한 농민의

74) 《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26일, <雇女募集>.

1) 대한제국시기의 민중운동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들을 참고했다.

정창렬, <한말 변혁운동의 정치·경제적 성격>(《한국민족주의론》1, 창작과비평사, 1982).

이영호, <한국근대 민중운동연구의 동향과 ‘국사’교과서의 서술>(《역사교육》47, 역사교육연구회, 1991).

이윤상, <대한제국기 농민운동의 성격>(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2, 역사비평사, 1992).

양상현, <대한제국기의 민중운동>(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3, 풀빛, 1996).

2) 배영순, 《한말·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서울大 박사학위논문, 1988).

왕현종, <한말(1894~1904) 지세제도의 개혁과 성격>(《한국사연구》77, 1992).

이영호, 《1894~1910년 지세제도 연구》(서울大 박사학위논문, 1992).

저항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 시기의 조세저항운동은 조세의 근대화라는 근본적인 목표하에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郡단위에서 조세수취과정의 사소한 불합리한 문제로부터 농민운동은 전개되었다. 특히 조세수취를 담당하는 郡守와 脊吏 등 각종 중간수취인의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취과정에서 중간관리들의 횡령의 문제가 조세를 납부하는 농민의 억울함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간관리의 불법적 수탈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명분으로 전개된 조세저항운동의 배경에는 조세부과의 불합리성·불평등성의 문제도 놓여 있었다. 조세제도의 근대화를 위한 농민들의 요구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부터 출발하였고, 그러한 저항운동의 힘이 축적되면서 제도개혁의 기반을 형성하였다.

조세저항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1899년의 龍仁農民抗爭, 1899~1902년에 걸친 灵巖農民抗爭을 들 수 있다. 용인농민항쟁은 조세부과의 불합리성·불평등성 문제, 영암농민항쟁은 조세수취과정의 횡령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난 저항운동이다.

1899년의 용인농민항쟁은 조세부과액과 징수액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추가부담액(加結)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³⁾ 2,400여 結의 총부과액 외에 추가로 112결을 농민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농민들은 1898~1899년 여러 차례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서리들과 농민들이 횡령하거나 숨겨놓은 세액(吏隱結)을 찾아내어 정부에서 규정한 부과총액을 채우도록 지시하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농민들은 1899년 음력 6월 29일부터 관청으로 몰려가 군수를 끌어내고 서리를 구타하고 공공건물과 관속의 주택을 파괴하는 등 실력행사를 통하여 추가부담액의 탕감을 요구하였다.⁴⁾ 실제의 稅源에 입각한 조세부과가 합리적인 것이지만, 조선후기 이래로 정부에서는

3) 이영호, <대한제국시기의 토지제도와 농민층문화의 양상—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의 비교분석>(《한국사연구》69, 1990).

4) 《司法稟報》甲(奎 17278), 光武 3년 8월 26일 보고서, 광무 3년 8월 龍仁郡民擾事查官竹山郡守行查文案, 광무 3년 8월 龍仁郡民擾時公廨及人家破碎擣奸記, 광무 3년 9월 23일 보고서.

《司法稟報》乙(奎 17279), 광무 3년 8월 29일.

도별·군별로 할당한 조세의 총액을 채워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꾀하는 總額制로 재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조세액의 축소를 용납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은결을 찾아내어 보충할 것을 지시하면서 총액의 변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1898년부터 시작된 대한제국의 量田事業을 통하여 조세징수액의 현실화가 기대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사업의 실효를 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⁵⁾ 따라서 대한제국시기의 조세저항운동은 여전히 結負制에 기초한 총액제적 조세부과라는 조세수취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었고, 농민들의 조세저항운동은 조세제도의 근대화를 통하여 해소될 수 있는 것이었다.

1899~1902년의 영암농민항쟁은 조세수취담당자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 조세수취담당자는 戶首·洞任·面任·鄉任·胥吏·差人·郡守 등이었는데, 이들의 횡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담이 농민에게 다시 전가됨으로써 농민들이 저항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영암에서는 갑오개혁 이후 서리들이 횡령한 조세액만도 수십만 냥에 이르렀다. 그 횡령액을 서리들은 結總의 부족을 내세워 202結 47負 6束을 각 면의 농민들에게 부과하였다.⁶⁾ 이러한 배경하에서 1899년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횡령액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서리들은 횡령액에 대한 정부의 탕감을 기대하면서 계속 횡령하게 되자, 1902년 다시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진위대를 파견하여 농민들을 탄압해산하는 한편, 새로 부임한 군수는 조세를 횡령한 서리 30~40명을 체포하였다.⁷⁾ 이렇게 되자 서리들이 옥문을 부수고 나와 농민들을 위협, 수천 명을 강제 동원하여 오히려 군수를 축출하였다.⁸⁾ 이후 정부에서 별도로 視察을 파견하여 직접 조세를 수취하여 서리들의 이익이 사라지게 되자, 안동과 영암의 서리가 주동이 되어 전라도 및 경상도 각 읍에 通文을 보내어 1904년 1월 20일 부산에서 일제히 모여 항의집회를 개최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⁹⁾

5) 한국역사연구회,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민음사, 1995) 참조.

6) 《公文編案》(奎 18154) 31책, 전양 원년 5월 2일, 〈訓令 羅州府〉 및 5월 22일, 〈훈령 영암군수 鄭元成〉; 43책, 광무 2년 6월 6일.

7) 筆者未詳, 《日新》韓國史料叢書 29(국사편찬위원회, 1983), 광무 3년 9월 8일·10월 1일 및 광무 6년 1월 24일·5월 19일.

8) 《日新》, 광무 6년 6월 5일.

9) 金允植, 《續陰靑史》下, 권 10(국사편찬위원회, 1960), 광무 8년 1월 2일, 67쪽.

이와 같은 조세수취담당자의 부정행위는 도덕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한 부정행위가 가능했던 수취구조가 문제였다. 수십 명의 이서총이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 관여하여 생계비를 확보하고 있었고, 향임·면임·동임 등도 호수·납세자 結民과 함께 조세상납의 연대책임을지고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조세의 납부과정에 여러 단계가 있었고 각 단계마다 납세책임자가 존재하여 횡령의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열려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상인들이 조세금을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전개하거나, 중앙으로의 조세상납을 책임진 차인들이 급속히 발전한 상품화폐경제를 이용하여 상업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조세상납이 지체되거나 횡령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확대되었다. 조세수취방식의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농민의 지대저항운동(抗租運動)은 한국 중세 사회경제의 구조적 성격으로 볼 때 조세저항운동에 비하여 격렬하게 전개되지는 않았다. 전호농민의 집단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민간 지주의 경작지에서는 지대저항운동이 개인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또 흥년시에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궁장토나 둔토와 같은 국유지에서는 지역적으로 전호농민이 집단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대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¹⁰⁾

이러한 양상은 대한제국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궁방과 정부의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관장하던 궁장토·둔토·驛土 등이 통폐합되고 정부의 단일기관에 의해 관장되면서 그 동안 면세되던 토지에 과세됨으로써 이를 국유지에서 경작하는 농민의 경작조건이 열악해졌고, 이에 대한 저항이 지대저항운동으로서 표출되었다. 정부에서는 국유지에 대한 파악과 作人에 대한 파악을 강화하는 한편, 지대의 정액화와 금납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대인하의 과정을 밟아가던 지대의 근대화를 역행시키는 지대수취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지대의 상품화를 고려한 現物納의 강화와 半打作의 지대수취는 소상품생산자로의 성장의 길을 모색하던 국유지의 작인농민들을 지대저항운동에 나서게

10) 김용섭, <司宮庄土에서의 時作農民의 경제와 그 성장>(《조선후기농업사연구》 1, 중보판, 지식산업사, 1995).

이영호, <18·19세기 지대형태의 변화와 농업경영의 변화>(《한국사론》 11, 서울大, 1984).

도진순, <19세기 궁장토에서의 중답주와 향조>(《한국사론》 13, 서울大, 1985).

하였다. 작인농민들은 집단적으로 지대저항운동을 계획하고 그것이 民亂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해 갔다.¹¹⁾

국유지에서의 지대저항운동은 단순한 경제투쟁의 양상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국유지의 기원과정에서 배태되어 있었던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국가와 농민 사이의 소유권 분쟁이 현실적으로는 지대수취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것이다. 지대의 귀속여하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여하가 결판나기 때문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전라도 고부 등지의 明禮宮 庄土에서 제기된 均田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¹²⁾

균전문제는 전주·옥구·김제·금구·임피·부안·태안 등 7개 읍의 陳田 을 명례궁에서 자금을 대고 개간토록 한 뒤, 지대수취와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왕실 및 균전관리와 균전농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균전이 되면 지세를 영원히 면제하고 3년 후부터 매우 저렴한 지대를 수취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지세와 지대를 모두 징수하고 지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일반 민전의 수준에까지 유파하게 되었다.¹³⁾ 이러한 수취의 결과는 토지소유권이 왕실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하였고 따라서 균전에서의 지대저항운동은 토지소유권 투쟁의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균전문제로 비롯된 농민의 저항은 지대저항운동이나 토지소유권 투쟁의 범주를 넘어 농민봉기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894년 농민전쟁에서는 농민군들이 均田使 의 처단을 요구하였고, 1899년 영학당운동도 균전농민들의 전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¹⁴⁾

한편 대한제국시기에는 지방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났다. 조선후기에는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던 士林層이 경제적 능력을 배경으로 새로이 등장한 饒戶富民 등의 상승세력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을 전

11) 박찬승, 〈한말 驛土·屯土에서의 지주경영의 강화와 抗租〉(《한국사론》9, 서울大, 1982).

김양식, 《대한제국·일제하 역둔토 연구》(단국大 박사학위논문, 1992).

12) 김용섭, 〈고종조의 均田收賄문제〉(《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중보판, 일조각, 1984).

13) 《起案》(奎 17746), 광무 8년 7월.

14) 이영호, 〈대한제국시기 영학당운동의 성격〉(《한국민족운동사연구》5, 1991).

개하였는데, 대한제국시기에는 봉건적 특권의 소멸로 인하여 전통적인 사람 층이 몰락하고 근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外勢 또는 그들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갈등의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합경도 城津民擾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¹⁵⁾ 성진민요는 1899년 성진 개항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세력이 성진군을 신설하고 그곳에서의 행정 및 자치업무를 장악하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 새로운 세력, 즉 新鄉層은 성진항의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주적·부농적·상인적 기반을 가진 계층이었으며 성진군의 신설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성진군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舊鄉層은 성진군을 폐지하여 구향충의 주도하에 놓여 있는 길주군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新舊鄉의 대립이 격렬하여졌고, 1900년과 1902년 무력충돌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¹⁶⁾

이러한 신구항의 대립에는 구향충의 反目的 입장과 신향충의 親目的 입장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신향충은 일본의 보호에 의지하여 성진군을 독립시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고, 구향충은 일본인에 대한 개항과 그들의 경제적 침투를 경계하였다.¹⁷⁾

이와 같이 성진민요에는 신구항 사이의 주도권 다툼과 동시에 외세의 수용여부라는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 지역

15) 김도형, <대한제국의 개혁사업과 농민층분화>(《한국사연구》41, 1983).

이영호, <갑오개혁 이후 지방사회의 개편과 城津民擾>(《國史館論叢》41, 국사편찬위원회, 1993).

16) 《城津府民擾查檢案》(奎 16029의 1), 광무 4년 9월 10일.

《城津府民擾查案謄本》(奎 16029의 3), 광무 4년 10월 3일.

《吉州城津按覈使奏本》(奎 17142), 광무 4년 12월 31일.

《駐韓日本公使館記錄》(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제11책 <1900년 各領事館機密來信1>, 제15책 <機密各館往來>.

《韓日外交未刊極秘史料叢書》35·36 (김용구 편, 아세아문화사, 1996).

17)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舊韓國外交文書》日案 7.

《咸鏡南北道來去案》(奎 17983)2, 광무 9년 6월 24일.

《城津報牒》(奎 17871의 2), 광무 9년 3월 30일.

外部編, 《訴狀》(奎 18001), 광무 9년 9월.

을 점령하여 軍政을 실시함으로써 성진군의 행정업무는 친일적인 체제로 구축되었고, 친일적인 신향총은 이에 편승하여 성진군의 하부 행정조직에 참여하였다. 신향총이 일제 식민통치의 지방적 동반세력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집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제국은 반봉건 근대화와 반제 자주화의 과제, 즉 자주적 근대화를 달성해야 할 역사적 과제를 지닌 사회였다. 조세저항운동은 조세제도의 근대화 운동이었고, 지대저항운동과 토지소유권 분쟁은 근대적 토지소유의 확립을 지향하는 운동이었다. 지방세력의 주도권 쟁탈전은 근대적 지방행정제도의 수립, 농촌사회의 근대화, 그리고 일제 침략의 수용여부와 관련된 운동이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당시의 봉건모순과 민족모순을 인식하고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농민층의 의지를 표출한 농민운동이었다.

(2) 초기 노동운동

노동계층은 조선후기 농민층분해의 과정에서 형성되었지만 그들이 농촌을 떠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노동자로서 등장하지는 못하였다. 농촌에 그대로 퇴적되어 있거나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개항 및 개항장의 운반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갑오개혁 이후에는 열강에의 이권양여로 말미암아 광산개발과 철도건설이 시작되어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자, 이러한 작업현장에서 초기 노동자 계층이 형성되었다.

개항장·도시·광산·철도건설현장으로 진출한 초기 노동자 계층은 아직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완전한 노동자는 아니었다. 작업의 내용이 아직 산업 생산의 본류에 편입된 것은 아니었고,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에 什長·德大 등 봉건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중간관리자도 끼어 있었다. 작업현장에 봉건적 유제와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이들을 고용한 자본이 제국주의의 자본이거나 이와 결탁한 매판적 성격의 자본이었기 때문에 작업현장에 민족적 문제가 작용하였다. 따라서 초기 노동운동에는 봉건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활동과 함께 반제국주의 활동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었다. 외국인 광산에서 전개된 광산노동자의 저항운동, 목포를 비롯한 개항장 부두노동자의 파업투쟁, 일본인 철도건설현장에서 전개된 철도노동자의

반일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광산은 조선시대에도 개발되고 있어서 광산노동자층은 일찍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자본제적인 생산방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맹아적 모습도 발생하였다. 여전히 봉건적인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物主制와 德大制와 같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경영방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시기에 들어서 광산개발권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에 고루 양도되면서 광산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외국인의 광산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은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기존의 광업자들은 광업권을 수호하려 하였고, 지역민들은 토지배상문제와 산림벌채문제, 기타 사회문제로 저항하였고, 광산노동자들은 임금문제와 민족차별문제로 저항하였다.¹⁸⁾

기존의 광업자들은 광업권을 수호하고자 하였다.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으로 광산에서는 이전에 광산개발에 착수하였던 자본가들이 자본투자의 이윤을 회수하지 못한 채 광산을 빼앗기게 되었다. 광산의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선 광맥을 발견하고 이를 채굴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가 요구되었다. 제국주의 열강이 탈취한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광산이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이제 본격적인 채굴단계에 들어간 광산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광산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한국인 광업자들은 제국주의의 광산이권 획득에 따라 사업장을 잃게 되었다. 일부 광업자들은 외국인 광산의 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채굴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1899년 미국의 雲山金礦에서는 潛採를 구실로 밭포하여 황승권·최원백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고, 金奉文은 사살되기도 하였다.¹⁹⁾ 미국의 광산채굴권을 인정한다면 한국인의 체굴은 잠체가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광업권을 상실한 한국인 영세 광업자의 저항이 놓여 있는 것이었다. 1900년에는 운산금광에 고용된 영국인

18) 이배용, 『구한말 광산이권과 열강』(한국연구원, 1984).

———, 〈구한말 광업권 수호운동의 제양상〉(《이화사학연구》17·18, 이화여대, 1988).

———, 〈광업권 수호운동〉(《한국민족독립운동사》1, 국사편찬위원회, 1987).

———, 《한국근대광업침탈사연구》(일조각, 1989).

19) 《司法稟報》乙, 광무 3년 7월 12일·21일.

이 폐실되었는데 그 피고로는 昌城金礦에서 金店德大 일을 보았던 韓箕朝가 체포되었다.²⁰⁾ 한기조의 범행여부를 떠나 이러한 사례에서 예전의 광업자들이 외국의 이권침탈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가졌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內藏院이 수세를 통하여 관장하고 있던 광산들이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가들에 양도되면서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지역민으로서 토지가 광산에 편입된 소유자들은 토지배상문제로 외국인 광산자본가와 갈등을 빚었다. 이를 광산에는 이미 토지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산림을 이용하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광산부지를 혐값으로 인수하거나 내장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절수를 받으려 하였다.

지역민들은 외국인 광산이 들어섬으로 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고통을 받았다. 미국인이 개광한 운산금광에서는 그 폐단이 8가지로 지적되었다. 한국인 사망자의 개·돼지 취급, 목석 운반과정에서의 전답 훼손, 石沙로 인한 전답의 황폐, 墓松의 벌목, 부랑무뢰배의 부녀자 및 재물 낙탈, 미국인의 불법적인 형벌과 징역, 通辯의 경제적 농간, 저수지 수축시 田宅價 혈가 보상 등이었다.²¹⁾ 여기에는 광산노동자의 피해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의 피해로서 농사·전답·산림 등 물적 피해와 지역주민에 대한 인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광산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까지 겹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빈농들은 광산에서 노동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부농들은 이 지역을 피해 떠나가기도 하였다.²²⁾

광산노동자들은 임금문제와 민족적 차별문제 등을 중심으로 저항하였다. 미국의 운산금광에서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저임금 정책을 시행하여 반발을 샀다. 독일의 堂峴金礦에서는 독일의 금광채굴을 반대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집단폭동이 있었다. 영국의 殷山金礦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일본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광업자, 주민들이 합세하여 무력충돌에 이르기도 하였다. 일본의 稷山金礦에서는 노

20) 外部 編, 《法部來去文》(奎 17795), 광무 4년 11월 24일 및 광무 5년 4월 2일.

21) 外部 編, 《訴狀》(奎 18001) 7책, 광무 7년 9월, 〈平安北道雲山郡儒鄉白利龍前博士崔基鳳等請願〉.

22) 위와 같음.

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광산노동자들의 저항운동은 광산개발권이 제국주의 열강에 양도됨으로써 기존의 광업자,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일치되어 진행되었고,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보다는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저항이 강하였다.

개항장 부두는 농민층분해로 인하여 농촌사회에서 몰락한 농민층이 개항을 맞이하여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동현장이었다. 개항장에서의 노동은 주로 운반노동으로서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생산부문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유통기능을 담당하던 개항장의 자본가에 의하여 고용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개항장의 자본가가 대체로 일본인이었던 점에서 부두노동자는 초기 노동자층으로서의 계급적 갈등과 함께 민족적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부두노동자는 저렴한 都給制 임금과 민족적 임금차별,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두노동자들은 ‘都中’이라는 초보적인 노동조직을 마련하였다. 도중의 대표는 檢察이었고 이들이 부두노동자들을 산하에 거느린 십장을 지휘 감독하였다. 도중은 노동자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자 조직이었지만 검찰과 십장의 지배로 말미암아 부두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부두노동자들의 불만은, 개항이 되자마자 곧바로 터진 목포부두노동자 파업투쟁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²³⁾ 목포에서는 1898년부터 1903년까지 부두노동자의 파업투쟁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임금투쟁·反長운동·反日本牌운동이 중심이었다. 임금투쟁은 일본인 자본가의 임금인하 조치에 대한 반대투쟁이었다. 그것은 성격상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이었지만 민족적 차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반십장운동은 십장이 봉건적 노동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간수탈을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 반일본파운동은 십장들이 일본인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부두노동자들을 일본인 자본가 수중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監理署牌 대신에 일본패를 차도록 강요함

23) 양상현, 〈한말 부두노동자의 존재양태와 노동운동〉(《한국사론》14, 서울大, 1986).

으로써 일어난 운동이었다.

이와 같이 개항장의 부두노동자들은 노동조직의 봉건성과 일본인 자본가의 억압에 반대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그것은 봉건적 민족적 위기를 반영하는 한국의 초기 노동운동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철도건설현장에는 초기 노동자층으로서 참가하는 토목노동자들도 있었지만 그밖에 많은 노동자들은 농촌사회에서 강제로 동원된 役夫들이었다. 그들은 대체로 빈농층, 농업임노동층으로서 철도건설현장에 동원되어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부역과 같은 성격의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다. 경부철도공사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는 1일 20전을 받았지만 일본인 노동자는 60전을 받았다. 이들은 살인적인 사역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터널공사의 노동밀도는 특히 가혹하였다. 일본인 감독은 무기를 동원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을 독려하였다. 増若터널공사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일본인들을 터널 속에 몰아넣고 공사장을 점령하였지만 일본 현병대에 의하여 진압된 일도 있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시홍·청도·전의·개령·정주 등 각지의 철도공사장에서 봉기하여 일본인 감독을 사살하기도 하였다.²⁴⁾

역부로 동원된 지역의 농민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저항도 강력하게 일어났다. 1904년 始興民擾는 군수와 서리들이 역부의 임금을 착복함으로써 발생하였다.²⁵⁾ 1904년 谷山民擾는 노동자의 강제징발에 대하여 저항한 것이었다. 농민들은 노동자 징집을 독촉하던 일본인 7명을 타살하였다. 일본군 200명과 현병 50명이 출동하여 곡산민요를 진압하였고, 주동자는 일본군에게 총살당하였다.²⁶⁾

철도건설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은 철도건설이 일본에 의하여 주도됨으로써 반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부역적 성격의 노동으로 인하여 노동조건은 극도로 열악하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서 비롯된 것이고, 여

24) 정재정, 『일제의 한국철도 침략과 한국인의 대응(1892~1945)』(서울大 박사학위논문, 1992).

25) 김형목, 〈한말 시홍농민운동에 관한 연구〉(《중앙사론》 6, 중앙대, 1989).
《始興稷山按覈使奏本》(奎 17147).

26) 《司法稟報》乙, 광무 8년 10월 30일 및 광무 9년 9월 6일.

기애 국내의 매판세력이 결탁됨으로써 그들의 저항은 반제 반봉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초기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특징은 초기 노동자층이 자본제하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자본가가 제국주의의 자본가라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초기 노동운동은 반봉건적 성격을 내재하면서 반제운동의 성격을 표출하였다.

(3) 민중의 조직운동

1894년 농민전쟁 이후 정부의 농민전쟁 수습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개화파 정부 아래서나 광무정권 아래서나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총의 안정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들의 생산현장으로부터의 이탈, 그리고 유민화, 조직화의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농민전쟁에 적극 참여한 동학의 남접세력, 그리고 농민전쟁에 휘말린 수없이 많은 변혁지향적 농민들은 농민전쟁 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을 도모하고 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가운데는 종교적 신비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간 자들도 있고, 개인적 치부를 위해 폐단을 야기한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변혁활동을 전개한 자들은 계속해서 민중조직을 활용하였다. 그러한 조직으로서는 義兵·東學黨·英學黨·南學黨·西學黨·火賊黨·活貧黨의 조직을 들 수 있다.

1894년 농촌사회에서 혁명적인 반봉건 활동을 전개할 때 보수유생층이 이들 농민군을 배척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기 때문에, 보수유생층이 주도한 乙未義兵에 농민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것을 주도할 수는 없었다. 동학접주었던 태인의 金文行과 같이 을미의병에 지도급 인사로 참여한 자도 있었으나,²⁷⁾ 농민군은 어디까지나 보수유생층의 지도부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고, 단지 이를 변혁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도였다.

남접세력의 농민전쟁 정신을 계승한 남접계열의 농민군 잔여세력은 변혁 운동에 계속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 동학당은 북접교단이 조직의 재건과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1900년대에 들어가 개화와 친일의 방향으로 선회합

27) 《司法稟報》乙, 광무 7년 2월 13일.

에 따라 북접교단과 연합적으로 변혁운동을 꾀할 수는 없었다. 이들 동학당의 활동을 살펴보면, 1900년경 해주지방에서 동학잔당이 다시 집회를 열고 봉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재령·신천 등지에서도 동학의 두목인 임종현·원용일 등이 봉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남부지역에서도 소백산맥의 좌우에서 동학당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관동의 세력은 1900년 4월 8일 전주에서 외국인 배척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였고, 서정만의 세력은 1900년 3월 4일 속리산에서 제천행사를 개최하고 반제국주의 봉기를 꾀하였다. 북접교단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동학당의 활동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903년에는 서정만 부대의 두목 중 한사람이었던 정해룡이 재봉기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²⁸⁾

동학당 가운데 주목되는 활동은 英學黨의 경우에서 나타났다. 영학당은 표면적으로는 서양종교에 투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라도에서 가장 조직적 세력이 커던 孫和中包의 중견간부들이 농민전쟁의 재현을 위하여 조직한 동학당의 조직이었다. 손화중포의 손병규·홍계관·최익서 등은 1896년 8월 崔時亨을 찾아가 設包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최시형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영학당을 조직하여 농민전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여기에 金開男包의 김문행이 가담하고 북접교단의 진보파인 金洛喆이 후원하였다.

영학당은 세력이 확대되자 1899년에는 자기들의 고향으로서 손화중포 세력 지역이었던 전라도 고부·정읍·홍덕·무장·고창지역에서 다시 농민전쟁과 같은 이념·목표·방법을 동원하여 재봉기를 꾀하였다. 1899년 봄, 농민전쟁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균전문제가 재발하였다. 균전농민들은 균전의 혁파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농성하였고, 정부에서는 진위대를 파견하여 진압하였다. 1893년 균전문제로 일어난 전주항쟁이 고부농민항쟁을 계기로 1894년 농민전쟁을 확산시켰던 것처럼, 1899년의 균전문제는 이 지역에 영학당의 무력봉기를 촉진하였다. 영학당의 목표는 고창 등지를 공격하여 무기를 확보한 뒤 靈巖民亂所로 향하여 그들과 합세하여 광주를 점령하고, 그리고

28) 이영호, <갑오농민전쟁 이후 동학농민의 동향과 민족운동>(《역사와 현실》3, 1990).

전주관찰부를 함락한 뒤 서울을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목포를 습격하여 외국인을 징벌할 계획도 세웠다. 정읍 최익서의 주도로 영학당은 1899년 음력 4월 18일 봉기하여 고부·홍덕·무장을 공격한 뒤, 22일 고창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패하였다. 영학당운동은 손화중포 잔여세력이 김개남포 잔여세력과 연대하여 주도하면서 전라도의 진보적 북접세력을 끌어들여 추진한 사회변혁운동이었다. 이로써 농민전쟁 이후 남은 남접세력이 농민전쟁의 이념을 계승하여 사회변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南學黨은 동학당과의 관련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동학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여 충남과 전북지역에서 포교가 이루어진 종교조직이었다. 농민전쟁 시기에 동학과는 별도로 농민전쟁에 호응하는 연합적 봉기를 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농민전쟁 이후에는 동학과 마찬가지로 지목을 받아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농민군이 남학당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농민전쟁 이후 농민군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남학당은 동학과 마찬가지로 그 종교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그러한 방향은 남학당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종교조직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방향 가운데는 신비주의적 방향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교리의 신비주의 여부가 아니라 그 사회적 활동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이 점에서 남학당의 일부세력이 제주도로 건너가 조세문제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비롯된 1898년의 방성칠亂(제주농민항쟁)을 일으키는 주도세력이 되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³⁰⁾

西學黨의 경우 기독교 신구교 즉 天主敎와 邪蘇敎는 그 교리체계와 교단조직이 확고하였고, 서양열강 공사관의 보호 아래 조직적으로 포교가 이루어

29) 이영호, <대한제국시기 영학당운동의 성격>(《한국민족운동사연구》5, 1991).
———, <농민전쟁 이후 농민운동조직의 동향>(《1894년 농민전쟁연구》4, 역사비평사, 1995).

30) 이강오, <구한말 남학의 발생과 그 성격에 대하여>(《전라문화연구》1, 전북향토문화연구회, 1979).

조성윤, <1898년 제주도민란의 구조와 성격－남학당의 활동과 관련하여>(《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4, 문학과 지성사, 1986).

강창일, <1901년의 濟州島民 항쟁에 대하여>(《濟州島史研究》1, 1991).

이영호, 위의 글(1995).

졌다. 농민군 잔당이 이에 가입한 것은 우선 정부의 탄압을 모면하고 治外法權的 보호와 세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 그 교단조직이 확고한 만큼 농민군의 잔여세력이 그 속에서 조직활동을 통하여 사회변혁운동에 나서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사회변혁적 지향을 가진 것을 전혀 부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보령의 조덕필과 남포의 정행선은 야소교에 들어가 물의를 일으켜 체포된 뒤에도 주민들에 의하여 피살된 자들인데, 그들은 농민전쟁 당시 동학의 巨魁였고 뒤에 걸으로는 야소교에 의탁하고 속으로는 동학잔당을 규합하여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들은 수령의 지방행정을 거부하였고, 수령은 그들을 그대로 두면 다시 ‘甲午의 亂’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할 정도였다.³¹⁾

火賊의 활동은 조선후기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고 농민전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³²⁾ 농민군으로서 농촌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자들은 산속으로 피신하였고, 그들은 결국 화전민이 아니면 화적이 되었다. 따라서 농민전쟁 이후 농민군으로서 화적이 된 자들은 매우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화적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당시 이들 화적에 다수의 사회변혁적 인물들이 들어가면서 그 조직과 지향이 변화되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반봉건·반외세의 이념을 표방한 義賊으로서의 活貧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활빈당의 활동은 1900~1906년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³³⁾ 활빈당은 충청·경기지역에서 활동한 파당, 낙동강 동편의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파당, 소백산맥의 동서지역에서 활동한 파당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활빈당은 상호 횡적인 연계관계를 유지하면서 비밀스럽게 활동하였고, 조직의 보안을 위하여 입당시에 엄격한 맹세의 의식을 거치고 變姓名하며 조직을 폭로할 경우에는 보복을 가하였다. 활빈당은 양반·부호가, 관가, 장시 등을 습격하였는데, 약탈한 재물을 빈민에게 분배함으로써 활동의 정당성을 홍보하였다. 그

31) 《日新》, 1902년 7월 24일, 883쪽.

《忠淸南北道來去案》(奎 17989), 1902년 8월 12일 · 17일.

32) 권영배, <1896~1906 무장농민집단의 활동과 성격>(《역사교육논집》6, 경북대, 1984).

33) 박찬승, <활빈당의 활동과 그 성격>(《한국학보》35, 1984).

들의 입장은 ‘大韓土民論說 13조목’에 잘 나타나 있다.³⁴⁾ 그것은 빈농층, 소상인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봉건 반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행상, 유민층, 초기 노동자층, 결인 등이 활빈당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향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농민전쟁 이후에는 동학농민군의 잔당들이 여러 사회조직에 편입되어 가고 그들 조직을 사회변혁운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김문행은 농민전쟁－의병－영학당－의병에 차례로 가담하고 있는데,³⁵⁾ 농민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조직을 사회변혁운동의 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점이 주목된다. 이 점이 이 시기 농민군 활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1894년 농민전쟁 이후 농민군의 동향을 조직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부의 대책이 농민전쟁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수립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농민군의 활동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특히 외세의 침투를 경계하는 변혁운동으로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듯 1894년 농민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형태의 민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농민층은 농촌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였고, 초기 노동자계층은 개항장·광산·철도건설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농민층은 농촌사회의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봉건모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초기 노동자계층의 노동현장은 제국주의국가의 경제적 침략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제기가 봉건모순 뿐만 아니라 민족모순으로도 향하고 있었다. 극빈농, 농업임노동층 및 유민층은 동학당·영학당·활빈당 등을 결성하여 반봉건 반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생산현장에서 떠나 있었지만 봉건모순과 민족모순을 극복하기 위하

34) 信夫淳平, 《韓半島》(東京堂書店, 1901). 내용은 防穀 실시와 救民法 시행, 외국 상인 엄금, 행상 세금징수 반대, 금광채굴 엄금, 私田 혁파와 均田 시행, 곡가 안정, 惡刑 폐지, 소도살 엄금, 철도부설권 양여 반대 등이다.

35) 오지영, 《동학사》(영창서관, 1939).

《司法稟報》乙, 광무 7년 2월 13일.

《황성신문》, 1899년 6월 23일, 〈南擾의 顛末(續)〉.

法部 編, 《訴狀》(奎 17281), 1905년 5월, 〈정역죄수 김문행의 범부대신에 대한 청원서〉.

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대체적으로 광무년간의 민중운동은 민족모순에 규정되는 측면이 강화되면서 반일 의병전쟁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다.

〈李榮昊〉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1) 법제의 근대화 과정

일반적으로 법제의 근대화 과정은 전통적 법체계에서 서구적 법체계를 수용(Rezeption)해 온 과정으로 파악한다.¹⁾ 우리 나라에서 외국법의 수용은 대체로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즉 삼국시대의 魏晉 내지 唐律의 수용, 고려시대의 당률 및 宋·元律의 수용, 조선시대의 明律의 포괄적 수용, 개화기부터 일제기에 걸친 서구법, 특히 유럽 大陸法의 수용, 그리고 해방후의 대륙법 및 英美法의 수용이 그것이다.²⁾

(1) 시대구분

일반적으로 한국근대사의 기점을 1876년 병자수호조약의 체결이나 그전부터 잡고 있으나 법제사적으로는 근대화의 기점을 갑오개혁으로 잡는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910년 한일합병까지의 기간을 법제사적으로 시기구분할 때 일본과의 관계에서 개혁기·복고기·통감부기로 3분할 수 있다.

제1기 개혁기(1894~1895)는 갑오·을미년간의 개혁기라고 할 수 있다. 이

1) 한말의 입법은 1970~1972년에 국회도서관에서 《韓末近代法令資料集》(전 9권)과 《統監府法令資料集》(전 3권)으로 정리하여 발간하였고, 1991년에 서울대학교 奎章閣에서 《詔則·法律》·《議案·勅令》으로 원본을 영인·발간하였다. 개화기에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鄭肯植, 《韓末法令體系分析》(한국법제 연구원, 1991)을 참조. 본고는 그러한 입법과정을 단순한 법제도사가 아닌 법사회사적 관점에서, 특히 民刑事法의 제정과 법생활의 변화의 측면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朴秉濬, 《한국의 법》(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崔鍾庫, 《韓國法과 世界法》(교육과학사, 1989).

시기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내정을 개혁하기 위해 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군국기무처의 議案과 王이 내리는 詔勅의 형태로 개혁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한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여 내각을 통해 법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제2기는 복고기(1896~1905)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우세한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곧 독일·프랑스·러시아의 간섭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이완용·이범진 등의 친러내각이 성립되어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俄館播遷, 1896년 2월). 이 때 열강은 조선의 산림·광산 등 이권을 장악하는 등 자주국가로서의 면모가 없었다. 이에 독립협회의 주장으로 고종은 환궁하여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1897년 10월에 국호를 ‘大韓帝國’, 연호를 ‘光武’라 하고 稱帝하였다. 이후 열강이 세력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자주적인 개혁과 입법이 가능하였다. 이 시기 입법의 특징은 ‘舊本新參’이란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복고주의인데, 이는 1899년에 반포된 大韓國國制에 잘 나타나 있다.³⁾

제3기는 통감부기(1906~1910. 8)로 을사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어, 통감부와 한국이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주체가 이원화된 시기이다. 통감부는 사법사무 등의 위탁으로 이에 대해 독자적인 입법을 할 수 있었고, 한국정부는 위임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입법권을 갖고 있었지만 ‘시정개선권고권’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일본인 고문이 입법사업을 지휘하였다. 그 결과 사실상 한국의 입법권은 일본에 위임된 상태였다. 그리고 합방을 준비하는 법령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가. 제1기(개혁기 : 1894~1895)

개항 이전에 이미 조선사회에는 漢譯西學書를 통하여 서구의 정치제도와 법제도 및 법사상이 소개되었지만, 이것이 제도의 개혁에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이다.

조선은 개항 후 새로운 국제정치에 대처하기 위해 1881년 1월에 중국의 統理各國事務衙門(1861년 설치)을 본떠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였다. 이는 외교

3) 田鳳德, 〈大韓國 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韓國近代法思想史》, 박영사, 1980).

사무와 군국사무를 겸하는 기관으로 외국과의 교섭을 주도했다. 또 領選使, 朝土視察團의 파견, 외국과의 조약체결, 국내제도의 개편 등을 수행하다가 1882년 7월에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폐지되었다. 통리기무아문 설치의 역사적 의의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서양문화를 수용하려는 의지, 즉 정부가 개화운동을 전개하려는 의도를 표명한 점이다.⁴⁾

임오군란 후 1882년 12월에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과 統理軍國事務衙門으로 나누어 부활시켰고, 1884년 10월에는 후자를 의정부에 통합시켜 전자만으로 갑오경장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초기 개화정책 실현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갑오개혁 전까지는 개화파가 통리기무아문을 통하여 군제·재정을 개혁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법제의 전반적인 개혁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1884년의 갑신정변에서도 재정·왕실 등에 대한 개혁안은 있었으나 법제 전반에 대한 개혁안은 없었다. 조사시찰단은 직접 서구법제를 모방하여 개혁을 단행한 일본의 明治法제도를 살펴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華夷觀에 입각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다만 재판제도와 인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적극적인 제도의 개혁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⁵⁾

갑신정변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조선에서 후퇴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식민지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학농민전쟁을 빌미로 하여 1894년 6월에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고, 내정개혁을 조선에 강요하고 청파의 전쟁을 개시하였다. 일본은 오도리 가이스케(大鳥圭介)공사를 통하여 법률의 정비와 재판의 공정이 포함된 5개의 내정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종은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으로 제도를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6월 13일에 校正廳을 설치하여 堂上 15명과 郎廳 2명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대하여 일본군의 철수없이는 내정개혁을 고려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갔다. 그러나 교정청은 총재관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주체적인 개혁

4) 李光麟, 〈統理機務衙門의 組織과 機能〉(《開化派와 開化思想研究》, 일조각, 1989).

5) 許東賢, 〈1881년 朝土視察團의 明治日本司法制度 이해—嚴世永의 司法省視察記와 『聞見事件』을 중심으로—〉(《진단학보》84, 1997) 참조.

을 진행할 수 없었다.⁶⁾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은 강제적으로 내정개혁을 시도하여 7월 23일에는 쿠테타를 일으켜 고종에게 내정개혁을 강요하자 고종은 7월 24일에 更張의 倫音을 내리고 27일에 내정개혁을 위한 군국기무처를 신설하고 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내각을 발족시켰다.⁷⁾

군국기무처는 모든 국정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합의제 최고정책기관이었다. 군국기무처의 전반적인 구성과 권한은 일본의 元老院(1875. 6. 설치, 1890. 9. 폐지), 樞密院官制(1888. 3. 설치)를 모방한 것이다. 게다가 국왕·왕비의 전제적 권위와 대원군의 정권대행자적 지위도 무시·배제되고 초정부적인 입법부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군국기무처의 운영방식은 회의원 중에 혁신의 진의를 파악한 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총재의 지명으로 상임기초의원을 두어 군국기무처에 상정할 의안을 총재가 회의에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도 거의 토의없이 1회의 회의로 卽決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의사에 따라 졸속으로 운영되었던 군국기무처는 11월 21일 폐지되기까지 4개월간에 208건의 법령을 가결 공포하였다.⁸⁾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와 법령의 공포 등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개혁은 진척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오도리공사를 소환하고 후임으로 내부대신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가 10월 25일에 주한일본공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군국기무처의 업직을 논박하고 개혁이 선언에 그쳤음을 실토하였다. 그는 어전회의에서 내정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자신이 기초한 내정개혁항목 20조를 제시·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朴泳孝와 김홍집이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1895년 1월 7일에는 고종은 백관을 대동하고 오늘날의 헌법에 해당하는 洪範 14조를 선포하여 내정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3조에서 “민법과 형법을 엄명히 제정하여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벌하지 않아서 인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존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의정부를 내각이라고 개칭하는 등 개혁이 진행되고, 의정부고문 이시즈카 히데조(石塚英藏),

6) 金益魯, <1894年の 校正廳의 設置와 國政改革運動－중도개혁파의 사상을 중심으로>(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5) 참조.

7) 田鳳德, <일제의 한국사법권 강탈과정의 연구>(《애산학보》2, 1982), 153~155쪽.

8) 柳永益, <軍國機務處 議案의 分析>(역사학회 편, 《淸日戰爭과 韓日關係－일본의 대한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일조각, 1985) 참조.

법무고문 호시 도루(星亭) 등 각부에 일본인 고문 7명이 취임하였다. 이들 고문은 입법사업에 참여하여 내정개혁에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였는데, 법률 제1호 〈재판소구성법〉 등을 4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포하였고, 5월 26일에는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개혁을 완료하였다.⁹⁾

이러한 개혁은 통치조직·관료제도·사법제도·회계조세제도·사회제도 등에 걸친 전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대전회통》등의 구법령과 의안 등 신법령이 상존하여 법체계상의 혼란이 극심하여 제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그리고 개혁법령은 일본 법령의 번역에 지나지 않아 한국 고래의 관습과도 달라서 범법자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의 법령·규정을 정리하여 실행이 가능하고 또 즉시 필요한 것 56개조를 선택하여 준수를 천명하였다. 갑오개혁의 법령들은 근대화를 지향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나, 개혁주체가 자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강압에 의해 타율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 때문에 국민에게 신용을 잃어 空文에 그친 것이 많았다. 그러나 개국기원의 사용, 노비제의 폐지 등은 사회를 개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의 독점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열강의 간섭 때문에 대한정책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세에 힘입어 고종은 政事を 親裁施行할 것임을 천명하고 前의 입법을 비판하였다. 이로써 갑오·을미의 법제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왕실과 척신들이 중심이 되어 친일파가 견제되고 친러파가 부상한 김홍집내각이 성립하였다. 일본은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민비를 살해하고 다시 친일내각을 성립시켜(을미사변)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김홍집내각은 7월 5일 내각설립 이후 11월 15일까지 140건의 법령을 공포했다. 이의 성격은 갑오개혁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자주적 입장에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복고적인 것도 있다. 이들 개혁 중 양력의 사용, 예산제도의 채택, 의관제도의 개혁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특히 단발령은 사회적 반발을 일으켜 의병봉기를 촉발하여 친일정권의 위협이 되었다.

9)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근대편》(일조각, 1984), 286~289쪽.

나. 제2기(복고기 : 1896~1905)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아관파천(1896. 2)으로 세력을 잃어 친러정권이 조선에서 성립하였다. 신정권은 갑오을미기의 개혁입법을 거의 무효로 하고, 의정부의 복고 등 원제도로 회귀하였다. 특히 위정척사파인 崔益鉉은 전기의 법을 “선왕의 법제를 폐하고 왜이의 지휘에 따라 중화를 이적으로 만들고 인류를 짐승으로 삼은 개벽 아래의 최대의 변고”¹⁰⁾로 보았다. 복고후 입법의 기본방침은 ‘구본신참’으로 1897년 3월 23일에 중추원 안에 校典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법률기초위원회와 校正所(후에 法規校正所) 등 법률기초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였고, 軍法起草委員會·刑法校正所 등을 특설하였다. 전기와 달리 일본인은 거의 배제되고 그레이트하우스(C. R. Greathouse, 具禮), 르젠크드르(C. W. LeGendre, 李善得), 크레마지(L. Crémazy, 金雅始) 등 서양인 법률고문들이 활동하였다.¹¹⁾

복고기의 주요 입법으로는 법규교정소에서 기초한 〈대한국국제〉(1899. 8. 17, 奏本), 〈陸軍法律〉(1900. 9. 4. 법률 제5호), 《명률》·《대전회통》 및 갑오개혁기의 개별 형사법을 집대성한 국한문 혼용의 근대적 법전체제를 갖춘 《刑法大全》(1905. 4. 20, 법률 제2호) 등을 들 수 있다. 복고기에는 밖으로는 열강의 세력균형을 이루었고, 안으로는 독립협회 등 민권운동이 활발하여 이를 배경으로 한 광무개혁을 뒷받침하는 자주적 입법이 많았다.

다. 제3기(통감부기 : 1906~1910. 8)

1905년 12월에 을사보호조약(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고 이듬해 2월 서울에 통감부, 지방에 理事廳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입법권의 이원화이다. 통감부는 통신·외교 등 위탁받은 분야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하였고, 그 외의 분야는 대한제국이 입법권을 행사하였지만, 한국정부의 입법권은 한일의정서(1904. 2)에 규정된 ‘시정개선에 대한 권고’로 일본인 고문관들의 지휘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이 입법권을 장악한 상

10) 《高宗純宗實錄》, 건양 원년 2월 25일, 581쪽.

11)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박영사, 1982), 37~281쪽 참조.

태였다.¹²⁾ 아울러 종전의 영사재판을 대신하기 위해 통감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법령이 증대하였다.¹³⁾

고문정치의 일환으로 1907년 1월에는 각급 재판소에 일본인 법무보좌관들이 배치되었다. 법부에는 參與官 노자와 다케노스케(野澤武之助), 참여관 촉탁마츠테라 다케오(松寺竹雄), 평리원 법무보좌관 나카무라 다케조(中村竹藏) 등이 한성재판소를 위시해 각도 지방재판소에 13명, 개항재판소에 12명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지시까지 하였다. 1907년 6월 헤이그밀사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7월 4일 정미7조약을 체결하면서 재판소구성법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일본의 재판제도를 본떠 大審院, 控訴院, 地方裁判所, 區裁判所의 4계급 3심제였다. 이로써 審級制度 등 근대적 재판제도가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차관정치를 실시함에 따라 일본인을 한국의 판검사로 임명하였는데, 재판소와 검사국의 장은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판사의 경우 일본인이 79명, 한국인은 40명이며, 검사는 일본인이 36명, 한국인은 12명으로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¹⁴⁾

1909년 6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통감은 일본 추밀원장으로 임명되고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통감으로 승진하였다. 7월 3일 이토 추밀원장은 ‘법사무의 위탁에 관한 의견서’를 가즈라 타로(桂太郎) 총리대신에게 보내고 한국사법권의 탈취를 건의하였다. 7월 10일 이토는 총리대신 이완용, 외부대신 박제순, 법부대신 고영희, 군부대신 이병무를 밤중까지 회유설득하여 7월 12일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한일 각서〉(전 5조)를 체결하여 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제국의 법부와 각급 재판소는 1909년 10월 31일부로 폐지되고, 통감부재판소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사실상 법적으로는 일본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다.¹⁵⁾

12) 李熙鳳, 〈韓末法令小考〉(《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19, 1980), 164쪽.

13) 통감부 법령에 대한 체계적 정리는 鄭肯植, 《統監府法令體系分析》(한국법제연구원, 1995) 참조.

14) 田鳳德, 앞의 글(1982), 180~195쪽.

15) 자세히는 이태진, 《일본의 대한제국강점－보호조약에서 병합조약까지》(까치, 1995) 참조.

2) 입법의 형식

조선시대에는 특별한 입법기관이 따로 없고, 관계 관청이 발의하여 대신들의 토의를 거쳐 왕의 재가를 받아 법령이 제정되었고, 내용상으로는 祖宗成憲인 舊法尊重의 이념으로 보수와 개혁이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전개되었다.¹⁶⁾ 개화기에 들어서 서구법의 영향으로 법령은 형식과 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입법에 관한 기관으로 세워진 군국기무처는 총재 1명, 부총재 1명, 의원 10~20명으로 구성되어 기기서 결정한 법령을 의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의안의 내용은 복잡하고 아직 조선시대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근대법 형식의 단서가 보이는 것은 1894년 9월 12일 군국기무처가 의안으로 제정한 〈命令頒布式〉인데, 전문 9조로 구성되었다. 이것의 내용은 법률·칙령·명령의 제정방식과 이들의 공포방법을 정하며, 외교문서의 작성방법, 관리의 임명장에 관하여도 규정하였다. 1894년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면서 11월 21일에는 앞의 〈명령반포식〉을 대신하여 칙령 제1호로 〈公文式〉이 제정·반포되었다. 이 〈공문식〉은 총 19조로 법률·칙령 등 법령의 상하단계를 규정하고 그 제정절차와 형식을 정하였다. 그러나 현법이 제정되지도 않고 국회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식〉에서 법률과 칙령 등을 구별한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일본의 明治憲法에 따른 차이가 보인다. 그리고 법집행자가 법령을 납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 中樞院을 두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¹⁷⁾

〈공문식〉은 이듬해 1895년 5월 8일에 전폭 개정되었는데, 국한문혼용체로 전 3장 18개조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과 명령의 반포절차가 확정되었다. 이것은 1887년에 제정한 일본의 〈공문식〉을 번안한 것인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0조에서 각부 대신이 행하는 部令은 《관보》에 반포하나

16) 丁玉泰, 〈李朝立法節次에 관한 一考察〉(《논문집(법학·행정학편)》29, 전남대, 1984).

金池洙, 〈受教의 法的 性格과 理念〉(《韓國法史學論叢》, 박영사, 1991) 참조.

17) 자세히는 李熙鳳, 앞의 글, 184~198쪽.

구습에 따라 적당한 처소에 게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입법형식은 이에 근거하여 지속되었고, 다만 통감부기에는 통감부의 告示 외에도 일본법령이 적용되었다. 전통적 입법에서 근대적 입법으로 이전하는 과도적 과정에서는 그 형식과 내용에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듭하였다.

3) 민법의 제정

일반적으로 전통법은 일반인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거나 보호하는 민사법은 빈약하고 형법이나 행정법과 같은 공법적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전통은 비단 우리 나라만이 아니고 중국·일본을 포함한 동양국가가 서양에 비해 법치주의의 신장이 지둔했던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개인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질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대체로 관습법과 판례법 등 불문법의 형태와 이에 바탕을 둔 성문법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의 근대적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거래생활을 보장하는 민사법의 제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근대적 민사입법의 진행과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공사법이 혼돈된 상태에서 사법의 분리는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의 혁신정강 14개조 가운데, 문벌의 폐지와 인민평등권을 세울 것, 地租法의 개혁, 還上米의 영구면제, 惠商工局의 혁파 등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은 弊政改革案에서 노비문서의 소각, 兩班賤民의 차별개선, 청상과부의 개가허용, 公私債의 무효, 토지의 평균분작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주장에 그쳤고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개혁기에는 홍범 14조에서 민법제정을 천명하였으나 신분과 가족에 대한 개별 법령만 공포되었고 민법의 편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복고기에는 토지제도를 정비하여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地契(1901), 家契(1893, 1906)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완전한 소유권의 확립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중도에 폐지되었다.¹⁸⁾ 전당권에 관한 〈전당포규칙〉(1898. 11. 2. 법률 제1호) 등이 제정되었다.

18) 朴秉濠,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70~74쪽.

복고기의 가장 중요한 입법은 《형법대전》으로, 이는 전통의 ‘祖宗成憲尊重主義’에 입각하여 《대전회통》의 <형전>과 《대명률》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광무 개혁의 정신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여기에는 還退, 혼인 등 민사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형법대전》을 공포한 후 민법전을 편찬하기로 하여, 1905년 5월 31일에 奏本 <법부에 법률기초위원회를 설치하여 민법을 제정하는 건>을 공포하고, 6월 19일에는 詔勅 <민법상례를 편찬하는 건>을 내렸고, 이에 따라 7월 18일에는 법률기초위원회를 특설하여 민법전의 기초에 착수하였으나, 민법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통감부기에는 통감부의 주도로 민법전의 편찬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不動產法調查會(1906. 7. 24, 설치)와 法典調查局(1907. 12. 23, 설치)에서 각 지방의 관습을 조사하여 각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⁹⁾ 과도기적으로 관습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利息規例>(1906. 9. 24, 법률 제5호),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10. 26, 칙령 제65호),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1906. 12. 26, 칙령 제80호)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소유권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법부고문으로 와 있던 우메 겐지로(梅謙次郎)는 일본민사소송법을 간단히 한 全 577조의 <민사소송법안>을 기초하였으나, 당시의 정치상황에 따라 확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²⁰⁾

법전조사국에서는 주요 법전의 기초를 예정하여 우메를 민사법 기초자로 선정하였다. 법전조사국의 민사법에 대한 입법사업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어 민법전 편찬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한국관습의 조사에 착수하였다. 우메는 당시 일본 민상법전의 편별에 충실한 조사 사항들을 만들어 관습을 조사하였다. 그가 구상하던 민법전은 한국의 관습을 바탕으로 일본 민상법을 간략히 한 民商二法의 統一法典이었다. 그리고 민법전은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일본인 또는 외국인이면 일본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오직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었다. 민법전을 급히 편찬하려고 한 이유는 일본에서처

19) 각종 보고서의 내역에 대하여는 鄭肯植, <日帝의 慣習調査와 意義>(《國譯 慣習調査報告書》, 한국법제연구원, 1992), 23쪽 참조.

20) 鄭鍾休, 《韓國民法典の比較法的研究》(東京:創文社, 1989), 231~233쪽.

럼 領事裁判의 철폐, 즉 治外法權을 폐지하기 위해 서였고, 이는 일본인의 한국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통감 이토도 강조하였고, 또 우메 자신도 토지제도는 한일만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통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또 장차 일본인의 한국 이주를 고려하여 민법전의 기초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입법사업이 부실하였고, 이는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²¹⁾

법전조사국의 민법전에 대한 태도는 외국인의 토지소유의 인정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에는 법제상으로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는데, 大韓自強會는 토지거래의 문란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기 위하여 관의 허가를 받게 하자는 견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양여·전당에 관한 건>(1906. 10. 16, 법률 제6호)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10일 후에 부동산법조사회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한 것 외에는 위 법률과 거의 차이가 없는 <토지가옥증명규칙>(1906. 10. 16, 척령 제68호)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자강회는 외국인의 토지소유 금지를 주장하고 위 척령을 비난하였다.²²⁾ 법전조사국을 중심으로 한 민법전의 제정분위기는 이토(1909. 10)와 우메(1910. 8)의 사망으로 좌절되어 한국은 독자적인 민법을 갖지 못하였으며, 합병후 1912년 4월 1일 <조선민사령>에 의해 일본 민법이 依用되었다.²³⁾

여기에서 우리는 특히 한국의 전통적 민사관습법이 어떻게 근대적 민사법으로 연결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특히 일본인 법률고문 우메에 의해 실시된 관습법조사사업과 관련된다. 우메는 일본인으로 최초로 프랑스 리옹(Lyon)대학에 유학하여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서 연구하다 동경제국대학 민법교수로 활약한 인물이다. 그는 일본 민법기초자 3인중의 1인으로 민법이론에 밝았는데, 이토통감의 법률고문으로 1906년 6월에 한국에 와서 관습조사를 위해 전국으로 뛰어 다니다 1910년 8월 27일에

21) 鄭肯植, 앞의 글(1991), 3~41쪽.

22) 鄭然泰, <大韓帝國後期 不動產登記制度의近代化를 둘러싼 葛藤과 그歸結> (《法史學研究》16, 한국법사학회, 1995) 참조.

23) 李丙洙, <朝鮮民事令에 關하여> (《法史學研究》4, 1977) 참조.

장티푸스로 한국에서 사망하였다.²⁴⁾

그는 부동산법조사회에 법전조사국을 설치하여 민법전의 편찬에 앞서 관습법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에 소유관계의 불명확으로 인한 거래질서의 문란은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광무정권은 혼란한 토지질서를 정비하기 위하여 1906년 7월 3일 土地所關法起草委員會를 구성하였으나 7월 24일에는 이를 부동산법조사회로 대체하였다. 우메가 부동산법조사회회장으로 취임하고 보좌관과 통역, 촉탁위원을 임명하였다. 1906년 7월 24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의 부동산 관습조사에 착수하였다. 1908년 1월 1일에는 쿠라토미 유사부로(倉富勇三郎)를 위원장에, 우메를 고문에 임명하고 김낙현·유성준·마츠데라 다케오(松寺竹雄)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1908년 5월부터 1910년 5월까지 우메가 일본의 민상법체계에 따라 만든 206개의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민사관습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는 문헌조사보다 實地조사를 우선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에 있던 일본인 법률가 아사미 린타로(淺見倫太郎)는 실지조사보다도 舊文記의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²⁵⁾ 우메는 기록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고 실지조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한 일본인은 “헛된 휴지인 구법전을 조사하여 그것을 조선의 관습으로, 또 문헌으로 여겨 존중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휴지에 구애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의 진보하고 공평한 민법을 전부 시행할 것을 권유한다”²⁶⁾라고 하였다. 우메도 “합병이 되면 현재 우리가 하는 한국의 입법사업은 쓸모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²⁷⁾ 중추원에서도 “당면한 근무에 따라 갑자기 조사한 것이 많고 또 조사 결과도 필요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 필요한 문제를 빠뜨린 것도 적지 않다”²⁸⁾고 하였다. 어쨌든 이렇게 실시된 관습조사는 1910년 법전조사국의 폐지와 함께 중지되고 10월부터 잔무를

24) 우메 겐지로의 생애에 대해서는 潮見俊隆·利谷信義 編, 《日本の法學者》(東京 : 日本評論社, 1975), 73~96쪽 참조.

25) 淺見倫太郎, 《朝鮮法制史稿》(巖松堂書店, 1922), 378~401쪽.

26) 茉君談, 〈朝鮮の法典調査〉(《東洋經濟雜誌》1346, 1906년 7월 21일) 참조.

27) 梅謙次郎, 〈朝鮮の合併論と立法事業〉(《國際法雜誌》8~9, 國際法學會, 1910년 9월) 참조.

28)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及制度調查事業概要》(1938), 36쪽.

정리하며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여 12월에 탈고하였다. 《관습조사보고서》는 초판(1910)과 정정보총판(1912), 그리고 재판(1913)이 발간되었다.²⁹⁾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우메의 일본 민상법의 체계와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의 관습법을 뜯어 맞춘 것들이 적지 아니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관습법은 왜곡되고 일제의 官製慣習으로 변질되어 후일 조선고등법원에 판결을 통하여 법적으로 인정되었다.³⁰⁾

(1) 민법 일반

고종 31년(1894) 7월 15일에는 〈強佔勒買된 田地·산림·가옥을 追還하는 건〉과 그해 8월 14일에는 〈公錢의 民貸를 엄단하는 건〉이 제정되었다. 다음 해 3월 29일에는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건〉이 제정되었다.

광무 9년(1905) 5월 31일에는 〈민법을 제정하는 건〉을 제정하였고, 6월 16일에는 〈民法常例를 纂輯하는 건〉을 제정하였다. 광무 10년 9월 24일에는 법률 제5호로 〈利息規例〉가 제정되었다.

(2) 토지관계

토지에 관하여도 상당히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크게 나누어 量田, 地契·家契, 소유권, 토지조사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양전에 관하여는 광무 2년 6월 23일에 〈전국에 토지를 측량하는 건〉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9건에 이르는 관계법령을 제정하였다. 택지부에 量地局을 설립하여 양전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지계·가계에 관하여는 광무 5년 10월 20일 〈지계아문직원 및 처무규정〉을 정하였고, 광무 7년 1월 20일에는 〈지계감독을 差下하는 건〉을 제정하였다.

29) 이 보고서는 1992년 鄭肯植이 번역하였다. 鄭肯植 역, 《國譯 慣習調査報告書》(한국법제연구원, 1992).

30) 金一美, 〈朝鮮後期의 財產相續慣習〉(《梨大史苑》11, 이화여대 사학회, 1973). 李相旭, 〈日帝下 傳統家族法의 歪曲〉(《韓國法史學論叢》, 박영사, 1991).

朴秉濬, 〈日帝下의 家族政策과 慣習法의 形成過程〉(《法學》33권 2호, 서울대 법학연구소, 1992).

尹大成, 〈日帝의 韓國慣習調査事業과 專貫慣習法〉(《韓國法史學論叢》, 박영사, 1991).

광무 10년 5월 22일에는 〈가계발급규칙〉을 제정하는 등 도합 7건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소유권에 관하여는 광무 10년 10월 16일에 〈토지·건물에 매매·교환·양여·전당에 관한 건〉을 법률 제6호로 제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을 칙령 제80호로 반포하였다. 을희 2년(1908) 7월 16일에는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앞서 광무 10년 10월 26일에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여 계속 시행세칙과 개정작업을 하여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명칭을 바꾸면서 공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의 토지와 가옥에 관한 소유권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상당수의 한국인 소유의 부동산이 상실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법집행과 법생활의 현실을 논하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어쨌든 당시 소유권에 관계되는 20건에 이르는 법령들이 제정·개정되었다. 물론 그 형식은 법률·칙령·법부령·한성부령 등으로 그 형식이 다양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조선의 토지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을희 3년 5월 31일에 〈토지측량으로 인하여 기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을 탁지부 훈령으로 공포하였고, 이듬해 2월 1일에는 〈토지측량업자단속규칙〉을 제정하였다. 또 을희 4년 8월 23일에는 〈토지조사법〉을 법률 제7호로 제정하였다. 이 토지조사 사업진행과 성격에 대하여는 법제사보다도 사회경제사의 연구입적이 많이 나와 있다.³¹⁾

(3) 가족관계

전통적 가족질서는 유교윤리에 입각한 전근대적 법제에 구속되어 있었다. 이것을 근대적 인간관계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여러 입법이 필요하였다. 고종 31년(1894) 6월 28일에는 〈率養하는 舊典을 申明하는 건〉과 〈早婚을 금하는 건〉·〈과부의 再嫁를 그 자유에 맡기는 건〉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구습을 근대적인 법으로 변화시켰다. 물론 이러한 법이 제정된

31) 金熙洙, 〈開化期 不動產 法律關係 小考〉(《法史學研究》9, 1988).

尹大成, 《韓國傳賈權研究》(삼지원, 1988).

崔元奎, 《韓末 日帝初期 土地調查와 土地法研究》(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다고 하여 곧바로 구습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칙을 정하여 새로운 삶의 질서를 개시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건양 원년(1896) 9월 1일에는 〈호구조사 규칙〉을 칙령 제61호로 반포하여 호구조사를 시행하였다. 융희 3년 3월 4일에는 〈民籍法〉을 법률 제8호로 제정하였다.³²⁾

4) 형법의 제정

조선시대는 《대명률》을 형법의 보통법으로 시행하였으며, 형벌의 완화와 집행의 공정에 노력해왔지만, 형벌의 전단과 극형이 자행되고 권한없는 관리에 의한 체포와 구금이 공공연히 행해지고恤刑의理想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갑오개혁이후 입법의 목적은 역대의 훌�이상을 실현하여 폐단들을 개혁하려는 테에 두었고, 입법은 행정관청과 사법관청의 분리 및 형벌의 완화가 근본 정신이었다.³³⁾ 개혁기인 고종 31년(1894) 7월 2일에는 〈각 아문에서逮捕施刑을 단행치 못하는 건〉을 의결하여 軍律위반자 체포 외에 관청·군문·宮의 범인 체포를 금지하고, 7월 8일에는 〈사법관이 아니면 형벌을加치 못하는 건〉을 의결하여 사법권의 재판절차에 의해서만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3월 25일에는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공포되어 민형사재판을 전담하게 되었다.

고종 31년 6월 28일에는 〈緣坐律을勿施하는 건〉을 의결하여 종래의 연좌 제도를 폐지하고, 7월 9일에는 〈拷刑에 관한 건〉을 의결하여 새로운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대전회통》의 〈형전〉을 적용하여 고문을 허락하였다. 그러다가 12월 27일 칙령 제30호 〈行刑의用絞用砲하는 건〉을 반포하여 사형에서 斬刑과 陵遲處斬을 폐지하고 보통사형의 경우는 교수형, 군법사형에는 총살형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으로 혁신하였다.

고종 32년부터는 국한문을 혼용한 법령으로 형사에 관한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었다. 3월 2일에는 〈議處照律에 관한 건〉이 제정되어 종전에 죄인을

32) 자세히는 朴秉濬, 앞의 글, 6~7쪽.

33) 朴秉濬, 〈舊韓國時代의 刑事立法의 沿革〉(《韓國法制史攷》, 법문사, 1974), 422 ~432쪽.

처단할 때 먼저 범죄 내용과 죄질을 심의한 후 법을 적용하던 절차가 번잡하므로 범죄심의와 법적용을 동시에 하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4월 29일에는 <징역처단례>를 법률 제6호로 반포하여 통상 범죄에 과하는 유배형을 징역형으로 바꾸고 국사범에 관하여만 流刑을 준치하기로 하였다. 건양 원년(1896) 4월 1일에는 법률 제2호로 <賊盜處斷例>를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광무 9년 4월 《형법대전》이 실시될 때까지 9년간 적도에 관한 형법이었다. 건양 원년 4월 4일에는 법률 제3호로 <刑律名例>를 제정하였는데, 30개 조에 이르며 형벌의 종류, 감경, 집행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교형)·流刑·役刑·笞刑의 4종류로 하고, 유형은 종신형부터 1년까지 10등급으로 하고, 역형은 종신부터 20일까지의 19등급, 태형은 100부터 10까지의 10등급으로 나누었다. 광무 4년 4월 28일에는 법률 제4호로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를 제정하였는데 4개조로 되어 있는 이 법은 당시 외세와 열강의 적극적 접근에 대비하여 외국인에게 아부하여 국체를 손상하고 국권을 상실하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광무 4월 9일에는 법률 제5호로 <육군법률>을 제정하였는데 317개조로 구성되어 현역군인 범죄자에게 적용되었다. 이 군형법을 마지막으로 특별법의 제정을 일단락짓고 일반형법전의 제정에 착수하였다.³⁴⁾

일반형법의 제정 움직임은 을미개혁기에 시작되었다. 1895년 6월에 설치된 법률기초위원회에서는 기초위원 법부고문 호시 도루(星亭)·노자와 게이치(野澤雞一)와 변역관 법률기초위원 玄暎運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1897년 2월에 《刑法艸案》을 법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형법초안》은 ‘구본신참’의 복고적 분위기 속에서 폐기되었다. 특히 《형법초안》은 그 작성에 상당한 고심을 하여 명률과의 차이점, 일본형법과의 차이점을 보이며 우리 나라의 역사적, 현실적 특수성을 고려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다.³⁵⁾

조선조 최후의 일반형법전이며 법률기초위원회의 최대 입법사업이었던 《형법

34) 朴秉濬, <舊韓國時代의 刑事立法의 沿革>, 위의 책, 442~432쪽.

李丙洙, <우리나라의 近代化와 刑法大全의 頒示>(《法史學研究》2, 1975) 참조.

都冕會,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98~116쪽.

35) 鄭肯植, <刑法艸案 해설>(《法史學研究》16, 1995) 참조.

대전》은 광무 9년(1905) 4월 29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되었다. 근대적 형법 전인 일본 《형법전》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대전회통》과 《대명률》과 1894년 이후의 신법령들을 참작하여 제정한 이 《형법대전》의 공포로 종래 시행되어 오던 모든 律例는 폐지되었다. 《형법대전》은 잡오개혁기의 형법초안을 폐기한 후 구본신참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격적인 편찬작업에 착수한지 6~7년이 걸려 완성되었다. 680개조의 방대한 법전이나 광무 10년 법률 제1호로 32개조가 개정되었다.³⁶⁾

통감부기에는 일본은 법부차관 쿠라토미를 형사법 기초자로 선정하여 형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나, 《형법대전》을 개정하는 것에 그쳤다. 융희 2년(1908) 법률 제19호로 90개조가 개정되고 민사법에 해당되는 263개조가 삭제되어 결국 417조만 남게 되었다.³⁷⁾

《형법대전》은 일본법률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근본적으로 주로 《대명률》을 국한문 혼용으로 간략하고 평이하게 체계화한 것 외에는 동양의 전통적인 형법사상에 입각하고 있었다. 예컨대 제678조에 不應爲律을 규정하여 근대적 죄형법정주의와는 거리가 있었고, 제2조에 引律比附를 규정하여 類推解釋의 가능성을 허용하였다. 이 근대 지향의 대법전은 한국법률과 외에 서양법률 고문인 크레마지(L. Crémazy, 金雅始)도 참여하였고, 그는 이를 프랑스어로 번역·출간하여 서양에 한국법을 소개하였다.³⁸⁾

張燾가 편찬한 《新舊刑事法規大全》 하권(1907. 6. 발간)에는 〈형법대전개정 초안〉과 〈형법시행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조문만을 수록하고 있을 뿐 설명이 없으므로 초안자와 작성경위에 대하여 자세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형법대전》을 순수한 형법전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국권의 상실과 더

36) 형법대전의 편찬과 관련되는 각종 草案은 〈引律目錄〉·〈普通刑法〉·〈刑法草〉 등이 있다. 이 자료는 文俊煥의 해제로 《法史學研究》 제18집~제21집(1997년~2000년)에 소개되었다.

37) 자세한 것은 文俊煥, 〈大韓帝國期 刑法大全의 制定과 改正〉(《法史學研究》 21, 1999) 참조.

38) Laurent Crémazy, *Le Code Pénal de la Corée*, Seoul, 1904.
田鳳德, 〈Laurent Crémazy와 大韓刑法〉(《法史學研究》 5, 1979).
崔鍾庫, 앞의 책(1982), 161~164쪽 참조.

불어 자주적인 형법의 시행도 수포로 돌아가고, 2년 후인 1912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 制令 제11호로 〈朝鮮刑事令〉을 제정하여 일본형법을 의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위 諸令에서 예외적으로 法定刑이 死刑인 謀殺罪·강도죄 등에 대해서는 형법대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이 예외 조항은 1917년 〈조선 형사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형사법제의 근대화는 형식적으로 볼 때 범치주의적 근대화를 향한 의욕적 진전이라고 볼 수 있고, 결코 무비판적인 급격한 근대화가 아니라 형벌의 완화에 중점을 둔 서서한 개혁이었다. 그것은 明律 전통의 토착적 강인성과 학문적 빈곤상태 아래서 서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근대형법의 적극적 수용이 쉽게 이해되고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5) 형법·민법과 법생활

새로운 법전이 제정된다는 것은 법생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법전대로 법생활이 자동적으로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전통적 법생활에 젖어있던 개화기에 복잡한 입법절차와 내용의 새 법률에 의해 법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없었음은 당연하였다.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당시의 진정한 법근대화의 실상을 아는 길일 것이다.

1906년 가톨릭계가 창간한 《경향신문》에서는 일제에 의한 법을 통한 식민화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법률 계몽활동을 하였다.³⁹⁾ 입법자들만 아는 당시의 법제도를 국민들에게 현행법전을 조목조목 해설해 준 것은 참으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형법대전》 조문해설은 대개 〈寶鑑〉이란 이름의 間紙에 ‘법률문답’의 난을 통하여 나갔는데, 살인에 관한 율, 분묘에 관한 율, 관원을 죽인 율, 殺獄에 私和한 율 등으로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한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사람을 죽이기를 피한 율

[문] 사람 죽이기를 피한 자와 의사를 지시한 자와 그 일에 손을 댄 자와 힘을

39) 자세히는 崔鍾庫, 〈韓末 京鄉新聞의 法律啓蒙運動〉(《法史와 法思想》, 박영사, 1981), 522~554쪽.

도운 자에게 무슨 벌이 있느뇨.

[답] 다 紹에 처하되 다만 따라가기만 하고 손을 대고 힘을 도움이 없는 자는 일 등을 감하나니라(《형법대전》 제473조 이하 조문 생략).

[문] 사람의 몸을 부러뜨리거나 베히거나 정기를 뺀 자에게 무슨 벌이뇨.

[답] 시작하고 따라 한 것을 불문하고 다 紹하나니라(《형법대전》 제474조).

[문] 귀신에게 기도함과 부작(符書)이나 진언(詛呪)으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무슨 벌이뇨.

[답] 교에 처하나니라(《형법대전》 제475조).

[문] 인명을 상할 뜻으로 폭발물을 남의 집이나 길에 두어 사람을 상케 한 자에게 무슨 벌이뇨.

[답] 시작한 자나 같이 한 자나 다 교에 처하고 독약을 사주는 자도 교하되 모르고 사준 자는 일등을 감하나니라(《형법대전》 제376조).

(《寶鑑》 I, 1906, 219쪽)

이와 같이 문답형식을 빌려 《형법대전》의 조문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덜 개화된 법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논평도 없는 것이 주목된다. 지금의 법개념으로 보면 아직 미개한 기이한 형법관념이요, 경직화된 유교윤리적 발상에 근거한 기형적인 법규범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법이었으니 만큼 아무런 논평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기만 했던 것이다. 또 한 예를 들어보자.

[문] 사람죽인 것을 私和케 한 자는 어떠하뇨.

[답] 答 60인데 인하야 재물을 받은 자는 그 장대로 제631조의 법을 그르친 율로 의논하나니라(《형법대전》 제505조).

[문] 친속이 죽임을 받은 경우에 사화한 자는 어떠하뇨.

[답] 아래 별인데로 하나이다.

1. 조부모가 부모나 남편이나 남편의 조부모나 부모에게는 징역 3년이요, 아내나 첨이나 자손이나 자손의 처첨에는 태 80이니라.

2. 執服尊長이면 징역 2년이며 아래 어린이면 징역 1년반이니라.

3. 大功尊長이면 징역 1년이며 아래 어린이면 열 달을 가두나니라.

4. 總麻尊長이면 열 달을 가두며 아래 어린이면 여덟 달을 가두니라.

(《寶鑑》 I, 1906, 341쪽)

현행법을 그대로 알리고 그야말로 법률을 ‘문답’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관권보다는 민권의 편에 서서 법계몽을 수행하려는 언론에서 ‘법률문답’의 난을

고정적으로 살고 1906년 창간호부터 1915년까지 계속하였다는 사실은 내면적 논리로서는 당연한 것이면서도 실제로 팔목할만한 것이라 하겠다. 지금은 법률 신문·잡지도 따로 있고, 각종의 법률상담소, 변호사 사무실도 있지만 ‘법률 문답’, 즉 법률상담을 처음 한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법은 관리만이 아니라 인민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혁신적인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위하여 ‘법률문답’이라 하여 구체적인 법계몽, 법의 대중화를 벌인 것은 서로 선구적인 중요성을 떤다고 하겠다. 이것은 개화된 실정법률과는 별도로 법률의 무지와 오해로 법생활은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켜준다. 구체적인 몇 예를 보기로 하면, 우선 《형법대전》에 비추어 ‘결혼하고 破約한 사례’에 대한 법률 안내로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문] 결혼하고 사주단자와 선체를 받고서 퇴혼하고 다른 데 결혼하면 어떠하뇨.

[답] 결혼하고 퇴혼이 도모지 좋은 일은 아니나 만일 불합한 일이 있으면 사주 단자를 환송하고 퇴혼하는 풍속이 예사로 되어 있고 선체를 받은 후는 퇴 혼치 못하나 만일 범하면 범률이 있나니라.

[문] 그 법률이 어떠하뇨.

[답] 형법대전에 똑똑히 있으니 조목을 호와 말하노라. 1은 둘째 번 정혼한 사람과 아직 성혼치 아니하였으면 주혼자를 태 70에 처하고 이미 성혼하였으면 주혼자를 태 80에 처하고, 2는 둘째 번 정혼한 신랑의 집에서 결혼한 곳이 있는 줄을 알고도 짐짓 정혼하였으면 신랑편에 주혼자도 같은 별에 처하느니라.

[문] 그러면 성혼여부는 어떻게 하느뇨.

[답] 만일 두 번째 정혼한 사람과 아직 성혼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새악씨 집에서 두 번째 정혼한 집에서 받은 선체 물건은 속공하고 그 새악씨는 첫 번 결혼한 사람과 성혼하나니라.

[문] 처음 결혼한 사람이 그 새악씨와 성혼하기 싫다면 어찌 하느뇨.

[답] 첫번 결혼한 사람이 싫다하면 둘째 번 정혼한 사람과 성혼하겠으나 다만 성혼하는 신랑편에서 선체 물건을 갑절을 하여 일반은 첫 번 결혼한 집에 보내느니라.

[문] 만일 신랑편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찌 하느뇨.

[답] 태벌은 이 우해같고 재물갚을 것은 없느니라.

[문] 결혼을 단단히 하고 예물까지 받은 후에도 의례히 퇴혼하는 법이 혹 있느뇨.

[답] 두 가지 연고밖에 없으니 성혼치 아닌 남녀가 사음을 범하였거나 도적에 범

하였으면 이런 것은 이 법률 속에 들지 아닌 것이니 곧 파흔하나니라(《형법 대전》 제11장 제1절, 〈혼인위법율〉 제559조).

(《寶鑑》 I, 1906, 297쪽)

법률만이 아니라 부령·규칙에 관하여도 ‘법률문답’은 다루고 있고, 또 민사관습에 연결된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 예로 ‘종을 賞良’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 어떤 사람이 남의 종으로 있을 때에 딸자식을 낳은지라, 지금은 속량하야 나왔으나 그 딸은 그저 종대로 상전의 집에 있는데 그 부모가 상전의 마음에 넉넉하도록 돈을 주고 그 딸을 속량하는 것이 법이 있느뇨.

[답] 法規類篇 規制門 제16類 雜則 제13조 노비의 법을 혁파하는 조건에 관가 와 사가의 노비법을 없이 하고 또 종사는 것을 금하였으니 지금 어찌 종이란 명색이 있으며 하물며 돈을 넉넉히 내고 속량하겠나니 이런 것이야 다시 말할 것이 무엇이냐.

(《寶鑑》 I, 1906, 187쪽)

보다 민간에 퍼진 구습·악습 등을 타파하는 방향의 ‘법률문답’도 있다. 무당들의 비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한 ‘법률문답’은 ‘과부동이는 악습’을 논하고 있다.

[문] 이전부터 시골서는 과부를 동혀다가 작배하는 폐습이 있었으니 지금도 그 라하뇨.

[답] 이것이 악한 벼룩이요 또 이로 인하여 다른 대죄가 종종 생기는고로 새로 내각이 될 때에 법부대신 조중옹씨가 이 벼룩을 통절히 금하노라고 십삼 도 관찰부에 훈령하야 관하 각군 방방곡곡에 방을 붙이고, 페일러 이후로 만일 전과 같이 과부를 동히는 폐단이 있으면 곧 그 동리·동장이 고관하여 본읍에 엄수하고 본읍에서는 본도 재판소에 보고해야 겁탈 강간하는 율에 의지하여 嚴懲無赦함으로 후폐를 영원히 막으라 하였으니 이 훈령이 광무 11년 6월 19일에 났나니라.

(《寶鑑》 I, 1906, 235쪽)

한걸음 나아가 ‘법률문답’의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진보적으로 민중의 법의식 자체를 앞장서 인도해주는 것도 보인다. 개화기에 한참 문제가 되었

던 *斷髮*에 관하여 ‘법률문답’에서 다룬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문] 일반 상하 관민이 머리깎는 것이 무슨 법령이 있느뇨.

[답] 법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각국이 거진다 머리를 깎았고 그 외국사람들이 많이 대한에 있고 또 우리 나라가 외국 정치 풍속을 배우고서 하는 고로 자연 그러한 것이니 교민이나 백성이나 물론 아무하고 깎고 아니 깎기를 제 마음대로 할 것이요 법에 상관은 도모지 없으며 삭발령이 난다는 말은 여러 번 있었으나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 이런 령이 아니나기를 바라노라.

(《寶鑑》 I, 1906, 339쪽)

이렇듯 단발같은 것은 어떤 국법에 의하여 시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개화된 문명국의 풍속을 따라 민중 스스로 솔선수범할 일이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문답’이 어느 정도 민중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가. 《경향신문》 1909년 3월 5일자 논설을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본 신문에 각 지방에서 오는 괴서(편지) 중에 여러 가지 새로 나는 법 때문에 묻는 말들이 많고 우리가 원대로 그 법을 살피고 각부에 알아보아 보감 법률문답에 유의하도록 대답하기를 힘쓰고 여러 지방에서 오는 공함을 보니 본 신문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 가르쳐 대답함을 인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면하고 본 신문을 고마워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매우 즐거워하나니 본 신문을 고히 우리 사랑하는 동포를 도와주는 연고뿐이외다.

그 묻는 말 중에 법률문답에 대답치 못하는 여러 가지 있으니 곧 법을 알기 위하여 특별히 묻는 것이 아니요 의심있는 마음을 통치고 내는 것이라, 대개 말하기를 재판을 하려는데 재판소 관인들에게 의대로 하는 증언됨을 얻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느냐도 하고, 학교가 집이나 아모 일을 시작하려는데 나중에 日人们에게 빼앗길까 무서우니 어떻게 하리요도 하고, 삼림규칙대로 하려는데 측량부비는 대단하고 얻는 이익은 적어 어려우니 어떻게 하겠느냐도 하고, 새 쳐사도 나고 새 말이 많고 새 협잡도 나니 어떻게 하겠느냐도 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그런 묻는 말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경향신문이 항상 백성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기로 실망하지 말라하고 힘쓰면 의대로 됨을 얻겠다고 하니 이는 경향신문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아픈 것을 덜 아프게 위로하는 말이 아닌가 경향신문을 그대로 참 믿을까 하는도다(《경향신문》 125호, 1909년 3월 5일, 논설 〈대답하는 말〉).

구체적으로 민중의 법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가르쳐 대답함을 인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면하고 본 신문을 고마워하는” 정도에 이른 것만은 확실했다고 하겠다.

중국의 명률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의 전통법은 공법과 사법으로서의 형법과 민법의 구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특히 일반 민중의 거래생활과 권익을 보장하는 민법의 역할은 매우 미약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법근대화의 과정에서 비로소 민법과 형법이 개인의 권리와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정되기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나라의 문화사와 정신사에도 큰 의미를 갖는 발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근대화의 시기가 개화기라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이어서 법제의 근대화는 일사불란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퇴를 거듭하는 복잡한 과정을 보여 주었다. 서양인 법률가도 참여하였지만 근대적 법학지식이 박약한 한국인 법률가들로서는 일본인 법률전문가들의 간섭과 지도를 배제하기 힘들었다.

조선시대에는 법을 ‘禮主法從’이라는 관념에 입각하여 德治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법에 대한 인식은 일변하였다. 법은 문명개화의 척도로 여겨졌고, 부국강병과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인식 자체는 당시 풍미한 사회진화론과 결부되어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기능도 하였다. 현실을 비추어 보면 문명국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법제의 정비를 위한 준비론도 등장하였다. 개화기 제국주의의 침략과 함께 수용된 서구법은 법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와 제국주의, 특히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양면성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왔다.⁴⁰⁾

그리하여 법제의 근대화는 명분상으로는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었지만 은연중 일본의 침략정책의 수단으로 되어 진실로 한국인의 권리와 위한 법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단시간 동안에 쏟아져 나오는 신식 법률들의 양산은 한국인의 법률에 대한 무지와 불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06년에 창간된 《경향신문》에 <법률

40) 鄭肯植, 〈開化期 西歐法의 受容과 意義〉(《법제연구》8, 한국법제연구원, 1995), 39~47쪽.

문답>이라는 고정난을 설치하여 한국인에게 법률을 알리고 법을 잘 아는 것 이 권익을 지킨다는 법률계몽운동을 전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崔鍾庫〉

4. 지방자치제의 추이

1)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세 가지 힘

지방자치정책 및 지방자치의 실체는 근대화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자치 영역의 확대와 근대화의 진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아래로부터의 근대국가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자치 영역의 소멸을 동반하는 근대화의 경우에는 중앙집권적이고 위로부터의 성격이 강한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의 성장, 향약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자치기구의 형성, 지방행정기구의 부패로 인한 봉건정부의 위기 등을 고려하면 조선후기, 한말의 시기는 자치의 성장과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를 충분히 기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는 지방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난 변화는 일반민과 상인층 등 새로이 성장하는 계층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다. 민의 성장은 기존의 ‘향약질서’나 ‘수령이 향체제’에 대신한 새로운 지방정치 중심세력의 형성으로 표현되었다. 이미 조선후기 농민전쟁의 과정에서 지방정치의 주도층들은 향회 등의 조직을 통해 새로운 지방정치구조를 창출해 내고 있었다.¹⁾ 이들은 중앙정부의 전횡, 삼정문란 등의 부패에 저항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들을 지방정치의 중심에 두려고 기도하였다. 이는 사족중심의 질서에 편입하려는 鄉戰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민중의 지방정치에의 참여가 전제된 아래로부터의 자치라는 측면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1) 안병욱, <조선후기 자치와 저항조직으로서의 ‘향회’>(《성십여대 논문집》18, 1986).

한말의 지방자치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은 중앙정부의 자구책 마련이라는 측면이다. 한말 중앙정부는 재정구조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재정개혁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재정운영위기에 대한 타개책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 사회의 내부구조를 충분히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자치정책의 대부분이 지방재정 문제와 함께 거론되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일본의 작용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꿈꾸며 그 하나의 조건으로 지방사회의 장악을 초기부터 기도하고 있었다. 마침 일본은 메이지유신의 마지막 과제로서 지방제도의 개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었고 조선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일본의 지배기반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었다. 일제의 지방제도에 대한 구상이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은 1894년 6월 일본 공사 오도리 가이스케(大鳥圭介)가 조선정부에 제시한 내정개혁 세목강령이었다.²⁾ 이 강령을 통해 이미 일제는 조선 지방사회의 효과적인 통제, 그리고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우선시하는 지방제도 개편의 구상을 제시하였다. 1906년 地方制度調査所의 활동으로 귀결되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말의 지방자치론과 지방자치 그 자체를 규정하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였다.

한말의 지방자치는 자치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 중앙정부의 자치정책, 그리고 일본의 간여라는 세 방향의 힘의 합력에 의해 전개되었다. 결국 힘의 합력은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그것도 심하게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후기·한말 수준의 자치조차도 유지하지 못한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한말 자치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각 요소들의 작용을 염두에 두면서 대체로 일제의 조선지배정책에 의해 자치의 발전이 저지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³⁾

2) 《日韓外交資料集成》4(日清戰爭編), 문서번호 28 内政改革案提出ノ件, 附屬書 3.

3) 윤정애, <한말 지방제도개혁의 연구>(《역사학보》105, 1985).

이상찬, <1906~1910년의 지방행정제도 변화와 지방자치논의>(《한국학보》42, 1986).

———, <1894~1895년 지방제도 개혁의 방향>(《진단학보》67, 1989).

김태웅, <개항전후~대한제국기의 지방재정개혁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2) 갑오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말 지방자치정책은 189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갑오농민전쟁이 소강상태였던 시기에 단행된 갑오개혁은 행정·재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지방제도의 개혁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894년 7월에 공포된 군국기무처의 〈鄉會에 관한 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제도 개혁에서 군현 및 면의 자치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려고 하였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道臣으로 하여금 地方官에 頓하여 鄉會를 設立하되 各面 人民들이 綜明老鍊한 자 각 1인을 圈選하여 鄉會員으로 삼고 本邑 公堂에 모여 무릇 發令, 醫療 등에 관한 事項으로 마땅히 本邑에서 施行할 일의 可否를 評議하여 公同으로 決定한 後 施行하도록 한다(《舊韓國官報》, 1894년 7월 12일, 〈군국기무처 의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주체를 향회로 규정하고 향회에 ‘총명’하고 ‘노련’한 인물들을 선발하여 자치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향회는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하는 ‘향약질서’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커다란 차이는 기존의 향약이 재지사족의 조직이었다고 한다면 향회는 재지사족의 지방 지배력이 약화되고 요호부민 등 새로이 성장하는 계층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1862년 농민전쟁시에 향회는 이미 지방정치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향회조직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갑오농민전쟁을 통해 이것이 정치적 힘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 1894년 중앙정부는 향회를 지방자치의 공식 기관으로 추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땅히 本邑에서 施行할 일의 可否를 評議하여 公同으로 決定한 後 施行하도록”한 것은 민의 수렴기구로서의 향회의 기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⁴⁾

중앙정부가 자치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

4) 정창렬, 〈한말 혁명운동의 정치·경제적 성격〉(《한국민족주의론》, 창작과 비평사, 1982).

가 있었다. 1894년 9월의 〈結戶錢捧納章程〉의 기사를 보면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1. 結政은 守令이 實結을 싉아 作夫하고 帳簿를 만들어 鄉員에게 移送할 것(중략).
4. 한 고을의 公錢과 公穀은 다시는 守令과 吏胥層의 손을 거치지 않게 할 것.
5. 한 고을에 鄉會를 設置하여 兼幹人을 公舉하여 文·陰·武·生·進·幼學 등에 구애받지 말고 모두 鄉員이라고 부른다. 鄉員은 大邑에 3명, 中邑에 2명, 小邑에 1명을 둔다.
6. 각 面에서도 역시 兼幹人을 選出하여 面鄉員이라고 부른다. 面鄉員은 公貨를 檢納하고 邑鄉員이 委託한 일을 處理하며 (세금은) 邑에 갖다 내거나 銀行에 輸送한다(중략).
9. 鄉員은 公錢을 檢納한 후 度支衙門에서 파견한 差員의 公文을 기다려 中央機關, 銀行에 公錢을 収納하거나 各面이 직접 銀行에 収納하면 憑票를 받아서 施行할 것(하략)(《公文編案》 제4책,奎 18154, 〈함경도 고원군수에게 보낸 훈령〉).

중앙정부는 앞서 말한 대로 販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자치 요구를 수용하는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販회를 통해 그 동안 국가운영의 핵심적 문제가 되었던 재정운영구조상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하였다. “한 고을의 公錢과 公穀은 다시는 守令과 吏胥層의 손을 거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수령과 이서충을 재정운영구조에서 제거하고 이에 대신하는 기구로 販회를 이용하려 하였다. 중앙정부는 ‘탁지 아문—販회의 販원—면회의 면향원’으로 이어지는 조세 수입의 계통을 새롭게 확립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자치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販원의 계층구성의 관한 것이다. “文·陰·武·生·進·幼學 등에 구애받지 말고”라는 표현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제 販회는 재지사족이나 신향, 토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신분제 해체 이후의 유동적 계층이동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말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의 큰 가닥을 잡은 중앙정부는 8월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에 향회를 설치하라는 훈령을 내림으로써 향회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전국적 시행을 서둘렀다.⁵⁾

그러나 이러한 갑오개혁 초기의 방향은 동년 10월 일본의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공사가 서울에 들어와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일본인 고문관을 배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였다.⁶⁾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김홍집내각은 1895년 3월 〈內閣官制〉를 반포하여 군주권을 약화시킨 뒤 내부대신 박영효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정을 단행해 갔다.⁷⁾ 이 시기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은 자치조직의 재정간여를 배제하고 일제의 통제권 아래 있는 재무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일제는 갑오농민전쟁을 무력화시키고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후,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던 지방자치정책을 일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1895년 3월과 4월에 각각 공포된 〈關稅司及徵稅署章程〉·〈各邑賦稅所章程〉·〈수입조규〉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말해주는 제도적 표현이었다. 이들 규정에 의해 각 도에는 관세사가, 군에는 징세서와 부세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결국 이전의 향회가 담당하고 있었던 지방재정관계 기능은 이제 도의 관세사와 군수 및 징세서의 징세주사에 의해 장악되었다. 물론 재정문제와 관련된 신설기관들을 일제가 장악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향회 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민선 향원의 역할을 박탈하고 다시 군수 및 징세주사나 납세 총대인에게 징세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치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바로 직후인 5월에는 23府制가 실시되어 오랜 세월 유지되었던 8도제가 폐지되었다.⁸⁾ 23부제는 종래의 大구역제인 8도를 한성·인천·충주·동래 등 22개의 府域으로 세분하고 각 부 밑에 군을 소속시키는 소구역제도였

5) 《公文編案》 권 3(奎 18154), 22책.

6) 유영익, 《갑오경장연구》(일조각, 1990).

7) 왕현종, 〈갑오개혁기 관제개혁과 관료제도의 변화〉(《국사관논총》 68, 1996).

8) 윤정애, 앞의 글.

다. 이 지방행정구획제도의 개편 역시 일본인 고문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일본의 3부 72縣制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 개편에도 다른 목적이 내재하여 있었다. 23부제 시행 직후 9월에는 관세사·징세서가 개설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사·징세서 및 각 읍 부세소 장정의 시행을 정지하고 군수에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모두 전담시키는 제도를 복원하게 된다. 이에 의해 각 군에는 세무과가 설치되고 세무주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재정운영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⁹⁾ 23부제를 시행 토록 한 일제는 이제 각 부 및 군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군의 세무과를 장악함으로써 보다 일원화된 지배체제를 구축해 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1895년 11월 3일 〈鄉會條規〉와 〈鄉約辦務規程〉이 공포되었다.¹⁰⁾ 1894년 이래 짧은 기간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던 지방자치제도는 이로써 그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두 법령은 1894년 군국기무처 의안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던 향회를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앞서 보았던 대로 일제의 작용에 의해 재정운영의 권한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법제화라는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었다.

향회는 군·면·동리의 지역단위별로 大會·中會·小會라는 三級 향회로 나뉘어 구성하도록 규정되었다. 소회는 尊位와 해당 里內 매호 1인으로 구성하고, 중회는 執綱과 해당 면 소속 각 리의 존위와 각 리에서 임시로 선출한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대회는 군수와 각 면 집강, 그리고 각 면의 公舉人 각 2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각급 향회는 교육·호적·지적·위생·社倉·도로·교량·식산홍업·공공산림·堤堰 漢港·기타 제반 세목과 납세·환난의 구휼·공공복역·제반 樂會·新式令飭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다. 논의사항은 향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재결권은 면집강과 군수·관찰사에게 부여하였다. 향회의 수석은 존위·집강·군수가 맡으며 차석은 부역을 많이 담당하는 上等戶民이 맡도록 하였다. 〈향약판무규정〉에서는 면·리任의 직능과 명칭·보수 등을 규정하였다. 즉

9) 김태웅, 앞의 책.

10) 송병기 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1(국회도서관, 1970), 600~605쪽.

리에는 존위·서기·頭民·下有司 각 1인을 두고, 면에는 집강·서기·하유사·面主人 각 1인을 두어 면리의 호구·산업조사의 임무를 맡게 하고 그 경비지출은 面里內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존위는 소회에서 반상에 관계없이 선출되어 1년 임기로 리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는 소회원이 회동하여 이유를 두민에게 고하고 상급 면에 보고한 후 임기에 상관없이 경질할 수 있었다. 서기는 존위의 명을 받아 리의 장부기록과 보고문건을 관장하였다. 서기 역시 존위와 마찬가지로 1년 임기로 리회원이 공동으로 정하여 임무에 위배되었을 때는 경질할 수 있었다. 두민은 里內에서 나이가 들고 세상일에 밝은 사람으로 정하고 존위 유고시에 그 사무를 대신 담당하였다. 그리고 리내 사무상 고종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면집강은 군수의 명을 받아 면의 대소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존위들을 감독하였다. 1년 임기로 면내 各里 존위와 공거인이 공동 회의하여 반상에 관계없이 선출하였다. 임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는 해당 면리의 존위와 공거인이 회의하여 군에 보고한 후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선임할 수 있었다. 서기 역시 그 기능과 권한은 리의 서기와 동일하였다. 면주인은 군과 소속 각리에 공문을 발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1895년 11월 단계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정책은 이상과 같이 향회의 조직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구체적 제도정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정확하게 의미해석을 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정책은 1894년 7월의 정책과는 여러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한 대로 1895년 11월의 제도는 1년여간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자치성이 상당히 후퇴한 형태로 귀결되었다. 특히 대회의장을 군수가 겸직한다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갑오개혁 초기의 정책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일본이 자치기구를 관제화하려는 강한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각급 향회에 여러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구의장을 보좌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향약질서’ 하에서도 수령과 별도로 좌수·별감이 존재하였고 이들의 이원화된 구조가 지방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에 그 나름으로 역할

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대회의장을 군수가 겸직한다는 것은 향회의 자치성을 부정하고 행정기구의 보좌역할로서 ‘자치기구’를 설정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향회조규〉·〈향약관무규정〉은 관제자치기구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면 이하의 단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면과 동리의 경우 향회의 長을 곧 해당지역의 행정 수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형식적으로는 향회라는 자치기구의 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면 행정기구로서의 집강·서기·下有司, 동리 행정기구로서의 존위·서기가 제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회와 소회는 이들 집강과 존위의 자문기구로서밖에 역할할 수 없었고 이는 결국 집강과 존위가 각각 행정기구화하는 전단계였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1894년 7월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재정구조 안정화라는 중앙정부의 필요가 맞아 떨어져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일본의 간여, 갑오농민전쟁의 패퇴, 중앙정부의 점차적 보수화로 인하여 관제자치기구의 형성을 예고하는 〈향회규칙〉·〈향약관무규정〉 체제로 정착되어 가고 말았다. 이러한 귀결은 이후에도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지만 한말의 자치제가 외세에 의해 위로부터의 ‘근대화’의 큰 물결속에 휘말려 가는 전주곡과도 같은 것이었다.

3) 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1896년 2월 아관파천으로 김홍집내각이 무너짐으로써 정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가기 시작하였다. 2월 11일에 내려진 고종의 조칙은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가 새로이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갈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¹¹⁾ 정책의 기본을 舊本新參에 두고 있었던 이 시기 정책의 기저는 지방제도의 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앙정부는 1896년 8월 우선 23부제를 폐지하고 전통적인 8도제에 기본하는 13도제를 시행하였다.¹²⁾ 13도제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성·광주·개성·강화·인천·동

11) 《高宗實錄》 권 34, 건양 원년 2월 16일.

12) 윤정애, 앞의 글.

래·덕원·경홍에는 따로 府를 두었고 제주에는 牧을 설치하여, 총 13도 8부 1목 332군의 지방행정구역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지방제도 정비는 행정구획 조정에 그치지 않고 중앙 과연 지방 관의 상하명령체계를 체계화하는 차원에서도 진행되었다. 도에는 勅任 3등 이하의 관찰사 1인, 부에는 奏任인 부윤 1인(한성부만 칙임 3등 이하의 관윤), 목에는 주임의 牧使 1인, 군에는 주임의 군수 1인을 두게 하였고, 관찰사는 내부대신의 감독을 받고 다시 군수를 감독하는 상하 명령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23부제의 시행 및 관세사의 설치로 행정·재정의 이원화 등 복잡하였던 행정체계가 일원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향회조규체제를 그대로 둔 채 그 성격상의 변화를 기하는 차원에서 변화가 있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시기의 정책은 구본신참을 기저로 하면서 중앙집권적 근대화의 추진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었다. 지방자치의 구본신참은 역시 구래의 자치기구의 기본성격을 어느 정도 살리는 것이었다. 갑오개혁기의 향회조규체제는 향회를 제도화한 반면 그것을 관제자치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어, 구래의 자치기구와는 달리 행정기관의 장이 자치기구의장을 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회조규〉의 기본틀은 그대로 두면서 향회의장을 별치하는 방식으로 자치제도 문제를 풀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군단위에 새로이 향장이라는 직을 두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1896년 8월 〈地方官吏職制〉를 반포하고 여기에 향장의 직을 규정하였다.¹³⁾ 향장은 지방자치기구의 장으로서 한성부를 제외한 각 부와 군에 1명씩을 두도록 하였다. 향장을 포함한 군단위의 직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향장은 군수를 비롯한 다른 행정관리와는 달리 일종의 활동비로 여겨지는 월 6원의 월봉을 받는 특수한 직책이었다. 중앙정부는 행정기구의 계통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향회조규체제에서는 군수가 겸하게 되어있던 향회의 수장을 향장이라는 직명으로 새로이 독립시

13) 《舊韓國官報》 4책, 제400호, 건양 원년 8월 10일.

쳤던 것이다. 이는 자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향회조규체제보다는 다시 일보 진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본신참을 내세우면서 구래의 질서를 일정부분 체제내로 포섭해 내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잘 표출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표 1>

1896년 각 군 등급별 인원수와 연봉

(단위 : 원)

구분	1등군		2등군		3등군		4등군		5등군	
	인원수	연봉	인원수	연봉	인원수	연봉	인원수	연봉	인원수	연봉
郡 守	1	1000	1	900	1	800	1	700	1	600
鄉 長	1	72	1	72	1	72	1	72	0	0
巡 校	6	288	6	240	5	240	4	192	2	96
首 書 記	1	96	1	84	1	84	1	84	1	84
書 記	8	576	7	504	7	504	6	360	4	240
通 引	3	108	3	72	2	72	2	72	2	72
使 令	8	288	8	216	6	216	6	216	4	144
使 傭	4	144	4	72	2	72	2	72	2	72
使 竇	3	108	3	72	2	72	2	72	1	36
客 舍 直	1	12	1	12	1	12	1	12	1	12
鄉 校 直	1	12	1	12	1	12	1	12	1	12

* 김태웅, 《개항전후~대한제국기의 지방재정개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173쪽.

《議奏》64책, 건양 원년 7월 24일, <地方制度에 關한 請議書>.

이러한 점은 향장이 조선시대 향약의 좌수와 같은 존재이며 좌수·별감이 있던 향청에서 집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아래 자료의 문맥에서도 잘 나타난다.

鄉長은 前의 座首라 郡守를 補佐하고 郡民을 總代하여 官民間에 一切 公務를 承接하고 現在는 郵遞事務를 兼任하니 鄉長의 職權이 甚要할뿐더러 各項 慣例와 關係한 民邑의 일을 悉由座首하여 郡守에게 建白도 하며 인민에게 佈議도 하는 고로 各郡 郡衙의 次에 原來 鄉廳이 있으니 즉 鄉長의 執務의 場所라(《地方制度調査》, 국립중앙도서관, 한-31-62).

위의 표현은, 향회조규체제에서 군민을 총대하는 역할이 행정 수장인 군수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과는 달리, 조선시대의 좌수와 같은 인물을 명칭만 향장으로 바꾸어 구본을 살리고 자치성을 제고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나아가 향장으로 하여금 군민을 대표하여 민간의 일체의 공무를 처리하고 군수에게 민의를 전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체사무까지 겸하게 하여 그 직권을 강화시켰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향장의 자격은 해당구역내에서 士民과 吏額에 관계없이 7년 이상 거주자로서 聲望과 才謂가 있는 자였고, 해당 지역민들이 회의·투표를 통해 추천한 자를 군수가 최종 임명하도록 하였다.

各郡 鄉長은 該郡 區域內 士民과 吏額을 勿拘하고 聲望과 才謂가 素著한 人으로 郡守가 選擇하되 該郡 大小民이 會議 投票하여 다수를 從하되 本郡에 入籍 居住한지 未滿 七年한 人은 應選치 못함(《日省錄》, 건양 원년 6월 28일).

구본을 따르되 갑오개혁이래 이미 반상에 구애되지 말도록 하는 신분철폐의 원칙과 대소민의 회의·투표로 향장을 택하게 하는 선출원칙은 근대화정책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1896년 단계에서의 지방자치정책이 자치기구의 자치성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아래 전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향장을 별치함으로써 군수가 자치기구의장을 겸직하였던 제도를 개선하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향장은 군의 직제에 포함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별정직 공무원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조선시대 좌수·별감과 같이 독립성과 지역성이 강한 존재는 아니었다. 중앙정부는 구본에 따라 자치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내용적으로는 향장 자체를 지방행정기관의 관리로 만듦으로써 향장의 장악, 향장을 통한 자치기구의 장악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던 것이다. 민의 추천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군수가 향장을 임명하게 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정책의 방향성은 면리 단위에서도 관철되고 있었다.

- 一. 面長(혹은 執綱이라 부름)은 該面內 聲望解事理하는 士族 中 老成人으로 本郡守가 選定하고 該面內 各洞 民人이 聚會하여 圈點選定도 함.
- 二. 面任(또는 風憲이라 함)은 郡守의 命令을 이어 所管 面內 各洞長에게 指揮하며 凡係 稽役 賦稅 등 事項으로 各洞長 洞任을 牽率 董飭하며(중략)
- 三. 該面內 民人の 家座成冊과 戶口帳籍을 面任이 官令으로 各洞長에게 轉飭하면 各洞長은 各民人에게 知委하여 洞長이 面任에게 거두어 紿하고 面任은 모두 모아 官에 냄(《地方制度調査》, 국립중앙도서관, 한-31-62).

《지방제도조사》에 나타난 면·동리 관련기사를 보면 우선 면에는 면장을, 동에는 동장을 두게 함과 동시에 면임·동임을 두어 조세·호적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케 했음을 알 수 있다. 지방행정의 체계를 이전에 비해 계통적으로 정리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도 면장·동장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한 위에 행정조직의 계통 역시 면임·동임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내부-관찰사-군수-면임-동임으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지방행정계통이 확립되었고, 또한 면·동리 단위에서의 자치제도 역시 이전보다는 안정된 제도적 기반위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1896년 단계에서의 지방자치정책은 기존의 동리·면·군단위의 향회조직을 그대로 살리면서 향회의 수장을 동장·면장·향장으로 독립시키는 대신 이들을 행정관리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갑오개혁시의 지방자치정책과 비교해 볼 때 이 시기의 정책은 자치성의 부분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진전된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광무정권이 추구하였던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의 구축이라는 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지방자치정책의 성격은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의 체계화라는 과제와 자치제의 발달이라는 측면이 서로 길항하면서 발전해갈 수 있는 여지는 남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후술하는 통감부 시기의 정책기저와 비교한다면 아래로부터의 근대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남기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통감정치에 들어가기 직전인 1905년 단계의 일이기는 하지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金星圭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측면은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¹⁴⁾

14) 김태웅, 앞의 책.

그는 지방사회 운영의 근간을 향약에서 구하면서 군과 면·동리에 향약을 설치하고 군향약에는 도약장 1인을, 면향약에는 면약장 1인과 면임 1인을, 리향약에는 두민 1인과 존위 1인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회와 都鄉會, 大鄉會를 별도로 설치하여 자치기구에 대한 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구상도 제출하였다. 여기서 향회는 도약장과 각면 약장이 회동하는 會를, 도향회는 도약장과 각리의 두민·존위가 회동하는 회를, 대향회에는 도약장과 각면 약장과 각리의 두민·존위 및 각리 해사인이 모두 회동하는 회를 의미한다.

이 향회는 중앙정부가 취한 지방자치정책보다 자치성을 더욱 가미한 것으로 군수와 수서기 등의 지방관리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김성규가 시행한 〈民弊民瘼矯革章程〉을 보면 도약장과 각면 약장은 향회를 열어 군수와 서기, 수교 등의 위법을 관에 고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그래도 시정이 안될 때에는 대향회를 열어 이를 다시 관에 고할 수 있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관찰사와 내부, 평리원까지 상소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군수의 향회에 대한 관여를 애초부터 봉쇄하여 민의수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말한 〈향회조 규〉는 물론 향장제를 실시한 1896년 단계의 자치정책과 비교해보아도 일보 진전된 것으로 평가해 모자라지 않다. 또한 대향회 등을 통하여 지역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4)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정책과 지방자치

광무개혁 이후 1906년까지의 지방자치가 중앙의 집권적 지배체제구축 정책과 지방의 자치확대를 향한 힘이 길항하는 과정이었다면 통감부시기의 지방자치는 일제에 의한 지방자치의 과과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조선 침략을 꾀하면서 초기부터 지방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직접 지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 하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의도는 이미 갑오 개혁 후기의 지방자치정책에서 표출된 바 있었다. 러일전쟁 이후 조선에서의 배타적 지배권을 확보한 일제는 지방사회의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 4월 7일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주도하에 地方制度調査所가 설치되고 이를 활동의 결과로 지방자치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다. 지방제도조사소에는 내무국장 崔錫敏, 탁지부 사세국장 李建榮, 기타 유길준의 동생이자 내부 경찰국장이었던 楠星濬 등이 참여하였고 일본인 가메야마(龜山理平太) 警視와 시오카와 이치타로(鹽川一太郎) 통역관이 촉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8월 중순에 기본적인 조사작업을 종결하고 그 조사·정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행정제도와 관련하여 행정구역의 개편, 지방자치의 실시, 군수 적임자 선발과 이서총의 정리, 지방세제의 실시 등이 건의되어 있었다.

近日郡守之貪虐은 多半 鄉人이 爲之嚆矢也라 地方情弊가 既如此則 郡守만 選擇할 뿐 아니라 鄉長을 尤可注意니 鄉弊를 欲矯면 郡守의 責任을 痛禁하고 鄉長을 欲擇이면 人民의 選舉를 可許니 地方事務는 專在於鄉長之得人如何耳라 鄉長을 得人然後에 鄉約規程과 鄉會條規를 如何舉辦 而人民自治之權이 將於是乎生矣리니(《地方制度調査》, 국립중앙도서관, 한-31-62).

지방제도조사소의 건의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전의 자치제도를 그대로 살리되 특히 향장 등 자치기구의 장을 잘 선택하여 그간의 폐해를 막는 데 주안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06년 9월 이후의 지방자치정책에서는 이러한 조선인 조사위원들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 처음부터 일제는 메이지유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지방통치에 관한 구상을 행정지배를 통한 지방사회의 직접적 장악이라는 차원에서 설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조선인 위원들의 청의는 받아들여 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일제가 선택하였던 제도는 향장제를 폐지하고 郡主事를 설치하는 한편 향회를 해체하고 이에 대신하여 지방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었다.¹⁵⁾ 1906년 9월 〈地方官官制〉가 발포되면서 이전에 존재했던 향장의 직이 없어지고 이에 대신하여 군주사가 설치되었다.¹⁶⁾

15) 이상찬, 앞의 글(1986).

16) 《법령자료집》 V, 칙령 50호 〈지방관관계〉.

언뜻 보아서는 이름만 향장에서 군주사로 바뀐 것 같지만 광무개혁시의 향장이 민선이었던 데에 비해 군주사는 완전한 임명직 행정관료라는 점에서 양자는 확연히 구별된다. 아래 〈郡主事銘心規則〉에서 기존의 좌수나 별감과 같은 자치기구의 장과는 구별되는 군주사의 행동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자치성을 일소하려는 일제의 의도를 잘 말해준다.

郡主事銘心規則

郡主事는 郡守를 補佐하되 持心을 勤慎히 하고 處事를 公平히 하여 政務의 刷新하는主旨를 認眞實踐할 지며 前日에 座首와 鄉長의 鄙陋한 心法과 行動을 一切 革祛할 事(《訓令彙錄》3책, 奎古 4255-10, 훈령 238호).

일본은 이전의 자치기구를 관제화하려는 경향에 더하여 이제는 군단위 자치기구의 역할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대신 군주사와 같은 행정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집권적 지배체계를 강화하려 하였던 것이다. 초기에는 향장에 이어 군주사에 儒鄉총이 오르기도 하였으나 점차 향회 추천 등의 과정없이 통감부가 일방적으로 임면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갔다. 1908년부터는 타도나 타군 출신의 군주사가 임용되기 시작하였고 1909년부터는 일본인이 군주사로 임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일제는 자치기구를 무력화하고 행정지배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해 갔다.

일제는 이렇게 기존의 자치기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이후 이에 대신하여 새로운 지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907년 5월 13일 일본인 재무관과 메가타 타네타로(目賀田種太郎) 재정고문이 초안한 〈地方委員會規則〉이 공포되고 11월까지 각 지역에 지방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기존의 자치기구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부정되게 된다.¹⁷⁾ 일제는 ‘自治制의 創始·母體·前身’, ‘文明國의 代議機關’ 등의 미사여구를 쓰면서 지방위원회를 발전된 자치기구의 형태인 것처럼 선전하였다.¹⁸⁾

그러나, 조선에 필요한 것은 재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따라서 위원회는 탁지부에 소속해야한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는 지방위원회를 기존의

17) 이상찬, 앞의 글(1986).

18) 《財務彙報》13·15호(1907).

자치기구를 폐지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궁극의 목적을 정세기구의 장악에 두고 있었다. 실제로 중앙의 훈령에 따라 일본인 재무관리와 한국인 세무관이 각 군을 순회하면서 각지에서 ‘신용·자산·지식’을 가진 자를 선발하였고, 이로써 일제의 지방지배를 매개할 친일적 인사들이 지방위원회를 채우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지방위원회를 새로이 조직하는 한편 기존의 자치기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파괴 정책을 구사하였다. 장성·임실·한산·고령 등지의 자치기구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던 것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한편 같은 해 10월에는 〈租稅徵收規程〉에 정세기구로서 면장을 규정함으로써 면단위에 면장을 두는 면장제를 법제화하였다. 면장제는 이전의 집장을 면장으로 바꾸고 면장에게 정세의 업무를 담당케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면단위 자치기구를 보다 명확한 하급행정조직으로 만들려는 조치였다. 세무서에서 지세·호세의 총액을 면장에게 부과하면 면장은 면내 다액납세자로 구성된 5명의 임원과 함께 최종 납부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그에 의해 公田領收員이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면단위 자치기구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면장—공전영수원으로 이어지는 정세기구의 하부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우선 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행정실무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면장에 지방사회의 유력자들이 취임하기를 꺼려하였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면장의 질적인 저급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다. 일제가 기존의 자치기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면장제도를 실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면단위 지역 운영의 이원화를 초래하였다. 실제로 각 면에서는 일제에 의해 임명된 면장과는 달리 지역 유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운영의 관행이 강하게 존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제는 면장제의 개선을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러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面長職制勅令案〉을 제출하였다. 1909년 2월에 제출된 이 안은 면장을 판임관대우로 한다는 내용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었다. 면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 대우를 판임관으로 하는 대신 급료를 국고에서가 아니라 면민이 부담케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면단위 자치기구를 무력

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선인의 반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장의 대우를 개선하고 면장에 유력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일종의 고육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제가 근원적으로 조선에서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고 극단적인 집권적 지배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통감부의 정책방향은 식민지지배 전기간동안 계속되었고 이를 둘러싼 조선인과 일제와의 대립 길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 설치 직후에 공포된 〈面에 關한 規定〉과 1917년의 〈面制〉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인 제도로 확립시켜 가는 과정이었다.¹⁹⁾

조선후기·한말의 지방자치를 둘러싼 동향은 아래로부터의 자치성장을 일정부분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동반하는 자주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갑오개혁·광무개혁기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집권화 정책과 자치성의 확대 움직임이 서로 길항하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간여는 지방자치와 집권적 행정체계 형성간의 균형을 깨는 역할을 하였고 결국 군·면·동리단위의 자치기구는 일제에 의해 제도적으로 부정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제의 조선강점은 지배정당성을 결여한 이민족 지배였을 뿐 아니라 조선사회의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를 근원에서 차단하고 기형적인 위로부터의 근대화를 강요하는 과정이었다.

〈金翼漢〉

5. 의·식·주생활의 변화

1) 의 복

이미 甲午更張 10년전에도 의복개혁(갑신개혁)이 있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다시 갑오경장 때 의복의 간소화가 일어나 근대화의 첫발을 딤게 되었다.

19) 김의한, 〈1910년대 일제의 지방지배 정책〉(《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50, 1996).

갑오경장(1894) 때인 6월 29일 군국기무처에서 의결 공포한 바에 의하면 “朝官의 의제를 간이화하되 공식복장을 紗帽에 盤領窄袖·品帶로 하고¹⁾, 통상복은 漆笠·褡穫·絲帶로 하고²⁾, 士庶인의 복장을 칠립·두루마기에 사대를 매고, 兵弁의 의복을 조례대로 준행하되 將官과 병졸의 구별을 명백히 할 것”³⁾이라고 하고 있다. 즉 관복에 있어 공식 복장으로는 사모에 반령으로 하고 閼袖(廣袖, 통이 너른 소매)이던 것을 소매가 좁은 착수로 하고 여기에 품계에 따라서 혁대를 하게 하였다. 또 조관의 통상복도 규정하여 칠립·답호·사대로 하였는데, 칠립은 흑립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답호를 입게 하였으니 이것은 사서인과 구별하기 위하여 周衣(두루마기) 위에 입었다고 본다. 그리고 사대를 하였다. 또 사서인은 칠립·주의·사대를 하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道袍⁴⁾나 穢衣⁵⁾가 아닌 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⁶⁾

또한 동년 12월 16일자(양 1895년 1월 11일) 《관보》로 10가지의 칙령을 반포하여 제2차 개혁에 착수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관의 복장은 더욱 간소화되고 있다. 즉 “조신의 대례복은 黑團領으로 進宮時의 통상복은 흑색의 주의와 답호에 사모, 靴子로 새해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金冠朝服도 공복도 상복도 그 자취를 감추고 공복으로 착용하던 흑단령이면 大禮服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공복, 상복의 구별 없이 小禮服을 착용하게 하여 사모에 주의 위에 답호를 걸치고 木靴를 신도록 하였다.

다음 해 을미개혁에서는 공사예복에 답호도 없애고 주의만을 입게 하여 우리의 衫制는 주의 일색이 되었다.⁷⁾

고종 32년(1895) 4월 8일에는 칙령 제78호로 〈陸軍服裝規則〉이 제정되어 구군복은 자취를 감추고 歐美式 군복이 되었다.

1) 紗帽는 官服의 쓰개, 盤領窄袖는 등근 깃의 관복으로 좁은 소매통의 옷을 말하며, 品帶는 계급을 나타내는 띠를 말한다.

2) 漆笠은 칠을 한 것, 詞穫는 조끼모양으로 뒷솔기가 단에서 허리까지 틔었고 길이가 두루마기처럼 긴 옷이며, 絲帶는 매듭 실로 엮은 띠이다.

3) 《高宗實錄》 권 31, 고종 31년 6월조 참조.

4) 두루마기형의 뒤에 한폭이 더 달려 있는 옷.

5) 뒤의 등솔이 진동선 아래로 터져 있는 옷.

6) 黃 玥, 《梅泉野錄》 권 2, 고종 31년 6월, 〈신법제정〉 참조.

7) 《高宗實錄》 권 32, 고종 31년 12월조 및 32년 3월조 참조.

동년 8월 10일에는 다음과 같이 문관의 服裝式이 반포되었다.

- 一. 조복과 제복은 옛식대로 착용하고 대례복은 흑단령·사모·품대·화자로, 動駕 慶節問安 禮接時에 착용하고,
- 一. 소례복은 흑단령·착수포·사모·束帶·화자로, 進見時에 착용하고 흑 대례 복 때에 착용하여도 좋으며,
- 一. 통상복색을 주의·답호·사대로 하되 內外官 仕進時는 구애없으나 진현시에는 착용하지 말라(《高宗實錄》권 33, 고종 32년 4월 2일 및 8월 5일).

갑오경장 후에는 진궁시 통상예복으로 변했으나 모든 국민이 이를 잘 받아들여 주의를 거리낌없이 입었다는 것은 큰 의복개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공사예복으로 답호를 입지 말고 흑색 주의에 帽靴 사대로 하라”는 内部告示가 있었으나 관민의 차별을 없앴음은 개화로 인한 복식의 평등사상이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幣頭·時服이 없어졌고 團領의 색이 흑색으로 되었으며, 소매 넓이로 대례복과 소례복을 구분하였으며, 신이 목화로 되어졌다.

또한 9월 7일에는 재판소 廷吏의 복장⁸⁾이 반포되었다.

〈표 1〉

재판소 廷吏의 복장

名稱	地 質	前章	頂章	服 庐	頤 鈕	制 式
帽子	濃紺絨	金色 廷字	金色 圓形	革 表：黑 裏：青	廣三分 黑革 五厘 鈕：金色	高至頂上五寸
下衣	木 旡 夏白 棉 旡 冬黑					狹 幅
上衣	黑色木棉			胸 鈕 金 色	袖 章 品質：黃絨線幅一寸 裝式：橫線一條 曲線一條	窄 袖

그리고 11월에는 망건을 폐지하고 양복을 입어도 좋다⁹⁾고 했고 단발령이 내려졌다. 이해에는 관립 외국어학교 학생들은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학

8) 《高宗時代史》권 3, 고종 32년 9월 7일.

9) 《高宗實錄》권 33, 고종 32년 11월, 33쪽.

교에 다녔다고 한다. 그러면서 곧 이어 관모는 외국 것을 모방하되 재료는 국산으로 하고, 의복도 모양은 외국 것이라도 紬·綿·布·苧를 사용하고,¹⁰⁾ 白丁을 免賤하여 칠립을 쓰는 것을 허용하게 하였다.¹¹⁾

1897년 고종이 황제에 오르면서 黃龍袍를 착용하고 十二旒冕冠(皇帝의 大禮服)을 사용하였다. 신하의 금관도 1품 7梁, 2품 6량, 3품 5량, 4품 4량, 5품 3량, 6품 2량, 8·9품 1량이 되었다.¹²⁾

〈그림 1〉

皇帝 冕服



* 〈순종황제어진〉, 창덕궁 소장.

10) 《法規類 編》二 規制門 第十類 衣制, 305~311쪽.

11) 《高宗時代史》권 4, 건양 원년 2월 12일.

12) 《禮服禮式課》규장각본, 1419-379-3-3.

대례복은 有揚黑盤領·사모·品束帶·화자를 각국에서 陞見할 때 착용한다. 소례복은 無揚黑盤領·窄袖袍·사모·품속대·화자를 각국에서 편에 따라 常禮에 착용한다. 통상복은 여러 모양의 의관·帶·履를 공관에 주재할 때와 凡常 교제에 착용한다.

광무 3년(1899) 1월 1일에는 조서를 내려 常禮院으로 하여금 朝臣의 章服을 祭禮·賀禮·燕禮 외에 고금 制式을 참작하고 또 각국에 통행하는 규례를 모방하여 마련케 했다. 이어 동년 3월에는 칙령 제9호로 警務使, 警務官總巡의 복장을 개정했다. 또한 8월에는 出彊한 사신의 복식을 외국 규모를 참작하여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외교관의 복장이 양복으로 되었고 국내의 문관은 소례복 즉 착수인 흑단령에 품대만 더 꾸며 대례복으로 입도록 했으며 제례·하례때에는 전과 같이 흑단령과 조복, 제복을 입게 했다. 이렇게 복장도 개국과 더불어 간소화되고 서양화의 길을 밟지 않을 수 없었다.

1900년 4월 17일에는 칙령 제13호로 〈훈장규칙〉을 정하고, 제14호로는 〈문관복장 규칙〉을 정했으며, 제15호로는 〈文官大禮服制式〉을 정하여 구미식 관복으로 바꾸었으니,¹³⁾ 이로써 조선조 500년의 옛 관복 제도는 완전히 양복화하였다.

(1) 임금의 정복(면복)

고종은 황제에 오르면서 《大明會典》의 衣次에 따른 황제의 대례복인 简이류면관·十二章服을 종묘·사직 등의 제사와 正朝·冬至·朝會·受冊·納妃 등에 착용하였는데, 朝覲及奉祀之服이라고도 하였다.

십이류면관·십이장복은 유물은 없으나 구류면구장복은 《國朝五禮儀》와 《大韓禮典》을 통하여 또 《大明會典》과 대조해 볼 수 있고, 九章服 중 衣服은 궁중박물관에 2점의 유물이 있으므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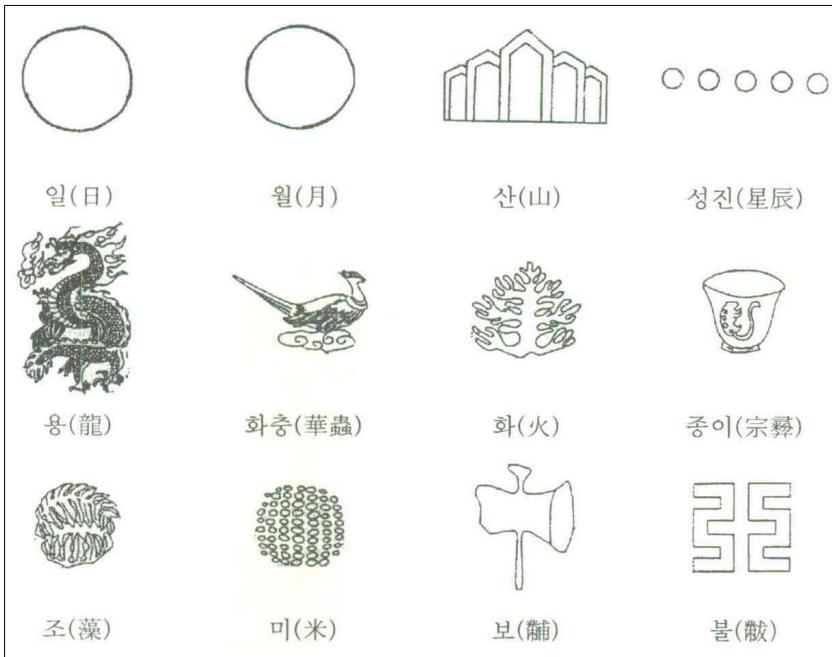
십이장복은 衣·中單·裳·蔽膝·革帶·大帶·佩玉·大綬·襪·舄과 圭가 있다. 의는 玄色이며 양어깨에 日·月을, 등뒤에는 山과 星 그리고 소매 뒤쪽에 龍과 華蟲을 그려 넣었다. 중단은 素紗로서 청색 襪을 깃·도련·수구에 두르고 깃에는 畢紋을 13개 수놓았다. 상은 前三幅의 繡色 羅로 만들었

13) 《高宗實錄》 권 38, 광무 2년 6월조 및 권 39, 광무 3년 8월조 참조.

고, 火·宗彝·藻·米·黼·黻을 두 줄 씩 수놓았다. 폐슬도 훈색 라로 하여 위에 용 1, 밑에 화 3을 수놓았다.

〈그림 2〉

十二章紋



혁대는 옥으로 장식되어 있다. 대대는 겉은 素色이고 안은 朱色이며 上緣은 주색으로, 下緣은 녹색으로 각각 달리 하였다.

패옥은 좌우에 늘이는데, 위에 金鉤가 있고 옥판에는 雲龍紋이 새겨져 있는 玉珩 1개·瑀 1개·琚 2개·衝牙 1개·璜 2개·玉花 1개·玉滴 2개를 옥구슬을 끼어 매달았고, 패옥 받침으로 훈색 바탕에 황·백·적·현·縹·녹색으로 짜서 늘였다.

대수는 소수와 같이 6색으로 하여 뒤에 늘었다.

벼선은 朱緞으로 신발은 赤緞으로 만드는데, 신발은 繢로 緣을 두르고 황색 끈으로 풀라매었다. 따라서 황태자 면복은 구류면구장복이 되었고 親王은

팔류면 칠장복이었다.

(2) 관리의 복장

가. 관복

고종 32년(1895) 8월 10일 관리의 복장식이 반포되어 광무 4년(1900)까지 시행되었다. 官服에는 대례복과 소례복이 있었다. 대례복은 소매통이 넓은 것이고 소례복은 소매통이 좁은 것이다.

이전에는 모두 소매통이 넓은 관복, 즉 대례복을 입었는데, 당상관 3품 이상은 紗·綬으로 현녹색 常服에 문관은 雲鶴, 무관은 虎豹 흉배를 달았고, 당하관 3품 이하는 모시·견으로 현녹색 상복에 문관은 白鶲, 무관은 熊豹 흉배를 달았다. 그리고 사모에 품대·화자였다.

이때에 와서 대례복은 그 소매통의 넓이가 일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상복의 소매통 넓이가 약 50~60cm 정도였는데 이것에 대례복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부터 소매통이 줄어들어서 40~50cm가 되었다.

〈그림 3〉

大禮服



* 유물번호 2632-2, 창덕궁 소장.

柳喜卿·金美子 등 편, 《朝鮮時代 宮中服飾》(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1), 49쪽.

소례복은 진현시에는 아무 때나 착용하고 대례복 시에도 착용해도 된다고 하였다. 소례복도 대례복과 구성에 있어서는 같은데 다만 흑단령이고 소매통이 매우 좁아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남아 있는 유물을 조사해 보니 흑색이 아니고 거의가 짙은 검은 쑥색이었다. 안감은 신하의 안감색으로 청색을 사용하고 있다. 유물은 모두 12점인데, 11점은 모두 관복과 같은 구성으로 소매통만이 좁을 뿐이다. 소매통은 평균 25~28cm 정도로 좁아졌다.

〈그림 4〉

小禮服



* 유물번호 2636-1, 창덕궁 소장.

柳喜卿·金美子 等 편, 《朝鮮時代 宮中服飾》(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1), 51쪽.

나머지 하나의 소례복 유물(번호 2632-1)은 무가 뒤로 접혀진 관복무가 아닌 두루마기 형태이며 겉감은 검은 쑥색이고 안감은 청색으로 되어 있다. 또 유물 번호 2632-3은 관복무가 아닌 두루마기 형태이나 옆 트임이 20.8cm이고 겉감은 쑥색이고 안감은 보라색이다. 아마도 이것은 1895년 광수의는 폐지하고 관민이 모두 흑색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고종황제의 의복 간소화 습

이후 간소화 운동에 호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통상복

통상복으로는 고종 31년(1894) 12월 조선의 進宮 통상 예복으로 주의·답호·사모·화자를 착용하게 하여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고종 32년 3월에는 진궁시에만 帽·靴·사대·검정색 주의를 입게 하였고, 8월에는 통상복색은 편의에 따라 주의·답호·사대를 착용하되 内外官 사진 시는 거리낌이 없으나 진현시에도 입지 말라고 하였다.

〈그림 5〉

주의·답호 착장 모습



左 上



右 下

* 韓國放送事業團, 《한국복식도감》III(三和印刷株式會社, 1986), 110쪽.

褶穫는 일명 戰服 또는 快子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형태는 같으나 문관이 입으면 담호이고 무관이 입으면 전복이라는 설도 있다. 창덕궁 소장의 유물번호 2646-1-7은 남색 훌옷으로 소매는 없고 셀도 없다. 그러나 무¹⁴⁾는 있으며 옆으로 밑에서 12cm가 터져 있고 뒷길 중심선이 진동선 높이 아래로 트임이 있다. 여밈은 매듭단추로 되어 있다. 또 유물번호 2647-1-2는 위와 같은 모양이나 검정색이고, 유물번호 2647-3은 백색 생모시로 되어 있다. 유물번호 2647-4는 겹옷으로 겉은 흑색이고 안은 홍색으로 되어 있다.

〈그림 6〉

담호 유물



* 柳喜卿·金美子 等 편, 《朝鮮時代 宮中服飾》(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1), 58等.

14) 웃옷의 양쪽 겨드랑이 밑에 텐 딴 폭을 말한다.

(3) 대한 제국시대의 예복

1900년대에 발표된 문관복은 대례복·소례복·상복으로 되어 있다. 대례복은 영국의 궁중예복을 모방한 일본의 대례복을 참작하였고, 소례복은 옷류에서 시민의 예복이던 연미복과 프록코트(frock coat)였고, 상복은 쎍코트(sack coat)로서 구미에서 시민의 정복이었다.

이중에서 대례복의 제식과 그림이 《法規類編》規制門 第十類 衣制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大禮服은 進賀·動賀動與·因公階見·宮中陪食時에 착용하는데, 親·勅·奏任官이 입었으며, 대례복이 미비하면 프록코트로 대신하였다. 대례복은 帽·의·胴衣·袴·鞋·劍·勳章으로 구성된다.

小禮服에는 燕尾服(西洋服)과 프록코트의 2종이 있으며 친·칙·判任官이 모두 착용하였다. 프록코트는 眞紗高帽·하의·고·혜로 구성되었고 宮內進見·각국 慶節·하례·私相禮訪時에 착용하였다. 연미복은 진사고모·하의·고·혜로 되어 있으며 각국 사신 召接時, 宮中賜宴時, 内외국관인 만찬시에 착용하였다.

常服은 사진시·집무시·燕居時에 착용하며 모·의·고·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는 중절모자라고도 하였다. 의는 연미복이나 프록코트보다 뒤가 짧은 것이고, 袴는 상의와 동색의 같은 옷감으로 되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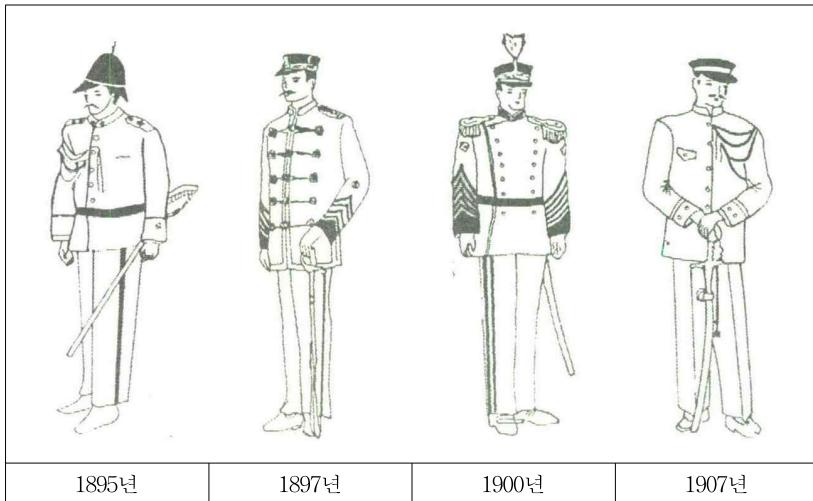
육군 복장은 1895년 4월 9일 반포되었다. 이것은 訓練隊 步兵科 장교에 해당되는 복장으로 1895년도와 같았다. 그후 적용의 범위가 넓어져서 동년 8월 6일에는 군부내에 무관과 相堂官에게도 적용을 하였고 동년 9월 5일에는 일반군인에게까지 보급되었다.

1897년 5월 15일에는 〈特下陸軍服裝規則〉이 제정되었다. 또 1899년 6월 22일에는 원수부의 관제가 제정되면서 황제의 복장도 육군복장에 준하게 되었다. 1900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1907년도에 이르면 많이 간소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⁵⁾ 다음 〈그림 7〉을 보면 그 변화과정을 알 수 있다.

15) 李康七, 〈陸軍服裝式에 對하여〉(《月刊 文化財》 제6호), 736쪽.

<그림 7>

육군 복장의 변화



* 李康七, 〈陸軍服裝式에 對하여〉(《月刊 文化財》6, 1970), 736쪽.

(4) 일반 복식

문무관복이 양복화되어 갔으나 平居服은 여전히 우리 고유의 옷이 기본형이었고 다소 간소화된 것이었다.

옛날에는 두루마기(周衣)는 밀밭침 옷이었고, 상민은 外衣로 입었으나 갑오경장 이후에 이르러서는 두루마기 一色으로 되어졌다. 그러면서 사계절을 통해 입게 되었다. 여름에는 모시 등으로 곱슬로 바느질하였고, 봄·가을에는 주로 다듬은 모시로 해서 만들고 단은 모두 불임풀로 붙여 홀단 두루마기로 지었다. 겨울에는 솜을 두어 무명이나 명주 등으로 또는 무늬 없는 비단으로 하였다. 이른봄과 늦가을에는 솜을 두지 않은 겨울 두루마기로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 바느질 방법도 달랐다.

두루마기는 사계절을 통하여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었다.

麻吉子는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볼모로 滿洲保定府에서 돌아올 때, 만주인의 馬褂子를 입고 돌아와 이를 그 후 개량하여 입게 되었다. 겨울에는 솜마고자를 입었고 봄가을에는 산뜻하게 紗로 만들어 입었다.

조끼는 서양인들의 양복이 우리 의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들의 조끼를 본 때 만들어 한복화한 것이다. 겨울에는 겹조끼, 여름에는 홀조끼로 또는 깨끼조끼로 하기도 하여 소지품 보관에 좋았다.

우리 옷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지, 저고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 조선조에 와서도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겨울에는 솜바지·저고리였고, 봄·가을에는 솜을 빼고 겹으로 하였다. 늦봄·이른 가을에는 백이 겹바지·저고리를 입기도 하였는데, 백이란 손으로 박아서 지은 것으로 시집을 베어낸 것이다. 안팎을 주로 같은 감으로 한다. 여름에는 곱슬로 고의적삼을 하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는 계절에 따라 옷감이 다르고 따라서 바느질 방법이 달라지면서 맵시를 보였다.

(5) 여복

翟衣는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자 明 황후의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 황후의 것으로 제정한 옷이다. 황후의 것과 황태자비의 것은 같은 것이었다. 심청색 바탕에 적문의 等數에 따라서 황후는 十二等하여 적문을 넣었고, 황태자비는 구등분하여 적문을 넣었는데 적문의 사이사이에는 梨花紋을 두었다. 깃과 도련 및 수구에는 紅色 선을 두르고 그 위에는 운용문을 織金하였다. 황태자비는 봉황문을 직금하였다. 적문의 십이등과 구등분은 면복의 십이장문과 구장문과 비유되는 것이다.

황후 적의제를 보면, 적의·중단·폐슬·玉革帶·대대·綏·玉佩·말·鳥·玉穀圭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霞帔와 補를 더하였고 冠은 大首로 하였다. 純貞孝皇后(純宗皇后)의 적의가 현재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그림 8〉).

우리 나라에서는 황후에 오르면서 적의가 바뀌었고 따라서 圓衫이 달라졌다. 황후의 것은 이것의 홍원삼이 아니고 황후의 복색을 따라서 黃圓衫이 되었다. 황색길에 다홍색과 남색의 끝동과 한삼이 달렸고 옷과 대에는 五爪龍의 운용문을 금직 또는 금박하였다. 대례복으로 사용할 때는 오조룡의 운용문을 金繡한 圓補를 양어깨와 앞뒤에 加飾하였으며 소례복사모로 착용할 때는 쌍봉문을 금수한 흉배를 앞뒤에 가식하였다.

〈그림 8〉

純貞孝皇后의 翟衣



* 창덕궁 소장.

〈그림 9〉 순정효황후의 평상복



* 韓國放送事業團, 《한국복식도감》III(三和印刷株式會社, 1986), 38쪽.

황후의 상복도 고유복인 치마·저고리이다. 일반인들과도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청자머리를 하고 있으며 노리개를 차고 있다. 이것도 독특하지는 않다. 저고리의 세부구조도 일반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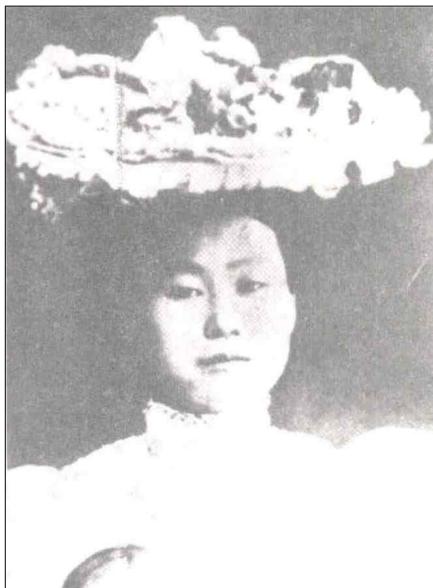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양장의 시작은 1895년 단발령 이후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양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 남아 있다. 그리고 1900년에는 유학 갔던 여의사가 귀국하면서 양장을 하고 돌아와서 보여 주면서 유행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906년경 모자를 쓴 여인이 미국에서 양장을 하고 돌아왔고 유학간 학생들이 돌아오며 증가해 갔다.

〈그림 10〉 19세기말 嚴妃 양장모습



* 柳喜卿, 『한국복식문화사』(教文社, 1981), 427쪽.

〈그림 11〉 1906년 귀국한 여인



* 金東旭 외 20인, 『한국의 복식』(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449쪽.

일반 여자복은 여권 신장과 더불어 의복의 활동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제일 먼저 기독교의 전도부인들이 짧아지기만 하던 저고리를 약간 길게 하고, 길기만 하던 치마를 다소 짧게 하여 외출과 활동에 편한 평상복으로 개량해

입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여학생의 교복이 되고 신여성의 옷차림으로 번져 나아갔다. 그리고 쓰개용 장옷 쓰개치마도 없어지고, 잠시 검정 우산을 내외용으로 쓰고 다니기도 하였다.

여자들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방한용으로 두루마기를 입기 시작하였다. 두루마기는 남자의 의관이었으나 여자용 두루마기는 추위를 막는 방한용이다. 일반 부인들은 비단으로 만들어 입었으며 아니면 무명으로도 해 입었다. 그러면서 여학생 특히 이화여자 전문학교에서는 겨울 정복으로 세무로 해 입었다.

서고리는 19세기말부터 더욱 짧아지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에는 거의 25cm 미만으로 짧아지더니 1900

<그림 12>

여자두루마기



* 韓國放送事業團, 《한국복식도감》III(三和印刷株式會社, 1986), 132쪽.

년대가 되면서 더욱 짧아져서 20cm정도가 되었다. 1910년경에는 신여성들은 일방 약간씩 길어져서 20cm가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은 1910년대가 가장 짧아진 때로 18cm정도가 되기도 하였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으나 일반적인 경향은 유물을 통해 볼 때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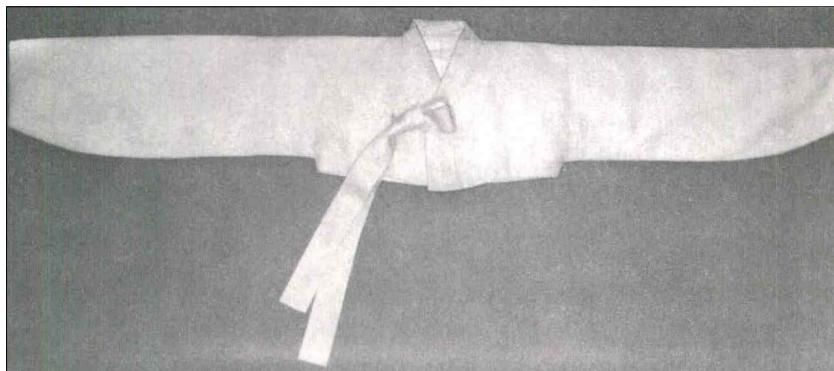
또 깃의 모양이 달라졌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당코깃이 계속되었다. 그 후 1900년 이후 당코깃이 자취를 감추었다.

고름너비도 보통 3~4cm정도이고 길이도 한 끝 길어져서 50~60cm였다.

19세기 말부터 신여성들의 치마는 긴치마가 짧은 통치마로 변해 갔다. 그리고 이화전문에서는 20세기가 되면서 교복치마로 지정되었다.

〈그림 13〉

1880년대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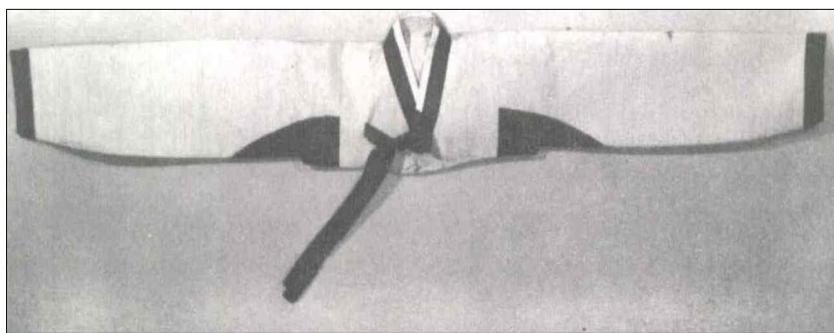


*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韓國放送事業團, 《한국복식도감 III》(三和印刷株式會社, 1986), 139쪽.

〈그림 14〉

1910년대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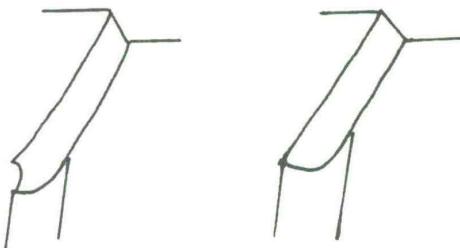


*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韓國放送事業團, 《한국복식도감》III(三和印刷株式會社, 1986), 136쪽.

〈그림 15〉

깃나비 변천



19세기 깃모양	20세기 깃모양
깃나비 3.5~4cm, 깃길이 17~18cm	

〈그림 16〉 20세기 초 통치마모습



* 梨花七十年史 編纂委員會, 《이화 70년사》
(梨花女大 出版部, 1956), 355쪽.

〈柳喜卿〉

2) 음식

(1) 식생활 환경의 변화

외국과의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상호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점차로 외래의 음식 문화가 유입되었다. 일부 상류층은 서양요리·중국요리·외국 술·서양 과자·가공된 식품 등 새로운 외국의 음식 문화에 접하게 되었다.

일본과는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식품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일본으로의 수출 품목은 쌀·콩·보리·인삼 등의 농산물이었고, 일본에서의 수입은 주로 향료·조미료·담배 등이었다.¹⁾ 청국과는 개항 이전에 이미 의주·경원·회령 등에서 1년에 2회 열리던 개시무역에 의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항 이후에는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의주와 회령에 세관을 설치하고, 수출입세로 상품 가격의 5%(단, 홍삼은 15%)를 징수하는 제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홍삼을 제외한 다른 식품은 세금을 물지 않고 수출이 가능하였으므로 청국과의 교류는 활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청국으로 수출한 것은 인삼·해삼 등이고, 수입한 것은 茶·녹용 등이었다.²⁾ 러시아와의 교류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다. 우리 나라의 수출 품목은 두류·귀리·조·담배·해삼·어류·어란 등이었다.³⁾

한편 국내에서도 개화기에 들어서 장시망이 전국적으로 발전하였다. 전북의 전주장과 함남의 원산장은 그 좋은 예이다. 시장망의 확대로 지역간의 식품 교류가 크게 증가되었다. 개천의 읍내장에서 산간 지대의 농산물과 바닷가의 해산물이 교류되었고, 평북 강계장에서는 지방의 사물인 녹용·삼·꿀들과 덕천의 철, 선천의 도자기 등이 유통되었다. 원산시장에서는 이 지방 일대의 생산물이 집결되어 각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황해도 토산의 비천장에서는 六鎮지방의 삼베와 원산지방의 마른 고기 및 미역 등 해산물이 유통되었다. 또한 서울의 이현(동대문안), 종루(종로 근방), 칠侪(남대문밖) 등 3대

1) 강인희, 『한국식생활사』(삼영사, 1990), 386쪽.

2) 강인희, 위의 책, 387쪽.

3) 강인희, 위의 책, 387쪽.

시장에서는 각지에서 몰려온 곡물 상인들이 거래를 하였다.⁴⁾

또한 19세기 말경 남청에는 놋그릇 수공업 공장이 30여 개나 되었으며, 1897년 서울에 합자회사인 ‘조선유기상회’가 조직되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놋그릇은 津頭 상인들의 손을 거쳐서 각 지역으로 퍼짐으로써 일반인들도 필요에 따라 구입할 수 있었다. 《朝鮮의 烹業》에 의하면 1895년경에 도자기 공장이 21개소였고, 옹기류 공장은 13개소가 있었다.⁵⁾

식사법에 있어서의 변화도 보이는데 1885년 전후하여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한자리에서 나란히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식사법이 시작되었다.⁶⁾ 이전에는 남녀가 또는 양반과 상민이 같은 상에 나란히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조선을 여행한 비숍은 “여인들은 아무렇게나 먹고 자기 남편들이 먹다 남긴 것을 먹어 치우는 것이 통례였다. 남자들의 모든 식사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돌아가는 몇 센치미터 높이의 작고 둥글고 어두운 색의 나무상에 차려졌다”고 했듯이, 남자들은 외상 차림으로 대접하였지만 서민의 부녀자들은 상에 차려 먹는 일이 드물었는데,⁷⁾ 이러한 식사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800년대에 서양 영양학이나 서의한역서 등이 소개되면서 서양에서의 영양·보건은 동양과 관념이 다르다는 것을 어렵잖이 알게 되었다.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 이후 부산·인천·원산·서울에 일본인에 의한 서양식 병원이 생기고, 1886년에 제중원이 생기어 서양의 술교육이 시작되면서 서양 영양학의 지식이 많이 소개되었다. 1895년에는 일본인 의사가 조선인의 日常食을 현대 영양학적으로 처음 조사하였다.⁸⁾

당시 서울에 인구가 많아지면서 우물이 없는 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아침에 두 지게, 저녁에 두 지게씩 하루 네 지게를 길어다 주는 것이 보통인데 물값은 보름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했다. 동

4) 강인희, 위의 책, 386쪽.

5) 강인희, 위의 책, 407쪽.

6) 김숙희, 《먹는 즐거움, 먹는 두려움》(정우사, 1982), 187쪽.

7) 이사벨라 베드 비숍 著, 이인화 譯,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살림, 1994), 101쪽.

8) 이성우, 《한국 식생활의 역사》(수학사, 1992), 216쪽.

업자 조직을 만드는 등 근대적 상인정신을 가진 집단으로 특히 북청 출신이 많았다.⁹⁾

가. 음식점과 호텔의 등장

1800년도 후반기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집밖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여관·음식 장수 등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1866년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Ernst J. Oppert)는 우리 나라에서 밥장수·떡·죽장수 등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고 하였고,¹⁰⁾ 1883년에 온 독일인은 “지구상의 어느 왕국도 유럽인 여행자에게 알맞은 호텔·찻집, 그 밖의 유홍 시설을 찾을 수 없는 곳은 서울뿐인 듯하다”고 하였다.¹¹⁾

그러나 음식점의 경우, 그리피스(Griffis)는 우리 나라에 음식 파는 행상들은 그리 흔하지 않지만 푸줏간과 국숫집은 많이 있다고 하였고,¹²⁾ 《朝鮮漫畫》에는 당시의 국수가게·국밥집·떡장수·엿장수의 모습이 나온다.¹³⁾ 《京城繁昌記》에는 식사만을 하는 곳을 국밥집(湯飯屋), 약주만을 파는 집을 약주집(藥酒屋), 탁주만을 파는 집을 酒幕, 하등의 음식점을 전골집(煎骨家)이라 하였고, 주막에서는 음식도 팔고 숙박을 겸업하고 있다고 했다.¹⁴⁾ 또한 궁중에서 음식 관련 책임자였던 조순환이 1890년에 세종로 현 동아일보사 자리에 명월관이란 고급 요정을 차려서 궁중 음식을 일반에게 내놓게 되었다. 명월관 외에도 당시 장춘관·국일관·식도원·태서관 등의 고급 요리점이 있었다.¹⁵⁾

서양식 숙박시설의 경우, 서울에는 철도가 부설되기 전에는 적합한 호텔이 없었다. 손님들은 흔히 어떤 소개장을 갖고 와서 자기들 나라의 공사관에서 접대를 받곤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들어 온 외국인들의 불편이 많아지자 철도국에서는 1912년 서양식 설비를 갖춘 여관과 식당을 세우게 되었다. 부산 철도호텔과 신의주역에 호텔을 건설하였고, 1914년에 조선호텔을 건설하였

9) 이성우, 위의 책, 236쪽.

10) 에른스트 오페르트 著, 한우근 譯, 《조선기행》(일조각, 1982), 101쪽.

11) 김영자 편저, 《조선왕국이야기》(서문당, 1997), 203쪽.

12) W. E. 그리피스 著, 신복룡 譯, 《온자의 나라 한국》Ⅱ(탐구당, 1983), 164쪽.

13) 博田斬雲·鳥越靜岐, 《朝鮮漫畫》(日韓書房, 1909), 41~51쪽.

14) 岡良助, 《京城繁昌記》(博文社, 1915), 249쪽.

15) 이성우, 앞의 책, 228쪽.

다. 1915년 금강산에 금강산호텔과 장안사호텔, 평양철도호텔을 세웠다. 그리고 1915년 서울역 2층과 釜山府 공회당에서 식당을 직영하였고, 철도의 식당 차 영업은 1913년에 경부선과 경의선에서 개시하였다.¹⁶⁾

나. 술 가공공장의 설립

1883년 술 가공공장이 부산에 세워진 이후 이어서 서울·인천·부산·평양·마산 등지에 대규모 양조장이 생겼다. 이들의 생산 규모는 보통 하루 1섬 정도 소비했는데 20섬을 만드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각 지역의 술공장들은 고유한 상표를 붙여서 광고를 하였는데 평양의 甘露酒, 서울의 소곡주·도화주, 황해도의 이강고, 전라도의 죽력고 등이 당시의 대표적인 상표들이었다.¹⁷⁾

한편 일본인들도 술 가공공장을 세웠는데 1904년에는 무려 14개나 되었고, 년간 생산량은 4000석에 달했다. 주류시험소가 생기어 품평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종래 조선에는 주세가 없었고 자가 양조는 거의 방임 상태였는데 1904년 일본인 재정 고문이 주세법을 구상하여 1909년 <주세법>을 발표하였다. 이는 술의 양조를 자가용·판매용 가리지 않고 무제한 면허제로 하여 해마다 11월까지 그 다음 해에 양조할 생산량을 소속 세무서에 신고하면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 간접세였다. 이 주세에 의하여 우리의 전통술 빚기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¹⁸⁾

다. 식품 가공공장의 설립

술공장이 생길 무렵에 정미 가공 공장이 생겨났는데 대부분 일본 사람이 세웠다. 1874년 현미를 생산하는 ‘계산정미소’가 처음 생겼고, 1892년 미일 합작으로 앵겔식 정곡기 4대가 수입되면서 본격적인 정미 공장이 설립되었다.¹⁹⁾ 1883년경 서울에는 두부와 떡을 만드는 豆餅局이 설치되어 식생활 풍속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²⁰⁾

16) 이성우, 위의 책, 233쪽

17) 강인희, 앞의 책, 406쪽.

18) 이성우, 앞의 책, 222쪽

19) 최운규, 《근현대조선경제사》(갈무리, 1988), 88쪽.

20) 강인희, 앞의 책, 407쪽.

예전부터 칼국수는 손으로 만들어졌으나 기계면류가 나오면서 품질이 향상되었다. 당면은 경기도 부천·인천·평양·사리원·신의주 등지에서 만들었다. 당면은 녹두 녹말과 감자녹말을 섞어서 만드는데 1919년 중국인이 사리원에 천연 동결 제법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냉면은 냉면 기계로 뽑아 내어 널리 식용되었다.²¹⁾

축산물 가공품으로는 1920년경에 난곡기계농장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한편 양돈을 하여 햄과 소시지를 만들어서 국내 거주의 외국인들과 조선호텔과 식당차에 공급하였다. 우유는 1900년에 일본인이 우유착취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유가공품으로 연유·분유·버터·유산균 발효유 등도 만들었다.²²⁾

감미료의 경우, 꿀의 생산량은 많지 않았으며 설탕은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중국에서 당을 수입하였다. 사탕무 재배가 평남 및 황해도지방에서 성공하여 1917년에 조선정당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日本精糖과 합병하여 1920년 평양에 정당 공장을 설치하였다.²³⁾ 소금은 연해 각지에서 만드는 졸임소금이었는데, 1907년 경기도 주안에서 천일염을 실험한 결과 그 성과가 매우 좋아서 1909년부터 천일 염전을 축조하였다.²⁴⁾ 식용유는 참깨·들깨·면실유·콩 등으로 만드는데 일화제유·북선제유 등의 공장이 있었다.²⁵⁾ 또 일본인의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일본식 간장·된장 공장이 서울·부산·대전·인천·평양 등지에 많이 생겼다.²⁶⁾

(2) 개화기의 식생활

가. 곡류

우리 나라는 쌀로써 主食을 삼았으나, 쌀의 수출이 많아지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쌀값이 급등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쌀을 먹을 수가 없었다. 소수의 부유한 주민들은 연중 쌀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가난한

21) 이성우, 앞의 책, 218쪽.

22) 이성우, 위의 책, 222쪽.

23) 이성우, 위의 책, 218쪽.

24) 이성우, 위의 책, 220쪽.

25) 이성우, 위의 책, 218쪽.

26) 이성우, 위의 책, 226쪽.

주민들은 겨울철 반년은 쌀밥을 먹고 여름철에는 밀·조나 수수를 먹었다.²⁷⁾ 그 외 밀가루로 만든 국수와 떡을 만들었는데 당시는 제분소가 아직 없었고, 맷돌과 물레방아로 빻은 밀가루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²⁸⁾

콩류는 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곡물이었는데 두부를 만들고, 그 밖의 곡물로는 기장·호밀·보리·귀리·밀·옥수수 등이 생산되었다.²⁹⁾

나. 과채류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오이·호박·수박·가지·토마토와 마늘이 아주 널리 재배되고 있었다. 감자는 아주 드물었고, 마늘과 고추는 한국인의 음식에서 조미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³⁰⁾ 1883년에는 미국 사절의 수행원이었던 崔景錫이 서양 채소를 가져와서, 1884년 모범 농장을 설치하여 이의 재배를 시도하였으나 망치 상태가 되었다. 이때 캐비지·샐러리·케일·사탕무 등을 심었는데 일부는 궁중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감자와 고구마는 재배는 적었으나 1910년 이후 서양인과 일본인들에 의하여 많이 재배되어 생산량이 급증하였다. 배추 재배에 일본인과 중국인이 진출하였고, 미국·캐나다·일본에서 새로운 품종을 가져왔다.³¹⁾

한편 일본인들이 기업적으로 서양 사과·포도·배를 심은 과수원을 경영하였다. 배·호두·복숭아·살구와 사과나무 등의 과수원이 있었고, 특히 남쪽에는 감이 많이 생산되었다. 배는 상쾌한 맛이 나며 탄탄하였다. 경기도와 의주에는 포도밭이 있었다.³²⁾ 7월초부터 8월 내내 나오는 침외는 하층민들이 밥 대신에 먹기도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었다.³³⁾

인삼은 오래 전부터 한국인이 모든 병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해 왔다. 개성은 유명한 인삼 재배지였고, 산삼은 주로 상계에서 났는데, 백두산 주변에서 캔 것은 금값보다 비쌌다고 했다.

27) 러시아 대장성 編, 김병린 譯,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유풍출판사, 1985), 27쪽.

28) 이사벨라 베드 비숍, 앞의 책, 89쪽.

29) H. N. 알렌 著, 신복룡 譯, 『조선건문기』(박영사, 1984), 65쪽.

30) 러시아대장성 編, 『국역 한국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05), 441쪽.

31) 이성우, 앞의 책, 212쪽.

32) 러시아대장성(1905), 앞의 책, 448쪽.

33) 村上唯吉, 『朝鮮の衣食住』(朝鮮總督府, 1916), 44쪽.

다. 육류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보통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었으며, 말고기는 먹지 않고 쇠고기는 특히 좋아했다. 이밖에 닭고기·사슴 고기, 그리고 엽조수들을 별로 버리는 부분없이 먹었다. 1854년에 소를 잡지 못하게 우금령이 내려 육류가 부족하고 비싸 보통 백성들은 아무나 먹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1890년대에는 우리 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의 2배 이상 육류를 섭취하였다고 한다.³⁴⁾

서울의 시장에는 사냥한 동물이나 臘鳥를 많이 팔고 있었는데, 그 종류는 꿩·오리·거위·도요새·칠면조·산토끼·사슴·산돼지 등이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흔한 것은 꿩으로 닭보다 값이 싸으며, 닭은 왜소하나 알을 잘 낳고, 오리와 거위는 드물었다고 한다.³⁵⁾ 잔칫상에는 특별 요리로 통째로 구운 닭구이가 대부분 나왔다고 하였다.³⁶⁾

일반 푸줏간에서는 개고기를 팔며, 보신탕을 미식으로 알고 보약제 또는 강장제로 먹었다. 음력 정월에는 종교적 금기로 개고기를 먹지 않았으나, 천민신분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³⁷⁾

1902년 프랑스인에 의하여 젖소가 처음 도입되었고, 다음해에 육우가 들어 왔으며, 이후 돼지 요크샤종이 들어왔다. 1906년 수원에 勸業模範場이 설치되어 외래종 가축의 개량을 연구하였다.³⁸⁾

라. 수산식품류

한반도 수역에는 상어·대구·가자미·큰 넘치·홍어·고등어 및 여러 가지 종류의 연어·청어·정어리와 다량의 온갖 작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 이것들은 중요한 식품이 되었다. 또 해조와 다시마 등 해초도 중요한 식료품이었다.³⁹⁾ 일본인들은 이전부터 한국 연해에 침투해 오다가 1876년 <강

34) W. E. 그리피스, 앞의 책, 162쪽.

35) 러시아대장성(1905), 앞의 책, 452쪽.

36) 김영자, 앞의 책, 224쪽.

37) W. E. 그리피스, 앞의 책, 163쪽.

38) 이성우, 앞의 책, 214쪽.

39) 러시아대장성(1905), 앞의 책, 453쪽.

화도조약〉, 1883년 〈한일간 어업에 관한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뒤 우리 연해의 수산업에 뛰어들어 수산물을 마구 남획하였다. 일본 어민들은 신 어장을 개척하고, 어선·어구·어법을 개량하고, 원양 어업이 발전하여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우리 어민들은 이들보다 기술이나 선박·어구 등이 열세하여 생활에 위협을 당하였다.⁴⁰⁾ 1904년 6월에는 서해안 어업권을 탈취당하였다.

일본인은 바지락·굴 등에 관한 실험과 피조개·대합의 양식 연구를 하였다. 또 양어장을 설치하고, 민물고기 및 김을 양식하여 건조 가공을 하였다. 수산물 가공품은 1872년 전북 완도에서 통조림업이 시작되었는데, 계·고등어·소라·전복 등의 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하였다. 수산물의 보관을 위해서는 냉장과 냉동법이 쓰였는데, 1910년 人造製冰法이 시작되었다.⁴¹⁾

(3) 외국 음식문화의 전래

가. 서양 음식의 전래

우리 나라 사람이 서양 음식을 처음으로 접한 경우는, 1800년대 후반 제물포 앞 바다에 온 영국인 홀이 군함에 한국인을 불러 유럽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할 때였다. 소통은 중국어와 한자로 하였다고 한다.

그 후 〈강화도조약〉(1876) 체결 후 일본에 수신사로 간 金綺秀는 그곳에서 서양요리를 먹었다고 한다. 1883년 閔泳翊이 미국파견 전권대사로 처음으로 파견되었을 때 수행한 楊吉濬·尹致昊 등은 물론 미국에서 서양요리를 먹었을 것이다.⁴²⁾ 오페르트의 『朝鮮紀行』을 보면 그는 배에 찾아온 조선 사람에게 양식을 대접했으며,⁴³⁾ 그 이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양식을 대접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양식을 처음 대하는 조선 사람들이 나이프와 포오크를 익숙하게 쓰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였고, 그들이 가져온 통조림이나 식료품을 주었다고 하였다. 1894년 영국 신문에는 빵을 처음 먹어

40) 강인희, 『한국식생활변천사』(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 1988), 201쪽.

41) 이성우, 앞의 책, 220쪽.

42) 이성우, 위의 책, 228쪽.

43) 에른스트 오페르트, 앞의 책, 102쪽.

보는 조선 아이들의 삽화와 한강 빙판 위에서 영국 손님이 조선인에게 서양식 조반으로 빵과 버터를 권하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다. 유길준은 《西遊見聞》(1895)에서 서양인들이 빵과 우유, 버터, 각종 육류, 그리고 주스나 커피 등을 먹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⁴⁴⁾

한말 정국이 어지러울 때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특히 독살을 두려워하였다. 이때에 당시 러시아공사 웨베르(Karl I. Waeber)의 부인이 음식을 손수 만들어 이중 철제 케속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서 궁중에 매일 배달하여 드시도록 하였다고 하며, 그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관에 머물 때 웨베르 공사의 처형인 孫鐸(Antoinette Sontag)이 서양 과자와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 대접하였으므로 고종을 비롯하여 궁중에서는 서양식에 점차 익숙해졌다. 손탁호텔에서는 양식을 만들어 상류층에 보급하였고, 외교관과 고관들의 사교장으로 이용되었다.⁴⁵⁾

1887년에 궁중에 초대받은 비숍(I. B. Bishop)여사는 서양식으로 스프를 포함해서 생선, 퀘일, 들오리 요리와 꿩요리, 속을 채워 만든 쇠고기 요리, 야채·크림·설탕에 베무린 호두, 과일 적포도주와 커피 등을 먹었다고 하였다.⁴⁶⁾ 1900년에 독일의 신문기자인 지그드리프 젠테(Sigfried Genthe)는 “황실에서는 밤마다 연회가 끊임 날이 없었으며, 화려하게 장식된 식탁에 죄고금 유럽식으로 완벽한 음식이 차려졌으며, ‘트뤼플’과 프랑스산 ‘샴페인’이 나왔다고 하였다”고 하였다.⁴⁷⁾

궁중에서는 서양식 책임자로 영국 유학생이었던 윤기익을 임명하여 서양식에 필요한 집기와 요리책을 사들이고, 프랑스에서 일류 요리사를 초빙하기도 하였다. 당시 러시아말 통역관이었던 金鴻陸은 시베리아지방에서 유랑하던 金鐘浩를 서양요리 熟手로 불러들여 서양 음식을 만들어 바치곤 했다고 한다. 고종과 순종은 특히 생선 프라이를 즐기셨다고 한다.⁴⁸⁾

1910년 고종 탄일 경축연에 서양식 양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음식은 전

44) 유길준 著, 채훈 역, 《서유견문》(양우당, 1988), 268쪽.

45) 이성우, 앞의 책, 228쪽.

46) 이사벨라 베드 비숍, 앞의 책, 294쪽.

47) 김영자, 앞의 책, 299쪽.

48) 김명길, 《낙선재주변》(중앙일보사, 1977), 31쪽.

부 양식으로 준비하였으며 손님들의 포오크와 나이프 소리가 요란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한말 궁중에서는 서양 음식으로 연회를 치를 정도로 서양요리의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중국 음식의 전래

임오군란 직후 약 3,000명의 중국 군인과 많은 중국인이 들어왔다. 그들 중 부자는 무역업에 종사하였으나, 대부분은 적은 자본으로 호떡집을 경영하거나 채소 재배를 하였다. 호떡은 얼마안가서 우리 나라 사람에게 널리 사랑 받게 되었는데 둥글넓적한 밀가루 반죽 속에 겹은 설탕을 넣어서 구운 것이다. 찐빵인 包子와 만두인 餃子도 만들었다. 이것들을 파는 음식점이 1900년대 초기 서울의 태평로 2가, 명동, 종로 5가, 서소문, 소공동 등지에 밀집되어 있었다. 중국인들이 호국수집을 내어 짜장면·호국수·짬뽕 등과 잡채·탕수육·해삼탕·라조기 등을 만들어 팔았다. 고급 중국요리집으로 서울에는 아서원·사해루·금곡원 등이 생겼고, 인천에는 공화춘·중화루 등이 생겼다.⁴⁹⁾

다. 일본 음식의 전래

일본인이 왕래하면서 일본 고유의 음식과 식품으로 우동·단팥죽·일본과자·다꾸앙·어묵·청주·초밥 등이 들어왔다. 일본식 고급 요정으로 화월·화선·에비수·백수 등이 생겼고, 친일파인 宋秉畯은 청화정을 내었다. 일본 요정에서는 기생도 있었고, 일본 요리를 내놓고 있어 친일파들의 접회 장소가 되었다. 서울 진고개에 일본 과자를 파는 집이 생겼고 그후에 많이 늘어났다. 특히 조선의 아이들에게 비오리 사탕이 인기가 있어서 “꿀보다 더 단 것은 진고개 사탕이라네”라는 동요까지 생겨났다.⁵⁰⁾

마. 외국 식음료의 전래

조선의 술은 쌀이나 수수 또는 보리로 담그는데 강도나 색깔이나 맛이 맥주와 브랜디의 차이만큼이나 다양하다. 하멜(Hendrik Hamel)에서부터 최근의 미국인에 이르기까지 조선을 찾아온 많은 방문객들은 조선 사람들이 맥주에

49) 이성우, 앞의 책, 233쪽.

50) 이성우, 위의 책, 235쪽.

서부터 위스키에 이르기까지 온갖 독주를 모두 좋아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인상적으로 보였다고 한다. 미국 공사였던 알렌(Horace N. Allen)은 각 부대신을 정동의 자택에 초대하여 칵테일파티를 열어 조선의 고관들과 브랜디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한다.⁵¹⁾

커피는 1892년 구미 제국들과 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국 사신들이 궁중에 드나들면서 커피를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궁중과 친히 지냈던 알렌이나 왕비 전속 女醫였던 홀튼(Lillias S. Horton) 등이 喫茶法을 궁중에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서양이나 일본을 왕래하던 인사들은 커피를 마신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유길준은 《西遊見聞》에 커피마시는 풍습을 소개하였다.

특히 왕가에서는 커피를 즐겨서 마셨는데 고종은 俄館播遷(1896)으로 러시아 공관에 있는 동안 익숙해져서 아주 좋아하였다고 한다. 1898년 고종의 탄일 잔치 다음날에는 경운궁(현 덕수궁) 청목재에서 친척, 대신들과 어울려 커피를 마셨는데 이때 커피에 아편을 탄 음모사건까지 있었다.⁵²⁾

1902년 손탁은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자리에 서양식 호텔을 개업하였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팔았다.⁵³⁾ 1910년경 지금의 세종로에서 프랑스인 부레상이 나무시장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가 매일 커피를 담은 보온병을 메고 다니면서 나무장수들에게 따라 주었는데 이를 ‘양탕국’이라 하여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⁵⁴⁾

〈韓福眞〉

51) 강인희(1990), 앞의 책, 402쪽.

52) 김명길, 앞의 책, 31쪽.

53) 역사신문편찬위원회 편, 《역사신문》 5권(사계절, 1996), 91쪽.

54) 이성우, 앞의 책, 229쪽.

3) 주거

(1) 갑오개혁과 주거문화의 변화

1894년의 갑오개혁은 관리등용에 있어서 반상구별의 철폐, 문무준비의 철폐, 공사노비의 혁파, 천민계층의 면천 등 중세적 양반체제의 신분질서가 해체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봉건적 사회체제의 동요는 이미 18세기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갑오개혁은 그 동요의 공식적 종결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왕권과 지배질서의 약화를 배경으로 소농경제의 성장과 부농·부상층의 대두, 양반호구의 격증과 상민호구의 격감, 노비호구의 실질적 소멸¹⁾은 이미 봉건적 신분질서가 해체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울산지역 시기별·신분별 호구 비율표

(단위 : %)

연대	양반호(구)	상민호(구)	노비호(구)	계
1729	26.29(19.39)	59.78(49.57)	13.93(31.04)	100(100)
1765	40.98(32.11)	57.01(50.83)	2.01(17.06)	100(100)
1804	53.47(43.67)	45.61(33.88)	0.92(22.45)	100(100)
1867	65.48(67.07)	33.96(18.27)	0.56(14.66)	100(100)

* 정석종,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일조각, 1983), 249~250쪽.

이 과정에서 중세적 신분체제를 배경으로 하는 주거문화 또한 서서히 변질되어 갔음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형태를 제한하던 家舍規制가 점차 그 구속력을 상실해 감을 볼 수 있다. 태조 4년(1395)부터 시작된 조선시대의 가사규제는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성종 9년(1478) 완성에 이른다. 《朝鮮王朝實錄》에는 가사규제의 위반사례가 자주 등장하며 그때마다 강력하고 세부적인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 말부터는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개정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임진왜란 이후에 가사규제가 그 효력을 상실하여 유명무실해 진 것

1)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특강』(서울대 출판부, 1991), 203쪽.

을 반영한다고 해석되어 왔다.²⁾ 여하튼 갑오개혁은 신분차별의 철폐와 함께 가사규제의 공식적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가사규제의 폐지는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경제력에 따라 자유롭게 주택을 조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게 되었다. 특히 농민층에서 경제력을 축적한 부농이나 부상들은 과거 고급관료계층에서나 할 수 있었던 주택의 규모와 형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 권위건축의 요소들이 폭넓게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방의 부농·지주들은 규모의 제한없이 엄청난 규모의 주택을 만들었고, 필요 이상으로 큰 사랑채나 루마루를 건립하였다. 長臺石 基壇이나 包作, 두리기둥과 굴도리, 附椽 등 私家에서 사용되기 어려웠던 건축요소들이 경제력만 있으면 흔히 사용될 수 있었다.³⁾ 이러한 요소들은 고급주택임을 표현하기 위한 권위적 요소의 모방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사대부의 생활문화가 배경이 되었던 주거규범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모방한 것은 아니었다. 농민출신의 부농들에게는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주거설비와 공간에 더욱 치중하였다. 이에 그들의 주택은 평면이나 배치형식상으로 그 지역의 중농·자영농 계층의 모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들은 사대부가의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유교적 격식과 규범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생활의 편의성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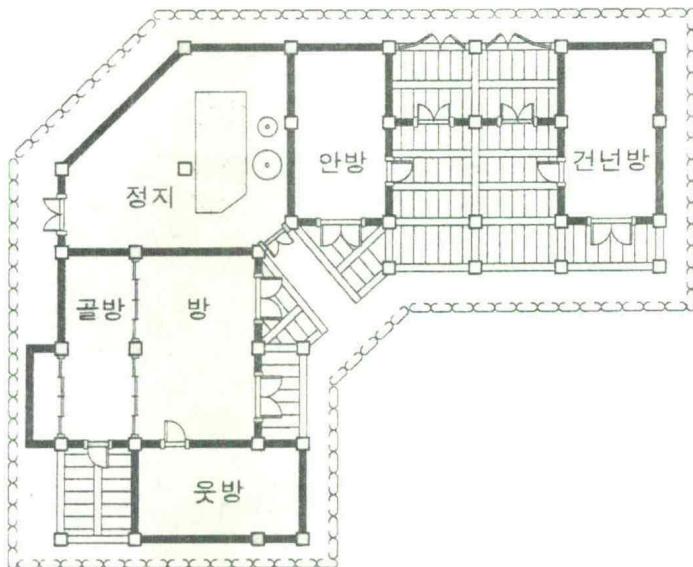
함양의 허삼돌 가옥은 이러한 실용주의적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옥은 상량문에 의하면 1918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옥의 살림채는 과거 경남지방의 상류계층 주택에서 보기 드문 그자형 건물로서 부엌이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부엌도 사각형이 아닌 모서리를 죽인 마름모꼴의 형상이며, 양쪽 뒷마루도 부엌부분에서 넓어져 마름모꼴의 형상을 갖추었다. 중앙의 부엌에서 양쪽 날개부분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양날개에서 부엌으로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사각형의 규범적 형태에서 벗어나 면적에 따라 자유로운 형상을 만들었다는 점 등은 실용적 이유로 형태의 규범을 과감하게 벗어난 사례인 것이다.

2) 이호열, 『조선전기 주택사 연구』(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91), 121~122쪽.

3) 이러한 요소들은 일제시기 집장사들이 건립한 도시형 한옥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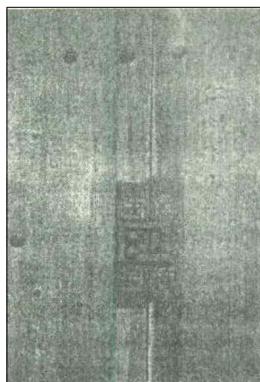
허삼둘 가옥의 살림채 평면



한편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화의 경향도 보여진다. 과거 사대부가의 주택이 우람한 구조체와 엄격한 규범으로서 권위를 표현하고, 절제와 검약의 선비정신을 표출하는 데 비해 이 시기의 상류주택들은 섬세한 공예적 장식으로 경제력과 계층성을 표현하려 했다. 구조부재들은 보다 가늘고 유약해지고, 창호면적은 보다 넓어지면서 내부공간이 밝고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다양하고 섬세한 살무늬의 창호들이 많이 사용되며, 문에는 갖가지 무늬의 쇠장석들이 흔히 사용되었다. 이러한 장식성의 추구는 小木공예와 금속공예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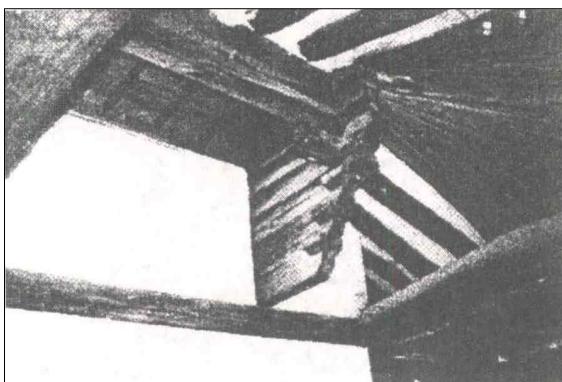
사대부가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노비제의 해체에 따라 솔거노비들의 거처였던 행랑채가 약화되고, 수장공간과 대문간을 갖는 대문채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행랑채와 살림채 사

〈그림 2〉
청도 운강 고택의 쇠장석



이를 遮蔽시키는 장치들도 비교적 허술해져 간다. 살림채 영역에 수장공간이나 작업공간이 들어서서 영역의 규모가 커지고, 개방화되는 것도 경영형부농으로 전이해가는 사회적 변화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대정리 신씨 고가의 포작



(2) 개항과 서구 건축양식의 유입

조선의 내부에서 사회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서양의 열강들과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개항을 요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1876년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서양의 여러 국가들과 강제적인 국교를 맺기에 이르렀다. 개항이라는 사건은 외국의 여러 문물이 직접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일본과 서구에서 발달한 건축문화도 들어오게 되었다. 외국인들은 자국의 외교활동을 위하여 공관이 필요하였고, 새로운 숙박시설인 호텔도 도입되었다. 근대적 교육제도의 도입에 따른 교육시설이나 기독교의 전파에 따른 종교시설 등이 새로이 요구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건축문화가 외국인들을 통하여 직접 유입되었던 것이다.

초기에는 부산의 일본 관리관청(1879)을 비롯한 각국의 영사관과 공사관들이 그들의 건축양식대로 지어져 이 땅에 소개되었고, 인천 대불호텔(1885)을 비롯한 상업 건축들과 배재학당(1886)을 비롯한 학교 건축들, 명동 천주교 주교관(1886)을 시작으로 한 종교 건축물들, 또한 서울 전환국(1886)과 같은 새

로운 기능의 관청 등이 외국인들의 손이나 감독으로 지어져 그들의 건축방법을 보여주게 되었다.

한편 주택으로도 새로운 양식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세창양행 사택(1884)은 회사의 사택으로서 독일인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최초의 양옥이었다고 한다. 내부에는 사무실·응접실·침실·부엌·식당·오락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외벽에는 회칠을 하고 붉은 기와지붕과 아케이드(arcade: 기둥 위에 홍예를 만들어 연속적으로 볼인 시설)를 갖춘 일부 2층의 벽돌건물로서 중국인 大木이 건설하였다고 한다. 이후 기와지붕에 작은 돔(dome: 반구형 지붕)을 곁들인 미국공사 알렌(H. N. Allen)의 별장(1890)이 지어졌고, 인천 북성동에는 석조기와의 4층집으로 제임스 존스턴(James Jonston) 별장(1905)이 건립되었다.

〈표 2〉

개항기에 건립된 외래주택

건물명	시기	자본	설계 및 시공	재료 및 구조	형식
일본인 거류지		일본	일본인	2층 목조	일본식
세창양행 사택	1884	독일	중국인 대목	2층 벽돌조	별장풍
제임스 존스턴 별장	1905	영국	독일+중국인	4층 석조기와	유럽식 절충주의
요임관사	1906	일본	일본	목조모사	양옥
안국동교회 목사관	1911	한국+미국	미국+한국+ 중국인	2층 벽돌조	搏棊 한옥
이준씨댁	1911	일본	일본인	석조혼용 2층 벽돌조	프렌치 르네상스

* 김홍식, 『민족건축론』(한길사, 1987), 284쪽에서 발췌.

서구인들은 외교관이나 종교인·상업인 등 소수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왔지만 일본인들은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이주가 이루어졌다. 이주자의 양과 팽창속도에 관한 한 다른 외국거주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주일본인은 부산·인천·서울 등 주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함으로써 도시에 있어서 일본인들의 비율은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었다.⁴⁾

4) 이현종, 『한국개항장연구』(일조각, 1980), 175쪽.

이러한 일본인들의 대량 집단이주는 병자수호조약의 결과 일본조계가 설치되어 토지의 점유와 사용이 자유로워진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1877년 11만 평의 토지가 일본인 소유나 다름이 없게 된다. 이에 1900년에는 1,000여 호에 6,000여 명에 이르는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고, 1909년에는 4,284 호에 21,697명으로 급증하여 10년만에 3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⁵⁾

이러한 일본인 이주자의 격증과 함께 이들은 조선의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실권을 장악해 나감으로써 자유롭게 자신의 주거문화를 유입시킬 수 있었다. 초기에는 인구도 적고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자재운반에 어려웠기 때문에 조선주택이나 일본인 목수들이 지은 목조서양관에 거주하였으나 이주자가 급증하면서 일본식 가옥이 대량으로 광범위하게 지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항장에서는 왜식주택의 창궐로 마치 일본의 소도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⁶⁾

일본인 거류지에 건설된 일본인 주택들은 당연히 일본인의 자본으로 일본인의 설계와 시공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대부분은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주택과 상업을 겸한 주상복합건물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주상복합의 유형은 보통 2층 건물로서, 1층은 상점, 2층은 주거로 구성된다. 전면폭이 좁고 길이가 긴 택지 위에 계획된 것으로서, 이미 일본의 중세시기부터 ‘町家’라는 이름으로 일본식 도시주택의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조선으로서는 생소한 외래 주거형식이 아무런 여파나 수정없이 집단적으로 건립되었고, 이는 도시의 경관을 이국적으로 바꿔게 하는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택으로는 한국적 풍토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난다. 온난하고 습기가 많은 풍토에서 발달한 다다미와 개방적 성격의 일본식 주택이 한국의 추운 겨울에 적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온돌방을 찾는 일본인들이 많아졌는데,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적응치 못하고 자기의 관습을 유지하나 차차 조선식 온돌 난방장치와 벽을 두껍게 하고 창호의 면적을 비교적 작게 하는 것 등을 모방하여 재래의 일본식 주택과는 매우 차이가

5) 윤일주, 『한국양식건축80년사』(치정문화사, 1965).

6) 문홍길, 〈개화기이후 한국 전래주거건축의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55쪽.

있는 主家양상으로 변하게 되었다.⁷⁾

이러한 유입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건축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건축양식을, 그들의 재료와 기술로 설계되고 건설된 것이었다. 즉, 유입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자체의 필요나 의지에 의해서 유입되었거나 우리의 기술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 개항과 더불어 거의 강제적으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의 문물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또는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를 검토해 보거나 비판할 겨를도 없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다. 게다가 개항이후 일제에 의한 식민지 시기를 맞게 되어, 일본인들에 의해 외래문화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주거문화를 수용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다.

(3) 외래건축문화의 영향

개항을 통하여 외래문화의 자극이 심화되면서, 전래 주택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량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개화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파력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은 치도론과 설비론, 위생론, 공간이용론, 근대기술교육론 등으로 요약된다.⁸⁾ 치도론은 길을 닦자는 주장과 함께 하수도를 정비하자는 주장이며, 설비론은 주택의 설비를 근대화하자는 뜻에서 상하수 설비·뒷간·목욕시설·난방시설 등을 개량하자는 주장이었다. 위생론은 채광과 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방적 창호를 만들자는 주장이며, 공간이용론은 다층 건물의 경제성과 공간의 기능별 세분화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근대적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됨으로써 1899년 우리 나라의 첫 상공학교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서구의 문물을 그대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래적인 주거양식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기능적·위생적 문제들을 서구 도시나 주택으로부터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접근방법은

7) 최순애, <박길용선생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연구>(홍익대 석사학위논문), 96쪽에서 재인용.

8) 김홍식, 《민중건축론》(한길사, 1987), 237~239쪽.

조선후기 실학파의 맥락을 이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들의 주장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웠다.

이 땅에 건설된 외래건축들도 그 자체와 자본·기술 등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설계와 시공의 과정에서 조선인 참여의 기회가 애초부터 배제되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외국건축의 기술적 방법들이 전수되기 어려웠고, 조선기술자들은 서구건축에 무관심한 채 전래되어 오는 건축방법을 지속하게 되었다. 다만 조선후기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전파된 카톨릭 신자들이 한옥에서 은밀하게 예배를 한 경험이 있었고, 개항이후 전교가 자유화됨으로써 카톨릭 교회의 건설은 토착기술자들의 과제가 되었다. 이들은 다중의 예배를 위하여 바실리카(basilica)식 평면을 사용하면서도 그 형태는 목구조의 한식기와지붕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옥의 뼈대로 세우는 한·양절 충식의 한옥성당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주거의 경우 민중들의 주생활이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지도 않았고, 새로운 건축양식을 시도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구건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다만 이에 자극을 받은 일부계층에서는 그들의 건축을 그대로 수용하여 양식주택을 만들거나 기존의 전통주택을 서양식으로 개조하는 사례를 보여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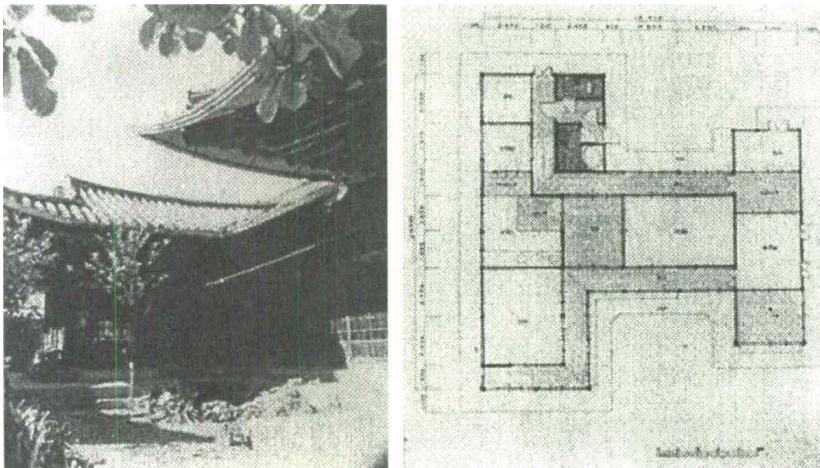
예를 들어 1882년에 개조된 閔謙鎬의 집은 카페트와 커튼·서양가구 등으로 실내를 꾸몄으며, 문턱을 낮추고 들판은 열창으로 고쳤으며, 앞마당에는 정원과 정구장을 만들고, 행랑채에는 사무실과 서재를 양식으로 개축하였다 고 한다. 한편 1910년대에 지어진 李浚씨 주택이나 尹德榮씨 별장은 외국 건축양식을 그대로 모방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준씨 주택은 석재를 혼용한 벽돌 2층의 프랑스 르네상스(Renaissance)식 건물로서 일본인에 의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재료 일체도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일부 귀족·부호계층의 사대주의적 취향이었을 뿐 전반적인 주거문화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중들은 가사제한의 범주로부터 자유롭기는 하였으나 전래되어 오는 건축방법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과거 상류계층의 고급 건축요소들이 민중에까지 전파되면서,

기단에 다듬은 돌을 사용한다든지, 굴도리를 사용한다든지, 花盤이나 小爐·翼工을 설치한다든지, 부연을 덧달아 처마를 깊게 내미는 기와지붕을 사용하는 등 보다 권위적·장식적 요소들이 확산되었다.

〈그림 4〉

개조된 한옥(경운동 민씨택)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 대관》(1987).

새롭게 도입된 건축재료 즉, 벽돌·유리·시멘트·철 등도 다양으로 공급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을 뿐 구조나 평면을 바꾸지는 않았다. 벽돌의 경우 마루밑 고막이나 굴뚝 정도에 사용되었고, 유리 또한 대청이나 퇈마루에 미서기문을 달는 데 이용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지속성은 1930년대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초의 조선인 건축가였던 박길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인들이 사는 살림집의 현상을 볼 때 생활과 주거가 부조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 1920~30년간 조선인의 생활문화는 다른 문화의 자극을 받고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용기인 주양식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박길용, 《조선과 건축》, 《조선주택잡감》, 1941).

즉, 외국문물의 유입은 민중생활상의 필요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민중들의 주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거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관청이나 근대적 교육제도에 의한 학교건축, 기독교의 전파에 따른 종교건축, 자본주의 도입에 따른 상업건축 등과 같이 새로이 발생한 기능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건축양식이 유입되었을 뿐, 주택과 같이 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축은 생활상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래되어 오던 건축방식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姜榮煥〉

찾아보기

[ㄱ]

- 가계 家契 136
 가계제도 家契制度 134, 135
 가내면업의 해체 家內綿業의 解體 167
 가사 家舍 138
 가사규제 家舍規制 485
 가사리회사 加沙里會社 189
 가스회사 gas會社 399
 〈가옥세를 시행하는 시가지에 관한 건〉 〈家屋稅를 施行하는 市街地에 關한 件〉 283
 〈가옥세법〉 〈家屋稅法〉 283
 〈가옥세법시행지 개정〉 〈家屋稅法施行 地改正〉 283
 가와카미 조로쿠 川上操六 59
 가와키타 간시치 河北勘七 126
 가지마구미 鹿島組 61
 가츠라 타로 桂太郎 423
 가쾌 家儉 134
 〈각읍부세소장정〉 〈各邑賦稅所章程〉 444
 각인부은화 刻印附銀貨 24
 간도 間島 299, 308
 간도관리사 間島管理使 302
 간도관찰사 間島觀察使 302
 간도협약 間島協約 300
 간호교육 看護教育 394
 간호부양성소 看護婦養成所 394, 395
 간호학교 看護學校 394
- 감로주 甘露酒 477
 감리서패 監理署牌 410
 감찰 鑑札 94
 《감신일록》 《甲申日錄》 361, 362
 감신정변 甲申政變 40, 361, 363
 감오개혁 甲午改革 181, 185, 195, 198, 199, 202, 319, 334, 335, 337, 338, 340, 341, 343, 345, 351, 356, 369, 371, 374, 417, 442, 485
 감오의 난 甲午의 亂 415
 감장 甲長 308
 강경환 江景丸 96
 강운업 江運業 93
 개간회사 開墾會社 188
 개시장 開市場 134, 291
 개신교 改新敎 353
 개평광무국 開平礮務局 35
 개항장 開港場 172, 489
 개항장 객주 開港場 客主 170, 171, 175
 개항장 무역 開港場 貿易 176
 개항장 시장권 開港場 市場圈 170
 개화기 식생활 開化期 食生活 478
 개화사상 開化思想 336
 개화사상가 開化思想家 363
 개화인사 開化人士 368
 개화파 開化派 336, 348
 객주 客主 169, 192, 197, 199, 201, 202
 객주상법회사 客主商法會社 181
 객주영업세 客主營業稅 201
 객주협신상회 客主協信商會 192

- 객주회사 客主會社 201, 202, 205
 거래제도 去來制度 140
 검劍 466
 검찰 檢察 410
 결부제 結負制 403
 〈결호전봉납장정〉 〈結戶錢捧納章程〉 443
 겹바지 468
 경강고군방회사 京江雇軍房會社 194
 경강선 京江船 78
 경강선인 京江船人 79
 《경국대전》 《經國大典》 374, 375
 경리호 慶利號 94
 경매제도 競賣制度 145
 경부군용전선 京釜軍用電線 123
 경부선 京釜線 55, 59, 62
 경부철도 京釜鐵道 173, 174, 177
 경부철도공사 京釜鐵道工事 411
 경부철도매수법안 京釜鐵道買收法案 69
 경부철도주식회사 京釜鐵道株式會社 63, 68
 〈경부철도 합동〉 〈京釜鐵道合同〉 60, 63
 경비전화제도 警備電話制度 243
 경성고아원 京城孤兒院 385
 경성매광회사 鏡城煤礦會社 187, 188
 《경성번창기》 《京城繁昌記》 476
 경성상공회의소 京城商工會議所 325
 경성양조합명회사 京城釀造合名會社 191
 경성여자기독교질제회 京城女子基督 教節制會 390
 경성용홍주식회사 京城隆興株式會社 193
 경성직뉴합명회사 京城織紐合名會社 191
 경아전 京衙前 341
 경영형부농 經營形富農 488
 경운호 慶運號 94
 경원·경성광산채굴권 慶源·鏡城礦 山採掘權 109
 경원선 京元線 67
 〈경원철도차관계약〉 〈京元鐵道借款契約〉 67
 경의선 京義線 57, 58, 65
 경의철도 京義鐵道 173, 174
 〈경의철도계약〉 〈京義鐵道契約〉 57
 〈경의철도차관계약〉 〈京義鐵道借款契約〉 58
 경인선 京仁線 55, 56, 61
 경인철도 京仁鐵道 173, 174
 경인철도부설권 京仁鐵道敷設權 119
 〈경인철도양수계약〉 〈京仁鐵道讓受契約〉 61
 경인철도인수조합 京仁鐵道引受組合 61
 경인철도합자회사 京仁鐵道合資會社 61, 68
 경작권 耕作權 140, 148
 경작권의 물권화 耕作權의 物權化 148
 경제적 민족주의 經濟的 民族主義 54
 《경향신문》 《京鄉新聞》 434
 계권 契券 138
 계권주 契券主 138
 계동학교 啓東學校 309
 계림장업단 鷄林獎業團 202
 고복 466
 고공 雇工 358
 고리대자본 高利貸資本 142
 고밀도 도시 高密度 都市 289
 고영희 高永喜 423
 고용 雇傭 358
 고의적삼 衿衣적삼 468
 고정길당 高貞吉堂 381, 382
 고종 高宗 19, 36, 47, 182, 195, 199, 311
 고희준 高義駿 383
 고희준부인 高義駿夫人 383

- 곡산민요 谷山民擾 411
 곡향합자회사 谷香合資會社 191
 공간이용론 空間利用論 491
 공고사 控告詞 54
 공동운수회사 共同運輸會社 82
 공동창고회사 共同倉庫會社 28
 공립협회 共立協會 318
 〈공문식〉 〈公文式〉 424
 공박법 公拍法 131
 공서 公署 80
 공수상사 供需商社 193
 공영사 共榮社 194
 공증제도 公證制度 135
 과거제 科舉制 320, 335, 337
 과부재가 금지 寡婦再嫁 禁止 347
 관계발급사업 官契發給事業 139
 관료임용제도 官僚任用制度 320
 관료제 개혁 官僚制 改革 337
 관료집단 官僚集團 323
 관립한성고등여학교 官立漢城高等女學
 校 391
 관민공동회 官民共同會 204
 《관보》 《官報》 424
 관서자문론 關西資門論 206
 관선과 管船課 226, 235
 관세 關稅 35
 〈관세사급징세서장정〉 〈關稅司及徵稅
 署章程〉 444
 관세징수권차관 關稅徵收權借款 38
 관허농상회사 官許農桑會社 188
 광무국 鎌務局 80, 208
 광무학교 矿務學校 183
 광무호적 光武戶籍 350, 356
 광산세 鎌山稅 35
 광안이권 鎌山利權 109
 광산채굴권 鎌山採掘權 109
 광성상회 廣成商會 191
 광수의 廣袖衣 463
 광신교역회사 廣信交易會社 206
 광신학교 光新學校 387
 광업권 鎌業權 117, 408
 〈광업법 및 시행세칙〉 〈鎌業法 및 施行
 細則〉 116
 광업법 鎌業法 109, 114, 115, 117
 광인사 廣印社 180
 광장회사 廣藏會社 193
 광제사 廣濟社 192
 광제원 廣濟院 394
 광통사 廣通社 92, 186, 187
 교역조건 交易條件 166
 교자 餃子 483
 교전소 校典所 422
 교정소 校正所 422
 교정청 校正廳 419
 교하농상사 交河農桑社 180
 구본신참 舊本新參 418, 422, 447
 구성광산 龜城鎌山 112
 구포저축주식회사 龜浦貯蓄株式會社
 190
 구향충 舊鄉層 406
 국고금제도 國庫金制度 243
 〈국내철도규칙〉 〈國內鐵道規則〉 56,
 236
 〈국립은행조례〉 〈國立銀行條例〉 14
 국밥집 湯飯屋 476
 국산화 國產化 240
 〈국유미간지이용법〉 〈國有未墾地利用
 法〉 145
 국일관 國一館 476
 국자회사 韻子會社 189
 국제우편업무 國際郵便業務 230
 국채보상운동 國債報償運動 32, 53,
 206
 군국기무처 軍國機務處 43, 334,
 338, 346, 369, 370, 418, 420, 424
 군국기무처 장정안 軍國機務處 章程案
 337
 군부용달회사 軍部用達會社 189

군사유학생	軍事留學生	32	기술관료	技術官僚	241
군산농사조합	群山農事組合	144	기전학교	紀全學校	387
군수	郡守	445	기창양행	旗昌洋行	80
군주사	郡主事	453	김가진	金嘉鎮	40, 85, 340
<군주사명심규제> <郡主事銘心規則>		454	김개남포	金開男包	413
궁장토	宮庄土	404	김광제	金光濟	196, 197
권업모범장	勸業模範場	480	김극암	金克巖	384
권중필부인	權重弼夫人	383	김금한	金錦漢	383
권중현부인	權重顯夫人	383	김기수	金綺秀	481
권직상부인	權直相夫人	384	김기영	金基永	196
균전	均田	405, 413	김낙철	金洛喆	413
균전사	均田使	405	김닐린	金尼林	396
그레이트하우스	C. R. Greathouse	具禮	김도라	金道拉	396
	422		김만리	金萬里	303
그로데고보에	Grodegovoe	307	김문행	金文行	412, 413
그로데코프	Grodekov	304	김미산	金美山	383
근대기술교육론	近代技術教育論	491	김뱃세	金뱃세	394
근대적 관료기구	近代的 官僚機構	336	김봉문	金奉文	408
근대학교	近代學校	321	김살로메	金 살로메	396
금강산호텔	金剛山 Hotel	477	김상운부인	金祥運夫人	383
금건(옥양목)	金巾(玉洋木)	76, 81, 82, 153, 157, 162, 214, 215	김석자	金石子	384
금고출납역설치건	金庫出納役設置件	27	김송암	金松岩	383
금관조복	金冠朝服	457	김송제	金松齊	383, 384
금광이권	金鑛利權	109	김시정	金時禎	303
금구	金鉤	461	김시현	金時鉉	197
금난전권	禁亂塵權	198	김양현당	金養賢堂	381
금수출	金輸出	164	김연학	金然鶴	197
금융결제	金融決濟	231	김영준	金永準	340
금점덕대	金店德大	409	김옥균	金玉均	38, 361, 362
급가매토	給價買土	143	김용집	金用集	197
기구	寄口	358	김용태	金溶泰	197
기기국	機器局	180	김운곡	金雲谷	383, 384
기기창	機器廠	33	김윤식	金允植	33~35
기생	妓生	345, 350	김윤정	金潤晶	391
기선	汽船	78	김익남부인	金益南夫人	383
기선회사	汽船會社	96, 100	김익승	金益昇	195, 224
기술관	技術官	337, 338	김익영부인	金益泳夫人	383
			김일당	金一堂	384
			김일은	金逸隱	383, 384

- | | | | |
|-------------------------|---------------------------------------|-----------------------|--------------|
| 김정우부인 金鼎禹夫人 | 383 | 내정개혁방안 內政改革方案 | 419 |
| 김정희 金貞蕙 | 391 | 내정개혁 세목강령 內政改革 細目綱領 | |
| 김종한 金宗漢 | 195, 196 | 441 | |
| 김종호 金鐘浩 | 482 | 내지정주 內地定住 | 173 |
| 김치윤 金致允 | 197 | 내지행상 內地行商 | 171, 173 |
| 김필원 金弼媛 | 384 | 노동권업사 勞動勸業社 | 194 |
| 김한규 金漢奎 | 196 | 노동운동 勞動運動 | 407 |
| 김해추 金海秋 | 383 | 노동운송합명회사 勞動運送合名會社 | 194 |
| 김호산 金湖山 | 383 | 노동이민 勞動移民 | 311 |
| 김홍록 金鴻陸 | 204, 482 | 노동조합 勞動組合 | 242 |
| 김홍조 金弘祚 | 197 | 노르웨이식 포살포경법 Norway式 破 | |
| 김홍집 金弘集 | 34, 420, 421, 424 | 殺捕鯨法 | 126 |
| 김화룡 金華龍 | 303 | 노무라 츠타요시 野村傳吉 | 93, 96 |
| 까자끼비쳅카 Kazakevichevka | 303 | 노비해방 奴婢解放 | 345 |
| 꼰스딴띠놉스끼 Konstantinovski | 303 | 노야제도 老爺制度 | 308 |
| 꺽다범 喫茶法 | 484 | 노인정회담 老人亭會談 | 107 |
| [▲] | | 노인정회의 老人亭會議 | 59 |
| 나사사키 長崎 | 126 | 노자와 케이치 野澤雞一 | 432 |
| 나가사키-대련선 大阪-大連線 | 101 | 노자와 다케노스케 野澤武之助 | 423 |
| 나가사키-부산선 大阪-釜山線 | 100 | 놋쇠업 鉄鍊業 | 210 |
| 나카무라 다케조 中村竹藏 | 423 | 농공은행 農工銀行 | 28, 184, 197 |
| 난진 亂塵 | 198 | 농광회사 農鑛會社 | 188 |
| 남녀동권 男女同權 | 379 | 농민경제 農民經濟 | 139 |
| 남로전선 南路電線 | 41, 120 | 농민군 農民軍 | 347 |
| 남만주 南滿洲 | 303 | 농민운동 農民運動 | 336, 401 |
| 남산현교회 南山峴敎會 | 396 | 농민적 개혁노선 農民的 改革路線 | 137 |
| 남초회사 南草會社 | 189 | 농민전쟁 農民戰爭 | 137, 405 |
| 남포환 南浦丸 | 96 | 농사개량 農事改良 | 141 |
| 남학당 南學黨 | 414 | 농업회사 農業會社 | 188 |
| 남청유기제조공장 納清鎔器製造工場 | 210 | 눈배기백자기점 눈배기白瓷器店 | 212 |
| 〈내각관제〉 <內閣官制> | | 니콜라옙스크 Nikolaeusk | 304 |
| 내무아문훈시 内務衙門訓示 | 342 | 니꼴스크 Nikol'sk | 303, 307 |
| 내부노동시장 内部勞動市場 | 242 | 니시지마 류조 西嶋留藏 | 91 |
| 내수도문 内修道文 | 366 | [■] | |
| 내장원 内藏院 | 183, 186~188, 194, 196, 197, 201, 202 | 다라비에 Daravie | 304 |
| | | 다케우치 츠나 竹内綱 | 59 |
| | | 다케우치 츠르타로 武内鶴太郎 | 103 |

- 단동 丹東 302
 단령 團領 458
 단발령 斷髮令 421
 단천금광 端川金鑛 38
 담호 裕穎 457, 465
 당오전 當五錢 29
 당정추 唐廷樞 35
 당현금광 堂峴金鑛 111, 409
 대 帶 460
 대대 大帶 460, 468
 대동강호 大同江號 95
 대동회사 大同會社 180
 대례복 大禮服 457
 《대명률》 《大明律》 375, 426
 대수 大綬 460
 대안동국채보상부인회 大安洞國債報
 償婦人會 385
 《대전회통》 《大典會通》 374, 421, 422,
 426
 대조선은행 大朝鮮銀行 186, 187
 대조선저마제사회사 大朝鮮苧麻製絲
 會社 186, 224
 대청무역 對清貿易 165
 대한경부철도역부회사 大韓京釜鐵道
 役夫會社 188
 대한공업회 大韓工業會 205
 〈대한국국제〉 〈大韓國國制〉 418, 422
 대한국내철도용달회사 大韓國內鐵道
 用達會社 67
 대한국내철도회사 大韓國內鐵道會社
 188
 대한국인 大韓國人 140
 대한무역상사 大韓貿易商社 192
 대한부인회 大韓婦人會 386
 대한사민논설 13조목 大韓土民論說 十
 三條目 416
 대한상무부 大韓商務部 206
 대한수피합자회사 大韓獸皮合資會社
 191
 대한시설강령 大韓施設綱領 145
 대한식산장려회 大韓殖產獎勵會 205
 대한여자홍학회 大韓女子興學會 382,
 385
 대한역부회사 大韓役夫會社 194
 대한연초주식회사 大韓煙草株式會社
 191
 대한의원 大韓醫院 395
 대한인국민회 大韓人國民會 315, 317,
 318
 대한자강회 大韓自強會 427
 대한제국 大韓帝國 418, 423
 《대한제국관원이력서》 《大韓帝國官員
 履歷書》 338
 대한제국기 호구수 大韓帝國期 戶口數
 278
 대한제국인 인공양잠합자회사 大韓帝國
 人工養蠶合資會社 186, 188
 대한제지회사 大韓製紙會社 191, 212
 대한직조공장 大韓織造工場 224
 대한천일은행 大韓天一銀行 15, 187,
 325
 대한철도회사 大韓鐵道會社 57
 대한토목건축회사 大韓土木建築會社
 194
 대한특집제일은행(대한은행) 大韓特
 立第一銀行(大韓銀行) 187
 대한협동우선회사 大韓協同郵船會社
 85, 91, 104, 187, 193
 대한협동회사 大韓協同會社 92
 대한협회 大韓協會 205
 대회두 大會頭 307
 덕대 德大 209, 407
 덕대제 德大制 114, 408
 덕리회사 德利會社 187
 테뷸러 David W. Deshler 312
 도고 都賈 180, 183, 189, 201
 도고상업체제 都賈商業體制 180,
 181, 192, 194, 239

- 도고회사 都賈會社 187, 194, 195
 도매 盜賣 134
 도문강봉금령 圖們江封禁令 301
 도사장 島社長 308
 <도서·연안·항로개통에 대한 의견> 〈島嶼·沿岸·航路開通에 대한 의견〉 102
 도시시장 都市市場 169
 도시인구율 都市人口率 287
 도시화과정 都市化過程 295
 도자기공장 陶磁器工場 211
 도중 都中 181, 193, 410
 도지제 賭地制 149
 도포 道袍 457
 도호 屠戶 350
 도회두 都會頭 307
 독립협회 獨立協會 195, 199, 200, 203, 204, 418
 동거친속 同居親屬 358
 동경성 東京城 302
 동서개발회사 東西開發會社 East-West Development Company 312
 동순태 同順泰 36, 91, 94
 동아연초회사 東亞煙草會社 400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 東洋礦業開發株式會社 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mpany 110
 동양애국부인회 東洋愛國婦人會 382
 동양척식주식회사 東洋拓殖株式會社 150, 184, 197, 300
 동의 胸衣 466
 동제의학교 同濟醫學校 394
 동족부락 同族部落 296
 동청철도 東清鐵道 302
 동청철도기선회사 東清鐵道汽船會社 89
 동청철도회사 東清鐵道會社 Chinese Eastern Railway Company 89, 100
 동학 東學 363, 364
 동학농민군 東學農民軍 367
 동학농민전쟁 東學農民戰爭 42, 52
 동학당 東學黨 412
 동학사상 東學思想 368
 동회 洞會 318
 두병국 豆餅局 477
 둔토 屯土 404
 등급직제 等級職制 337
 등기소포 登記小包 245
 등기제도 登記制度 144
 등록세 登錄稅 135
- [ㄹ]
- 라즈드리노에 Razhdrioe 303
 러일전쟁 露日戰爭 157
 르젠티르 C. W. LeGendre 李善得 422
 레후 Lekhu 304
 루끼아노프까 Luk'yanovka 304
 루씨여학교 樓氏女學校 387
 르네상스식 Renaissance式 492
 리 履 460
- [ㅁ]
- 마건충 馬建忠 35
 마루야마 시게도시 丸山重俊 280
 마스다 노부유키 増田信之 40
 마차회사 馬車會社 325
 마츠오 켄노스케 松尾元之助 97
 마츠테라 다케오 松寺竹雄 423, 428
 마포미상회사 麻浦米商會社 189
 <마포사험장정> 〈麻浦查驗章程〉 93
 막별이꾼 354
 만국우편연합 萬國郵便聯合 230
 만국평화회의 萬國平和會議 54
 만민공동회 萬民共同會 200
 만한경영론 滿韓經營論 142
 만한집중이민론 滿韓集中移民論 133
 말 犮 460
 매광합자회사 煤礦合資會社 188

- 매축회사 埋築會社 194
 매가타 타네타로 日賀田種太郎 18,
 102, 116, 184, 232
 메릴 Henry F. Merrill 墨賢理 208
 메이어 컴퍼니 Edward Meyer & Co. 111
 메이어스 John G. Meyers 313
 멜불덴여학교 멜불덴女學校 387
 면 縹 459
 면방직업 縹紡織業 213
 〈면에 관한 규정〉 〈面에 關한 規定〉
 456
 〈면장직제칙령안〉 〈面長職制勅令案〉
 455
 면제 面制 456
 면제품 縹製品 153, 158
 면포 縹布 209
 명농회 明農會 206
 명동 천주교 주교관 明洞 天主教 主敎館
 488
 〈명령반포식〉 〈命令頒布式〉 424
 명령항로 命令航路 76, 82, 87, 100,
 105
 명례궁장토 明禮宮庄土 405
 《명률》 《明律》 422
 명률 도적편 모반조 明律 盜賊編 謀叛條
 139
 명성황후 明成皇后 56
 명월관 明月館 476
 명치농법 明治農法 133
 모나코 A. Monaco 114
 모오스 J. R. Morse 毛於時 56, 60,
 110, 119
 모제목면 模製木綿 221
 목단강 牧丹江 302
 목릉 穆陵 302
 목면 木棉 216
 목양사 牧養社 188
 목장토 牧場土 141
 목축영업회 牧畜營業會 205
 목포농회 木浦農會 144
 목포-법성포선 木浦-法聖浦線 104
 목포부두노동자 과업투쟁 木浦埠頭勞動者
 罷業鬪爭 410
 목포상업회의소 木浦商業會議所 103
 목포-장흥선 木浦-長興線 104
 목포-제주도선 木浦-濟州島線 104
 목포-줄포선 木浦-齒浦線 104
 목포항운합명회사 木浦航運合名會社
 104
 목포흥농협회 木浦興農協會 144
 몰락양반 沒落兩班 346
 뮐렌도르프 P. G. Möllendorf 穆麟德
 17, 34, 38, 40, 78
 무간국 撫懇局 301
 무기명식일람불어음 無記名式一覽不여음
 46
 무담보차관 無擔保借款 46
 무로다 요시부미 室田義文 59
 무산간도 茂山間島 308
 무선전신 無線電信 234
 무순 撫順 303
 무양흑반령 無揚黑盤領 460
 무역구조 貿易構造 167
 무역수지 貿易收支 166
 무장포고문 茂長布告文 53
 무츠 무네미츠 陸奧宗光 43, 59
 《문공가례》 《文公家禮》 375
 문과시험 文科試驗 338
 문관임용령 文官任用令 321
 물권 物權 140
 물자유통 物資流通 231
 물장수 475
 물주 物主 209
 물주제 物主制 408
 미두회사 米豆會社 189
 미들턴상사 Middleton and Co. 79
 미면교환체제 米綿交換體制 14, 163,
 165

- 미쓰비시회사 三菱會社 75, 76, 82
 미야모토 쇼이치 宮本小一 18
 미즈이 하치로지로 三井八郎次郎 61
 민겸호 집 閔謙鎬 집 492
 민겸호부인 閔謙鎬夫人 383
 민법 民法 149, 420, 425
 민병석 閔丙奭 195, 399
 민병석부인 閔丙奭夫人 386
 민병필부인 閔丙弼夫人 383
 민상호 閔商鎬 340
 민영기 閔泳綺 196, 340
 민영기부인 閔泳綺夫人 383
 민영익 閔泳翊 481
 민영철 閔永喆 102
 민영환 閔泳煥 195, 312
 〈민적법〉 〈民籍法〉 376
 〈민적법집행心得〉 〈民籍法執行心得〉 376
 민적통계표 民籍統計表 328
 민준호 閔濬鎬 197
 민치현 閔致憲 340
 〈민폐민학교혁장경〉 〈民弊民療矯革章經〉 452
 민현자 閔賢子 385
- 박영인 朴泳仁 384
 박영자 朴英子 384, 385
 박영효 朴泳孝 38, 43, 44, 348, 361, 362, 420, 444
 박제순 朴齊純 116, 423
 박청운 朴清雲 383
 박희병부인 朴羲秉夫人 383
 반도제연사 半島製烟社 191
 반령착수 盤領窄袖 457
 반상제 班常制 337
 반송제연사 盤松製烟社 191
 반십장운동 反什長運動 410
 반일본체운동 反日本牌運動 410
 방곡령 防穀令 37
 방적사 紡績絲 76, 218, 220, 221
 방직토포 紡績土布 167
 배동혁 裴東赫 197
 배재학당 培材學堂 488
 배화여고 培花女高 387
 백동화 白銅貨 21, 23, 26, 28, 29
 백목면 白木綿 160
 백완혁 白完赫 196, 197
 백원혁부인 白元赫夫人 383
 백인기 白寅基 196
 백정 白丁 345, 350, 353
 백헬렌 白헬렌 396
 법률고문 法律顧問 422
 법률기초위원회 法律基礎委員會 422, 426, 432
 법률문답 法律問答 436
 법전조사국 法典調查局 426, 427
 법제개혁 法制改革 421
 베니야진 Benyazhin 303
 보 補 468
 〈보감〉 〈寶鑑〉 434
 보구여관 保救女館 Caring for and Saving Woman's Hospital 390, 392, 393
 보부상 襄負商 199, 200, 202, 203
 보선회사 保船會社 194

[ㅂ]

- 바실리카식 평면 Basilica式 平面 492
 박기영 朴基英 197
 박기종 朴琪宗 57, 67, 90, 97
 박문국 博文局 180
 박변자 朴繁子 384
 박봉엽 朴奉燁 197
 박수항의 어머니 김씨 朴守桓의 母 金氏 397
 박승직 朴承稷 197
 박에스터 朴에스터 388, 393, 394
 박연동의 처 朴淵童의 妻 397
 박영근 朴永根 197

- 보스트윅 H. R. Bostwick 119
 보조금정책 補助金政策 236
 복두 嘴頭 458
 봉금 封禁 302
 봉선 蓬船 84, 95
 부국강병 富國強兵 349
 부농경영 富農經營 217
 부동산권 不動產權 128
 부동산권소관법 不動產權所管法 145
 부동산권에 대한 국가관리체제 不動產權에 對한 國家管理體制 138
 부동산등기 不動產登記 131
 부동산법조사회 不動產法調查會 426, 428
 부두노동자 埠頭勞動者 410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 233
 부산기선회사 釜山汽船會社 103, 104
 부산 이사청 釜山 理事廳 102
 부산-목포선 釜山-木浦線 103
 부산-영일만선 釜山-迎日灣線 103
 부산-웅기만선 釜山-雄基灣線 103
 부산-원산선 釜山-元山線 103
 부산-제주도선 釜山-濟州島線 103
 부산철도호텔 釜山鐵道 Hotel 476
 부산항 조계조약 釜山港 租界條約 130
 부선주식회사 舳船株式會社 186
 부세금납화 賦稅金納化 21
 부세소 賦稅所 444
 부인봉교사 婦人奉教師 397
 부인성경학교 婦人聖經學校 395
 부주사 副主事 337
 북간도 北間島 301
 북도소 北都所 308
 북로전선 北路電線 121
 북선제유 北鮮製油 478
 분서 分署 80
 분원자기주식회사 汾院磁器株式會社
- 불평등조약 不平等條約 30
 불평등조약체제 不平等條約體制 33
 브라운 J. Mcleavy Brown 柏卓安 85, 187
 블라고슬로벤노에 Blagoslovennoe 304, 306
 블라디보스톡 Vladivostok 304
 블라디보스톡-북청선 Vladivostok-北清線 89
 블라디보스톡-상해선 Vladivostok-上海線 83, 100
 빈카르 Vincart 114
 빌흐네또마노프 Vilkhnetomanov 304
 봉표 憑票 90
 뾰시에트 Posieta 303
 뿌չ롭까 Pucilovka 303
- [人]
- 사금광 沙金鑛 209
 사대 絲帶 457
 사립광동학교 私立光東學校 385
 사립광성상업학교 私立廣成商業學校 183
 사립낙영학교 私立樂英學校 183
 사립철도학교 私立鐵道學校 183
 사마르가 Samarga 303
 사만리 沙蔓里 303
 사모 紗帽 457
 사사 司事 228, 337
 사원전 寺院田 141
 사자개채제 私自開採制 208
 사장 社長 308
 사족 士族 344
 사진결혼 寫眞結婚 314
 삼국간섭 三國干涉 55
 삼림벌목특허권 森林伐木特許權 124
 삼림벌채권 森林伐採權 109, 123
 〈삼림협동조약〉 〈森林協同條約〉 124

- 삼호파리국 三湖玻璃局 180
 상裳 460
 상공학교 商工學校 183
 상권보호 商圈保護 229, 244
 상동교회 尚洞敎會 389
 상리국 商理局 181, 199
 상무사 商務社 199, 200~203, 205
 〈상무소장정〉 〈商務所章程〉 200
 〈상무회의소규례〉 〈商務會議所規例〉 181, 200~202, 204
 상무흥리차관 商務興利借款 34
 상물회사 翔物會社 189
 상민 商民 360
 상민공동회 商民共同會 205
 상법회사 商法會社 201
 상법회사설목 商法會社節目 201
 상복 常服 462
 상소문 上訴文 361
 상업 商業 360
 상업적 농업 商業的 農業 343
 상업회사 商業會社 194
 상업회의소 商業會議所 202
 상운 尚漙 34
 상전자 上甸子 302
 상항친목회 桑港親睦會 318
 상해해관 上海海關 36
 상회사 商會社 181
 생금건 生金巾 160, 164
 생존권 生存權 137
 서간도 西間島 302
 서간도 유지시찰단 西間島 有志視察團 302
 서로전선 西路電線 35, 41, 121
 서리 脅吏 341
 서변계관리사 西邊界管理使 302
 서북경략사 西北經略使 301
 서북철도국 西北鐵道局 58, 237
 서북학회 西北學會 205
 서상무 徐相懋 302
 서양요리점 西洋料理店 382
 서열 庶孽 319, 339, 341
 서열 차별 庶孽層 差別 347
 서열충 庶孽層 340
 서원전 書院田 141
 《서유견문》 《西遊見聞》 362
 서자 庶子 341
 서재필 徐載弼 224
 서학당 西學黨 412, 414
 서호-강릉선 西湖-江陵線 103
 석 鳥 460
 석금광 石金鑛 209
 석유용달회사 石油用達會社 189
 선 樑 460
 선거조례 選舉條例 320, 338
 선교사 宣教師 353
 선대제적 생산 先貸制의 生產 217
 선상 船商 170
 선세규칙 船稅規則 235
 선세위원 船稅委員 235
 선천광산 宣川礦山 111
 설비론 設備論 491
 설점수세제 設店收稅制 208
 성문영 成文永 197
 성진공업조합 城津工業組合 212
 성진민요 城津民謡 406
 세곡 稅穀 78
 세곡운송권 稅穀運送權 78
 세무주사 稅務主事 445
 세미운송권 稅米運送權 41
 세베레브기선회사 Shevelev汽船會社 83, 88
 세창양행 世昌洋行 E. Meyer & Co. 36, 40, 78, 85, 88, 111
 셔우드 Rosetta Sherwood 392, 393
 소곡주 少麴酒 477
 소네 아라스케 曾爾荒助 423
 소례복 小禮服 457
 소사 素紗 460

- 소운송업 小運送業 246
 소유권 所有權 146
 소장 小場 169
 소포우편 小包郵便 231, 244, 245
 속대 束帶 458
 손메래 孫麥萊 389
 손탁 孫鐸 482, 484
 손탁호텔 孫鐸 Hotel 482
 손화중포 孫和中包 413
 솜바지 468
 송강공동기선회사 松江共同汽船會社 103
 송병주 宋秉柱 303
 송병준 宋秉畯 483
 송수만 宋秀萬 18, 25
 솔계수공업 솔契手工業 211
 수 紓 468
 수도환 壽都丸 91
 수륙물산주식회사 水陸物產株式會社 192
 수리시설 水利施設 147
 수민원 綏民院 312
 수분 Syufan 緹芬 303
 수세도고 収稅都賈 181
 수세도고회사 収稅都賈會社 185, 187, 192, 194
 수안금광 遂安金鑛 112
 수안금광특허권 遂安金鑛特許權 112
 수입방역사를 이용한 대응 輸入紡績絲絨 利用한 對應 162
 〈수입조규〉 〈輸入條規〉 444
 수직적 분업관련 垂直的 分業關聯 164
 수형조합 手形組合 184
 순명호 順明號 94, 95
 순성여학교 順成女學校 381, 382, 399
 순차담보 順次擔保 31
 송덕학교 崇德學校 396
 송의학교 崇義學校 387
 스크랜튼 Mary F. Scranton 388, 389, 393, 396
 승려 僧侶 345, 350
 승반운동 隊班運動 340
 시가지 市街地 283, 284
 시꼬또바 Sikotova 303
 시넬리니코프 Sinel'nikov 304
 시모노세키조약 下關條約 107
 시민 市民 360
 시복 時服 458
 시부사와 애이치 濵澤榮一 17, 61, 120
 《시사신보》 《時事新報》 72, 73
 시외전화사업 市外電話事業 234
 시장개운회사 市場開運會社 193
 시장권 市場圈 168
 시탄주식용달회사 柴炭株式用達會社 193
 시탄회사 柴炭會社 189
 시홍민요 始興民擾 411
 식민지 여성교육 植民地 女性教育 391
 식민지 여성정책 植民地 女性政策 387
 식민지 재정제도 植民地 財政制度 243
 식민지적 고용구조 植民地의 雇傭構造 245
 식민지 치안제도 植民地 治安制度 243
 식민지화정책 植民地化政策 419
 식산홍업운동 殖產興業運動 204, 206
 식산홍업정책 殖產興業政策 159, 182, 183, 200
 신경 新京 303
 신곡회사 新穀會社 193
 신공자 申公子 383, 384
 신마리아 辛瑪麗亞 387, 388
 신문업 新聞業 240
 신민회 新民會 206, 318
 신봉자 申峯子 384
 신분제 身分制 334, 335
 신분제 개혁 身分制 改革 335, 336, 340
 신분제 폐지 身分制 廢止 336

- 신분직업 身分職業 324
 신사유람단 紳士遊覽團 180
 신상협회 紳商協會 25
 신상회사 紳商會社 197, 206
 신석연초합명회사 信錫煙草合名會社 187
 신소당 申蕭堂 384
 신식화폐발행장정 新式貨幣發行章程 19, 21, 22
 신식화폐조례 新式貨幣條例 19
 신알버트 申 알버트 389
 신영자 申英子 384
 신이자 申利子 384
 신정우 申正祐 388
 신한촌 新韓村 309
 신향층 新鄉層 406
 신호적 新戶籍 326
 실무관료 實務官僚 342
 실업연구회 實業研究會 205
 실학파 實學派 336
 심상훈부인 沈相薰夫人 383
 심양 瀋陽 303
 심의석 沈宜碩 196
 13도제 十三道制 447
 십이류면관 十二旒冕冠 459, 460
 십이장복 十二章服 460
 십장 什長 407, 410
 씨이팅 Satin 218, 222
- [o]
- 아관파천 俄館播遷 123, 229, 418
 아라키 스케타로 荒木助太郎 95
 아류양반 亞流兩班 335, 336
 아사미 린타로 淺見倫太郎 428
 아사히조 朝日組 97
 아전 衛前 355
 아펜젤러 H. G. Appenzeller 392
 안경수 安鷗壽 195, 224, 340
- 안국선 安國善 196
 안봉선 安奉線 71, 303
 안성유기제조공장 安城鑑器製造工場 210
 안의학현참업회사 安義鶴峴蠶業會社 190
 안창호 安昌浩 390
 알렉산드로브카 Aleksandrovka 304
 알렌 Horace N. Allen 311, 484
 알렌 별장 Allen 別莊 489
 압록강 칠교 鴨綠江 鐵橋 70
 애국계몽운동 愛國啓蒙運動 382
 애기소동 애기騷動 295
 앤벗슨 Millie M. Albertson 389
 야스다 젠타로 安田善太郎 61
 약령시 藥令市 179
 약주집 藥酒屋 476
 양규의숙 養閨義塾 383
 양금진 洋金巾 158
 양무운동 洋務運動 79
 양반관료제 兩班官僚制 341
 양반신분 兩班身分 319
 양반제 兩班制 335
 양성기관 養成機關 241
 양성운 梁成雲 383
 양심여학교 養心女學校 392
 양우러리 梁우러리 389
 양원학교 養源學校 392
 양잠강습소 養蠶講習所 386
 양잠교육 養蠶教育 387
 양잠회사 養蠶會社 188
 양진론 量田論 139
 양전사업 量田事業 403
 양정여자교육회 養正女子教育會 382
 양탕국 洋湯국 484
 어물회사 魚物會社 189
 어상회사 漁商會社 189, 194
 어염회사 魚鹽會社 189
 어윤적부인 魚允迪夫人 386

- 어윤중 魚允中 44, 53, 301
 어음조합 어음組合 28
 엄비 嚴妃 390
 엄준원 嚴俊源 390
 에드먼즈 Margaret Edmunds 393
 엘러스 Ellers 392
 앱윗여자청년회 앱윗女子青年會 389
 여객 및 화물의 연락운수 旅客 및 貨物의 連絡運輸 244
 여공원 女工員 400
 여권통문 女權通文 379, 380
 여기원 女技員 400
 여사무원 女事務員 400
 여삼현 呂三鉉 197
 여성교육 女性教育 379, 388, 389, 390, 396
 여성교육 휘지 女性教育 徽旨 385
 여성실업교육 女性實業教育 387
 여성운동 女性運動 380
 여성의 사회진출 女性의 社會進出 382, 385, 386, 401
 여성의 사회참여 女性의 社會參與 397
 여우회 女友會 371
 여자교육회 女子教育會 382
 여자맹아학교 女子盲啞學校 387
 역인 驛人 350
 역제 驛制 225
 역체국 驛遞局 226
 역토 驛土 404
 역토관리규정 및 소작료 징수규정 驛土 管理規程 및 小作料 徵收規定 149
 연길 延吉 301
 연미복 燕尾服 466
 연안무역권 沿岸貿易權 75
 연안어업권 沿岸漁業權 126
 연안해운권 沿岸海運權 75, 235
 연좌제 連坐制 347, 357
 〈연초세법〉 〈煙草稅法〉 283
 연초회사 煙草會社 399
 연해주 沿海州 304, 306
 연화연무국 蓮花烟務局 180
 염상회 鹽商會 189
 엽전 葉錢 26, 28, 29
 영고탑 寧古塔 302
 영구 营口 303
 영대사용수익권 永代使用收益權 142
 영림창관제 營林廠官制 125
 영사재판 領事裁判 423, 427
 영선사 領選使 33, 180, 419
 영시 旎市 179
 영암농민항쟁 靈巖農民抗爭 402, 403
 영암민란소 靈巖民亂所 413
 영원조여 永遠租與 131
 영조 永租 129, 136
 영창회사 永昌會社 187
 영평사금광 永平砂金鑛 112
 영학당 英學黨 412, 413, 414
 영학당운동 英學黨運動 405
 영화학교 永化學校 387
 영홍금광 永興金礦 208
 영홍회사 永興會社 186
 예선 右船 96
 예주법종 禮主法從 439
 엔띠허 Yantikhe 303
 오귀영 吳龜泳 195
 오기 야스타로 扇安太郎 94
 오대환부인 吳臺煥夫人 383
 오도리 가이스케 大鳥圭介 59, 107, 419
 오바 칸이치 大庭貫一 313
 오사카-군산선 大阪-群山線 100
 오사카-마산선 大阪-馬山線 101
 오사카-부산선 大阪-釜山線 83, 100
 오사카-블라디보스톡선 大阪-Vladivo stok線 100
 오사카상선회사 大阪商船會社 83, 84, 85, 87, 93, 96, 97, 100, 103
 오사카-성진선 大阪-城津線 100

- 오사카-안동현선 大阪-安東縣線 101
 오사카-원산선 大阪-元山線 87, 100
 오사카-인천선 大阪-仁川線 87, 100
 오사카-진남포선 大阪-鎮南浦線 87,
 100
 오서 五署 372
 오세창 吳世昌 339
 오시포드까 Osipodka 304
 오영근 吳榮根 197
 오이케 다다스케 大池忠助 102
 오종회사 五種會社 189
 오쿠라 기하치로 大倉喜八郎 61
 오태환 吳台煥 196
 옥페 玉佩 468
 옥혁대 玉革帶 468
 와이더불유씨에이 Y.W.C.A. 390
 와타나베 기이치 渡邊歸一 102
 왕토사상 王土思想 128
 웨식주택 倭式住宅 490
 외국인내지정주상업 外國人內地定住
 商業 172
 외채식민지론 外債植民地論 32
 외획 外劃 195, 197
 요시다 슈타로 吉田秀太郎 103
 요시카와 사타로 吉川佐太郎 93
 요양 遼陽 303
 요업 烹業 211
 요코하마-우장선 橫濱-牛莊線 100
 요코하마정금은행 橫濱正金銀行 38
 요코하마정금은행차관 橫濱正金銀行借
 款 40
 요호부민 饒戶富民 405
 《용담유사》 《龍潭遺詞》 365
 용신인쇄국 龍山印刷局 400
 용산호 龍山號 94
 〈용암포조차계약〉 〈龍巖浦租借契約〉
 124
 용연굴강회사 龍淵掘江會社 194
 용인농민항쟁 龍仁農民抗爭 402
 우경선 禹慶善 90, 92, 195
 우메 젠지로 梅謙次郎 426
 우무학당 郵務學堂 183, 241
 우수리 烏蘇里Ussuri 305
 우수리호 烏蘇里河 Ussuri河 301,
 303
 우스티포키에 Ustipkie 307
 우정사 郵程司 78
 우지나 경유 오사카-안동현선 宇品
 經由 大阪-安東縣線 101
 우체기선회사 郵遞汽船會社 235
 우체사 郵遞司 226, 230
 우체사관제 郵遞司官制 227
 우편기선회사 郵便汽船會社 187
 우편대체 郵便對替 postal giro 244
 우편사업 郵便事業 226
 우편저금 郵便貯金 231, 244
 우편취급소 郵便取扱所 243
 우편환 郵便換 231, 244
 우피 牛皮 171
 운산광약 雲山鑛約 110
 운산금광 雲山金礦 110, 209, 408, 409
 운산금광 채굴권 雲山金礦 採掘權 109,
 119
 울릉도 삼림별목권 鬱陵島 森林伐木權
 124
 울산포 蔚山浦 127
 원거리운임 저감법 遠距離運貨 低減法
 175
 원격지유통 遠隔地流通 176
 원격지유통 체계 遠隔地流通 體系 177
 원경상 元敬常 92
 원산장 元山場 474
 원산진 개항예약 元山津 開港豫約 130
 원산환 元山丸 91
 원세개 袁世凱 36, 37, 40, 81
 원일운선회사 元一輪船會社 187
 웨베르 K. I. Waeber 482
 위생론 衛生論 491

- 위원회 委員 337
 유교윤리 儒教倫理 430, 435
 유기제조업 鑄器製造業 210
 유길준 楊吉濬 43, 53, 180, 196, 362,
 481
 유길준부인 楊吉濬夫人 383
 유두자 楊斗子 384
 유상범부인 楊相範夫人 383
 유생 儒生 329
 유석 劉錫 197
 유성준 楊星濬 383, 428
 유성태사 裕盛泰社 92
 유양후반령 有揚黑盤領 460
 유질계약 流質契約 142
 유학생 留學生 339
 유학생경비차관 留學生經費借款 33
 유향충 儒鄉層 342
 육군곡료회사 陸軍穀料會社 194
 육상 陸商 169
 육의전 六矣廬 181, 192, 198, 204
 윤고라 尹高羅 391
 윤덕영씨 별장 尹德榮氏 別莊 492
 <윤선왕래상해조선공도합약장정> <輪
 船往來上海朝鮮公道合約章程> 80
 윤선운송세 輪船運送稅 41
 윤선초상국 輪船招商局 35, 40, 51
 윤웅열 尹雄烈 340
 윤정석 尹晶錫 197
 윤정원 尹貞媛 391
 윤치성 尹致晟 196, 197
 윤치오 尹致旿 196, 197
 윤치오부인 尹致旿夫人 386
 윤치호 尹致昊 195, 481
 윤택영부인 尹澤榮夫人 386
 윤효정부인 尹孝定夫人 383
 응희호 隆熙號 103
 은본위제도 銀本位制度 19
 은산금광 殷山金鑛 112, 409
 은호 銀號 33
- 을사조약 乙巳條約 47
 의 衣 460
 의관 衣冠 460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 依賴外國
 致損國體者處斷例 139
 의뢰외국치손국체자처단례개정건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改正件
 139
 의료선교사 醫療宣教師 394
 의병 義兵 412
 의병항쟁 義兵抗爭 382
 의안 議案 418
 의·역 중인 醫·譯 中人 336
 의용함대 義勇艦隊 100
 의정부 관제 議政府 官制 337
 의정안 議定案 334, 337
 의주보산합자회사 義州保產合資會社
 190
 의주전선(서로전선) 義州電線(西路電線)
 123
 의주전선합동 義州電線合同 228
 의화단사건 義和團事件 302
 이경숙 李慶淑 387
 이광하 李匡夏 394
 이교 吏校 344
 이구 李九 397
 이근배 李根培 196
 이근배부인 李根培夫人 384
 이근상부인 李根湘夫人 383
 이근택 李根澤 102
 이근호 李根澨 196, 399
 이기 李沂 53
 이기홍부인 李起泓夫人 384
 이노우에 카오루 井上馨 21, 42, 43,
 121, 420, 444
 이만 Iman 305
 이문화 以文會 389
 이미경 李美卿 385
 이민금지령 移民禁止令 312

- 이민보호법 移民保護法 132
 이민보호법 개정법률안 移民保護法
 改正法律案 132
 이민착식 移民拓殖 131
 이바노비치 브리너 J. I. Bryner 124
 이범윤 李範允 302
 이범진 李範晉 340
 이병무 李秉武 423
 이병학 李柄學 197
 이봉래 李鳳來 196
 이봉호 李鳳鎬 399
 이상설 李相禹 54
 이생호 怡生號 94
 이서 吏胥 341, 342
 이서충 吏胥層 342
 이석경 李石卿 384
 이세환 伊勢丸 86
 이순하 李舜夏 383
 이승훈 李昇薰 206
 이승훈 李承薰 210, 212
 이시즈카 히데조 石塚英藏 420
 23부제 二十三府制 444
 이양성당 李養成堂 381
 이영규 李瑛奎 383
 이옥경 李鈺卿 386
 이와사키 야노스케 岩崎彌之助 61
 이완용 李完用 40, 423
 이완용부인 李完用夫人 383, 386
 이용권 利用權 128
 이용익 李容翊 58, 102, 195
 이운사 利運社 85, 94, 187
 이원식 李源植 197
 이위종 李肆鍾 54
 이윤용 李允用 195, 196, 340
 이윤용부인 李允用夫人 383
 이은결 吏隱結 402
 이일정 李一貞 383, 398
 이재극 李載克 196
 이재극부인 李載克夫人 383, 386
 이재면부인 李載冕夫人 386
 이정숙 李貞淑 384, 386
 이조연 李祖淵 340
 이종석 李鍾石 384
 이종화부인 李鐘華夫人 383
 이준 李雋 54
 이준용 李浚鎔 196
 이중래 李重來 197
 이중전매 二重專賣 141
 이지용 李址鎔 102, 196
 이창길당 李昌吉堂 381
 이채연 李采淵 195
 이춘세 李春世 394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43, 116, 423,
 453
 이하영 李夏榮 102, 196, 383
 이학균 李學均 119
 이학선 李學仙 383
 이학재 李學宰 197
 이홍모 李鴻謨 197
 이홍장 李鴻章 34, 36, 37, 79
 이화양행 怡和洋行 Jardine, Matheson &
 Co. 78
 이화학당 梨花學堂 388
 인구밀도 人口密度 287
 인쇄공업회사 印刷工業會社 191
 인쇄소 印刷所 399
 인적자본 人的資本 240, 245
 인조제빙법 人造製冰法 481
 인천-군산선 仁川-群山線 87, 101
 〈인천-용산간 항행 소중기선 단속규
 칙〉 〈仁川-龍山間 航行 小蒸氣船
 團束規則〉 94
 인천신상회사 仁川紳商會社 202
 〈인천 제물포 각국조계장정〉 〈仁川
 濟物浦 各國租界章程〉 130
 〈인천 화상지계장정〉 〈仁川 華商地界
 章程〉 130
 〈인천항 일본조계조약〉 〈仁川港 日本

租界條約〉	130	
일본 관리관청 日本 管理官廳	488	[ㅈ]
일본국 우편국 日本國 郵便局	230	
일본군용전신소 日本軍用電信所	121	
일본면제품의 침투 日本綿製品의 浸透		
162		
일본목면 日本木棉	76, 218, 220	
일본부산상업회의소 日本釜山商業會議		
所 97		
일본상업회의소 日本商業會議所	103	
일본영사관 日本領事館	133	
일본우선주식회사 日本郵船株式會社	42,	
81, 82		
일본우선회사 日本郵船會社	82, 83,	
84, 86, 93, 100		
일본원양어업주식회사 日本遠洋漁業		
株式會社 126, 127		
일본은행차관 日本銀行借款	45	
일본인 정주상업 日本人 定住商業	177	
일본정당 日本精糖	478	
일본제면조기 日本製綿織機	216	
일본제일국립은행 日本第一國立銀行	42	
일본형 범선(화선) 日本型 帆船(和船)	76	
일신학교 一新學校	387	
일한가스회사 日韓gas會社	400	
일한와사회사 日韓瓦斯會社	120	
임금투쟁 賃金鬭爭	410	
임노동자 賃勞動者	354	
임병향 林炳恒	196, 197	
임시군용철도감부 臨時軍用鐵道監部	65,	
67		
임시우체사 臨時郵遞司	243	
임시우체사제도 臨時郵遞司制度	232	
임시우체소 臨時郵遞所	243	
임시철도건설부 臨時鐵道建設部	70	
임오군변 壬午軍變	340	
임오군인항쟁 壬午軍人抗爭	42	
입안제도 立案制度	134, 139	
자기제조소 磁器製造所	211	
자본수입 資本收入	166	
자선부인회 慈善婦人會	382	
자암태홍사 紫巖泰興社	192	
자영항로 自營航路	92	
자유도한 自由渡韓	132	
자유항로 自由航路	100	
자유항선 自由航船	86	
자혜부인회 慈惠婦人會	382, 385	
작잠제탄주식회사 柉蠶製炭株式會社		
190		
작잠주식회사 柉蠶株式會社	190	
작잠합자회사 柉蠶合資會社	190	
작회사 作蠶會社	400	
작통제 作統制	373	
잠농사 蠶農社	190	
잠매 潛買	129	
잠매자처벌법 潛買者處罰法	138	
잠상공사 蠶桑公司	180	
잠업시험장 蠶業試驗場	183	
〈잠정합동조관〉 〈暫定合同條款〉	107,	
120		
잠조 暫租	129, 136	
잠과 雜科	338	
잠과시험 雜科試驗	338	
잠과 출신자 雜科 出身者	338	
잡화 雜貨	76	
장도 張燾	433	
장묘련 張妙蓮	384	
장백 長白	302	
장석영부인 張錫英夫人	384	
장석주 張錫周	196	
장시 場市	169, 179	
장안사호텔 長安寺 Hotel	477	
장전포 長箭浦	127	

- 장춘관 長春館 476
 장통회사 長通會社 180
 재래토포 在來土布 167
 재산권 財產權 138
 재판소구성법 裁判所構成法 421
 저 苹 459
 저밀도도시 低密度都市 289
 적의 習衣 468
 전고국조례 銓考局條例 320, 338
 전골집 煎骨家 476
 전기이권 電氣利權 118
 전당업자 典當業者 136
 전당포 典當鋪 136
 전당포규칙 典當鋪規則 138, 142
 전대 轉貸 149
 전도부인 傳道夫人 395, 396
 전등가설 電燈架設 294
 전라남도주식잠농사 全羅南道株式蠶農社 190
 전무학당 電務學堂 183, 241
 전보사 電報司 232
 전보사관제 電報司官制 232
 전봉준 全琫準 53
 전삼덕 全三德 396
 전선가설권 電線架設權 36
 전선가설 차관 電線架設 借款 35, 46
 전선수비헌병 電線守備憲兵 234
 전신국 電信局 226
 전우총국 電郵總局 230
 전장 錢莊 33
 전주장 全州場 474
 전주항쟁 全州抗爭 405
 전차운행 電車運行 294
 전화교환사업 電話交換事業 234
 전화사업 電話事業 234
 전한국 典圜局 22, 39, 41, 400
 전황 錢荒 184, 197
 점촌 店村 210
 정가 町家 490
 정강14조 政綱十四條 361
 정교 鄭喬 383
 정국영 鄭國永 197
 정동제일교회 貞洞第一敎會 389
 정동학당 貞洞學堂 388
 정두환 鄭斗煥 197
 정보수집 情報蒐集 231
 <정부允許洋船赴未通商口岸章程>
 〈政府允許洋船赴未通商口岸章程〉 90
 정신학교 貞信學校 387
 정액지대 定額地代 149
 정영두 鄭永斗 196
 정의학교 正義學校 387
 정인숙 鄭仁叔 206
 정인호 鄭寅琥 196, 197
 홍재홍 鄭在洪 92
 정진홍 鄭鎮弘 196, 197
 정해룡 丁海龍 413
 정현철 鄭顯哲 58, 195
 정화여학교 貞和女學校 391
 제102국립은행 第百二國立銀行 14, 77
 제18국립은행 第十八國立銀行 15, 77
 제1차 동순태차관 第一次 同順泰借款 36
 제3차 대항권 第三者 對抗權 131
 제58국립은행 第五八國立銀行 15, 77
 제국실업회 帝國實業會 205, 206
 제사공장 製絲工場 399
 제이차 동순태차관(동순태속차관) 第二次 同順泰借款(同順泰續借款) 37
 제익선사 濟益船社 187
 제일은행 第一銀行 29, 48
 제일국립은행 第一國立銀行 14, 15, 38, 39, 51, 77
 제일은행권 第一銀行券 17, 24, 25, 27, 29, 48
 제임스 존스톤 별장 James Jonston 別莊 489

- 제중원 濟衆院 475
 <조·일통상장정> 〈朝·日通商章程〉 126
 조계 租界 128
 조계공사 租界公司 131
 조공무역 朝貢貿易 165
 조근급봉사자복 朝覲及奉祀之服 460
 조남파 趙南波 383, 384
 <조러수호통상조약> 〈朝露修好通商條約〉 304
 <조미수호통상조약> 〈朝美修好通商條約〉 77, 129
 조병식 趙秉式 203
 조병택 趙秉澤 196, 197
 조사사찰단 朝土視察團 419
 조산파양성소 助產婆養成所 395
 조선개광회사 朝鮮開鑛會社 110
 조선 경유 나가사키→대련선 朝鮮 經由長崎→大連線 101
 <조선기행> 《朝鮮紀行》 481
 <조선만화> 《朝鮮漫畫》 476
 조선목면 朝鮮木棉 220
 <조선민사령> 〈朝鮮民事令〉 375
 조선우선주식회사 朝鮮郵船株式會社 105
 조선유기상회 朝鮮鎰器商會 210, 475
 조선은행권제도 朝鮮銀行券制度 29
 조선인 기선회사 朝鮮人汽船會社 236
 조선정당주식회사 朝鮮精糖株式會社 478
 <조선지지자료> 《朝鮮地誌資料》 288
 <조선형사령> 〈朝鮮刑事令〉 434
 조선호텔 朝鮮 Hotel 476
 조세저항운동(항세운동) 租稅抵抗運動(抗稅運動) 401
 <조세징수규정> 〈租稅徵收規程〉 455
 <조영수호통상조약> 〈朝英修好通商條約〉 77, 129
 조영하 趙寧夏 34
 조영하부인 趙寧夏夫人 386
 조운제도 漕運制度 78
 조인희 趙寅熙 18
 <조일공수동맹> 〈朝日攻守同盟〉 55
 <조일무역규칙> 〈朝日貿易規則〉 75
 <조일수호조규> 〈朝日修好條規〉 75, 128
 <조일참정합동> 〈朝日暫定合同〉 55, 59
 <조일통어장정> 〈朝日通漁章程〉 296
 조종서 趙鍾緒 196, 197
 조종성현 祖宗成憲 424
 조종성현존중주의 祖宗成憲尊重主義 426
 조주부호 潮州府號 88
 조중응 趙重應 196
 조지용달회사 造紙用達會社 191
 조진태 趙鎮泰 196
 조진태부인 趙鎮泰夫人 384
 조창한 趙彰漢 197
 <조청상민수류무역장정>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34, 77, 79
 조칙 詔勅 418
 조폐공사 造幣公社 399
 조혼 早婚 347
 조희연 趙義淵 196
 존스 George H. Jones 312
 존위 尊位 445
 종상회사 種桑會社 190
 종성 鐘城 307
 종성간도 鐘城間島 308
 주 紬 459
 주거규범 住居規範 486
 주교사 舟橋司 78
 주권 회복 主權 回復 229
 주류시험장 酒類試驗所 477
 주류양조회사 酒類釀造會社 191
 주막 酒幕 476
 주민등록제 住民登錄制 378
 주본 奏本 426

- 주사 主事 337, 342
 주상복합건물 住商複合建物 490
 〈주세법〉 〈酒稅法〉 283
 주식회사 대한상업사 株式會社 大韓商業社 190
 〈주식회사 제일은행권규칙〉 〈株式會社第一銀行券規則〉 24
 주식회사 한릉사(경성용홍주식회사) 株式會社 韓隆社(京城興興株式會社) 190
 주식회사 호상관상회 株式會社湖上館商會 192
 주우가 住友家 76
 주의 周衣 457, 464, 467
 주임관 奏任官 337
 준호구 準戶口 356
 중간신분층 中間身分層 334~336, 339, 344
 중계무역 中繼貿易 128, 156, 165
 중단 中單 460, 468
 중심재 中心財 168
 중앙은행 中央銀行 187, 190
 중앙은행제도 中央銀行制度 25
 〈중앙은행조례〉 〈中央銀行條例〉 25
 중인 中人 319, 337, 338, 339
 중인신분 中人身分 337
 중인층 中人層 339
 중추원 中樞院 424
 중화루 中華樓 483
 증야터널공사 増若tunnel工事 411
 지계제도 地契制度 130
 지권 地權 136
 지대 地代 148
 지대지항운동(항조운동) 地代抵抗運動(抗租運動) 404, 405
 〈지방관판제〉 〈地方官官制〉 453
 〈지방관리직제〉 〈地方官吏職制〉 448
 지방자치 地方自治 441, 448
 지방제도조사소 地方制度調查所 441, 453
 지방행정구역 개편 地方行政區域 改編 284
 지석영부인 池錫永夫人 383
 지주권 地主權 140, 149
 직녀 織女 221
 직물회사 織物會社 399
 직산금광 穂山金礦 113, 409
 직산금광 채굴권 穂山金礦 採掘權 110, 113
 직조권업장 織造勸業場 224
 직조단포주식회사 織造綬布株式會社 187, 188, 399
 직조학교 織造學校 399
 직조회사 織造會社 400
 진고개 483
 진남포·목포 각국조계장정 鎮南浦·木浦 各國租界章程 130
 진남포-안동현선 鎮南浦-安東縣線 101
 진명부인회 進明婦人會 382, 384
 진명여학교 進明女學校 390
 진선조합회사 津船組合會社 194
 진수당 陳樹棠 80
 진윤이 陳允頤 35
 진전 陳田 405
 진탁은 秦卓隱 383
 진포도 珍浦島 127
 진학신 秦學新 383
 진학신부인 秦學新夫人 383
 진학주 秦學胄 197, 383
 진학주부인 秦學胄夫人 383
 진홍자 陳洪子 384
 질권 質權 142
 집강 執綱 445
 징세서 徵稅署 444

- | | |
|------------------------------------|---|
| 차관 借款 30 | 청춘과부 青春寡婦 391 |
| 차관계약서 借款契約書 31 | 청한무역합자회사 清韓貿易合資會社
192 |
| 차관공세 借款攻勢 31 | 체신파 遞信課 226 |
| 차관망국론 借款亡國論 32, 53 | 초상국 招商局 79, 80 |
| 차관의 독점권(전대화관) 借款의 獨占
權(專貸華款) 37 | 최경석 崔景錫 479 |
| 〈차관합동〉 〈借款合同〉 34 | 최규익부인 崔奎翊夫人 384 |
| 찬양회 贊襄會 380, 399 | 최남선 崔南善 339 |
| 창룡호 蒼龍號 41 | 최대장 最大場 169 |
| 창성금광 昌城金礦 110, 113, 409 | 최린 崔麟 339 |
| 창신사 彰信社 192, 206 | 최병헌부인 崔炳憲夫人 383 |
| 창우 倡優 350 | 최봉준 崔鳳俊 87 |
| 창원금광 채굴권 昌原金礦 採掘權 113 | 최사영 崔思永 197 |
| 창의 鹫衣 457 | 최석상부인 崔錫祥夫人 383 |
| 창홍사 彰興社 206 | 최석조 崔錫肇 195 |
| 채과회사 菜果會社 189 | 최석창 崔錫彰 196 |
| 챠타드뱅크 Chartered Bank 15 | 최시형 崔時亨 364~366, 413 |
| 천민 집단 賤民 集團 345 | 최영년부인 崔永年夫人 383 |
| 천일염 天日鹽 478 | 최익현 崔益鉉 53, 422 |
| 천진기기국 天津機器局 33 | 최익환 崔翊煥 197 |
| 천진해관 天津海關 34 | 최제우 崔濟愚 364~367 |
| 철공제조주식회사 鐵工製造株式會社
191 | 최준 崔浚 197 |
| 철도 鐵道 173 | 최혜국대우 最惠國待遇 129 |
| 철도국 鐵道局 226, 229 | 최혜국조관 最惠國條款 109 |
| 철도국유법안 鐵道國有法案 69 | 최활란 崔活蘭 388, 390 |
| 철도사 鐵道司 229, 237 | 추가부담액(가결) 追加負擔額(加結) 402 |
| 철도연대수송 鐵道聯帶輸送 174 | 추자도 楸子島 103 |
| 철도운송 鐵道運送 173, 175 | 축첩반대상소 蓋奏反對上訴 371 |
| 철도원 鐵道院 230, 237 | 츠나도 토쿠야 綱戶得哉 58 |
| 철도유통 鐵道流通 177 | 치도론 治道論 491 |
| 철도학교 鐵道學校 241 | 치씬허 Tizinkhie 303 |
| 철도환 鐵道丸 93, 96 | 치외법권 治外法權 427 |
| 철도회사 鐵道會社 237 | 최임관 勅任官 337, 342 |
| 철령 鐵嶺 303 | 칠립 漆笠 457 |
| 청사 소재지 廳舍 所在地 296 | [=] |
| 청염회사 清鹽會社 192 | 카네킨 76, 81, 82, 153, 157, 162, 214, 215 |
| 청요직 清要職 340 | 커리 Currie 114 |
| 청일전쟁 清日戰爭 42, 157, 158, 228 | |

- 커피 coffee 484
 케이제클링 Henry Keyserling 125, 126
 코네티컷주 Connecticut州 119
 코르사코프 Korsakovka 303
 코리안신디케이트 Korean Syndicate 112
 코오베-북청선 神戶-北清線 100
 코오베-블라디보스토크선 神戶-Vla divostok線 86
 코오베-오사카선 神戶-大阪線 83, 100
 코오베-우장선 神戶-牛莊線 82, 86
 코오베-진남포선 神戶-鎮南浦線 86
 코오베-천진선 神戶-天津線 86
 콜레라 만연 cholera 蔓延 295
 콜브란 A. H. Collbran 骨佛安 56, 119, 120
 쿠라토미 유사부로 倉富勇三郎 428
 쿠로이와 야스타로 黑岩休太郎 116
 크레마지 L. Crémazy 金雅始 422, 433
 키강 Kii江 304
 키우치 츄시로 木内重四郎 116
- [■]
- 타운센드 W. D. Townsend 陀(他)雲仙 36, 56, 94
 타출법 打出法 21
 타케노 코노베 武野伊平 91
 탁지부 度支部 149
 탄상회사 炭商會社 189
 태양진당 太養貞堂 381
 태운회사 泰運會社 187
 태평양포경회사 太平洋捕鯨會社 126
 태화여자관 泰和女子館 390
 〈태환금권조례〉 〈兌換金券條例〉 25
 토목건축청부회사 土木建築請負會社 240
 토반 土班 319
 〈토지가옥증명규칙〉 〈土地家屋證明規則〉 145, 430
- 토지대장 土地臺帳 131
 토지매도증 土地賣渡證 142
 토지수용령 土地收用令 143
 〈토지조사법〉 〈土地調查法〉 430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查事業 142
 토포 土布 214, 216, 220
 통감부 統監府 184, 185, 376
 통감부 재판소 統監府 裁判所 423
 통감부 통신관리국 統監府 通信管理局 244
 통리각국사무이문 統理各國事務衙門 80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78
 통리기무아문 統理機務衙門 418
 통신국 通信局 226
 통신사업 通信事業 243
 통신원 通信院 91, 230
 통조림업 통조림業 481
 통혜공사 通惠公司 91
 통화소만구 通化小灣溝 303
 통화현 通化縣 300, 302
 퇴전 退典 138
 투기자본 投機資本 133
 투매 偷賣 134
 특립제일대한은행 特立第一大韓銀行 186
- [■]
- 파두 把頭 307
 파세트 J. Sloat Fasset 110
 판임관 判任官 337
 팔상회사 八商會社 189
 폐두 牌頭 308
 폐옥 佩玉 460, 461
 평거복 平居服 467
 평민 平民 346, 354, 360
 평양도자기회사 平壤陶磁器會社 212

- 평양애국여학교 平壤愛國女學校 390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 平壤磁器製造株式會社 191, 206, 207
 평양철도호텔 平壤鐵道 Hotel 477
 폐슬 蔽膝 460, 468
 폐정개혁 弊政改革 347, 349
 포 布 459
 포경권 捕鯨權 125, 126
 포경기지 捕鯨基地 127
 포경장 捕鯨場 125
 포구 浦口 169
 포구·장시의 네트워크 浦口·場市의 Network 238
 포자 包子 483
 포합이통하 布合爾通河 301
 품대 品帶 457
 품속대 品束帶 460
 풍범선 風帆船 77
 풍장(풍존) 風長(風尊) 308
 피공 皮工 350
 피브릴르회사 Compagnie de Fives-Lille 貴務林公司 57
 피어스 A. L. Pearse 112
- 〈한국연안무역에 관한 약정안〉 〈韓國沿岸貿易에 關한 約定案〉 101
 한국연안우선회사 韓國沿岸郵船會社 102
 〈한국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韓國沿海 및 內河의 航行에 關한 約定書〉 101, 244
 한국우편기선회사 韓國郵便汽船會社 186
 한국의 일본화 韓國의 日本化 140
 한국철도회계자본감정 韓國鐵道會計資本勘定 70
 한국축산회사 韓國畜產會社 194
 한국통감부 韓國統監府 73
 한국통감부 철도관리국 韓國統監府 鐵道管理局 70, 72
 〈한국통신기관위탁에 관한 협정서〉 〈韓國通信機關委託에 關한 協定書〉 242
 〈한국항로 개량에 관한 청원서〉 〈韓國航路 改良에 關한 請願書〉 87
 〈한국호구수〉 〈韓國戶口數〉 282
 《한국호구표》 《韓國戶口表》 278, 279, 282, 284, 291, 294
 한기조 韓箕朝 409
 한랭사 寒冷紗 82
 〈한러삼립협동경영약관〉 〈韓露森林協同經營約款〉 125
 한미전기회사 韓美電氣會社 119
 한미협동창고회사 韓美協同倉庫會社 190
 한미홍업주식회사 韓美興業株式會社 192
 한상룡 韓相龍 196
 한상방적고본회사 漢上紡績股本會社 187, 188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 184
 한성관립고등여학교 漢城官立高等女

[호]

- 하란사 河蘭史 388
 하바로프스크 Khabarovsk 304
 하상기 河相驥 389
 하야시 곤스카 林權助 126
 하얼빈 哈爾濱 302
 하워드 Howard 392
 하인리히 황태자 Heinrich 皇太子 111
 하전자 下甸子 302
 하피 霞帔 468
 한강수운 漢江水運 173
 한강운행권 漢江運行權 37
 한경리 韓慶履 197
 한국농업개발론 韓國農業開發論 133

- 학교 385
 한성농공은행 漢城農工銀行 325
 한성방적고본회사 漢城紡績股本會社 224
 한성부 漢城府 134, 372
 한성부호적 漢城府戶籍 327
 한성염직회사 漢城染織會社 191
 한성은행 漢城銀行 15, 186, 187, 325
 한성재목시탄주식회사 漢城材木柴炭株式會社 193
 한성전기회사 漢城電氣會社 118, 119, 186
 한성제재회사 漢城製裁會社 400
 한성직물주식회사 漢城織物株式會社 191
 한성직조학교 漱城織造學校 183
 한양호 漢陽號 94
 한역서학서 漢譯西學書 418
 한인교회 韓人教會 317
 한인청년회 韓人青年會 309
 한인협의회 韓人協議會 309
 한일수호조규부록 韓日修好條款附錄 18
 한일심 韓一心 383
 〈한일어업협약〉 〈韓日漁業協約〉 481
 〈한일 외국인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
 〈韓日 外國人顧問傭聘에 關한 協定〉 280
 한일은행 韓一銀行 190, 206
 한일의정서 韓日議定書 422
 〈한일전선설치조관속약개정안〉 〈韓日電線設置條款續約改正案〉 121
 〈한일해자전선설치조관〉 〈韓日海底電線設置條款〉 122
 한진대용증권 韓錢代用證券 21
 한전비가 韓錢比價 18
 한전예탁여음 韓錢預託여음 17
 한지 韓紙 212
 한홍직조회사 韓興織造會社 191
 할지론 割地論 53
 합명우피회사 合名牛皮會社 191
 합명회사 공익사 合名會社 共益社 192
 합순양행 合順洋行 33
 항조운동 抗租運動 148
 항해권 航海權 74
 해관은행 海關銀行 39
 해관창설 차관 海關創設 借款 34
 해란강 海蘭江 301
 해룡 海龍 303
 해방지응국 차관 海防支應局 借款 37
 해방청 海防廳 80
 해산회사 海產會社 188
 해운권 海運權 74
 해운보조제도 海運補助制度 244
 해저전선 海底電線 234
 행정기능인 行政技能人 341
 향리 鄉吏 341~344
 향리가문 鄉吏家門 343
 향리층 鄉吏層 343
 향약 鄉約 308
 〈향약판무규정〉 〈鄉約辦務規程〉 445, 447
 향연합자회사 香烟合資會社 187, 188
 향원 鄉員 443
 향원층 鄉員層 343
 향장 鄉長 308, 448
 향정 鄉正 308
 향항(홍콩)상해은행 香港上海銀行 15
 향회 鄉會 442
 〈향회에 관한 의안〉 〈鄉會에 關한 議案〉 442
 〈향회조규〉 〈鄉會條規〉 445, 447, 448
 허삼돌 가옥 허삼돌 家屋 486
 헌트 Leigh S. J. Hunt 110
 혁대 革帶 460
 현기봉 玄基奉 197
 현업기관 現業機關 226
 현업노무자 現業勞務者 241
 현영운 玄暎運 383, 432

- 협동사 協同社 205
 형법 刑法 420
 《형법대전》 《刑法大典》 374, 375, 422,
 432, 433
 《형법초안》 《刑法草案》 432
 혜 鞋 466
 혜상공국 惠商公局 199
 호구단자 戶口單子 356, 368
 호구조사 戶口調查 277, 281
 〈호구조사규칙〉 〈戶口調查規則〉 277,
 278, 372
 〈호구조사세칙〉 〈戶口調查細則〉 277,
 372
 《호구총수》 《戶口總數》 280, 282,
 283, 291, 294
 호구표 戶口表 356
 호남철도주식회사 湖南鐵道株式會社
 206
 호떡 483
 호리상회 堀商會 92~95, 103
 호리 히사타로 堀久太郎 92, 94
 호상관상회 湖上館商會 206
 호수 戶首 374
 호수돈여학교 好壽敦女學校 387
 호시 도루 星亨 421, 432
 호움링거상회 Homle Ringer Co. 88
 호적 戶籍 277
 호적표 戶籍表 373
 호주 戶主 374
 호폐 戶(號)牌 277
 훌튼 Lillias S. Horton 484
 홍궁섭 洪肯燮 197, 384
 홍범 14조 洪範 十四條 420, 425
 홍삼 紅蔘 165
 홍삼세 紅蔘稅 35
 홍원삼 紅圓衫 468
 홍종우 洪鍾宇 203
 홍종환 洪鍾皖 197
 홍충현 洪忠鉉 196
 화가포환 和歌浦丸 93
 화금건 和金巾 175
 화룡현 和龍縣 301
 화륜선 火輪船 77
 화선 火船 95
 화유국 華裕局 33, 34
 화자 靴子 457
 화적당 火賊黨 412
 화진국 華電局 35, 121
 화폐원료 차관 貨幣原料 借款 39
 화폐제정정리사업 貨幣額改整理事業 18
 화폐정리사업 貨幣整理事業 27, 29
 화폐조례 貨幣條例 25, 26
 화풍국 和豐局 33
 환퇴 還退 138
 활빈당 活貧黨 412, 415
 황국중앙총상회 皇國中央總商會 202,
 203, 204
 황국협회 皇國協會 200
 황룡포 黃龍袍 459
 황무지 개척권 荒蕪地 開拓權 145
 황산환 黃山丸 96
 황(여)메레 Mary Whang 388, 390
 황원삼 黃圓衫 468
 회령간도 會寧間島 308
 회상장 會上長 307
 횡도하자 橫道河子 302
 후창광산 厚昌礦山 113
 후창금광 厚昌金礦 110
 후쿠다 유조 福田有造 104
 훈장 勳章 466
 훈춘 瑋春 308
 훈형 懲刑 431
 흉배 胸背 468
 흑단령 黑團領 457, 458
 흥개호 興凱湖 303
 흥업사 興業社 192

집필자

개요 권태억

I. 외국 자본의 침투

1.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

- | | |
|-----------------|-----|
| 1) 금융 지배 | 오두환 |
| 2) 차관 제공 | 김정기 |
| 3) 철도 부설 | 정재정 |
| 4) 해운업 침투 | 나애자 |
| 5) 이권 탈취 | 이배용 |

2. 일제의 토지 침탈 최원규

II. 민족경제의 동태

1. 무역구조의 변동과 시장권의 재편성 이현창

2. 상회사 설립과 상권수호운동 전우용

3.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하원호

4. 교통 · 운수 · 통신 박이택

5. 상업적 농업의 재편과 지주제의 성장 이윤갑

III. 사회생활의 변동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손정목
2) 국외 이민
 (1) 만주 · 노령 지역 임계순
 (2) 미주 지역 고정희

2. 신분제도의 변화

- 1) 양반 신분제도의 변화 지승종
2) 중간신분층의 부상 김필동
3) 상민 · 천민층의 성장 조성윤
4) 가족관계의 변화 정경숙
5) 여성의 사회진출 박용옥
6) 민중운동의 전개 이영호

3. 형법 · 민법체계의 변화 최종고

4. 지방자치제의 추이 김익한

5. 의 · 식 · 주생활의 변화

- 1) 의복 유희경
2) 음식 한복진
3) 주거 강영환

한국사

44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2000년 12월 10일 인쇄

2000년 12월 15일 발행

발행 국사편찬위원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쇄 주식회사 천세

서울 종구 충무로 4가 141

전화 02-2272-2727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

값 6,700원